



제1부 창업, 재기, 사업전환 지원

제1장 아이디어·기술창업 지원	5
1-1 창업성공패키지(舊 청년창업사관학교)	6
1-2 선도벤처연계 기술창업 지원	9
1-3 창업인턴제	11
1-4 본(Born)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활성화	13
1-5 창업선도대학육성	16
1-6 대한민국 창업리그	19
1-7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 지원(TIPS)	21
1-8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23
1-9 상생서포터즈 청년·창업 프로그램	25
제2장 창업저변 확대	27
2-1 청소년 비즈쿨	28
2-2 창업아카데미	30
2-3 창업대학원	32
2-4 시니어 기술창업 지원	33
2-5 창업보육센터 지원사업	35
2-6 온라인 법인설립 시스템	37
2-7 K-스타트업	39
제3장 지식서비스 창업 활성화 및 성장기반 구축	41
3-1 스마트창업터	42
3-2 스마트벤처창업학교	45
3-3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48
3-4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	51
제4장 사업전환 및 재창업지원	53
4-1 재도약 지원자금	54
4-2 사전부실예방 및 진로제시 지원	57
4-3 중소기업 회생컨설팅	59
4-4 창조혁신형 재도전 기술개발사업	61
4-5 재도전성공패키지	64



제2부 금융 지원

제5장 시설 및 운전자금 대출	70
5-1 정책자금 지원 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	71
5-2 창업기업지원자금	78
5-3 신성장기반자금	81
5-4 긴급경영안정자금	85
5-5 투융자복합금융자금	88
5-6 신시장진출지원자금	92
제6장 신용보증 지원	96
6-1 신용보증기금	97
6-2 기술보증기금	100
6-3 지역신용보증재단	103
6-4 매출채권보험	108

제3부 기술개발 지원

제7장 기술개발자금 지원	116
7-1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사업	117
7-2 월드클래스 300 프로젝트 지원사업	121
7-3 창업성장기술개발	126
7-4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130
7-5 제품서비스기술개발사업	133
7-6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136
7-7 공정-품질기술개발사업	141
7-8 중소-중견기업 기술경쟁력강화 파트너십사업	144
7-9 중소기업 네트워크형 기술개발사업	147
7-10 기술전문기업 협력기술개발사업	151
7-11 중견기업 글로벌 도약 기술개발	153

제8장 기술개발 역량강화 및 인프라지원	156
8-1 중소기업 R&D역량제고	157
8-2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	161
8-3 뿌리기업 지원사업	165
8-4 뿌리기업의 품질혁신 지원사업	172
제9장 정보화 지원 및 기술유출 방지	175
9-1 클라우드기반 솔루션 개발사업	176
9-2 생산현장디지털화사업	178
9-3 기술보호 역량강화	181
9-4 경영혁신 마일리지 제도	190

제4부 인력 지원

제10장 인력 양성	194
10-1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	195
10-2 기술사관 육성	198
10-3 산학맞춤 기술인력 양성사업	201
제11장 인력유입 촉진	204
11-1 중소기업 계약학과 사업	205
11-2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209
11-3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	213
11-4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우선공급	216
11-5 중소기업 인식개선(현장체험)	218

제5부 판로 지원

제12장 중소기업에 유리한 공공기관 납품제도	224
12-1 중기간 경쟁제품,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225
12-2 직접생산확인제도	228
12-3 계약이행능력심사	232
12-4 적격조합 확인제도	230
12-5 조합 추천 소액 수익계약	234
12-6 공공구매론(Loan)	236



제13장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238
13-1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239
13-2 성능인증제도	242
제14장 마케팅, 판매·홍보	244
14-1 중소기업 마케팅역량강화	245
14-2 혁신제품발굴연계시스템(아임스타즈) 운영	248
14-3 정책매장 아임쇼핑 설치운영	250
14-4 온라인 시장진출	252
14-5 오프라인 시장진출	254
14-6 중소기업 공동 A/S 지원	256
14-7 중소소모성자재 납품기업지원	258
14-8 공영홈쇼핑(아임쇼핑) 우수제품 입점판매	261

제6부 수출 지원

제15장 초보에서 글로벌까지 다양한 수출지원	266
15-1 수출성공패키지	267
15-2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	271
15-3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275
15-4 무역촉진단 파견사업	279
15-5 대·중소기업 동반진출지원	281
15-6 해외유통망 진출지원	284
15-7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사업	287
15-8 수출인큐베이터 운영	292
15-9 고성장기업 수출역량강화사업	295
15-10 수출금융용자	297
15-11 차이나 하이웨이 사업	300
15-12 전자상거래수출시장지원	303
15-13 글로벌 협력 지원	305
15-14 GMD(글로벌시장개척전문기업)사업	307
15-15 수출고용 특별자금	310

15-16 해외 기술교류 지원	312
15-17 중견기업 해외마케팅 맞춤형 지원사업	314

제7부 건강진단 및 컨설팅 지원

제16장 외부 전문가 노하우	320
16-1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321
16-2 원스톱 기업애로 종합지원	326

제8부 소상공인 전통시장

제17장 교육, 컨설팅 및 정보제공	332
17-1 신사업창업사관학교	333
17-2 소자본 해외창업지원	336
17-3 상권정보시스템	339
제18장 맞춤형 경영개선 및 협업화 지원	341
18-1 소상공인 경영교육	342
18-2 역량 Jump-Up프로그램	344
18-3 소상공인컨설팅 지원	346
18-4 소상공인 무료법률구조 지원	348
18-5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	350
18-6 나들가게 육성	353
18-7 프랜차이즈화 지원	356
18-8 프랜차이즈 수준평가 및 연계지원	359
18-9 소공인 특화센터 사업	362
18-10 소공인 제품 판매촉진 사업	364
18-11 소공인 제품·기술 가치향상 사업	366
18-12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 및 지원	368



제19장 소상공인 재기지원	370
19-1 희망리턴패키지	371
19-2 재창업패키지	373
19-3 소기업·소상공인공제	375
제20장 전통시장 활성화	377
20-1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378
20-2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381
20-3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383
20-4 상권활성화	386
20-5 온누리상품권 발행	389
20-6 전통시장 ICT 육성	392
20-7 청년상인 육성	394
20-8 전통시장 대학 협력사업	397
20-9 상인교육 및 시장인프라 지원	400
20-10 시장마케팅 지원	403
20-11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406
20-12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	409
제21장 소상공인 정책자금	412
21-1 소공인특화자금	413
21-2 성장촉진자금	415
21-3 일반경영안정자금	420
21-4 수출고용특별자금	422

제9부 여성기업·장애인기업 지원

제22장 여성기업·장애인기업 지원	428
22-1 여성CEO MBA 교육	429
22-2 전국 여성CEO 경영연수	431

22-3 여성창업보육센터 지원	432
22-4 여성창업경진대회	435
22-5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438
22-6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지원	441
22-7 여성기업 해외진출 지원	444
22-8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	446
22-9 여성경제인 DESK 운영	448
22-10 TV 홈쇼핑 판매지원	450
제23장 장애인기업 맞춤형 창업지원 및 경쟁력 강화	452
23-1 장애인 맞춤형 창업교육사업	453
23-2 장애인 특화창업보육실 운영	457
23-3 장애인기업 성장지원	460
23-4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	463
23-5 장애인기업제품 판로인증지원 및 운영	466
제10부 도움이 되는 제도	
제24장 알아두면 좋은 제도	471
24-1 중소기업정책정보시스템(기업마당) 운영	472
24-2 이노비즈 확인제도	474
24-3 메인비즈 확인제도	477
24-4 우수그린비즈 선정 제도	480
24-5 중견기업 확인제도	482
24-6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 운영	484
24-7 중소기업옴부즈만 제도	487
24-8 명문(名門)장수기업 확인제도	489
부 록	492
1. 중소기업 판단 기준 및 확인방법	493
2. 중소기업 조세지원	4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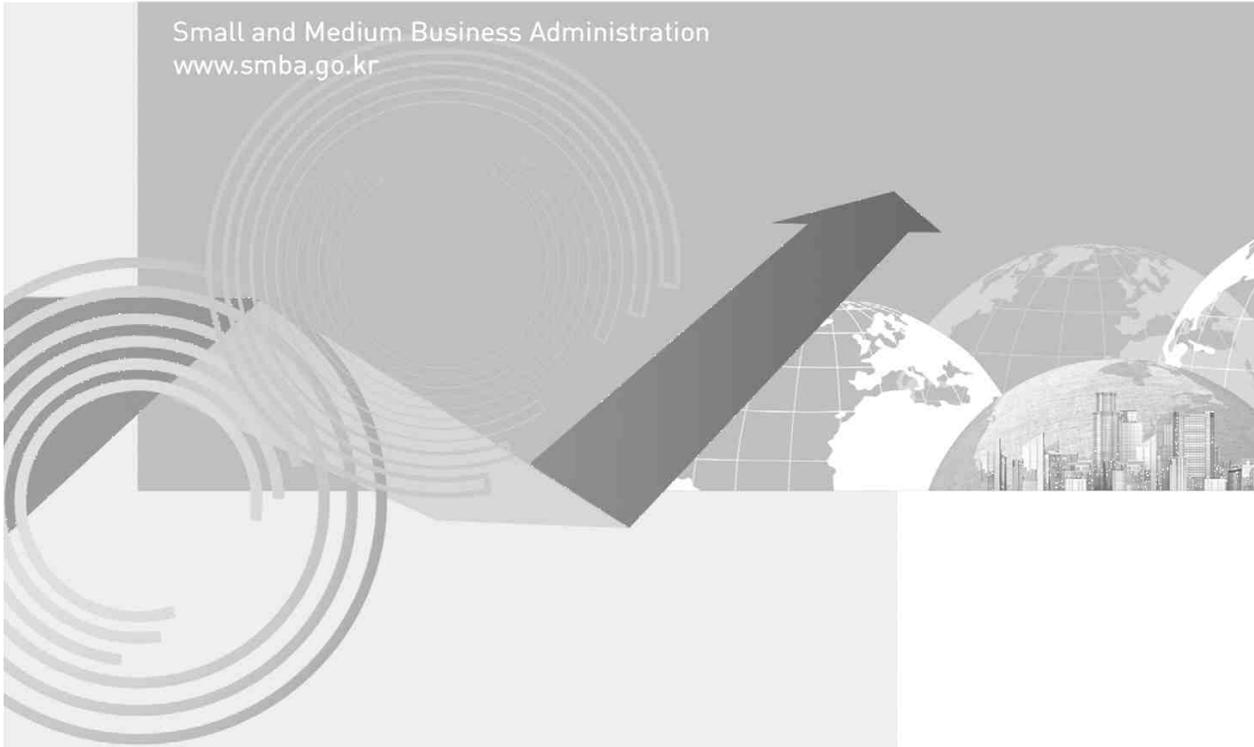


창업, 재기, 사업전환지원

제 1 부

창업과 재도약의
디딤돌이 되겠습니다.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www.smba.go.kr



중기백과 함께 알아보는 창업·사업전환



- Q** 시제품제작, 사업화자금 등 창업 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 및 경영애로에 대해 도움 받고 싶습니다, 자격조건이 있나요?
- A** 자격 조건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따라 조금씩 다르나, 예비 창업자 또는 창업 1년~3년 미만의 초기 창업기업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세부사업에 따라 제한조건이 있으니 별도로 유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Q** 상품화가 가능한 사업아이디어가 있어 직접 창업을 하려고 하는데,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나요?
- A** 상용화 기술을 보유하고 창업에 뜻이 있는 분들을 위하여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 인력, 장비 등 창업인프라를 활용하여 체계적으로 창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해드리는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 Q** 창업선도대학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 A** 창업선도대학은 창업교육부터 창업아이템 발굴 및 사업화, 후속지원까지 창업 전 과정을 하나의 대학 내에서 패키지로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Q** 창업선도대학 사업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 A** 창업선도대학 창업아이템사업화는 연 2회 K-Startup 홈페이지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신청·접수가 가능하며, (예비)창업자 및 창업 3년 미만 기업의 대표자를 대상으로 시제품 개발, 지적권 출원·등록, 마케팅활동 등 창업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Q 본글로벌 액셀러레이팅 활성화사업 선발과정에서 창업기업의 외국어 역량이 중요한가요?

A 네, 그렇습니다. 현지진출을 위해서는 팀원 중 최소 1명은 영어 혹은 진출국가 언어에 능통자여야 합니다.

Q 본글로벌 액셀러레이팅 활성화사업에서 창업기업에게 제공되는 지원항목이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A 국내 창업기업이 보다 효율적으로 현지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판로, 해외진출 자금, 현지 전문기관 보육프로그램 등을 제공합니다.

Q 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의 연구기술은 모두 직무발명에 해당하며 그 소유권을 연구기관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연구원예비기술 사업에 기술 이전비에 대한 항목이 있습니다. 기술 이전비(정부 지원금의 20% 이내)는 연구기관, 대학 등 보유기술을 이전받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법적권리를 보장받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이 가능합니다.

Q 창업과제 수행 중 사업 아이템에 대한 변경 또는 추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창업과제의 변경은 불가하며, 추가시 고도추가일 경우에 한하여 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전담기관(창업진흥원)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Q 선도벤처기업과 예비창업자간의 매칭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 선도벤처기업과 예비창업자간 매칭은 사업신청 시 선도기업의 정보를 확인 후 10순위 선도벤처기업을 지정하고 사전매칭(미팅포함)과 현장매칭을 거쳐 최종 평가를 통해 확정됩니다.

Q 사업신청 시 등록된 팀원은 사업수행 중 변경이 불가한가요?

A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 팀원이 변경되어야 할 경우 해당 팀원의 인적사항과 사유에 대한 변경신청을 주관기관으로 해주시면 정당한 사유여부를 판단하여 변경 승인이 가능합니다.



제 1 장

아이디어·기술창업 지원

1-1 창업성공패키지(舊 청년창업사관학교)	6
1-2 선도벤처연계 기술창업 지원	9
1-3 창업인턴제	11
1-4 본(Born)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활성화	13
1-5 창업선도대학육성	16
1-6 대한민국 창업리그	19
1-7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 지원(TIPS)	21
1-8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23
1-9 상생서포터즈 청년·창업 프로그램	25

1-1

창업성공패키지(舊 청년창업사관학교)

| 청년CEO의 창업 쏠단계 패키지화 지원

기술성 및 사업성이 우수한 (예비)청년CEO들의 원활한 창업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사업화과정 및 단계별 후속연계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총 예산 500억원(500팀 내외)

- 사업비는 1년간 최대 100백만원, 총사업비의 70% 이내에서 지원

* 신청인은 총사업비의 30% 이상 부담(현금 10% 이상, 현물 20% 이하)

지원 대상

- 청년창업사관학교(사업화지원)

- 제조업 및 지식서비스 업종 영위(예정) 기업
- 만39세 이하*인 자로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후 3년 이하인 기업의 대표자('17.1.1기준)
- * 단, 신청과제와 관련된 기술경력 보유자는 10%내외 만 49세 이하까지 지원 가능

- ①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10년 이상 해당 분야 경력 소지자
- ②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7년 이상 해당 분야 경력 소지자
- ③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5년 이상 해당 분야 경력 소지자
- ④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3년 이상 해당 분야 경력 소지자
- ⑤ 기타 이와 동등한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박사, 기술사, 기능장 등)

지원 내용

- 청년창업사관학교 : (예비)창업 기업의 사업화 지원

- (공간) 청년창업사관학교 내 창업 준비공간(개별·공동)을 제공
- (코칭) 전문인력을 전담교수로 배치하여 진도관리 및 창업 전과정 지원
- (교육) 기술사업화 및 전문지식 등 단계별 교육 실시
- (기술) 제품설계(CAE·역설계 등), 시제품제작 등 제품개발 관련 기술 및 장비 지원
- (사업비) 1년간 최대 100백만 원 총 사업비의 70%이내 지원(창업활동비, 기술개발 및 시제품제작비, 기술정보활동비, 지재권 취득 및 인증비, 마케팅비 등 용도

* 단, 기술개발이 장시간 소요되는 고급기술의 경우, 2년간 최대 200백만 원 이내 지원

- 후속연계 : 사관학교 졸업기업의 성장 촉진을 위한 신속지원 프로그램 (Fast-track)
(보육·코칭, 기술개발, 정책자금, 마케팅·수출, 투자유치 등)

신청·접수

온라인을 통한 신청 및 접수(K-Startup 홈페이지, www.k-startup.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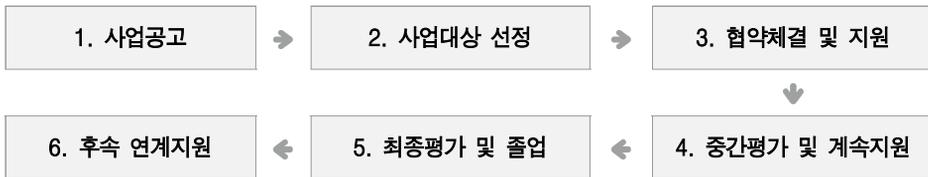
신청·접수

사업참가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 자세한 사항은 '17년 사업공고문 참조

처리 절차

- 청년창업사관학교



문 의 처

○ 주요 연락처

구 분	전화번호	주 소
청년창업사관학교 (경기 안산)	031-490-1278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연수원로 87 중소기업연수원 내
충남 청년창업사관학교 (충남 천안)	041-589-0832	충남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직산로 136 충남테크노파크내 정보영상융합센터 연구동 6층
호남 청년창업사관학교 (광주)	062-250-3030	광주광역시 북구 동문대로 456번길 40 호남연수원 내
대구경북 청년창업사관학교 (경북 경산)	053-819-5099	경북 경산시 경청로 222길 86 대구경북연수원 내
부산경남 청년창업사관학교 (경남 창원)	055-548-8020	경남 창원시 진해구 남영로 473번길 22 부산경남연수원 내
중진공 창업기술처 (경남 진주)	055-751-9837 055-751-9838	경남 진주시 동진로 430(충무공동)
창업진흥원 (온라인신청 관련 문의)	1357(내선3번)	대전시 서구 한밭대로 797(둔산동 931) 캐피탈타워 3층

○ 관련 홈페이지

- 청년창업사관학교(start.sbc.or.kr)
- K스타트업(k-startup.go.kr)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1-2

선도벤처연계 기술창업 지원

| 성공기업인과 유망창업자의 협업을 통한 성공창업 유도

(예비)창업자의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 선도벤처기업의 인프라 활용, 성공 노하우 전수, 상호 협력 비즈니스를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17년 예산 : 70억원, 78개 내외 (예비)창업자

지원 대상

2인 이상의 예비 창업팀 또는 창업 초기기업(3년 미만)

지원이 안되는 기업

✓ 창업지원사업을 지원받거나 수행 중인 자,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중인 자 등

지원 내용

- 창업전반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 교육·컨설팅, 사업아이템 개발 및 마케팅 비용 등
- 선도벤처의 직접투자 및 구매·아웃소싱, VC유치, 해외마케팅 등 협력비즈니스 연계 지원

신청·접수

- 선도벤처기업 : '17.2월(예정), (예비)창업자 : '17.3월(예정)
-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 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처리 절차



문 의 처

- 중소기업청 벤처정책과 : 042-481-4423
- 창업진흥원 창업성장본부 : 042-480-4346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 ☎1357
-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 참조

1-3 창업인턴제

| 현장에서 배우는 성공창업

유망 중소중견기업에서의 인턴십 경험 및 사업화자금 지원 등을 통해 예비창업자의 성공창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원 규모 50명 내외(총 50억원)

* '14~'16년 지원 현황 : 창업인턴 총 216명 지원

지원 대상 창업아이템과 창업의지를 지닌 대학(원) 재학생(대학생은 4학기 이상 수료자), 대학(원)원 또는 고등학교 졸업 후 7년 이내인 미취업자

* (채용기업) 직전년도 기준 상시근로자 수 3인 이상, 매출액 1억원 이상인 기업

지원이 안되는 경우

- ✓ 중소기업청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지원받은 적이 있거나 사업을 수행 중인 자
- ✓ 중소기업청 이외의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창업사업을 수행중인 자
- ✓ 인턴 근무 후 창업하고자 하는 업종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해당하는 자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

지원 내용

- (인턴십) 기업 현장근무 지원(월 100만원 이내의 인턴활동비 지원)
 - * 근무기간은 기본 6개월이며, 희망시 3개월 단축 가능
- (사업화) 시제품 제작, 지적권 취득, 마케팅, 창업공간 임대 등 창업관련 비용(1억원 이내) 지원

신청·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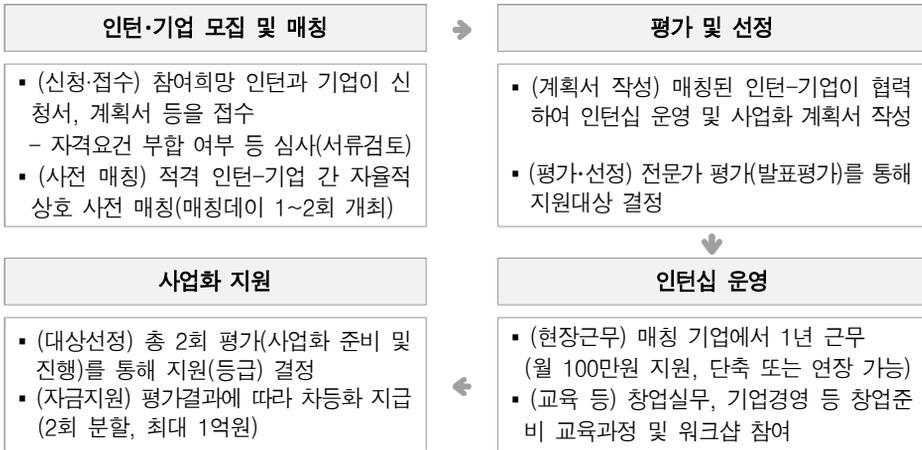
- (신청방법) K-Startup 홈페이지내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 (www.k-startup.go.kr)
- (신청기간) '17년 1분기 중 공고
- (선정방법) 요건검토 → 발표평가*
 - * (평가항목) 창업가적 자질, 인턴십 운영계획, 사업화 계획
 - ** 사업화 지원 대상자는 인턴십 종료 후 별도 평가(인턴십 실적, 창업아이템의 우수성, 창업 계획의 적정성 등)를 통해 선정

제출 서류

(인턴) 인턴계획서, (채용기업) 인턴십 운영계획서

처리 절차

인턴·기업 모집→요건검토→인턴·기업 매칭→선정 평가→인턴십 운영→사업화지원대상자 선정평가→사업화 지원



문의처

- 중소기업청 벤처정책과 : 042-481-8920
- 창업진흥원 창업교육부 : 042-480-4462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2017년 지원시책」 참조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1-4

본(Born)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활성화

| 국내 창업자의 해외창업·진출 및 외국인의 국내창업지원

국내 창업기업의 해외창업·진출을 위한 연수 및 보육 프로그램 제공, 외국인의 국내 창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원 규모

- 글로벌 진출 지원 33억원, 45개팀 내외
- 외국인 국내창업지원 20억원, 30개팀 내외
 - '16년 지원현황('16.10월말 기준) : 해외 진출 113개팀, 외국인 국내창업 17개팀

지원 대상

- (창업기업 글로벌 진출) 5년 미만 창업기업
(외국인 국내창업) 외국인 예비창업자 및 3년 미만 창업 기업
 - 예비창업자는 신청일 현재 기준 사업자 등록 및 법인 등록을 하지 않은 자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 ✓ 중소기업청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은 자 또는 기업
-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4조의 업종*을 영위하거나 하려는 자
 -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숙박 및 음식점업(단, 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및 상시근로자 20인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업은 지원 대상), 무도장 운영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캐블링 및 배팅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그외 기타개인서비스업은 지원 대상)

유의사항 등

- 세부사항은 사업 공고문 참조

지원 내용

- (창업기업 글로벌 진출) 사업아이템(모델) 현지화를 위한 이론, 실습 프로그램 및 본격적인 현지 진출·창업을 위한 보육 프로그램제공
- (외국인 국내창업) 외국인 전용 기술창업 프로그램 및 외국인의 국내 창업 비용 지원

신청·접수

상반기 2회 (1~3월중, 6~8월중)

심사·평가 주요내용

- 사업개념, 사업성 및 시장 분석, 재무 계획 등(서면평가) → 창업자의 의지 및 역량 및 창업 아이템의 기술성, 사업성(발표평가)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창업사업화계획서, 신용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신청양식은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에 게재된 사업공고에 첨부

처리 절차

< 글로벌 진출지원 >



- 위의 절차는 변동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 외국인 국내창업지원 >



문의처

-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 : 042-481-8921
- 창업진흥원 TIPS글로벌사업부 : 02-3440-7302~7314)
-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 참조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 ☎1357

1-5

창업선도대학육성

| 대학을 지역 창업거점으로 육성

우수한 창업지원 인프라(전문인력, 연구장비 등)를 갖춘 대학을 '창업선도대학'으로 지정하여 창업교육부터 창업아이템 발굴 및 사업화, 후속지원까지 패키지식 지원을 통해 대학을 창업의 요람으로 육성하는 사업

지원 규모

전국 40개 대학, 1,050개사 내외(예산 922억원)

* '16년 지원현황 : 전국 34개 대학, 총 997개 과제(예산 753억원)

지원 대상

- (창업아이템 사업화) 제조 및 지식서비스분야 예비창업자 및 창업 3년 미만 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규제종인 자 또는 기업(법원의 회생인가 기업 등 일부예외)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종인 자 등 (성실 납부기업 등 일부예외)
- ✓ 중소기업청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자(기업), 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창업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 (일부제한)
-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
- * 그 외 사업 모집공고상 신청(지원)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 (실전창업교육 및 자율특화프로그램) 창업에 관심 있는 대학(원)생 및 일반인

지원 내용

- 창업아이템 사업화
 - 시제품 개발, 지적권 출원·등록, 마케팅활동 등 창업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업체당 최대 1억원, 850개사 내외)
 - * 후속지원 : 창업아이템사업화에 참여한 기업 중 우수 창업자를 대상으로 성능개선, 홍보·마케팅 등 사업 고도화 자금지원(업체당 최대 3천만원, 200개사 내외)

○ 실전창업교육 및 자율특화프로그램

- 대학생 및 일반인 실전창업교육, 창업한마당축제, 지역창업 경진대회, 투자유치 연계 등 대학별 자율특화프로그램 운영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창업선도대학 추가 선정('17.2월 선정 예정)

신청·접수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 (창업아이템 사업화) 서면평가 → 교육 및 멘토링평가 → 발표평가
 - * 창업아이템의 기술성·시장성, 창업자의 자질 및 역량진단, 사업계획의 구체성·실현가능성 등을 종합평가
- (실전창업교육 및 자율특화프로그램) 창업선도대학별 자율운영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처리 절차

- (창업아이템 사업화)

사업공고



신청·접수



선정평가 및 협약



사업화 지원

- (실전창업교육 및 자율특화프로그램)

대학별 공고



신청·접수



선정



프로그램 운영

문의처

- 창업진흥원 대학창업부 : 042-480-4353~9
-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2017년 지원시책」 참조

궁금해요! 중기맨



- Q** 창업아이템사업화 사업신청 시 거주지역 이외의 창업선도대학을 선택해도 되나요?
- A** 네, 가능합니다. K-Startup(www.k-startup.go.kr)에 등록된 창업선도대학 소개 자료를 확인하시어 본인이 희망하는 창업선도대학을 거주 지역과 상관없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 Q** 창업아이템사업화 사업신청은 대학생만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 A** 아닙니다. 창업아이템사업화는 나이, 학력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1-6

대한민국 창업리그

| 대한민국 최대, 최고의 창업경진대회

성공 창업을 꿈꾸는 미래의 유망CEO 발굴과 전국민 창업분위기 제고를 위한 대한민국 최고의 창업경진대회로 치열한 경쟁과정을 거친 수상자들에게는 포상금과 후속지원 등의 기회를 제공해드립니다.

* 2016년도 「도전! K-스타트업 2016」 4개부처(중기청, 미래부, 교육부, 국방부) 통합운영으로 KBS 1TV 12회 방영

지원 규모

- 150개팀 내외 (전체 예산 14억원)
 - '16년 지원현황 : 관계부처 통합공고(3/15)를 통해 6,545개팀 참가신청 → 지역예선(100개팀 선정) → 통합본선 및 결선(10개팀 선정) → 왕중왕전(10개팀 순위결정)

지원 대상

- 우수 기술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팀) 및 창업 3년 이내의자(팀)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13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자
- ✓ 창조 아이디어 경진대회(미래부), 대한민국 창업리그(중기청), KC-Startup Festival(교육부) 수상자(팀) 또는 수상 아이템
- ✓ 이전 창업경진대회에서 입상한 경력이 있는 (예비)창업자로 총 수상 금액이 3천만원이상인 자
- ✓ 타인의 특허, 실용신안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아이템

지원 내용

- 통합본선 진출자(팀) 상금 및 맞춤형 멘토링, 특허출원비 지원
- 왕중왕전 진출자(팀) 상금(최대 2억원) 및 후속 연계지원(사업화 연계, 박람회 참가 지원)

1-7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 지원(TIPS*)

| * 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성공벤처인이 주도하는 엔젤투자사/기술대기업이 유망한 기술창업팀을 엄선하여 투자-보육-R&D-해외마케팅 등 최대 10억원을 투자·지원하는 고급기술창업 프로그램입니다.

지원 규모

200개 내외 규모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고,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예비*)창업팀

* 기관(대학·연구기관 등) 또는 기업에 소속된 상태로 창업을 희망하는 경우 법인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사업신청 가능 (단, 최종 선정 후 반드시 법인 설립)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추천일(운영사에서 추천한 날 기준)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지원 내용

- 운영사의 엔젤투자금(1억원 내외)에 정부의 기술개발(R&D)자금(최대 5억원)을 매칭하여 지원하고, 선정평가를 통해 창업사업화 자금(최대 1억원 차등 지원), 해외마케팅(최대 1억원), 엔젤투자매칭펀드(최대 2억원)를 추가하여 연계 지원
- 운영사별로 지정된 인큐베이터에 입주하여 보육 및 멘토링 등 종합적인 밀착 지원

신청·접수

상시 접수 (각 TIPS 운영사 홈페이지 및 사이버 팁스타운
www.jointips.or.kr)

심사·평가 주요내용

- 각 TIPS 운영사별 자체 평가

제출 서류

사업계획서 (각 TIPS 운영사별 별도 양식)

처리 절차



문의처

-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 : 042-481-8947
- 한국엔젤투자협회 : 02-3440-7425~6
- 창업진흥원 TIPS글로벌사업부 : 02-3440-7303, 7305
- 사이버 팁스타운(www.jointips.or.kr)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 ☎1357

1-8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 창업기업 데스밸리 극복 지원

창업기업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시장 전문가 멘토링, 사업모델(Business Model) 혁신, 아이템 보강 등을 지원하여 매출 증대와 글로벌 진출을 도모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원 규모

1,000개사(후속포함) 내외 (예산 500억원)

지원 대상

창업 3년 이상 7년 미만 기업 (공고일 기준)

지원 내용

사업모델(BM) 혁신, 아이템 검증·보강, 판로개척 및 글로벌 시장 진출, 투자유치 및 정부사업 연계, 성과창출 프로그램 등 지원

구 분	지원내용	세부 지원사항			
사업화 자금	최대1억원 (2년간)	BM혁신	아이템검증	시장진입	후속지원 (수출유통자금조달 등)
서비스	후속지원 프로그램 액셀러레이팅 (10백만원)	전문가코칭 멘토링	특화교육	R&D 연계	투·융자 연계

신청·접수

2017년 2월 공고 예정

-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제출 서류

사업계획서

처리 절차

해결 수행과제 선정, 자금과 멘토링 서비스로 문제해결 및 후속 성과창출 프로그램(유통채널, 자금조달, 수출, 기업공개 및 상장추진 등) 연계

○ 추진절차



* 후속 성과창출 프로그램 연계 지원은 별도일정에 따름

문 의 처

- 일반문의 :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1357
- 사업문의 : 창업진흥원 창업사업화부 042-480-4342~49, 4367~69
- 정책문의 :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 042-481-8914, 4535

1-9

상생서포터즈 청년·창업 프로그램

| 대기업·공기업을 인프라를 활용한 성공적인 사업화 및 글로벌

대기업공기업과 정부가 공동으로 재원을 조성(50:50)하고 창업벤처기업이 글로벌 진출에 필요한 사업모델(Business Model) 혁신 사업 아이템 검증 및 보강, 판로개척, 해외네트워크 등을 지원하여 신속한 사업화 및 글로벌 진출을 도모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원 규모

총사업비 200억원, 700개사 내외 육성

- 사업비 조성 : 출연기업(대기업·공기업 등) 50% + 정부 50%

지원 대상

7년 미만 창업기업(공고일 기준), 벤처확인기업*

- 단, 매출액 50억원 미만 벤처확인기업(단위프로그램 선택방식은 100억원 미만)으로 전체 육성기업 중 25%이내 지원 예정

지원 유형

창업·벤처기업의 발굴모집 특성에 따라 2개 트랙으로 구성하여 사업화 및 글로벌 진출 등에 소요되는 자금과 서비스를 지원

유형	지원방식	지원규모
패키지방식	글로벌 진출에 필요한 사업모델 혁신, 사업 아이템 검증 및 보강, 판로개척, 해외 네트워크 등을 종합적으로 연계 지원	200개사
단위프로그램 선택방식	창업·벤처기업 역량에 맞춰 사업화, 수출 및 글로벌 진출, 투자유치 연계, 일자리 창출 등 단위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지원	500개사
계		700개사

지원 내용

사업모델(BM) 혁신, 경영전략 멘토링, 아이템 검증·보강, 판로개척 및 글로벌 시장진출, 투자유치 및 자금지원연계, 주관기관 특화 프로그램 등 지원(최대 100백만원 이내)

○ 지원 내용

구분	지원내용	패키지 지원			
자금	최대1억원 (2년간)	지원연계	R&D	투융자 자금	마케팅
서비스	최대1억원 (2년간)	전문가코칭	BM혁신	아이템 보강	시장연계

- 사업화 및 글로벌 진출에 필요한 교육, 자금조달, 판로개척 등의 지원 활동

신청접수

2017년 3월 공고 예정

-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 대·중소기업협력재단 홈페이지(www.win-win.or.kr, www.winwinvalley.or.kr), 출연기업 홈페이지, 주관기관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
- 자세한 사항은 '17년 사업공고문 참조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처리 절차



문의처

- 일반문의 :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1357
- 사업문의 :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상생창업지원부 02-368-8741~49, 8738, 8732, 8721
- 정책문의 :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 042-481-8914, 4535



제 2 장

창업저변 확대

2-1 청소년 비즈쿨	28
2-2 창업아카데미	30
2-3 창업대학원	32
2-4 시니어 기술창업 지원	33
2-5 창업보육센터 지원사업	35
2-6 온라인 법인설립 시스템	37
2-7 K-스타트업	39

2-1

청소년 비즈쿨

|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열정, 도전정신 등을 갖춘 융합형 창의인재 양성을 위해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모의 창업 등을 활용한 기업가정신 교육을 실시합니다.

지원 규모

전국 500개 초·중·고등학교(76.65억원)

* '16년 지원현황 : 448개교(초등 124개, 중등 109개, 고등 202개, 특수학교 13개)

지원 대상

-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등

지원 내용

- 기업가정신 및 창업·경제교육, 창업동아리 활동, 전문가 특강 등을 운영할 비즈쿨학교 지정
- 모의 창업, 경진대회 등 체험을 통해 기업가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비즈쿨 캠프 개최
- 비즈쿨 페스티벌, 교재·콘텐츠 개발·보급, 담당교사 온·오프라인 직무연수 등

신청·접수

2017. 2월 접수

- k-startup 홈페이지 (www.k-startup.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심사·평가내용 |

- 운영의지, 사업계획의 적절성 및 타당성, 교육인프라 구축 정도, 창업교육 효과 등

제출 서류

참여신청서(온라인신청) 및 사업운영계획서, 계좌개설확약서 등

처리 절차

* 비즈쿨 캠프는 방학 등을 활용하여 별도 운영

문 의 처

- 중소기업청 지식서비스창업과 : 042-481-4554
- 창업진흥원 창업교육부 : 042-480-4464~66, 4469~70
-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 - 창업교육 - 청소년 비즈쿨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2017년 지원시책」 참조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용어설명

비즈쿨(Bizcool) : Business+School의 합성어로서 “학교에서 경영을 배운다”는 의미

2-2

창업아카데미

| 대학생 및 일반인 대상 실전형 창업교육 지원

창업아카데미는 대학생 및 예비창업자에게 실전형 창업교육, 멘토링 지원, 네트워킹 조성 등 창업을 위한 기초역량 갖출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을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17년 지원예산 20.8억원, 20개 내외 교육기관을 통한 실전형 창업교육 지원

* '16년 지원현황 : 창업강좌 115개, 3천여 명

지원 대상

대학생 및 예비창업자

지원 내용

- (창업교육) 학점 인정형 창업강좌 및 실전형 창업교육 제공
- (창업동아리) 대학생 창업동아리 지원
- (멘토링 및 네트워킹) 멘토링 지원 및 네트워킹 조성

신청·접수

'17년 3월 중 교육생 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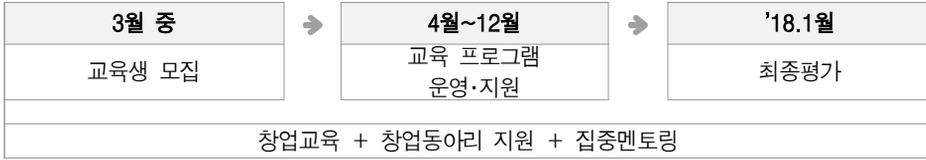
* 교육생은 운영기관별 별도 모집

제출 서류

사업계획서 등 신청서류 제출

* 신청서류는 K-Startup(www.k-startup.go.kr)의 '공지사항(창업아카데미)' 게시내용 참조

처리 절차



* 운영기관별 교육 프로그램 운영 일정은 상이.

문의처

- 중소기업청 지식서비스창업과 : 042-481-4580
- 창업진흥원 창업교육부 : 042-480-4467
-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 공지사항 참조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2-3 창업대학원

| 창업대학원의 운영을 지원하여 창업전문가를 양성

창업대학원 지원을 통해 창업에 필요한 전문성과 실무능력을 갖춘 창업전문가를 육성합니다.

지원 규모 '17년 지원예산 7.2억원

* '16년 지원현황 : 9억원 (5개 대학원)

구 분	국민대	계명대	성균관대	연세대(원주)	부산대
대학원명	글로벌 창업벤처대학원	글로벌창업 대학원	글로벌 창업 대학원	정경·창업 대학원	기술 창업 대학원
형태	특수대학원 (야간)	특수대학원 (주간)	특수대학원 (주간·야간)	특수대학원 (야간)	특수대학원 (야간)
이수학기	4학기	4학기	5학기	5학기	5학기

지원 대상 5개 대학원(대학원별 30명 내외)

지원 내용 각 대학원 운영에 소요되는 강사비, 교육개발비, 장학금 등을 지원

신청·접수 각 대학원별 학사일정에 따름

* 교육생 모집은 운영기관별 별도 모집

문 의 처

- 중소기업청 지식서비스창업과 : 042-481-4554
- 창업진흥원 창업교육부 : 042-480-4445
- 계명대학교 글로벌창업대학원 : 053-620-2078
- 국민대학교 글로벌창업벤처대학원 : 02-910-5728
- 부산대학교 기술창업대학원 : 051-510-1369
- 성균관대학교 글로벌창업대학원 : 031-290-5573
- 연세대학교(원주) 정경·창업대학원 : 033-760-2487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 ☎1357

2-4

시니어 기술창업 지원

| 시니어의 성공적 기술창업을 위한 인생 제 2막 설계

시니어(40세 이상) (예비)창업자가 경력·네트워크·전문성을 활용하여 성공적인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원 규모

시니어 기술창업센터 23개소 내외('17년, 47.4억원)

지원 대상

만 40세 이상 (예비)창업자 (창업후 7년까지)

지원 내용

만 40세 이상 (예비)창업자의 성공적인 창업을 위하여 창업교육과 창업준비공간, 경영지원 프로그램 등 지원

분 야	내 용	지원규모
시니어 기술창업 센터	창업 교육	전국 23개소 내외
	창업 지원	
예비퇴직자 맞춤교육	·대기업·공공기관 등에 소속된 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기술창업 교육 및 멘토 방문 프로그램 운영	30개기관 내외

|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 스쿨·센터 통합으로 전국 시니어 기술창업 센터에서 교육 및 창업보육 일괄 신청·지원

신청·접수

'17년 연중수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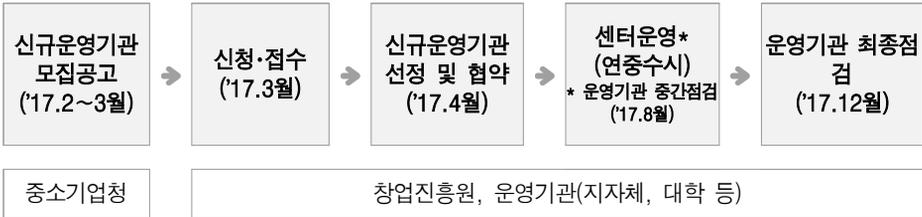
-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센터별 모집일정에 따라 교육생, 입주기업 모집기간 상이함(K-Startup 참조)

* 신규 운영기관 모집 : '17년 2~3월 예정(K-Startup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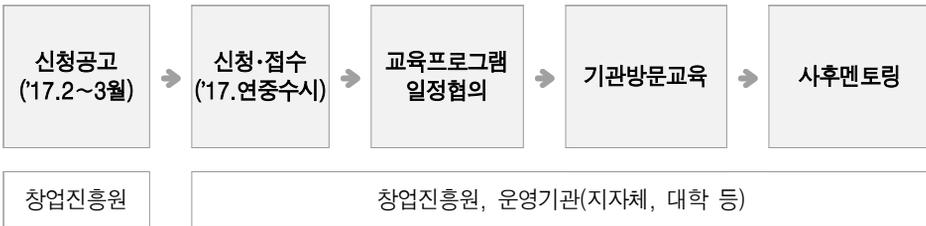
처리 절차

○ 시니어 기술창업센터



- * '17년 이전 지정센터 운영기간 : '17년 연중수시
- * '17년 신규 지정센터 운영기간 : '17년 4~5월부터

○ 예비퇴직자 맞춤형교육



- * '17년 연중수시 예산범위내에서 진행되며 일정 및 교육시간, 프로그램등 협의후 진행

문의처

- 중소기업청 지식서비스창업과 : 042-481-4523
- 창업진흥원 (전담기관) : 042-480-4384, 4387~8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 ☎1357
- 자세한 사항은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 참조

2-5

창업보육센터 지원사업

| 창업보육 인프라 지원

중소기업청 지정 창업보육센터 지원(리모델링, 운영비, 보육역량강화)을 통해 (예비)창업기업에 사무공간 제공 및 각종 경영기술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규모

전체예산 258억원(리모델링 74억원, 운영비 104억원, BI경쟁력 강화 80억원)

* '16년 지원현황 : 리모델링 7개 BI, 운영비 200개 BI, 보육역량강화 91개 BI

지원 대상

중소기업청 지정 창업보육센터사업자(대학, 연구소 등)

지원이 안되는 기업

✓ 운영평가 하위등급 창업보육센터에 대해서는 운영비 미지원

지원 내용

- 리모델링 : 창업보육센터 노후시설 개선, 일반건물의 창업보육센터 전환 등의 리모델링 지원
(총 사업비 80% 이내, 최대 4억원 한도)
- 운영비 : 매니저 인건비, 수용비 등 창업보육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운영평가에 따라 차등지원)
- 보육역량 강화 : 창업보육센터별 보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1억원 내외)

신청·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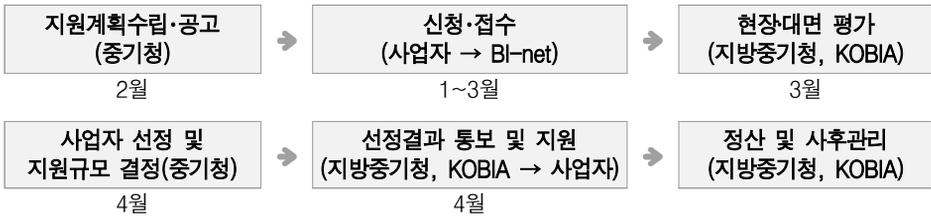
'17.1월 ~ 3월

- 리모델링 및 보육역량 강화 : 온라인 신청·접수(www.bi.go.kr)
- 운영비 : 별도 신청·접수 없음

제출 서류

- 리모델링 및 보육역량 강화 :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별도 공고시 안내)
- 운영비 : 운영평가를 위한 실태조사 자료(별도 안내)

처리 절차



문의처

- 중기청 창업진흥과 : 042-481-4413, 3968
- (사)한국창업보육협회 : 042-369-9605, 9606, 9612
- 홈페이지 : www.bi.go.kr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궁금해요! 중기맨



Q 중소기업청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고 싶은데 지정요건은 무엇인가요?

A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① 10인 이상의 창업자가 사용할 수 있는 500m²이상의 시설 보유, ② 창업자가 이용할 수 있는 시험기기나 계측기기 등의 장비 보유, ③ 2명 이상의 전문인력 보유, ④ 창업보육사업을 수행하기 적합한 사업계획 수립 등이 지정요건입니다.

2-6

온라인 법인설립 시스템

| 온라인으로 빠르고 간편하게 창업

법인설립에 필요한 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을 통해 법인설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

지원 대상

- 자본금 10억원 미만 주식회사(발기설립),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설립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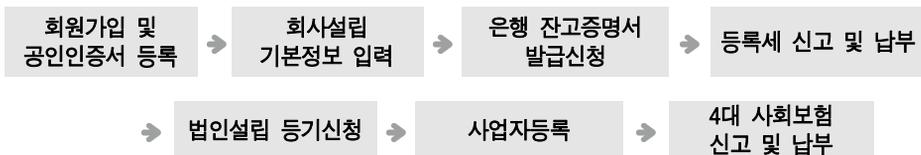
지원 내용

- 상호 검색에서부터 4대 사회보험 가입까지 온라인 원스톱 처리, 등기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 일괄 작성 지원
- 기본사항 입력으로 절차별 신청서, 정관 등 첨부서류 자동 생성
- 진행 단계별(기관별) 진행사항을 알림페이지, SMS 형태로 즉시 통보
- 연계기관(5개) : 금융결제원(금융공동망), 법원행정처(등기시스템), 행정자치부(지방세정보망), 국세청(EITC), 4대보험센터(4대보험 연계시스템)

신청·접수

- 온라인 법인설립 시스템(www.startbiz.go.kr)에서 회원가입과 공인인증서를 등록한 후 제한 없이 사용가능

처리 절차



제출 서류

절 차	관련기관	제출서류의 종류
상호검색	상업등기소	-
↓		
공증	공증사무소	정관, 발기인총회의사록, 조사보고서, 이사회이사록, 주주명부, 주주·임원 인감증명서, 진술서, 창립사항보고서
↓		
주금납입보관 증명서	금융결제원	정관, 발기인총회의사록, 주식인수증, 주금납입의뢰서
↓		
등록세납부	지자체 (안행부)	법인설립등기신청서, 신고서
↓		
상업등기	대법원 (등기소)	법인설립등기신청서, 정관, 주식인수증, 발기인총회의사록, 이사회이사록, 조사보고서, 주식발행사항동의서, 주금납입보관증명서, 취임승낙서, 인감신고서, 등록세영수필증, 채권매입필증, 발기인총회기간단축동의서
↓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국세청 (세무서)	정관,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 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사본 * 해당될 경우 상가건물 일부 임차 시 도면, 사업허가·등록필증 사본, 현물출자명세서
↓		
4대 사회보험 신고	사회보험 기관	사업장적용신고서, 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		
취업규칙신고	고용노동부 (고용노동지청)	취업규칙신고서

- * 음영부분은 온라인 법인설립 시스템을 통하여 법인설립 할 경우 중복제출이 불필요
- * 자본금 총액이 10억 미만인 회사는 공증인법 제66조의2(법인의사록의 인증)에 따라 공증 예외

문 의 처

- 온라인 법인설립 시스템 콜센터 : 1577-5475
-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 : 042-481-8912
- 창업진흥원 정보관리부 : 042-480-4370,2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 ☎1357

2-7

K-스타트업

| 정부 창업지원사업이 한 곳에 창업 시작부터 성장 단계별 정보 제공

(예비)창업자를 위한 창업지원 시책, 창업사업, 창업교육, 창업기반시설 및 공간 등 창업정보를 종합 제공

지원 대상

- (예비)창업자, 지원기관 관계자, 학생, 일반인 등

사이트 주소

- K-스타트업(www.k-startup.go.kr)

법적 근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조(창업 정보의 제공)

지원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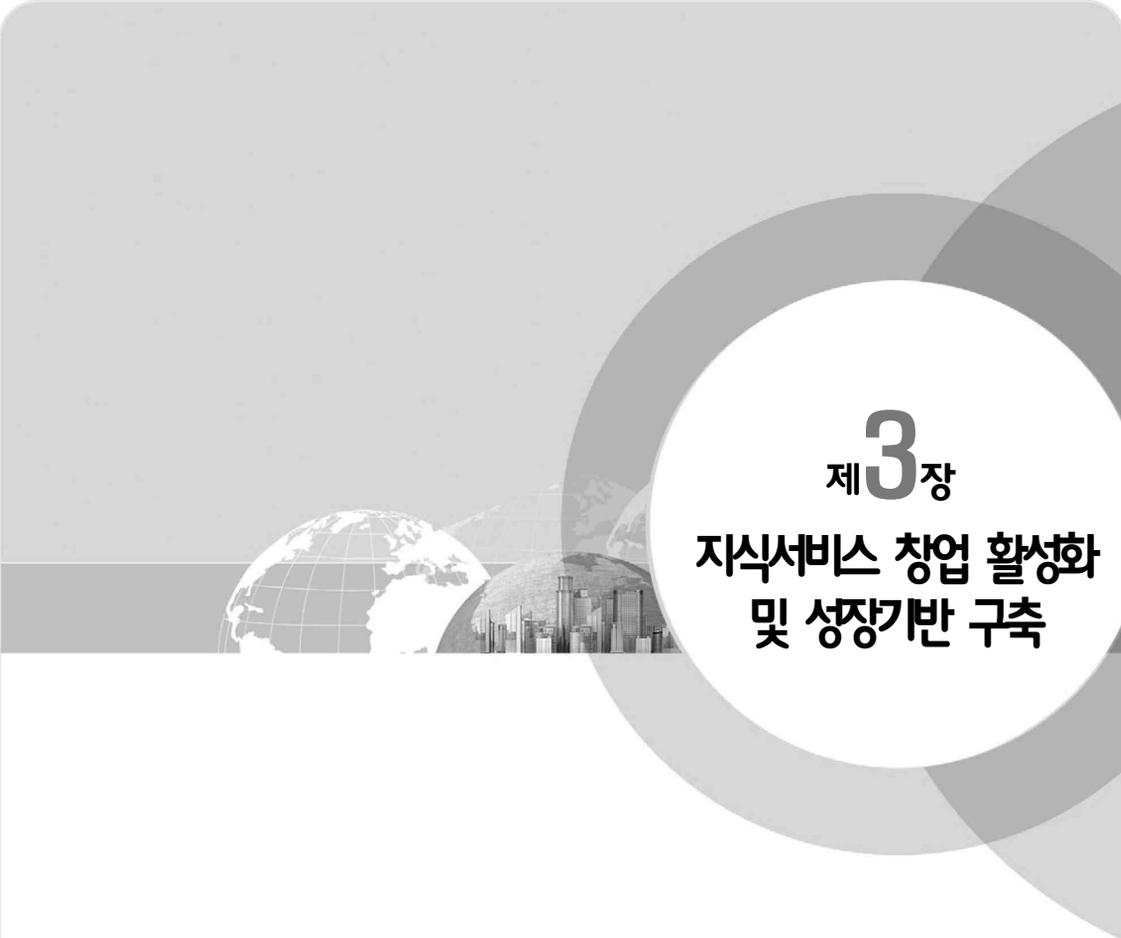
- 정부의 창업지원사업을 성장 단계별로 정보 제공
 - ① 창업교육 ② 시설·공간 ③ 멘토랑·컨설팅 ④ 사업화 ⑤ 정책자금 ⑥ R&D
 - ⑦ 판로·마케팅·해외진출 ⑧ 행사네트워크
- 창업사업의 신청·접수, 협약, 사업비 정산등을 온라인에서 원스톱 서비스 제공
- 전국 12개 벤처·창업 입지정보 제공
- 창업기초, 창업실전, 창업특화 등 창업단계별 온라인 창업강좌 서비스 제공
- (예비)창업자의 사업역량과 사업아이템의 부족한 점을 스스로 진단 및 보완할 수 있는 창업역량자가진단 서비스 제공

사용 방법

- K-스타트업(www.k-startup.go.kr)에서 회원가입 후 제한 없이 사용가능

문의 처

-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 : 042-481-8912
- 창업진흥원 정보관리부 : 042-480-4371,3,5
-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 ☎1357



제 3 장

지식서비스 창업 활성화 및 성장기반 구축

3-1 스마트창업터	42
3-2 스마트벤처창업학교	45
3-3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48
3-4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	51

3-1

스마트창작터

| 온·오프라인 체험형 창업교육 및 창업지원

전국 18개 스마트창작터에서 체험형 창업교육과 사업 아이템의 사업모델검증, 시제품 구체화 등 후속연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규모

전국 5,000명 내외 (전체 예산 98.4억원)

- 온·오프라인 실습교육 : 4,000명 내외
- 사업모델 검증 지원 : 800팀 내외
- 후속연계지원 : 130팀 내외
 - * '16년 지원현황 : 3,473명 교육, 397팀 사업모델 검증 지원, 100팀 후속지원(진행 중)
 - * 지원규모 변동가능 (구체적인 지원규모는 공고에 게시 예정)

지원 대상

대학생, 일반인 등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 및 창업 3년 이내의 초기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단,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법인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 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참여 가능
-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단,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법인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 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참여 가능
- ✓ 지자체 또는 중소기업 지원기관 등의 창업사업화지원사업을 수행 중이거나 중도탈락 또는 사업포기자(기업). 단, 사업 수행을 완료한 자(기업)는 신청 가능
- ✓ 정부지원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또는 기업
- ✓ 신청일 현재 휴업중인 기업
- ✓ 기타 중소기업청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기업

지원 내용

- 온·오프라인 실습교육: 온라인 플랫폼과 오프라인 교육을 병행한 체험형 창업교육
- 사업모델 검증: 고객수요 검증을 위한 최소요건제품 제작, 랜딩페이지 제작, 시장조사 활동비 등을 지원
- 후속연계지원: 보육공간 제공 및 시제품개발, 지재권 출원·등록, 마케팅활동 등에 소요되는 자금지원

신청·접수

연2회('16년 12월, '17년 6월 중)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 온라인 접수

심사·평가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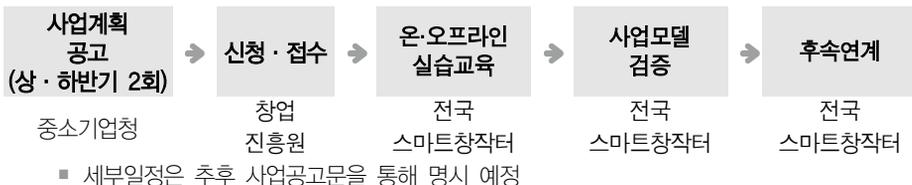
- 사업모델검증 지원 대상자 평가: 교육 과제물 평가, 사업계획 등을 평가
- 후속연계 대상자 평가: 사업모델검증 결과 평가, 창업팀 역량, 향후 사업계획 등을 평가

제출 서류

교육신청 시 별도 요구서류 없음

- 사업모델검증 대상자 및 후속연계지원 대상자로 선발될 경우, 사업모델검증계획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처리 절차



문의처

- 중소기업청 지식서비스창업과 : 042-481-3982, 4524
- 창업진흥원 : 042-480-4391~2
- 스마트창업터 : 중소기업청 및 k-startup 홈페이지에 게시
-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 ☎1357



Q 온·오프라인 실습교육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A 창업팀의 성공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짧은 주기로 사업모델을 검증하고 개선하는 과정을 지속 반복하는 린스타트업 방식을 적용한 교육으로, 교육생이 직접 과제를 제출하고 이를 검증하는 교육과정입니다.

Q 타 창업지원사업에 참가한 경우 스마트창업터 사업에 지원 가능한가요?

A 스마트창업터 사업의 경우, 사업모델을 검증해보는 실전 체험형 창업교육이므로 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한 경우라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스마트창업터 교육 사업을 진행하신 후, 타 사업화 참여 시 지원 및 지원금에 대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타사업의 공고 확인요망)

용어설명

최소요건제품(MVP) : 상용화 목적이 아닌 고객반응 확인을 위해 최소한의 기능만 구현한 초기 시제품
 랜딩페이지 : 고객이 처음 접하게 되는 웹/모바일 페이지로, 고객반응 검증용도로 사

3-2

스마트벤처창업학교

| 앱, 콘텐츠, SW융합 등 지식서비스 분야 개발, 창업 및 사업화 종합 지원

앱, 콘텐츠, SW융합 등 유망 지식서비스 분야 전문기업 육성을 위해 전국 4개 스마트벤처창업학교에서 입교생을 모집하여 사업계획에서 개발, 사업화까지 실전 창업을 집중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 규모

전국 4개 스마트벤처창업학교 운영(121.5억원)

- * '15년 지원현황(4개 창업학교) : 170개 창업팀(평균지원금액 45백만원)
- * 스마트벤처창업학교 운영기관 : ㈜옴니텔(서울 구로구), 경북대학교(대구 동구),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광주 동구), 부산정보문화산업진흥원(부산 해운대구)

지원 대상

- 앱/웹, 콘텐츠, SW, 융합 등 유망 지식서비스 분야의 창업 및 사업화를 희망하는 만 39세 미만의 예비창업자(팀) 및 창업 3년미만 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이거나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기업) 단,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법인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 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참여 가능
- ✓ 중소기업청의 창업사업화지원사업에 선정되었거나 완료한 자(선정 후 포기자 포함) 또는 기업
- ✓ 지자체 또는 중소기업 지원기관 등의 창업사업화지원사업을 수행 중이거나 중도탈락 또는 사업포기 자(기업)단, 사업 수행을 완료한 자(기업)는 신청 가능
- ✓ 정부지원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또는 기업
- ✓ 신청일 현재 휴업중인 기업
- ✓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기업

지원 내용

- 창업 아이템에 대한 사업계획 수립, 창업교육, 개발 멘토링 및 마케팅 등 창업 및 사업화 비용 지원

* 정부지원금은 총 사업비의 70% 이내에서 최대 1억원까지 지원(본인 부담 30% (현금10%, 현물20%) 이상)

신청·접수

희망 지역 스마트벤처창업학교를 통해 별도 신청·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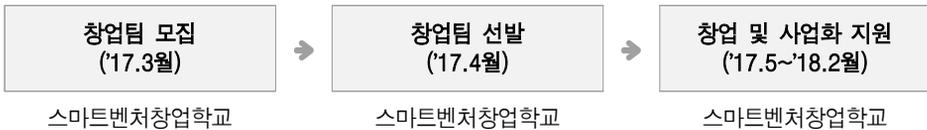
심사·평가 주요내용

- 창업의지, 개발역량, 창업아이템의 독창성, 창업·사업화계획의 구체성, 성장 가능성 등 서류 및 1차 발표평가, 멘토링 후 2차 발표평가를 통해 선정

제출 서류

입교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등

처리 절차



문의처

- 중소기업청 지식서비스창업과 : 042-481-4580
- 창업진흥원 : 042-480-4396~7
- 스마트벤처창업학교 : (주)옴니텔(서울, 070-7605-6143)
경북대학교(대구, 053-282-5008)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광주, 062-350-9339)
부산정보산업진흥원(부산, 051-749-9456)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 ☎1357

궁금해요! 중기맨



Q 스마트벤처창업학교 지원 대상인 앱/웹, 콘텐츠, SW, 융합 등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분야를 의미하나요?

A

1	앱 / 웹	1	건강(의학) 및 피트니스	2	게임(모바일)
		3	금융(핀테크)	4	교육, 어린이
2	SW	5	뉴스, 잡지, 신문, 도서, 만화	6	라이프스타일 (날씨, 여행, 교통, 패션)
		7	소셜네트워킹	8	쇼핑, 음식 및 음료
		9	엔터테인먼트(음악, 사진, 비디오, 스포츠)	10	기타 비즈니스, 유틸리티, 서비스
3	콘텐츠	1	출판, 만화, 애니, 캐릭터	2	오피스/사무용
		3	개발툴	4	그래픽툴, 2D/3D설계, 미디어
		5	보안	6	교육
		7	미들웨어	8	기타 유틸
4	융합	1	음악, 영화, 방송, 광고	2	음식, 영화, 방송, 광고
		3	게임	4	콘텐츠 솔루션, 빅데이터
		5	교육	6	기타
4 융합 IoT, 웨어러블 디바이스 등 S/W · 앱/웹 · 콘텐츠 + 제조 등 융합과제					

3-3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 1인 창조기업 안정적 사무공간 지원

아이디어는 있는데 어떻게 창업을 시작해야할지 모르는 1인 창조기업의 창업 및 사업화를 도와드립니다. 사업공간 제공, 창업과 경영에 필요한 전문가의 밀착상담 및 전문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규모

전국 65개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운영(66억원)

* '16년 지원현황(9월말 기준) : 2,103개사 지원, 경영자문 870건, 교육 4,885건

지원 대상

1인 창조기업, 예비창업자

- 1인 창조기업 지원 대상 업종은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시설공간]을 통하여 확인 가능

* 유의사항 : 1인 창조기업 중 예비창업자인 경우,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입주 시점 이후 3개월 이내에 창업해야 함(사업자등록증 제출 필수)

용어설명

1인 창조기업 이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 사업자로 상시 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다만, 부동산업 등 1인 창조기업 범위에서 제외되는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은 제외됩니다.(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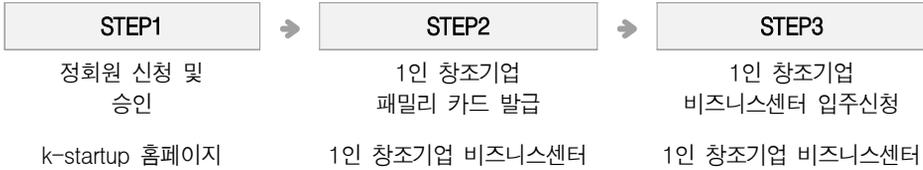
지원 내용

- 사무(작업)공간*, 회의실, 상담실 등 비즈니스 공간 지원
 - * 1인 창조기업이 사용할 수 있는 사무실 형태의 작업공간
- 세무·회계·법률·창업·마케팅 등 전문가 상담, 창업교육, 네트워크 활동을 통한 정보제공 등 경영 지원

신청·접수

연중 수시 신청·접수

*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별로 공실 발생 시 모집

**정회원 승인 시 제출 서류**

- (예비창업자)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창업기업) 사업자등록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사업장가입자명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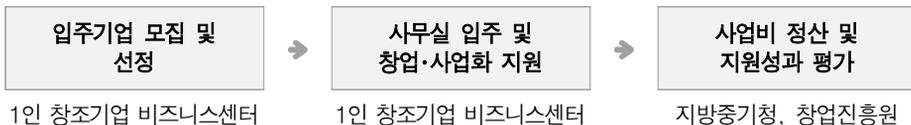
심사·평가내용

- 대표자 의지, 사업아이템의 독창성 및 성공가능성, 사업계획서의 타당성·구체성 등에 대한 서류 및 발표 평가

신청 접수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

* 신청양식은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자료실에 게재된 세부운영지침에 첨부

처리 절차

문의처

- 중소기업청 지식서비스창업과 : 042-481-4553
- 각 지방중소기업청 : 연락처 부록 참조
- 창업진흥원 (전담기관) : 042-480-4381, 4383
-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 K-Startup(시설·공간)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리스트 참조
- 사업관리시스템 : K-Startup홈페이지(www.k-startup.go.kr)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 ☎1357

궁금해요! 증기맨



- Q** 1인 창조기업인지 여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A**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의 'One Click 1인 창조기업 확인'을 통해 간단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 Q** 상시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 경우도 1인 창조기업 해당이 되나요?
- A**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 1인 창조기업이 규모 확대의 이유로 상시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도 3년간은 1인 창조기업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이 유예기간(3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기간이 연속으로 1개월 이상이었던 기업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3-4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

| 우수 제품 및 서비스를 보유한 1인 창조기업의 마케팅 지원

창의적 아이템을 보유한 1인 창조기업에 디자인 및 브랜드 개발, 온라인 및 오프라인 마케팅을 지원하여 사업화 역량을 강화합니다.

지원 규모

1인 창조기업 40개사 내외(40억)

지원 대상

1인 창조기업, 예비창업자

- 1인 창조기업 지원 대상 업종은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을 통하여 확인 가능

* 유의사항 : 1인 창조기업 예비창업자인 경우 협약 전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용어설명

1인 창조기업 이란? :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 사업자로 상시 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다만, 부동산업 등 1인 창조기업 범위에서 제외되는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은 제외됩니다.(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참조)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이력이 있거나 지원받고 있는 중인 자 등

지원 내용

- 1인 창조기업이 보유한 제품 및 서비스의 마케팅 지원
- 1인 창조기업이 필요한 세부지원내용을 선택하되, 총 비용의 최대 70%(2,000만원 이내) 지원
- (세부지원내용) 홈페이지/앱 제작, 홍보영상 제작, 카달로그 제작, 포장디자인, 제품디자인, 브랜드 개발, 광고, 시장조사, 전시회 참가, 지식재산권 출원 등

신청·접수

'17년 1월(상반기), 5월(하반기) 공고 예정

- k-startup 홈페이지 (www.k-startup.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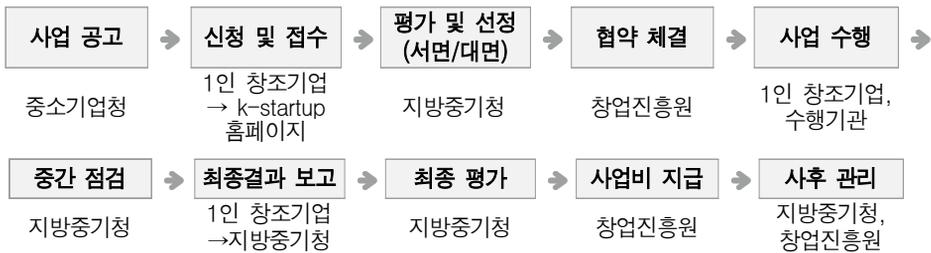
심사·평가 내용

- 대표자의 전문성, 제품/서비스의 창의성/독창성/기술성, 제품/서비스의 사업화 가능성 및 성장가능성, 사업계획의 충실성 및 적정성 등에 대해 서면 및 발표 평가

제출 서류

참여신청서, 사업계획서

처리 절차



문의처

- 중소기업청 지식서비스창업과 : 042-481-4553
- 각 지방중소기업청 창업성장지원과(연락처는 부록 참조)
- 창업진흥원(전담기관) : 042-480-4385, 4496



제4장

사업전환 및 재창업지원

4-1 재도약 지원자금	54
4-2 사전부실예방 및 진로제시 지원	57
4-3 중소기업 회생컨설팅	59
4-4 창조혁신형 재도전 기술개발사업	61
4-5 재도전성공패키지	64

4-1

재도약 지원자금

| 중소기업의 사업전환, 구조개선, 재창업 지원

사업전환, 구조개선, 재창업 지원을 통해 기업의 경영정상화와 재도약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총 2,550억원 규모(17)

▷ 사업전환 1,250억원, 구조개선 300억원, 재창업 1,000억원

지원 대상

사업전환, 구조개선, 재창업 지원자금으로 구분하여 지원

구분	지원요건
사업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력 3년 이상, 상시종업인수 5인 이상인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사업전환계획의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역조정 지원기업으로 지정받은 중소기업 •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
구조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권 기업신용평가 결과 B, C등급으로 분류된 기업 • 정책금융기관(중진공, 신보, 기보)이 부실중후기업으로 지정한 중소기업 • 금융기관의 워크아웃을 통한 구조조정 추진기업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 인가기업 • 진로제시 컨설팅 결과 '구조개선'으로 판정된 기업
재창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실패로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등' 및 '공공정보'의 정보가 등재(등록 및 해제 사실)되어 있거나 저신용자로 분류된 기업인 • 사업실패로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는 기업인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사업전환계획 승인 탈락일 또는 승인취소일로부터 6개월 미경과 업체, 휴·폐업 중인 업체 등은 제외
- ✓ 고의부도, 회사자금 유용, 사기 등 폐업의 사유가 부도덕한 기업인 등은 제외

지원 내용

구 분	내 용
사업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출한도 : 기업당 70억원 (운전자금 연간 5억원)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적용 • 대출기간 : 시설 - 8년, 거치 3년 포함 운전 - 5년, 거치 2년 포함
구조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출한도 : 기업당 연간 10억원 이내(3년간 10억원 이내)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적용 • 대출기간 : 운전 - 5년, 거치 2년 포함(시설자금 없음)
재창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출한도 : 기업당 45억원 (운전자금 연간 5억원)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적용 • 대출기간 : 시설 - 9년, 거치 4년 포함 운전 - 6년, 거치 3년 포함

신청·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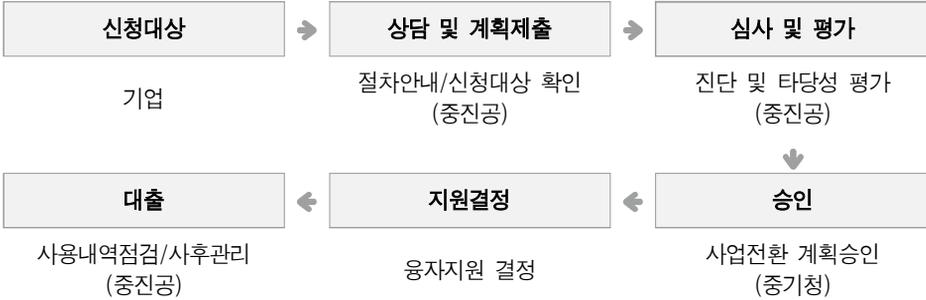
- 중진공 각 지역본·지부 상담 후 신청(상시, 자금 소진시까지)

제출 서류

- 사업전환 : 지방세 납세증명서, 금융거래 확인서, 시설자금 신청 근거서류 등을 현장 실태조사시 확인
- 구조개선 : 정책자금 용자신청서, 중소기업 건강관리 처방전 등
- 재 창 업 : 정책자금 용자신청서, 폐업사실증명서 등

처리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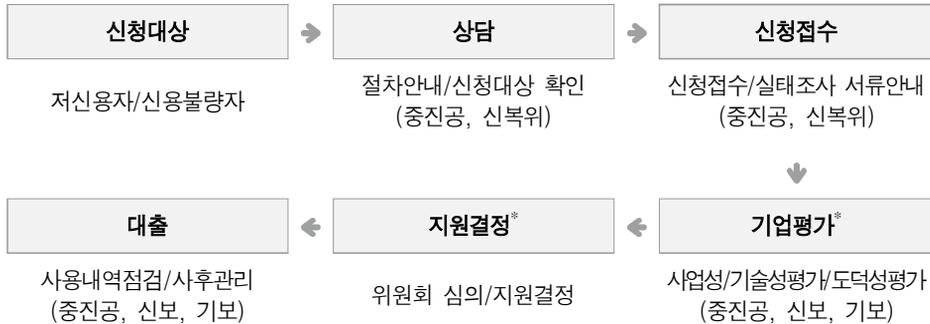
① 사업전환



② 구조개선

-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해 용자대상 기업을 결정한 후 직접대출

③ 재창업



문의처

- 중소기업청 재도전성장과 : 042-481-4356
- 중소기업진흥공단 재도약성장처 : 055-751-9635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1357

4-2

사전부실예방 및 진로제시 지원

| 경영위기기업의 실패원인 분석 및 진로제시 지원

지원 규모

350여개 기업(전체 예산 10억원)

지원 대상

- 경영위기단계에 있어 재도약(Re-challenge)이 필요한 기업
 - * 다만, 신창기업의 재무현황 등을 평가하여 지원대상 여부 선별 가능
- 3년간 연속 적자, 매출급감 등 경영위기*에 처한 중소기업
 - * 경영위기 중소기업 : 이자보상배율1이하 (영업이익<이자비용)거나, 이자 비용연체 기업, 유동성위기 등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지원제의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및 임직원 등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지원 내용

- 분야별 전문가가 기업을 방문하여 위기원인을 진단하고 구조개선, 사업전환, 사업정리(청산·파산) 또는 회생가능여부 등에 대해 향후 진로를 제시
 - * 전문가 : 법원등록 조사위원 경력을 소지한 회생업무 전문회계사 및 사업정리컨설팅 수행 경력이 있는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가

신청·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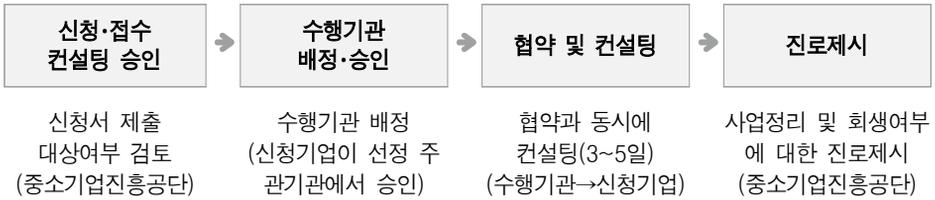
- 중소기업진흥공단 각 지역본·지부 접수 및 재도전지원센터 홈페이지(www.rechallenge.or.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 * 인터넷 주소창에 한글로 “재도전지원센터” 입력

제출 서류

○ 신청서 양식

* 재도전지원센터(www.rechallenge.or.kr) 및 중진공 홈페이지(www.sbc.or.kr) 공고 참조

처리 절차



문의처

- 중소기업청 재도전성장과 : 042-481-4356
- 중소기업진흥공단 재도약성장처 : 055-751-9635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 ☎1357

4-3

중소기업 회생컨설팅

| 회생가능성 높은 기업의 회생지원

회생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신청부터 회생계획 인가까지 전문가 상담 및 절차 대행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규모

80여개 기업(전체 예산 25억원 예정)

지원 대상

- 진로제시컨설팅 등 결과 '회생컨설팅 지원가능'으로 판단된 중소기업
- 진로제시컨설팅 등 없이 협업법원*에 회생사건을 신청한 경우, 사전평가를 통해 '회생컨설팅 지원가능'으로 판단된 중소기업

* 협업법원 : 서울중앙, 인천, 수원, 의정부, 광주, 창원, 대전, 부산 지방법원

지원이 안되는 기업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간이회생'에 해당하는 기업

지원 내용

- 생신청부터 회생인가까지 전 과정에 대한 상담·자문 등
- * 기간 : 협약일로부터 회생계획안 인가결정시 까지(최대 1년)

◇ 컨설팅 범위 ◇

- | | | |
|--------------|----------------|------------|
| ▪ 회생절차 개시신청서 | ▪ 대표자심문 답변서 | ▪ 채권목록 작성 |
| ▪ 시부인표 작성 | ▪ 관리인 조사보고서 작성 | ▪ 회생계획안 작성 |
| ▪ 관계인집회 관련서류 | ▪ 회계세무 자문 등 | |

신청·접수

- 중소기업진흥공단 각 지역본·지부 접수 및 재도전지원센터 홈페이지 (www.rechallenge.or.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제출 서류

- 재기지원시스템(www.rechallenge.or.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처리 절차



문의처

- 중소기업청 재도전성장과 : 042-481-4356
- 중소기업진흥공단 재도약성장처 : 055-751-9635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1357

4-4

창조혁신형 재도전 기술개발사업

| 재창업 중소기업에 필요한 기술개발 자금 지원

재기 중소기업의 창의성·혁신성 및 아이디어가 우수한 시제품 개발을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27여개 과제 (전체 예산 38억원)

* '16년 지원현황 : 40억원 (30개 과제 지원)

지원 대상

○ (주관기관) 사업실패 후 신기술·제품 개발을 준비하는 재창업 중소기업

1. 사업실패로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거나 해제사실이 등재되어 있는 자
 2. 사업실패로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공공정보”가 등록되어 있거나 해제사실이 등재되어 있는자
 3. 저신용자로 분류된 기업인 또는 사업실패로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는 기업인
- ※ 단, 1, 2, 3 각호의 해당자는 기본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신용미회복자는 신용회복(신복위), 개인회생, 파산면책 최종인가 경우에 한해 지원결정이 가능

- ① 재창업을 준비 중인 자 또는 재창업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 (재창업자 범위) 실패 개인기업 대표자, 실패 법인기업 대표이사·경영실권자
 - * (재창업자 요건) 실패기업의 업종이 지원제외 대상 업종이 아니며 영업실적을 보유(기재창업자는 영업실적 요건 예외)
- ② 고의부도, 회사자금 유용, 사기 등 폐업의 사유가 부도덕하지 않을 것
- ③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금융질서문란, 청산절차 등록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④ 재창업을 준비중인 예비창업자의 경우는 지원결정 후 1개월 이내에 법인 대표등록이 가능할 것(체납사실이 없거나, 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체납세금4대보험과태료 등에 대한 분납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개인사업자 등록으로도 가능)
- ⑤ 실패 사업체의 폐업을 완료할 것

지원 내용

- 개발 총 소요비용의 80%(최대 1.5억원, 개발기간 최대 1년)
 - * 주관기관은 총 사업비의 10% 이상(현물 또는 현금으로 부담)을 부담

신청·접수

-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온라인 신청

제출 서류

- 기술개발지원사업 공통 제출서류

연번	서 식 명	제출방법	해당여부
①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과제제안서	Part I	필 수
		Part II	
②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인터넷에서 해당서식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문서파일 업로드	필 수
③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청렴 서약서		필 수
④	관련서류	온라인시스템에 문서파일로 업로드	해당시

- 재창업전용기술개발사업 제출서류

확인사항	필요서류	발급기관	제출방법	비고			
				법인	개인사업자		
1. 폐업여부	① 폐업사실증명원	세무서(홈택스)	온라인시스템에 문서파일로 업로드	①, ②중 택일			
	② 폐업신고서	세무서 양식					
	③ 매출액증명원 또는 과세표준증명원	세무서(홈택스)		필수			
2. 세금체납 여부	①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국세 : 세무서(홈택스) 지방세 : 동사무소 (민원 24 사이트)		온라인시스템에 문서파일로 업로드	해당시 ①, ②중 택일		
	② 세금 분납계획서	세무서양식					
3. 재창업 7년이하	① 법인등기부등본	등기소 (대법원인터넷등기소)			온라인시스템에 문서파일로 업로드	필수	
	② 개인사업자등록증	세무서(홈택스)				필수	
4. 신청자격 (해당시)	① 개인회생 인가결정문	법원	온라인시스템에 문서파일로 업로드			①, ②, ③중 택일	
	② 개인파산 면책결정문	법원					
	③ 신용회복지원확정문	법원					

처리 절차



문의처

- 중소기업청 재도전성장과 : 042-481-6844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042-388-0764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 ☎1357

4-5

재도전성공패키지

| 우수재기기업인에 교육 및 사업화 지원

재도전사업계획을 보유한 우수재기기업인을 발굴하여 체계적인 재창업교육 및 사업화 지원을 통해 성공적인 재창업 유도

지원 규모

200개사 내외 (총 100억원)

* '16년지원현황 : 100개사, 재창업 교육 및 사업화 지원 (평균 0.4억원)

지원 대상

- 기존 사업 실패(폐업 후) 재도전을 준비중인 (예비)재창업자 또는 재창업 3년 미만 재창업 기업의 대표자

지원 내용

- 재창업에 필요한 실패원인 분석 및 재창업사업계획 고도화를 위한 교육 및 멘토링
- 재창업에 필요한 사무공간 제공(수요초과시 별도 평가를 통해 선정)
- 재창업 준비 및 사업화 등에 소요되는비용의 70%(3천만원~최대 1억원)

신청·접수

- 2017년 중 2회 공고(1월, 5월)예정

제출 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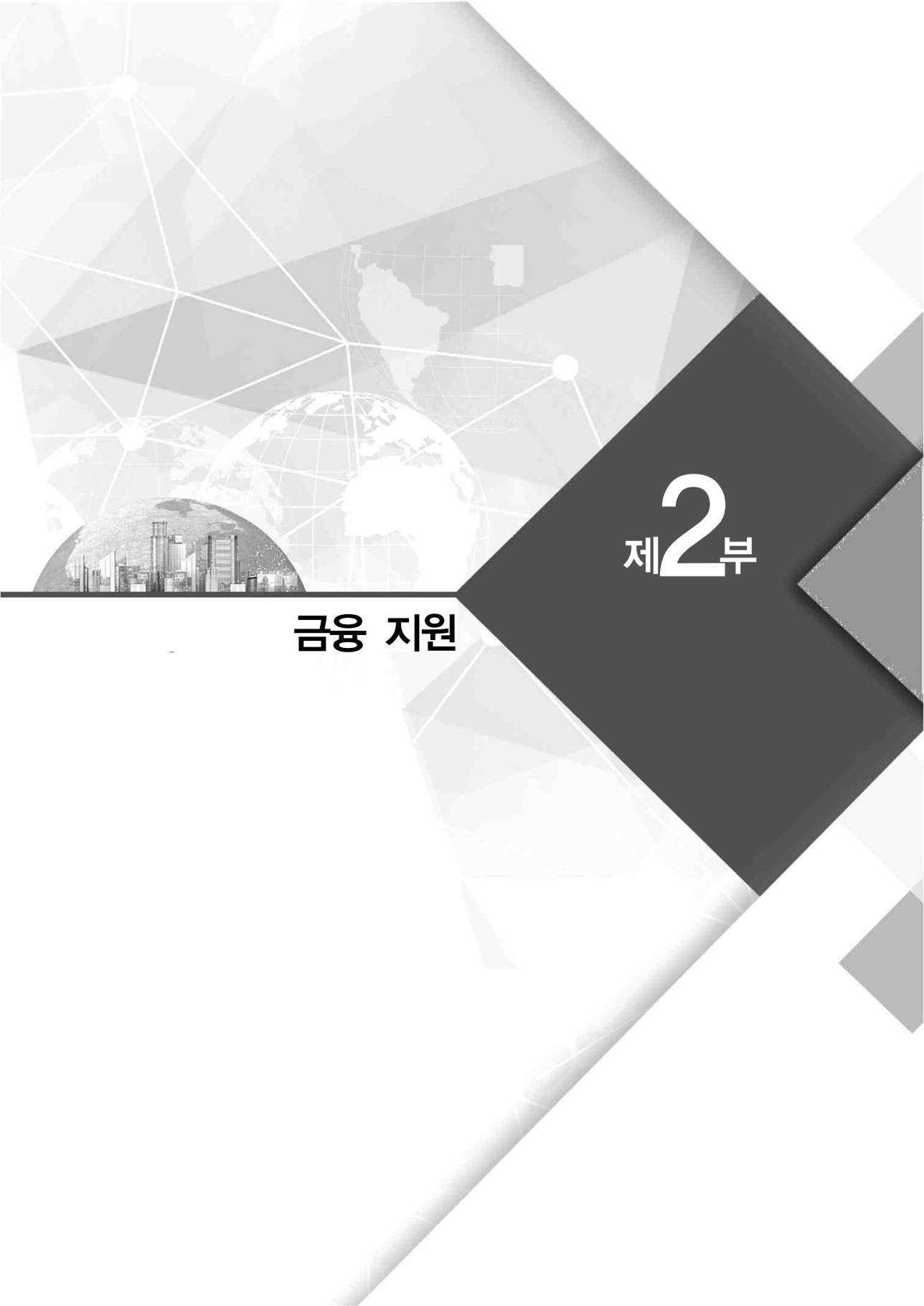
- 사업계획서,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등

처리 절차



문의처

- 중소기업청 재도전성장과 : 042-481- 4474
- 중소기업청 창업포탈 케이스타트업(www.k-startup.go.kr)
- 재도전종합지원센터(www.rechallenge.or.kr)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2017년 지원시책」 참조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The cover features a grayscale background with a network of white lines connecting nodes, overlaid on a globe. In the lower-left, a city skyline is visible. A large, dark gray arrow-shaped graphic points from the right towards the center, containing the text '제2부'.

제2부

금융 지원

정부의 금융지원,
적극 활용하세요!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www.smba.go.kr



중기백과 함께 알아보는 금융지원



Q 2011년 6월 창업하여 자동차 부품용 스프링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생산 설비를 도입하려고 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정부로부터 대출받을 수 있는지요?

A 창업하신지 7년 미만이라면 '창업기업지원자금'의 시설자금을 신청하세요. 지난해는 업체당 평균 1.6억원 정도가 지원됐고, 연간 최대 45억원 이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올해 가정용 세제를 개발해 특허를 받고 미국 FDA 산하 연구기관에서 제품의 안전성과 성능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제품 생산과 마케팅 비용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A 특허 기술이 있으니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을 신청하시면 되겠네요. 개발제품 사업화에 소요되는 생산설비 및 기계구입 등을 위한 시설자금과 원자재 구입, 홍보 및 마케팅 비용 등 운전자금을 지원합니다.

Q 지난 95년에 회사를 설립한 실린더 밸브 전문기업입니다. 최근 해외시장 개척과 국내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 생산량이 눈에 띄게 늘어나 생산라인 증설이 필요합니다.

A 7년 이상 된 기업이 생산 시설투자를 위해 지원받을 수 있는 자금은 '신성장기반 자금'입니다. 생산성향상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생산설비 도입, 기계구입, 사업장 시설자금을 지원하며, 시설도입 후 초기 가동비도 지원합니다.

Q 고해상도 후드 적외선 카메라를 생산하여 매출의 90% 이상을 해외에서 거둬들이고 있습니다. 최근 대만 업체와 50만 달러 수출계약을 체결했는데 제품 생산을 위한 운전자금이 필요합니다.

A 수출계약을 체결했으나 생산비용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위해 해글로벌진출지원자금을 지원해 드립니다. 이 자금은 시설자금은 지원되지 않고, 원부자재 구입비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용도로만 지원됩니다.

- Q** 2009년부터 컴퓨터 프레스와 판금 사업으로 꾸준히 성장해 오다가 2013년 이후로는 내리막길을 걷고 있네요,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여 전기온풍기 업종 추가를 계획하고 있는데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A** 기술발전 등 외부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경쟁력이 약화된 경우 업종추가, 업종전환, 품목추가 시'사업전환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 Q** 지난해 공장을 인수하면서 시중은행에서 자금을 대출받았는데 이자가 너무 비싸 정책자금으로 전환하고 싶습니다, 가능한지요?
- A** 금융기관 대출금 상환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자금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책 자금은 한정된 정부 재정으로 사업성·기술성은 우수하나 담보력이 부족하여 시중은행이 대출을 기피하는 창업·개발기술사업화·장기시설투자 지원 등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 Q** 정책자금을 신청해 지원받은 적이 있는데 추가로 재신청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A** 네 가능합니다. 다만, 정책자금은 신청횟수에 제한은 없지만, 총 대출잔액 기준으로 수도권 45억원, 비수도권 50억원 이내로 대출한도 관리를 합니다. 또한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신성장기반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신청일 기준 동일기업당 지원횟수를 최근 3년 이내 최대 2회까지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청 소관 정책자금 및 타 부처 또는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은 정책 자금 총 지원횟수에 따른 중복지원 제한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 Q** 신청 및 평가절차가 궁금합니다, 은행을 통해서도 용자를 받을 수 있나요?
- A** 중소기업진흥공단 관할 지역본·지부로 신청을 하시면 지원대상 및 요건 확인 후 현장평가를 통해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평가등급에 따라 신용 또는 담보부 대출이 이루어지며, 중진공 직접대출 또는 주거래은행을 통한 대리대출로 용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 5 장

시설 및 운전자금 대출

5-1 정책자금 지원 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	71
5-2 창업기업지원자금	78
5-3 신성장기반자금	81
5-4 긴급경영안정자금	85
5-5 투융자복합금융자금	88
5-6 신시장진출지원자금	92

5-1

정책자금 지원 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

| 자금지원 공통사항

창업기업지원자금 등 6개 자금 지원 시 용자대상 및 절차, 용자제한기업, 용자시기 등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지원 규모

- 중소기업 정책자금 : 3조 5,850억원
 - * 창업기업지원자금(1조 6,500억원), 투융자복합금융자금(1,500억원), 신시장진출지원자금(5,750억원), 신성장기반자금(8,800억원), 재도약지원자금(2,550억원), 긴급경영안정자금(750억원)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 다음의 전략산업 영위 및 사업재편 승인 기업에 대해서는 연간예산의 일정 부분을 우선 배정 지원
 - * 전략산업 : 미래성장동력산업, 뿌리산업, 소재·부품산업, 지역특화(주력)산업,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바이오산업, 융복합 및 프랜차이즈산업, 물류산업, 유망소비재산업

지원이 안되는 자

- ✓ 주된 사업의 업종이 용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 ✓ 용자제한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용자 한도

- 개별기업당 용자한도는 중소기업청 소관 정책자금의 용자잔액 기준으로 45억원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소재기업은 50억원)까지이며, 매출액의 150%이내에서 지원
 - * 잔액기준 한도 예외 적용의 경우에도, 최대 70억원 이내에서 지원

대출 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에 사업별 가감금리를 적용하며, 기업별 신용위험등급, 담보종류 등에 따라 금리 차등
 - 분기별 대출금리(기준금리)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이라 한다) 홈페이지(www.sbc.or.kr)에 공지
 - 시설자금 직접대출의 경우 각 사업별로 고정금리 적용 가능(단, 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 기업 지원은 제외)
 - 시설자금 대출에 대해 0.3%p 금리 우대
 - 정책자금 대출업체중 대출월로부터 3개월 이내 1인 이상 추가고용계획이 있는 기업은 추가 고용인원 1인당 0.1%p(~ 최대 2%p), 신성장유망(인재육성형)자금 대출월로부터 6개월 이내 내일채움공제에 추가 가입시 가입 인원 1인당 0.1%p(~ 최대 2%p) 금리우대 적용(요건 유지 확인)
 - * 시설자금 지원기업은 3개월 이내 추가고용이 없었던 기업 중 6개월시점에서 추가고용 실적 자료 제출시 고용실적 인정 가능
 - 수출성과 창출기업(수출성공 또는 수출향상)은 1년간 0.2%p 또는 0.4%p 금리 우대
 - * 수출성공 : 자금대출 전 예비수출기업(대출월 제외한 직전 12개월 직수출실적 10만불 미만) 이 대출 이후 12개월(대출월 포함) 직수출실적 10만불 이상 달성시 0.2%p 금리 우대
 - * 수출향상 : 자금대출 이후 12개월(대출월 포함) 동안 직수출실적이 50만불 이상이고, 자금대출 전 12개월 대비 20% 이상 향상시 0.4%p 금리 우대
 - 금리우대(고용, 수출 및 내일채움공제 합산)는 1년간 한시적용하며 최대 5천만원, 2%p 이내(단, 수출사업화자금은 대출기간 내 계속 적용)
 - * 고정금리, 금리우대 자금 및 대출 후 1년 이내 전액 조기상환 기업은 적용 제외
 - 최근 1년 이내 동일자금으로 운전자금을 3회 이상 지원하는 경우 3회부터 가산금리 0.5%p 부과(수출금융 제외)

용자 방식

- 중진공에서 용자신청·접수하여 용자대상 결정 후, 중진공(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신용, 담보부 대출
 - * 보증서 담보는 시설자금 및 재창업자금 중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에 대해서만 취급 가능

용자 절차

- 용자 신청·접수 : 중진공 홈페이지(www.sbc.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용자신청은 자가진단→사전상담→온라인신청 순으로 진행되며 당월 자금 희망기업은 전월말까지 자가진단 및 사전상담(온라인신청 포함)이 필요

- * 단, 정책우선도 평가가 필요한 경우 또는 지역본(지)부 접수상황에 따라 온라인신청 접수일 조정 가능
 - * (자기진단) 신청자금의 적정성에 대해 중진공 홈페이지(www.sbc.or.kr)를 통해 온라인 자가진단 실시
 - * (사전상담) 자기진단 결과 신청가능 대상인 경우, 해당 지역본(지)부에 방문상담하면 지역본(지)부에서 정책자금 신청기회 부여 여부 결정(시설투자, 수출기업 등은 우선 지원)
 - * (온라인신청) 사전상담 완료 후 신청기회를 부여받은 기업은 신청기회 부여시 정한 기일까지 중진공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해당 지역본(지)부에 용자신청
 - 중진공 지역본(지)부장은 신청기업에 대한 기업진단 대상여부를 결정
 - * 기업진단 : 기업을 진단하여 문제점(기업애로)을 도출한 후 처방전(해법)을 제시하고 치유를 위한 자금 등을 연계 지원하는 프로그램
- 기업평가
- 기술성, 사업성, 미래성장성, 경영능력,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기업평가등급(Rating)을 산정
 - * 단, 청년전용창업자금, 창업성공패키지지원, 재창업자금 중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 지원 대출은 별도기준으로 운영
- 용자대상 결정
- 평가결과 일정 기업평가등급 또는 일정기준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용자여부 결정
- 자금대출
- 용자 대상으로 결정된 기업에 대하여 용자약정 체결 후 대출
 - * 기술사업성 평가 결과(청년전용창업자금, 창업성공패키지지원의 경우 심의위원회) 일정등급 이상 기업의 경우 연대보증 입보 면제 가능
- 사후관리
- 대출 후 당초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자금집행 여부의 점검을 위해 대출기업에 대한 관련자료 징구 등 실태조사 실시
 - * 청년전용창업자금, 재창업자금, 구조개선전용자금 대출기업에 대해서는 대출 후 1년간 사업계획 진행사항 등 멘토링 지원

용자제한기업

- ①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 ②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기업회생신청·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 ③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용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용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기업
- ④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⑤ 휴·폐업중인 기업. 단,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중인 기업은 가동중인 기업으로 간주하여 용자대상에 포함
- ⑥ 다음에 해당하는 우량기업
 -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상위인 CR1등급(단, 업력 3년 미만 기업 및 최근 결산연도 자산총계 10억원 미만의 소자산기업은 예외)
 - 유가증권시장(코넥스제외),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 최근 재무제표 기준 자본총계 200억원 이상 기업
 - 최근 재무제표 기준 자산총액 700억원 초과 기업
- ⑦ 업종별 용자제한 부채비율을 초과하는 기업(협동화 및 협업사업은 승인 신청 시 기준)

<업종별 용자제한 부채비율 기준 적용 예외>

- 업력 5년 미만 기업, 사업전환자금 신청기업 중 무역조정지원기업
- 『소득세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한 일정규모 미만의 간편장부 대상사업자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상의 협동조합
-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기업 중 일시적경영애로기업, 재해중소기업
- 재도약자금 중 구조개선전용자금
- 최근 결산년도 유형자산 증가율이 동업종 평균의 2배를 초과하는 중소기업의 시설투자금액, 매출액대비 R&D투자비율이 1.5%이상인 기업의 R&D금액 등은 용자제한 부채비율 산정 시 제외

- ⑧ 정책자금 용자제외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자금조달 여건이 열악한 우수기술 보유 유망 중소기업의 장기·시설자금 중심 지원 →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제외업종 운용

<용자제외 업종 운용기준>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도박·사치·향락, 건강유해, 부동산 투기 등)
- 정부 등 공공부문에서 직·간접적으로 운영·지원하는 업종 (철도 등 운송,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 고소득 및 자금조달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업종 (법무·세무·보건 등 전문서비스, 금융 및 보험업 등)
- 자영업 등 소상공인 자금 지원이 적합한 업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 ⑨ 중진공 지정부실기업, 업력 5년 초과기업 중 다음에 해당하는 한계기업
- 2년 연속 매출액이 50% 이상 감소한 기업
 - 2년 연속 적자기업 중 자기자본 전액 잠식 기업
 -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이 1.0미만'이고, '3년 연속 영업현금흐름이 (-)'인 기업
(단, 최근 결산년도 유형자산과 연구개발비 증가율이 모두 전년대비 2.5%이상인 기업은 예외)
 - 최근 3개월 이내 연체일수 45일 이상 또는 10일 이상이 4회 이상인 기업
 -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하위(CR6) 등급
(재도약지원자금 중 재창업자금 및 구조개선전용자금 적용 제외)
- ⑩ 용자심사에서 탈락한 기업으로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단, 신청연도가 다르거나, 다른 자금의 용자심사에서 탈락하더라도 재도약지원자금(사업전환, 무역조정, 구조개선전용),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경영애로, 재해자금)은 신청 가능하며, 실질기업주 변경 등 기업경영상 중대한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동일 자금도 추가 1회에 한해 재신청 가능)
- ⑪ 정부, 지자체 등의 정책자금 용자, 보증, R&D 보조금 등 지원 실적이 최근 5년간 100억원(누적)을 초과하는 기업(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http://sims.go.kr>)을 통해 지원실적 확인)
- 신시장진출지원자금(글로벌진출지원), 신성장기반자금(고성장기업육성), 재도약지원자금, 긴급 경영안정자금, 매출채권보험은 제외
 - 보증서부 정책자금 용자지원 실적은 보증실적을 제외하고 지원실적 산정
- ⑫ 다음에 해당하는 대출금 조기상환 기업
- 당해년도 대출자금을 당해연도에 전액 상환한 기업(단, 신청연도가 다른 경우 신청가능하며, 회전금융방식의 수출금융은 예외)
 - 대출만기가 1년이상 남은 대출 건의 대출잔액 전부를 일시 상환하고, 상환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단, 시설자금 조기상환 중 지원시설 매각 등 조기상환이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

신청접수

-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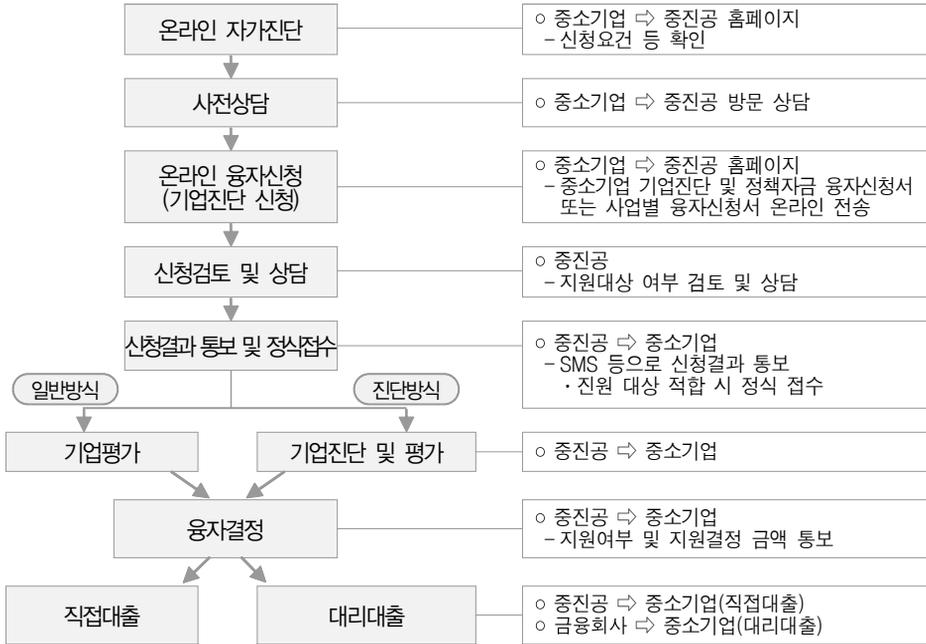
제출 서류

-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용자신청서' 작성 및 온라인 신청

접수 시기

- 2016.12.26 ~ 자금 소진시까지(연간 계획된 예산소진 시 신청 불가)

처리 절차



문의처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or.kr)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 1357

용어설명

업종구분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해당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사업의 업종을 말함

용자잔액 :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 중 상환하지 않고 남아있는 금액을 말함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 정부가 중소기업의 창업촉진 및 산업의 균형있는 발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 하기 위해, 기금을 설치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관리하는 기금

대출금리와 국고채 금리 : 대출금리는 대출금에 대한 이자율을 말하며, 국고채 금리는 정부가 장기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채권(국고채)의 이자율을 말함

변동금리 : 기준금리가 변할 때마다 대출금리가 변하는 금리

대위변제 :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를 넘겨받는다는 조건으로 제3자가 채무자를 대신해 빚을 갚는 것

대지급 : 은행 또는 정부가 지급보증을 통하여 특정업자의 지급신용을 책임진 후 그 특정업자가 기일 내에 지급을 불이행하였을 때 지급보증은행 또는 정부에서 대신 지급하여 주는 것

화의 : 기업이 파산위험에 직면할 때 법원의 중재감독 하에 채권자들과 채무변제협정을 체결하여 파산을 피하는 것

기업회생신청 : 법원 관리 아래 진행되는 기업 구조조정(과거 법정관리)

청산절차 : 회사가 합병·파산 이외의 원인으로 해산한 경우의 채권자에 대한 변제, 사원에 대한 잔여재산의 분배 등과 각종의 법률관계를 처리하는 절차

용자제한 부채비율 : 중소기업 정책자금 용자지원 계획(중소기업청 공고)에서 최근년도의 업종별 부채비율을 가중 평균한 2~3배의 값

직접대출과 대리대출 : 직접대출은 중소기업청 소관 정책자금에 대해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신청·접수 및 평가하여 용자대상을 결정한 후 공단이 직접 대출하는 방식. 대리대출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정책자금을 신청·접수 및 평가하여 용자대상을 결정하고 은행이 대출하는 방식

시설자금과 운전자금 : 시설자금은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사업장 건축·확보 등의 용도에 소요 되는 자금을, 운전자금은 제품생산 및 기업경영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함

거처기간 : 대출을 받은 후, 원금을 갚지 않고 매달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5-2

창업기업지원자금

| 업력 7년 미만 중소기업 및 예비창업자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창출을 도모

용자 규모

- 1조 6,500억원
 - * 2015년 신청기업 11,926개사 중 8,166개사 선정지원, 업체당 평균 1.8억원
 - * 2016년 10월말 신청기업 12,920개사 중 9,299개사 선정지원, 업체당 평균 1.6억원

지원 대상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의한 창업자로서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중소기업
- 일반창업기업지원자금, 청년전용창업자금으로 구분 지원
 - (일반창업기업지원)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
 - (청년전용창업)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
 - * 일반창업기업지원자금, 청년전용창업자금 모두 최종 용자시점에는 사업자등록 필요

용자 범위

-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유통 및 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사업장 건축자금, 토지구입비, 임차보증금
 -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사업장 확보자금(매입, 경·공매)
 - * 사업장 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기업 당 3년 이내 1회로 한정 지원
- 운전자금
 - 창업소요 비용,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용자 조건

- 대출금리(기준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에서 0.3%p 차감
 - * 일반창업기업지원자금의 시설자금 지원 시 고정금리 선택가능
 - * 청년전용창업자금, 창업성공패키지지원은 연 2.0% 고정금리 적용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청년전용창업자금 : 시설운전 6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기업당 45억원(지방소재기업 50억원) 이내, 매출액의 150%이내
 - *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단, 수출향상기업,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 최근 1년간 1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금회포함), 여성기업, 민간투자연계자금의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이내
 - * 청년전용창업자금 : 기업당 1억원 이내

용자 방식

- 일반창업기업지원
 - 중진공 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 대리대출
- 청년전용창업자금
 - 중진공 직접대출로 운영하며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교육컨설팅 실시 및 사업계획서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용자대상 결정(용자상환금 조정형)
 - * 용자상환금 조정형 : 정직한 창업실패자에 대하여 심의를 통해 선별적으로 용자상환금의 일부를 조정

신청·접수

-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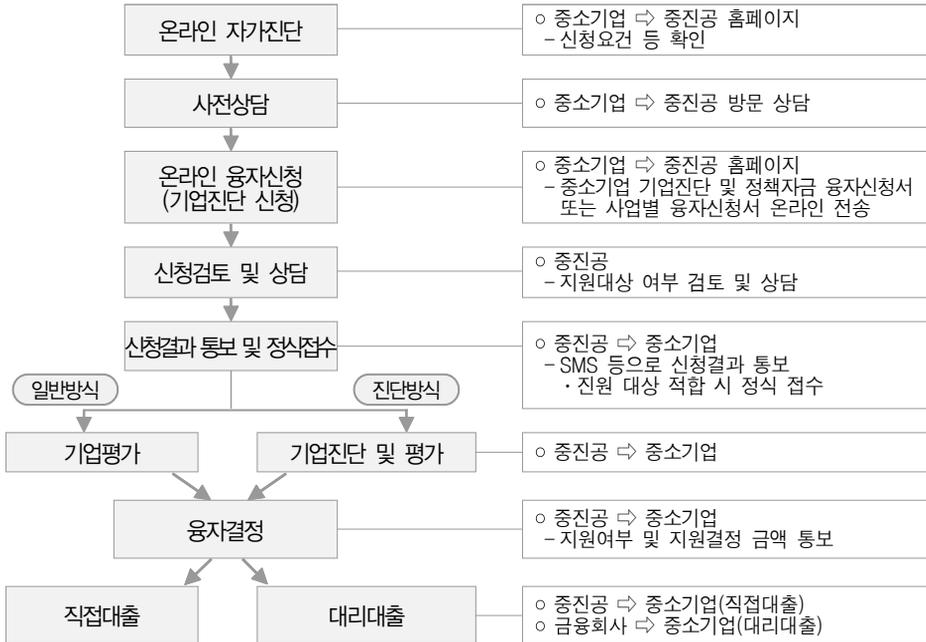
제출 서류

-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작성 및 온라인 신청
 - * 청년전용창업자금은 전용신청서 작성

접수 시기

- 2016.12.26 ~ 자금 소진시까지

처리 절차



문의처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or.kr)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 1357

5-3

신성장기반자금

|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의 시설투자 촉진

사업성과 기술성이 우수한 성장유망 중소기업의 생산성향상, 고부가가치화 등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성장 동력 창출

지원 규모

- 8,800억원
 - * 2015년 신청기업 4,701개사 중 3,982개사 선정지원, 업체당 평균 2.8억원
 - * 2016년 10월말 신청기업 4,488개사 중 3,500개사 선정지원, 업체당 평균 3.0억원

지원 대상

- 신성장유망자금, 기술사업성우수기업전용자금, 고성장(가젤형)기업육성자금으로 구분 지원
 - * 신성장유망 및 기술사업성우수기업전용자금의 합산 지원 횟수가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인 기업은 용자제외
 - (신성장유망)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
 - (기술사업성우수기업전용)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 중 기업평가등급 우수기업
 - (고성장(가젤형)기업육성) ①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업력 4년 이상 중소기업 중 최근 4개년간('13~'16년간) 상시근로자 또는 매출액이 연평균 20% 이상(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소재 기업은 15% 이상) 증가한 기업, ② 중소기업청 『고성장기업 수출역량강화사업』 선정기업으로 협약기간 이내 기업
 - * 단, ①의 경우, 최근 4개년의 시작년도와 최종년도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기업만 신청가능

용자 범위

-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유통 및 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 무역수출 안전시설 설치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사업장 건축자금, 토지구입비, 임차보증금
 -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포함)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사업장 확보자금(매입, 경·공매)
 - * 사업장 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기업 당 3년 이내 1회로 한정 지원
- 조성공사비(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에 한함)
- 기타 생산성 향상, 생산환경 개선 및 후생복지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운전자금

- 위 시설자금을 융자받은 기업 중 시설도입 후 소요되는 초기 가동비 (시설자금의 50% 이내)
 - *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영위 기업, 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 기업, 국토교통부 인증 우수 물류기업, 고성장(가젤형)기업육성자금은 제품생산비용, 제품 개발비용, 시장개척비용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을 시설자금과 별도로 융자 가능 (단, '기술사업성 우수기업 전용자금'은 시설자금과 별도 융자 불가)

용자 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5%p 가산(기준금리)
 - * 시설자금 지원 시 고정금리 선택가능
 - * 협동화협업사업 승인기업 지원, 인재육성형기업전용자금은 정책자금 기준금리(기준금리)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 기술사업성 우수기업 전용자금 : 15년 이내(거치기간 5년 이내 포함)
- * 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 : 10년 이내(거치기간 5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45억원(지방소재기업 50억원) 이내, 대출액의 150%이내(운전자금은 5억원 이내)
- * 협동화(협업화) 승인기업, 고성장(가젤형)기업지원자금, 수출향상기업,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 최근 1년간 1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금회 포함), 경영혁신 마일리지 500마일리지 사용기업의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이내

용자 방식

- 중진공 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 대리대출
 - * 기술사업성 우수기업 전용자금은 직접대출인 경우 시설자금은 담보부 방식, 시운전자금은 담보부 및 신용방식 가능

신청·접수

-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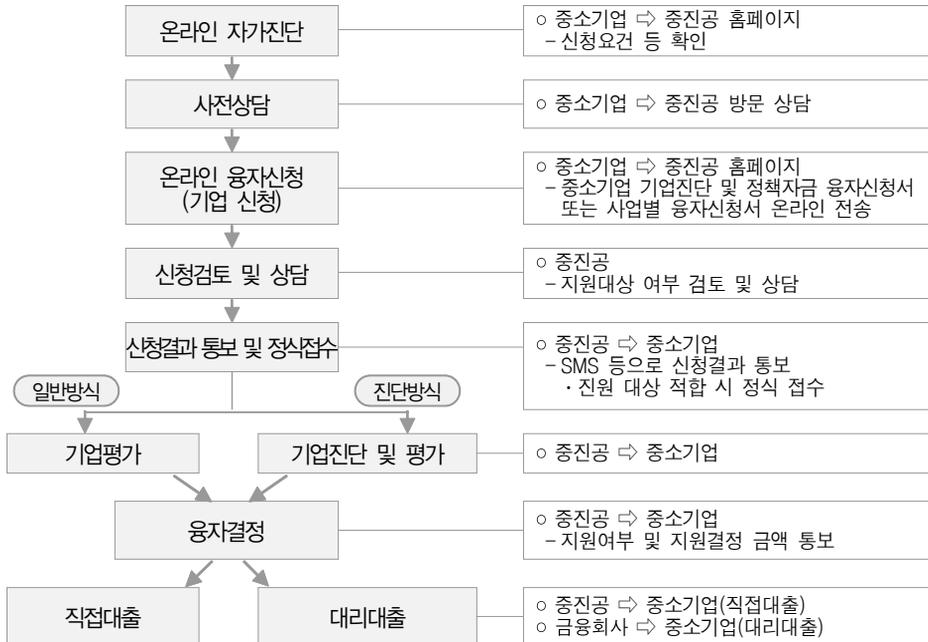
제출 서류

-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용자신청서’ 작성 및 온라인 신청

접수 시기

- 2016.12.26 ~ 자금 소진시까지

처리 절차



문의처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or.kr)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 1357

5-4

긴급경영안정자금

| 경영애로 해소 등 긴급한 자금소요를 지원

재해, 경영애로 해소 등 긴급한 자금소요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기반 조성

용자 규모

- 750억원
 - * 2015년 신청기업 2,895개사 중 2,621개사 선정지원, 업체당 평균 2.3억원
 - * 2016년 10월말 신청기업 2,175개사 중 1,644개사 선정지원, 업체당 평균 2.6억원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 * 최근 3년 이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2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은 용자 제외

용자 범위

- 자연재해 또는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중소기업청 고시)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재해중소기업)의 직접피해 복구 비용
-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 중 회생가능성이 큰 기업의 경영애로 해소 및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경비

< 긴급경영안정사업(일시적 경영애로) 신청 요건 >

- (경영애로 사유) ① 환율피해, 대형사고, 정부의 산업구조조정 대상업종(조선, 해운, 철강, 석유화학, 건설) 관련 피해, 대기업 구조조정, 주요거래처 도산 및 결제조건 악화, 기술유출 피해, 한중 FTA 피해, 경기부진 또는 서비스개선에 따른 애로(병·의원) 등 또는 ② 중소기업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 * 재화와 용역의 시장성 부족, 시장경쟁력 저하에 따른 영업부진 등은 제외
- (경영애로)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10%이상 감소 기업, 대형사고(화재 등)로 피해규모가 1억원 이상인 기업
 - * (비교시점) 직전년도와 직전전년도, 직전반기와 직전전반기, 직전반기와 전년동반기, 직전분기와 직전전분기, 직전분기와 전년동분기, 신청전월과 전전월, 신청전월과 전년동월
 - * 조선·해운업 관련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경영애로 판단기준 적용 예외
- (신청기한) 경영애로 피해 발생(피해 비교 가능시점)후 6개월 이내
 - * 단, 정부의 산업구조조정 대상업종 관련 피해기업은 1년 이내 신청 가능

용자 조건

- 대출금리(기준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에서 1.05%p 가산
 - * 재해중소기업은 연 1.9% 고정금리 적용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기업 당 연간 10억원 이내(3년간 10억원 이내)

용자 방식

- 중진공 직접대출

신청·접수

-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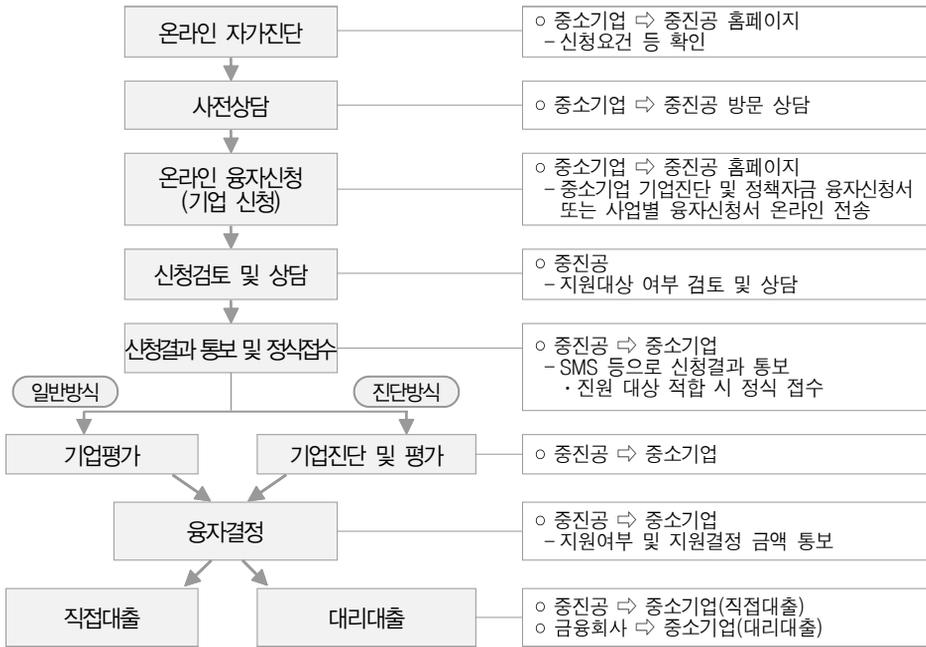
제출 서류

-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용자신청서’ 작성 및 온라인 신청
 - * 재해자금은 전용신청서 작성

접수 시기

- 2016.12.26 ~ 자금 소진시까지

처리 절차



문 의 처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or.kr)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 1357

5-5

투융자복합금융자금

| 융자에 투자요소를 포함한 방식의 자금지원

기술성과 미래 성장가치가 우수한 기업에 융자에 투자요소를 포함한 방식의 자금 지원으로 창업활성화 및 성장 단계 진입을 도모

지원 규모

○ 1,500억원

- * 2015년 신청기업 537개사 중 424개사 선정지원, 업체당 평균 2.4억원
- * 2016년 신청기업 695개사 중 558개사 선정지원, 업체당 평균 2.0억원

지원 대상

- 이익공유형 대출, 성장공유형 대출로 구분 지원
 - (이익공유형 대출) 기술개발 및 시장진입 등의 단계에서 미래 성장성이 큰 기업으로 일정 수준의 영업이익 달성이 예상되는 업력 7년미만 기업
 - (성장공유형 대출) 기술성과 미래 성장가치가 큰 기업으로 기업공개 가능성이 있으나 민간 창업투자회사(창업투자조합)가 투자하지 아니한 기업

융자 범위

○ 시설자금

-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도입,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건축 및 사업장구입 자금 제외)

○ 운전자금

- 창업소요 비용, 원부자재 구입비용, 시장 개척비용, 제품생산 비용, 콘텐츠 제작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대출 금리

- 이익공유형대출 : 고정이자와 성과배분이자로 구성
 - * 대출기간에 해당하는 고정이자와 성과배분이자를 합한 이자총금액은 대출원금의 20%를 한도로 함
 - (고정이자) 0.5%(대출기간 중 고정)
 - (성과배분이자) 대출일 이후 3년간(거치기간) 결산기 영업이익 합계액의 4%
 - * 각 결산기 결산결과 '영업손실 또는 당기순손실' 발생 시 해당 결산기에 대한 영업이익은 0으로 적용
- 성장공유형 대출(대출방식 : 전환사채 인수)
 - 대출금리 : 표면금리 0.5%, 만기보장금리 3%
 - * 업력 3년 미만인 기업 : 표면금리 0.25%, 만기보장금리 3%

용자 조건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 성장공유형 대출의 경우 업력 7년 미만인 기업 : 7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
 - * 이익공유형 대출의 경우 업력 3년 미만인 기업 : 6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45억원(지방소재기업 50억원) 이내, 매출액의 150%이내(운전자금은 10억원 이내)
 - * 이익공유형 대출의 경우 기업당 연간 20억원 이내(운전자금은 5억원 이내)

용자 방식

- 중진공 직접대출

신청접수

-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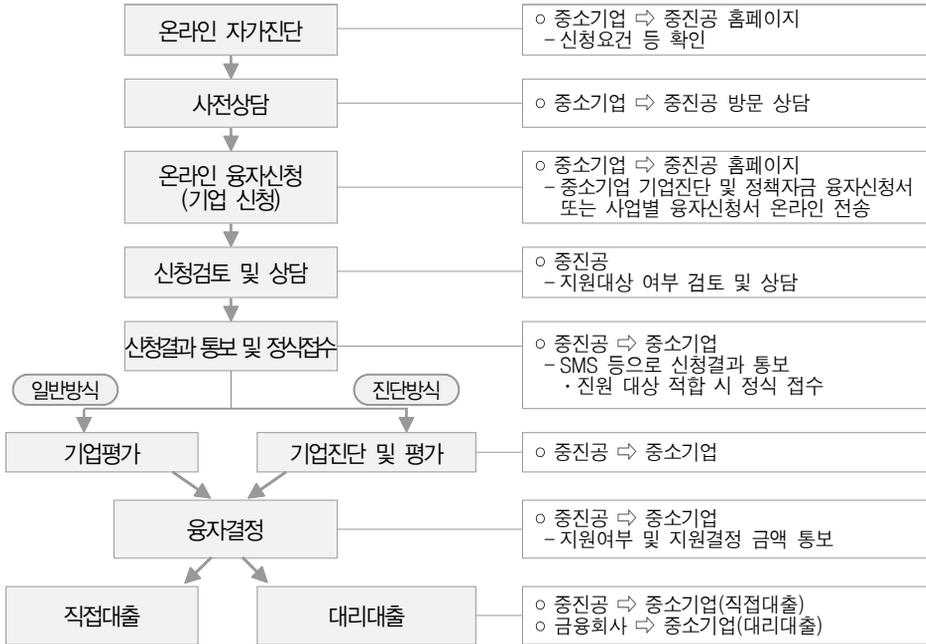
제출 서류

-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용자신청서' 작성 및 온라인 신청

접수 시기

- 2016.12.23 ~ 자금 소진시까지

처리 절차



문의처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or.kr)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 1357

궁금해요! 중기엔



- Q** 투융자복합금융은 임의상환이 가능한가요?
- A** 임의상환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그 이유는 임의상환을 허용할 경우 기업성장 시점에 임의상환으로 “성장가치의 공유”가 되지 아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Q** 성장공유형 대출의 표면금리와 만기보장금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A** 표면금리(0.5%, 단리)는 대출기간 중 이자계산을 위하여 적용하는 금리이며, 만기보장금리(3%, 복리)는 중진공이 “주식으로 전환을 하지 아니하고 원금을 상환 받을 경우” 추가로 받게되는 이자(상환 할증금, 기 수령한 0.5%표면금리는 차감)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 금리입니다.

→ 용어설명

전환사채(CB:Convertible Bond) : 계약서상 정한 전환가격에 따라 계약기간 내에 대출금을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회사채

5-6

신시장진출지원자금

| 우수 기술의 제품화사업화 및 수출 지원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의 제품화·산업화 촉진 및 수출품 생산 비용을 지원하여 기술기반 수출 중소기업을 육성

지원 규모

- 5,750억원
 - * 2015년 신청기업 2,008개사 중 1,673개사 선정지원, 업체당 평균 2.1억원
 - * 2016년 10월말 신청기업 1,881개사 중 1,543개사 선정지원, 업체당 평균 1.9억원

지원 대상

개발기술사업화자금, 글로벌진출지원자금으로 구분 지원

-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으로서,
 - ①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기업,

-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등 정부출연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완료)한 기술
 - * 단, 중기청 R&D사업 참여 중소기업은 최종보고서 제출시(사업성공판정 이전) 자금신청 가능
 - 특허, 실용신안 또는 저작권 등록 기술
 - 정부 및 정부 공인기관이 인증한 기술
 - * 신기술(NET), 전력신기술, 건설신기술, 보건신기술(HT) 등
 - 국내외의 대학, 연구기관, 기업, 기술거래기관 등으로부터 이전 받은 기술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상 기술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평가 인증을 받은 기술
 - 기업부설연구소(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 보유 기업이 개발한 기술
 - ② 자체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Inno-Biz, Main-Biz, 벤처기업 또는 지식재산경영인증 기업(특허청 인증),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1억원 이상 투자 유치 기업
 - * 최근 3년 이내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을 2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은 용자 제외

- (글로벌진출지원자금) 용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생산품(용역, 서비스 포함)을 수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 수출금융지원 : 수출계약 또는 수출실적 보유 기업
 - * 수출사업화 : 중소기업청 소관 수출지원사업 지원기업(사업기간 또는 사업종료후 1년 이내), 중소기업청 수출기업화 유망내수기업 지정 기업, 글로벌CEO·퓨처스클럽 가입 중인 기업

용자 범위

- 개발기술사업화자금
 - (시설자금) 개발기술 사업화에 소요되는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운전자금) 개발기술 사업화에 소요되는 원부자재 구입비용, 시장 개척비용 등
- 글로벌진출지원자금
 - (수출금융지원)수출계약(L/C, D/A, D/P, Local L/C, T/T, M/T, 구매확인서, O/A, 해외조달 계약에 따른 P/O, 해외유통망 P/O) 또는 수출실적에 근거한 수출품 생산비용 등 수출 소요자금
 - (수출사업화) 해외 마케팅 등 판로개척, 해외인증 획득, 수출품 개발 등 수출사업화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용자 조건

- 대출금리(기준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 시설자금 지원 시 고정금리 선택가능
 - * 글로벌진출지원자금 중 수출금융지원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에서 0.3%p 차감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글로벌진출지원자금 중 수출금융 : 1년 이내(일시상환)
 - * 수출계약기준의 경우 수출품 선적(또는 용역 납품) 후 수출한 어음 매입 시 정산
- 대출한도 : 기업 당 20억원 이내
 - *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운전자금, 글로벌진출지원자금 중 수출사업화자금은 5억원 이내
 - *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수출향상기업,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 최근 1년간 1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금회포함)의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이내,

- * (개발기술사업화자금) 클라우드펀딩 투자유치기업은 기업당 3억원 이내(운전자금만 지원)
- * (글로벌진출지원자금) 해외조달시장 참여중소기업 및 글로벌강소기업, 무역보험공사의 환변동보험 및 중소Plus+단체보험 가입기업, 글로벌성장사다리 선정기업, 해외수요처 연계 R&D 성공제품, 직매입 계약을 체결한 GMD(글로벌 시장개척 전문기업) 및 GMD 매칭 중소기업, 수출향상기업은 기업당 30억원 이내
- * (글로벌진출지원자금) 유망소비재산업 관련 제품 수출기업은 40억원 이내
- 글로벌진출지원자금 수출금융 용자 한도
- * (수출계약기준) 수출실적 및 계획을 근거로 산정한 회전한도내에서 수출계약액의 90%이내
- * (수출실적기준) 최근 1년간 수출실적의 70% 또는 최근 6개월간 수출실적 범위 내

용자 방식

- 증진공 직접대출

신청접수

-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제출 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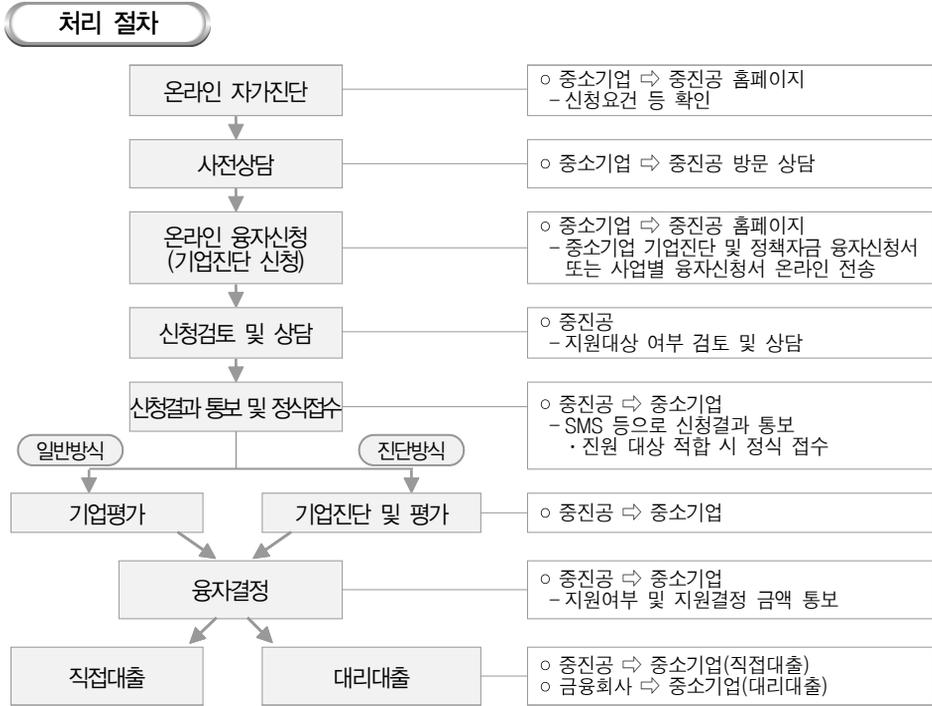
-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용자신청서' 작성 및 온라인 신청

접수 시기

- 2016.12.23 ~ 자금 소진시까지

문의처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or.kr)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 1357





제 6 장

신용보증 지원

6-1 신용보증기금	97
6-2 기술보증기금	100
6-3 지역신용보증재단	103
6-4 매출채권보험	108

6-1

신용보증기금

| 기업의 미래성장성과 기업가치를 평가하여 신용보증을 지원

기업의 미래성장성과 기업가치를 평가하여 기업 경영에 필요한 각종 채무에 대한 보증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자금유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규모

보증잔액 41.5조원으로 운용

* '16년 지원규모(10월말) : 42.4조원

지원 대상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 및 법인과 이들의 단체

* 도박·사행성게임, 사치, 향락, 부동산, 담배 등 공적 보증기관으로서 지원타당성이 낮은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보증지원이 제한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보증기관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및 채무관계자
- ✓ 신용상태가 악화되어 기업의 계속적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기업
- * 휴업 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신용관리정보 보유기업 등

지원 내용

- 기업이 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각종 채무에 대한 보증
 - ▷ 대출보증, 상거래 담보보증, 이행보증 등
- 보증한도
 - ▷ 30억원
 - ▷ 신용이 취약하거나 규정에 따라 정하는 기업은 15억원 이내로 제한
 - ▷ 금융위원회가 국민경제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금 또는 기업의 경우 70~100억원까지 보증지원 가능

자 금 종 류	보증한도
▪ 시설자금	100억원
▪ 구매자금용, 무역금융, 전자상거래보증, 이행보증 등	70억원*

* 보증심사등급에 따라 30억원 ~ 70억원까지 차등화

▷ 운전자금 보증한도 : 매출액한도와 자기자본한도 중 적은 금액

- 매출액한도 : 차기 1년간 매출액의 1/2 ~ 1/6 이내
- 자기자본한도 : 자기자본의 300% 이내

신청·접수

고객이 직접 필요자금에 대한 보증상담을 신청

-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www.kodit.co.kr) 통한 온라인 신청
- 영업점 방문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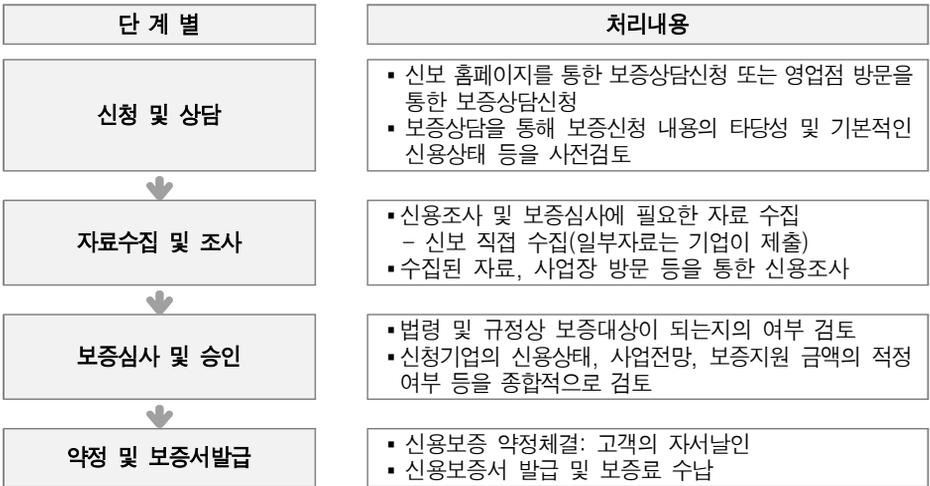
제출 서류

고객의 사전동의를 거쳐 전자적 방식 등을 통해 신보가 직접 수집

- 신보의 직접 수집이 불가능한 자료에 한하여 고객이 제출

구 분	수집(제출)자료	자료수집 경로
신보 직접 수집	▪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등	인터넷 등기소(대법원)
	▪ 주민등록등·초본 등	행정정보공유 시스템(행정안전부)
	▪ 사업자등록증명 등	Home-Tax 서비스(국세청)
	▪ 재무제표 등	Metagate System(세무사)
	▪ 금융거래확인서	채권은행 전산연계
고객 제출	▪ 임대차계약서 등	

처리 절차



문의처

- 신용보증기금 : 1588-6565(www.kodit.co.kr)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 ☎1357

궁금해요! 중기맨



Q 신보에서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주요 보증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구분	내용
수출중소기업 우대보증	· 수출기업 및 수출계약 체결기업에 대한 보증
유망창업기업 보증지원 프로그램	· 창업기업에 대해 유형별로 최대 30억원까지 지원하는 특별보증
유망서비스 기업 보증	·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망서비스업 영위기업에 대해 최대 30억원까지 지원하는 특별보증
시설자금 특례보증	· 자가사업장 신축 또는 매입, 공정자동화 및 설비 도입 등 시설자금에 대한 보증
지식재산 보증	· 지식재산 창출을 위한 연구개발(R&D), 기술거래, 사업화 및 활용촉진을 위한 소요자금에 대한 보증
SMART 융합보증	· ICT, 과학기술 기반의 H/W, S/W 도입, 산업융합 신제품, 첨단융합품목 생산 등의 소요자금에 대한 보증
M&A 보증	· 합병, 영업양수 등 M&A를 위한 소요자금에 대한 보증
고용창출 특례보증	· 상시종업원(정규직)의 신규 고용에 따른 인건비, 교육훈련비 등의 소요자금에 대한 보증

신성장동력산업, 녹색성장산업, 뿌리산업, 콘텐츠사업 영위기업, 경영혁신형 인증기업, 고용창출기업 등에 대해서도 보증료 등을 우대하여 보증지원

Q 보증료는 산정 절차는 어떻게 되며, 보증료율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 보증료는 보증금액에 보증료율을 곱하여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보증기간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수납하며, 보증료율은 보증심사등급별 기준요율에서 일정률을 가산 또는 차감하여 연율 0.5%부터 3.0%까지 범위에서 운용합니다.

6-2

기술보증기금

| 기술력 보유기업의 미래가치를 평가하여 신용보증

담보력이 부족하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기술성, 사업성 등 미래가치를 평가하여 보증서를 발급해 드림으로써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원활하게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원 규모

보증잔액 20.2조원으로 운용(유동화회사보증 0.6조원 제외)

* '16년 지원규모(10월말) : 20.3조원 (유동화회사보증 0.8조원 제외)

지원 대상

○ 신기술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

* 도박·사행성게임, 사치, 향락, 부동산, 주류·담배 등 일부업종은 보증지원 제한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보증기관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 ✓ 휴업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및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연체중인 기업 등

지원 내용

- 대출보증 : 금융기관 으로부터 각종 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담보로 이용
- 어음보증 : 기업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담보어음에 대해 지급을 보증
- 이행보증 : 기업이 공사, 물품의 공급, 용역제공 등을 위한 입찰 또는 계약시 납부하여야 할 각종 보증금에 대한 담보로 이용
- 무역금융보증 : 수출기업의 원재료 구입을 위한 무역금융에 대한 보증
- 전자상거래보증 : 기업간 전자상거래 대금결제를 위한 대출금 또는 외상구매 자금을 대한 보증

- 구매자금용보증 : 납품기업 중심의 공급자금용방식에서 구매기업에 직접금융을 제공하여 납품대금을 결제토록 하는 제도로 기업구매자금대출과 기업구매 전용카드대출에 대한 보증

보증료

- 기업의 기술사업평가등급에 따라 0.5~3.0%까지 차등 적용

신청·접수

회사소재지와 가까운 기술보증기금 영업점

제출 서류

	구분	자료명	고객협조사항	
고객 준비 서류	작성서류	▶ 기술사업계획서	▶ 사이버영업점에서 직접 작성 -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파일 업로드 또는 직접제출도 가능	서식
	준비서류	▶ 주주명부 ▶ 임차계약서사본 (사업장, 거주주택)	▶ 고객이 팩스로 송부 또는 직원이 현장 조사시 준비	-
기금 수집 서류	대법원 등기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부동산등기부등본	▶ 기보에 소유부동산 소재지 사전 고지 (발급수수료는 기보가 부담)	-
	행정정보	▶ 주민등록등·초본 등	▶ 대표자 본인이 행정정보이용에 사전동의 ▶ 기타제공행정정보: 산업재산권등록원부, 지방세납세증명	사전 동의서
	금융거래	▶ 금융거래확인서	▶ 전자금융거래확인서 제공에 대한 기업체 사전 동의	
	세무회계 자료	▶ 사업자등록증명 ▶ (국세)납세증명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표준재무제표(최근3개년) ▶ 부가세자료	▶ 세무사사무실(또는 신청기업)이 사이버 영업점내 세무회계자료제출센터에서 온라인 제출	사전 동의서

* 양식은 기보 홈페이지(www.kibo.or.kr)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가능

처리 절차

단계별	취급자	주요내용
보증신청	신청기업 →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신청 (영업점 방문 또는 전화 신청도 가능)
↓		
상담	영업점 평가 담당자 →	고객과의 상담결과에 따라 보증금지·제한 해당여부, 기술사업내용 등을 검토하여 계속진행 여부결정, 절차안내
↓		
기술사업계획서 제출	영업점 평가 담당자 →	기술사업계획서 등 제출 (여타 필요서류는 고객의 협조를 받아 기금직원이 직접 수집)
↓		
기술평가	영업점 평가 담당자 →	신청기업으로부터 접수한 자료 등을 예비검토 후 현장평가 실시하여 기술개발 능력, 제품화 능력, 사업성 등을 평가
↓		
심사·승인 후 보증서발급	영업점 심사 및 평가담당자 →	기업의 기술력, 사업전망, 경영능력, 신용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승인시 보증약정 후 보증서 발급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 1544-1120(www.kibo.or.kr)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 ☎1357

6-3

지역신용보증재단

|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업체 등에 대한 신용보증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소상공인 등에게 보증서를 제공함으로써, 소기업·소상공인 등이 은행에서 자금을 원활히 조달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지원 규모

보증잔액 17.8조원으로 운용(햇살론 근로자보증 제외)

* '16년 지원규모 : 약 17.8조원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등

* 도박·사행성게임, 사치, 향락, 부동산, 주류·담배 등 일부업종은 보증지원 제한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중 최종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 및 그 기업의 채무관계자 등
- ✓ 휴업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연체중인 기업 등

우선선정

- 소기업, 소상공인
- 재해복구자금을 추천받은 기업
- 중소기업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지역특화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금을 추천받은 기업

지원 내용

- 소기업·소상공인 등이 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각종 채무에 대한 보증
 - ▷ 대출보증, 어음보증, 이행보증, 지급보증의 보증, 시설대여 보증, 특례보증 등
- 보증한도
 - ▷ 동일기업당 최고 8억원(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기 보증금액 포함)

분 야	내 용	보증한도
운전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출액 한도 적용 - 제조업·제조관련 서비스업 : 당기 매출액의 1/3~1/40내 또는 최근 3~4개월 매출액 - 기타업종 : 당기 매출액의 1/4~1/60내 또는 최근 2~3개월 매출액 	8억원 이내
시설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 시설의 소요자금 범위 내 	

신청·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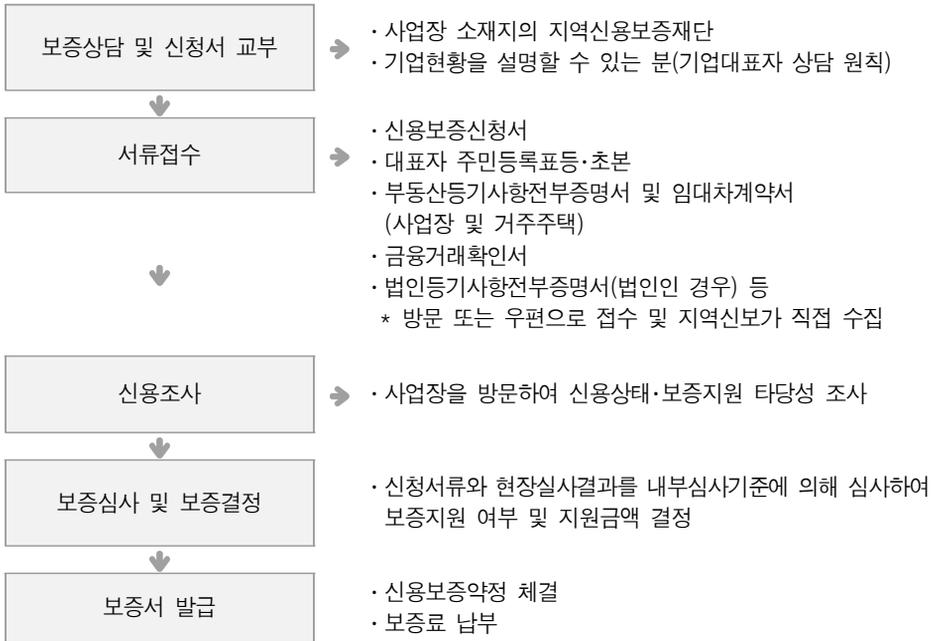
사업장 소재지 지역신용보증재단

제출 서류

- 고객의 사전동의를 거쳐 전자적 방식 등을 통해 지역신보가 직접 수집

구 분	제출서류	자료수집방법
지역신보 직접수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주민등록표등·초본 • 사업자등록증명원 • 재무제표 등 • 금융거래확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등기소(대법원) • 행정정보공유시스템(행정자치부) • 국세청 홈택스 • 세무자료전송시스템(KED) • 금융기관 전산연계
고객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처리 절차



문의처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1588-7365(www.koreg.or.kr)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 ☎13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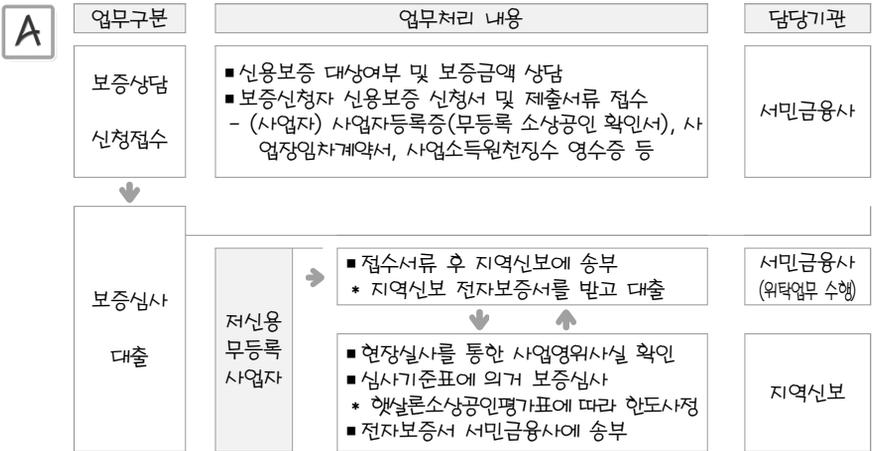
궁금해요! 중소기업



Q 중점지원 주요 보증제도는?

구 분	내 용
사회적기업 전용 특별보증	·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회적 기업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의한 사회적기업에 대한 특별보증
협동조합 특례보증	· 취약계층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 제공, 창업 활성화 등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협동조합에 대한 특례보증 *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제3호에 의한 사회적협동조합(사회적기업 인증 필)
금융기관 특별출연 협약보증	· 협약 금융기관으로부터 추천된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이 필요한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보증
햇살론 신용보증	· 신용 6~10등급 또는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의 저소득 자영업자(농림어업인 포함) 및 근로자에 대한 보증

Q 햇살론 신용보증의 지원절차는?



용어설명

소기업·소상공인

소기업 : 상시 근로자수 10인 미만인 기업. 단,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50인 미만

소상공인 : 상시 근로자수 5인 미만인 기업. 단,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10인 미만

보증료

- 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를 보증하여 주고 이에 따른 대가를 금전으로 환산하여 청구하는 것으로, 보증금액에 대하여 신용도, 보증금액, 보증기간 등에 따라서 연 0.5~ 2.0%의 보증료를 수납
 - ☞ 보증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마다 분할납부 가능
 - ☞ 보증서 발급 후 보증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수납한 보증료 전액 환급
 - ☞ 보증기간 내에 보증채무가 소멸된 경우에는 소멸일 익일 이후의 보증료를 환급

지급보증의 보증

- ☞ 소기업 등의 채무를 금융기관이 보증(지급보증)하는 경우에 소기업 등의 채무를 금융기관이 그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취득하는 구상권에 응하여야 할 금전 채무를 보증

어음보증

- ☞ 소기업 등이 상거래에 수반하여 발행(인수 및 배서 포함)한 어음상의 채무와 상거래에 수반하여 취득한 어음에 자금유통 등을 위하여 배서한 어음상의 채무 또는 상거래에 관련하여 담보 목적으로 발행한 어음상의 채무에 대해 보증

이행보증

- ☞ 소기업 등이 정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자와의 건설공사, 물품의 공급·구매 또는 용역제공을 위한 계약(입찰 포함) 체결에 수반하여 부담하는 각종 보증금의 지급채무 보증

시설대여 보증

- ☞ 소기업 등이 시설대여계약에 의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보증

6-4

매출채권보험

| 납품대금 때일 염려 없는 거래안정망

중소기업이 외상으로 물건을 팔고 대금을 받지 못할 것을 대비한 보험입니다. 중소기업은 경기 전망이 불투명할 경우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하면 이러한 불확실성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지원 규모

보험인수 18조원으로 운용

가입 대상

구 분	보험계약자 기본 가입 요건		
	규 모	업 력	업 종
매출채권보험	중소기업 및 초기중견기업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어음보험			(인수 부적합업종 제외)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다음과 같은 기업은 보험에 가입할 수 없음
 - *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등)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구상채권을 회수하지 못하였거나 부실처리한 기업, 휴업 중인 기업 등
- ✓ 다음과 같은 기업에 대한 채권(외상매출금+받을어음)은 보험에 가입할 수 없음
 - *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관계기업, 해외소재기업, 보험인수심사일 현재 매입채무의 변제를 연체중인 기업, 신용도 미달 기업 등
- ✓ 보험운용 필요성이 낮은 일부 업종은 '보험계약 제외 업종'으로 운용함
 - * 도박·게임, 사치·향락, 주류·담배 관련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등

지원 내용

- 기업이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취득한 매출채권의 보험인수를 통해 기업의 외상거래에 대한 위험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구매자의 폐업, 이행지체 등의 사유로 매출채권 또는 어음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보험가입금액 범위에서 보험금을 지급

- 실제 상거래가 수반되지 않은 매출채권(또는 어음)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음

* 예) 자금유통을 목적으로 발행한 어음, 실거래가 없는 가공의 매출채권

보험 한도

- 매출채권보험 : 신청기업(계약자)에 대해 최고 50억원(어음보험 포함)
- 어음보험 : 신청기업(계약자)에 대해 최고 10억원

보험료

- 보험가입 매출채권 및 어음에 대하여 최저 0.1% ~ 최고 5.0%

상품 종류

유형별	종류별	표준처리기간	보험대상
매출채권보험	한사랑보험	8일	개별 구매처에 장래 발생할 매출채권
	다사랑보험	15일	모든 구매처에 장래 발생할 매출채권
	일석e조보험	15일	개별 또는 모든 구매처에 장래 발생할 매출채권 * 판매위험 보장과 동시에 보험청구권을 담보로 금융회사에서 대출이 가능
어음보험	개별어음보험	8일	개별 구매처에서 이미 취득한 어음
	포괄어음보험	15일	포괄한도 설정 후 개별 구매처에서 수취할 어음

|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 보험계약자 규모 및 보험한도 등 변경

기 존		→	변 경	
구분	지원한도		구분	지원한도
① 보험계약자 가입규모	중소기업	보험계약자 가입규모	중소기업, 중소기업협동조합, 중견기업	
② 보험계약자 보험한도	30억원	보험계약자 보험한도	50억원	
③ 구매자 최고보험한도	대기업: 최고 100억원 중소기업: 최고70억	구매자 최고보험한도	대기업: 최고 150억원 중견기업: 최고 100억원 중소기업: 최고70억	

신청·접수

- 회사소재지와 가까운 신용보증기금 신용보험센터 및 영업점에서 신청 가능
- 신용보증기금과 거래중인 기업은 거래 관할점으로 신청

심사·평가내용

- 신용보증기금은 계약자 및 구매자(어음관련인 포함)의 재무자료 등을 토대로 신용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보험인수금액, 보험인수구매자 등 결정

제출 서류

- 매출채권보험 : 매출채권보험청약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최근 4개 분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근보험), 세금계산서 사본(개별보험), 당기 매출액 확인자료 등
- 어음보험 : 어음보험청약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어음 및 세금계산서 사본, 당기 매출액 확인자료 등

처리 절차

보험가입절차	세 부 내 용
보험상담	보험가입요건, 금액 등에 대해 상담
↓	
청약접수	보험가입 청약서 접수
↓	
신용조사	신청기업 및 구매자 신용조사
↓	
보험심사	인수의 적정성 심사, 구매자별 가입금액 사정
↓	
보험료납부	보험료 납부 (일시납 또는 분납)
↓	
보험증권발급	보험증권 발급

문 의 처

- 신용보증기금(www.kodit.co.kr) : 전국 단일전화 1588-6565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 ☎1357

궁금해요! 증기맨



Q 매출채권보험과 신용보증의 차이점은?

A	구 분	매출채권보험(신용보험)	신용보증
	특 징	신용위험을 관리하는 금융안전망	신용보완을 통한 추가적 신용창출
	계약성격	자기를 위하여 피보험자가 체결	채권자를 위한 피보증인이 체결
	수수료성격	예상손실에 대한 분담금	보증에 따른 대가

Q 보험금 지급청구 사유와 시기는?

- A** 구매자가 다음 중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당좌부도(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게 될 부도사유가 발생한 때)
 - 폐업 또는 해산 등기된 때, 회생, 파산, 개인회생 절차의 개시신청이 있는 때
 - 구매자가 외상매출금을 결제기일까지 상환하지 아니하고 2월이 경과한 때
- 보험금 청구시기
- 상기 보험금 청구사유가 발생하면 바로 보험금 지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Q 보험금 지급청구 시 필요서류는?

- A** 보험금 지급청구 시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보험금지급 청구서(신보가 정하는 서식) 및 보험증권 사본
 - 매출채권의 발생 및 실제손해금액 산정 서류 사본
(물품공급계약서, 발주서, 인수증 또는 화물송장,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 매출채권이 어음상 채권인 경우 해당어음 사본
(전자어음인 경우 부도전자어음 확인서)
 - 기타 보험금 지급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용어설명

매출채권 : 상품·제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상거래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외상매출금”과 “받을어음”

보험가입 매출채권 : 매출채권보험에서 보험계약자와 개별 구매기업 사이에서 향후 1년간 발생될 매출채권총액에 인수비율(보험가입비율)을 곱한 금액으로서 보험에 가입될 금액

보험금액 : 매출채권보험에서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자(신보)가 보험계약자에게 보상할 수 있는 최고한도액. 보험가입매출채권을 매출채권회전율로 나누어 산출



기술개발 지원

제 3 부

신기술·신제품 개발,
든든하게 후원합니다.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www.smba.go.kr



중기백과 함께 알아보는 기술개발지원



- Q** 무급수 순환 화장실 제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바이어로부터 기차에 공급할 제품 개발 의뢰를 받았는데 자금이 부족합니다.
- A** 해외수요처에서 기술개발을 주문받아 납품하는 것이므로 해외수요처연계기술개발사업(구매조건부 R&D)에 지원하시면 됩니다. 총사업비의 55%이내에서 최고 1.5 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수요처는 해외수입자 신용등급 E등급 이상이고, 해외수요처와 개발, 구매계약 등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외수요처 연계기술개발사업 참조)
- Q** 산업용 케이블을 개발하는 기업입니다. 제품 신뢰성에 자주 문제가 발생해 전문 연구기관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데 이런 경우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A** 산학연 협력기술개발사업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첫걸음기술개발의 경우 정부 R&D에 처음 참여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중기청과 지자체가 매칭펀드 형식으로 지원하며 1억원 한도 내에서 75%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약기술개발은 혁신역량 부족, 성장 정체 기업 등에 대해 1년간 1억원 한도 내에서 연구개발비의 75%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산학연 협력기술개발사업 참조)
- Q** 자동차, 선박부품 등의 주철을 제조하는 소기업입니다. 주문물량은 느는데 계속 사람을 뽑자니 애로가 많아 생산공정 개선을 통해 인력문제를 해소하고 싶습니다.
- A**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사업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동 사업은 R&D 역량이 부족한 50인 미만 소기업의 현장수요가 많은 제품·공정개선 분야를 과제당 5천만원을 한도로 총사업비의 75%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사업 참조)
- Q** 3년 전부터 난연 플라스틱 제조 및 개발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시험 장비가 고가이다보니 자체 해결이 어려워 연구개발이 진척되지 않고 있습니다.
- A**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연구장비를 이용하면 3,000만원 한도 내에서 장비사용료의 70%까지 정부가 지원해 드리는 사업이 있습니다. 바우처를 먼저 구매한 후 장비를 이용하시는 방식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 참조)

- Q** 중소기업이 R&D 기술개발에 참여하여 사업화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사전 기획 지원 프로그램은 없는지요?
- A** R&D 기획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성이 높고 발전 가능성이 큰 분야 및 기술에 기업이 보유한 R&D 자금, 인력 등 기술개발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정부가 중소기업의 R&D 기획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 R&D 기획 역량 제고사업 참조)
- Q** 냉장고나 세탁기의 PC기판 사출성형 업체입니다. 공장에서의 생산관리를 자동화 하려고 하는데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A** 생산현장디지털화 사업을 지원받아 생산시점관리(POP)를 구축하시면 됩니다. 작업 지시서에 제품명, 납기일, 생산수량, 작업자 등의 정보가 담긴 바코드를 붙여서 생산관리를 하게 되면 생산현황을 일목요연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생산현장 디지털화사업 참조)
- Q** 산업용 잉크 제조기업입니다. 중소기업이다보니 이직이 잦아 기술유출 우려가 늘 존재하는데 자체적으로는 시스템을 구축하기가 어렵습니다.
- A** 중소기업의 기술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기술보호 전문상담과 보안시스템을 구축 해드리는 사업이 있습니다. 기술보호 상담의 경우 사전진단(1일)은 무료로 받을 수 있고(심층진단은 일정 비용 부담), 보안시스템 구축은 총비용의 50% 이내에서 4,000만원까지 지원해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술유출 방지사업 참조)



제 7 장

기술개발자금 지원

7-1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117
7-2 월드클래스 300 프로젝트 지원사업	121
7-3 창업성장기술개발	126
7-4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130
7-5 제품서비스기술개발사업	133
7-6 산합연협력 기술개발사업	136
7-7 공정·품질 기술개발사업	141
7-8 중소-중견기업 기술경쟁력강화 파트너십사업	144
7-9 중소기업 네트워크형 기술개발사업	147
7-10 기술전문기업 협력기술개발사업	151
7-11 중견기업 글로벌 도약 기술개발	153

7-1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사업

| 글로벌 시장을 지향하는 기술혁신 중소기업 육성

글로벌 전략품목 및 미래 성장유망 분야 등의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성장동력 창출 및 사업화 촉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규모

2,394억원(신규 644개 과제 1,268억원, 계속 469개 과제 1,126억원)

* '16년 지원현황 : 신청과제 1,855개 중 신규 562개 과제, 계속 470개 과제 선정(과제당 2.1억원)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각 세부사업별 신청자격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사업 신청가능

- 수출기업기술개발
 - 글로벌강소기업과제 : 중소기업청 “글로벌강소기업 육성사업”에 선정·지정된 기업
 - 수출유망과제 : 최근 2년 내 연간 수출액 100만불이상 500만불 미만 중소기업으로 지정된 수출 유망품목에 해당하는 기술을 개발하려는 기업
 - 수출초보과제 : 최근 2년 내 연간 수출액 100만불 미만 중소기업으로 지정된 수출 유망 품목에 해당하는 기술을 개발하려는 기업
- 혁신형기업기술개발
 -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지정된 신성장동력 품목에 해당하는 기술을 개발하려는 중소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가 부도, 휴·폐업 상태에 있는 경우

지원 내용

내역사업명	내 용
수출기업기술개발 (821억원)	<글로벌강소기업과제(266억원)> • 정부출연금은 총사업비의 65% 이내, 개발기간 2년 이내, 최대 6억원 • 수출역량이 우수한 “글로벌강소기업 육성사업” 선정 기업을 대상으로 R&D를 지원하여 히든챔피언 육성 후보기업으로의 성장을 지원(자유응모)
	<수출유망과제(416억원)> • 정부출연금은 총사업비의 65% 이내, 개발기간 2년 이내, 최대 6억원 • 수출액 100만불 이상 500만불 미만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FTA 활용 등 글로벌 유망품목의 기술개발을 지원하여 글로벌 강소기업으로의 성장을 촉진(품목지정)
	<수출초보과제(139억원)> • 정부출연금은 총사업비의 65% 이내, 개발기간 2년 이내, 최대 5.35억원 • 수출액 100만불 미만의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액 규모에 적합한 글로벌시장 타겟품목을 발굴·지원하여 수출액 안정화 및 수출 유망기업으로 육성(품목지정)
혁신기업기술개발 (1,573억원)	• 정부출연금은 총사업비의 65% 이내, 개발기간 2년 이내, 최대 5억원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ICT융합, 신소재, 디스플레이, 가전, 자동차 등 신성장동력 분야 유망품목을 지원(품목지정)

○ 내역사업별 개편내용

기 존			변 경		
구분	지원내용 및 한도		구분	지원내용 및 한도	
중소 기업 기술 혁신 개발	글로벌 전략 기술개발	• 정부출연금은 총사업비의 65% 이내, 최대 6억원	중소 기업 기술 혁신 개발	수출기업 기술개발	• 정부출연금은 총사업비의 65% 이내, 최대 6억원 • 수출액 100만불 미만 수출 초보기업 전용 R&D 신설
	혁신기업 기술개발	• 정부출연금은 총사업비의 65% 이내, 최대 6억원		혁신형 기업 기술개발	• 정부출연금은 총사업비의 65% 이내, 최대 5억원
	기업 서비스 연구개발	• 정부출연금은 총사업비의 65% 이내, 최대 1.5억원		폐지 후 제품서비스기술개발사업으로 독립 재기획	
	-		제품서비스 기술개발	• 정부출연금은 총사업비의 65% 이내, 최대 2억원	

신청·접수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 사업계획서 신청 : <http://www.smttech.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과제관리 → 과제신청 → 지원사업 선택 후,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구비서류) 등록

심사·평가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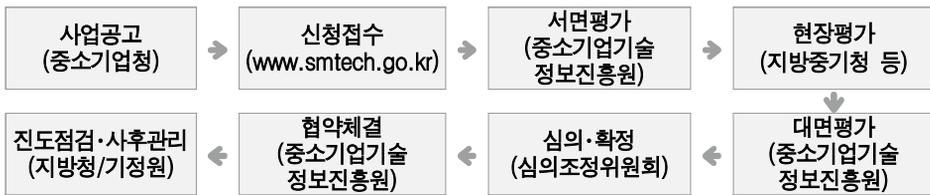
- 기술성 : 필요성, 기술개발 과정 및 방법의 적절성, 목표달성도의 평가방법
- 사업성 : 고용 및 수출가능성, 시장의 규모 및 성장성, 시장진입가능성, 사업화 계획의 타당성

제출 서류

- 사업계획서,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서 등
- 주관기관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이노비즈기업, 벤처기업 등 인증서(해당기업)
 - 수출액 관련 증빙자료(해당기업)
 - ▷ (직접수출) 한국무역협회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한 수출실적 증명원
 - ▷ (간접수출) 은행 또는 한국무역정보통신에서 발급한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 최근 년도 결산 재무제표
 - 기타 사업계획서 작성과 관련된 근거서류(우대사항 근거 포함)
 - * 신청양식은 중소기업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게재된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 서식에 참

처리 절차

- 사업추진절차



- 추진일정

구 분	공고	신청·접수	선정평가	선정평가	협약체결	
수출기업 기술개발	글로벌	1차	'16.12월	1월	2~3월	4월
	강소기업	2차	2월	3월	4~5월	6월
	수출유망	1차	'16.12월	1월	2~3월	4월
		2차	2월	3월	4~5월	6월
	수출초보	1차	'16.12월	1월	2~3월	4월
		2차	2월	3월	4~5월	6월
혁신형기업기술개발	1차	'16.12월	1월	2~4월	5월	
	2차	2월	3월	4~5월	6월	

문의처

- 중소기업청 기술개발과 : 042-481-4451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042-388-0312~0322
- 전용정보사이트 : www.smtech.go.kr(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
- 전화상담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궁금해요! 중기맨

Q 기술개발사업비 포인트제가 무엇인가요?

A 기술개발 기관의 계좌에 실제 자금을 입금하는 방식 대신 포인트를 지급·사용토 록하며, 개별 기업은 직접 자금을 집행하지 않고 비목·용도 및 금액을 명시하여 지급 요청하면, 통합 수탁은행이 실제 자금을 집행하면서 상응하는 포인트를 차 감하는 기술개발(R&D) 자금 집행·관리제도입니다.

용어설명

품목지정 : 사업공고시 전략품목을 제시하고, 제시된 품목내에서 신청기관이 자유롭게 과제를 신청한 후 선정하는 방식

자유공모 : 신청 중소기업이 필요한 기술에 대해 자유롭게 목표 및 내용 등을 정해 응모하는 과제

심의조정위원회 : 기술개발사업의 운영체계 및 제도개선, 평가위원회 평가결과에 대한 조정·확정을 위한 위원회

기술료 납부 : 중소기업은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시 '성공'으로 판정받을 경우 아래의 납부방식을 선택하여 납부

▷ (정액기술료) 정부출연금의 10%를 기술료로 납부

▷ (경상기술료) 정부출연금의 12%를 한도로 매출발생년도로부터 5년간 징수

7-2

월드클래스 300 프로젝트 지원사업

| 세계적 수준의 전문 중견기업(월드클래스 기업) 육성

글로벌 기업으로의 성장의지와 잠재력을 갖춘 중소·중견기업을 월드클래스기업으로 육성함으로써, 취약한 산업의 허리를 강화하고 성장 동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며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에 기여

지원 규모

'17년까지 300개 선정예정

* '16년 지원현황 : 50개사 선정 지원('16년까지 누계 230개사 선정)

지원 대상

○ 중소·중견기업 중 기업규모와 기업 특성을 만족하는 기업

■ 기업규모

* '16년 결산 재무제표 기준 매출액 4백억원 이상(단, 시스템SW개발공급업 등)은 100억원 이상) 1조원 미만인 전 업종 중소2·중견기업3)

- 1) 표준산업분류상의 SW개발공급업(산업분류 58221), 응용 SW개발공급업(산업분류 5822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관리업(산업분류 620), 온라인·모바일게임 SW개발 및 공급업(산업분류 58211)
- 2) 중소기업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의한 기업
- 3) 중견기업은「중견기업성장촉진 및 경쟁력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기업

■ 선정요건

- * 전년도 매출액 대비 직·간접수출비중이 20% 이상인 기업 중 최근 3년간 매출액 대비 R&D투 자비율이 평균 2% 이상(또는 최근 5년간 연평균 매출액 증가율 15% 이상)인 기업
- * 전년도 매출액 대비 직·간접수출비중이 10%이상인 기업 중 최근 3년간 매출액 대비 R&D투 자비율이 평균 4% 이상인 기업
- * 또는 최근 3년간 연 직수출액 2천만불~1억불 1회 이상 경험한 기업 중 최근 3년간 평균 직 수출 증가율 5%이상(매출 5천만불 이상 기업은 증가율 제한 없음)인 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중견기업특별법 시행령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은 지원제외

유의사항 등

매출, 수출비중, R&D투자비율, 매출액 증가율 산정을 위한 재무제표는 종속회사가 있는 기업은 별도 재무제표, 없는 기업은 개별 재무제표임(연결 재무제표 기준 실적 불가)

지원 내용

- 선정된 중소·중견기업이 월드클래스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 시책을 패키지로 공급

① 전용 지원 프로그램 (7개 기관, 8개 시책)

구분	내용	지원기관
R&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적 수준으로 도약을 위한 핵심응용기술개발 지원(3~5년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당 연간 최대 국비 15억원 지원, 기업부담 50% * 평가결과 일부 기업은 R&D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월드클래스 300 선정기업 전 주기 특허전략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당 8천만원, 기업부담금 일부포함 	한국산업 기술진흥원 한국지식 재산전략원
마케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시장 진출을 위한 해외마케팅 지원(5년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 마케팅 활동계획 수립부터 이행까지 종합 지원 (기업별 배정된 KOTRA 전문위원을 통한 맞춤형 지원) - 기업당 연간 최대 국비 1억원 지원, 기업부담 50%(최대 5년 지원) 	대한무역 투자진흥공사
수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무자 맞춤형 애로해결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P, 해외수주, 국제조세, 물류 등 분야별 맞춤형 교육(전액지원)·심화컨설팅 지원(기업부담 50%) - 경영일반 및 해외진출법인 관련 은행(기업, 우리, 신한) 무료 컨설팅 제공 	한국중견 기업연합회
경영 고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용박람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용박람회 무료참가 	한국산업 기술진흥원

② 연계 지원시책 (13개 기관, 13개 시책)

구 분	내 용	지원기관
무역 투자	▶ 해외 전시회 한국관 지원사업 선정시 우대 가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해외 M&A 전과정제에 대한 맞춤형 지원 선정 우대	
금융	▶ 글로벌성장사다리(Trade Champ) 서류심사시 우대 가점	한국무역보험공사
	▶ 포괄수출금융 한도우대, 수출중소기업 특례신용대출 평가시 가점, 우대금리, 여신한도 확대 적용 등 우대	한국수출입은행
	▶ KDB Global Star 참여시 우대지원 (신청자격 요건 면제, 재무요건 심사 면제 등)	한국산업은행
	▶ 자금지원 및 보증료 등 우대지원	농협은행
	▶ 자금지원 및 수수료 감면 등 우대지원	하나은행
	▶ 보험요율 할인, 보증한도 확대 등 우대지원	SGI서울보증
	▶ 글로벌 금융 지원(해외 현지법인 금융지원 서비스 등)	SC제일은행
컨설팅	▶ 글로벌 기술혁신 IP 전략개발 지원사업 우대지원	한국지식재산전략원
	▶ 국제 지적권 분쟁 예방컨설팅 우대 지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인력	▶ 중소·중견기업 디자인 인력지원사업 우대지원	한국디자인진흥원
	▶ 온라인상시채용관 구축을 통해 인재확보 지원	잡코리아(유)
	▶ 기술혁신형 인력지원사업 우대 가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공고시 지원시책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월드클래스 300 기업 선정 기준

기 준	변 경
① 전년도 매출액 대비 직·간접 수출비중이 20% 이상인 기업 중 최근 3년간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이 평균 2%(또는 5년간 연평균 매출액 증가율 15% 이상)인 기업 ② 최근 3년간 연 직수출액 2천만불~1억불 1회 이상 경험한 기업 중 최근 3년간 평균 직수출 증가율 5%이상(매출 5천만불 이상 기업은 증가율 제한없음)인 기업	①, ② 좌동 ③ 전년도 매출액 대비 직·간접 수출비중이 10% 이상인 기업 중 최근 3년간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이 평균 4% 이상인 기업

신청·접수

시행계획 공고 및 양식교부 : '17.1월

- 월드클래스 300 사이트(www.worldclass300.or.kr)에 인터넷 전산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신청서(성장전략서, 첨부서류, 전산접수증)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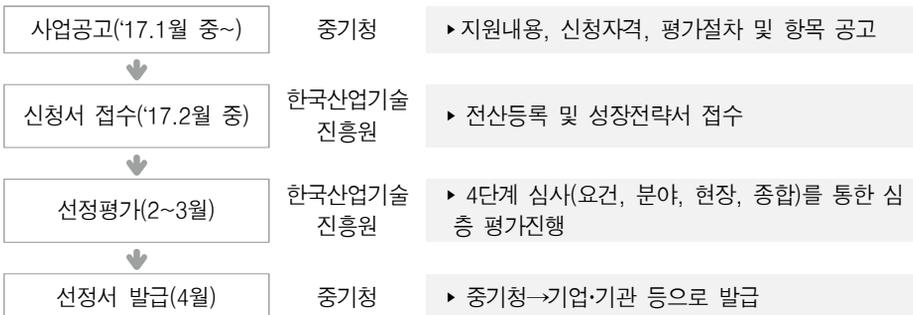
심사·평가 주요내용

- (선정절차) 공고(중소기업청) → 신청서 접수(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요건심사 → 분야평가(4개 분야별 평가위원회) → 현장확인 및 검증(평가위원회) → 종합평가(평가위원회) → 선정
 - * 성장전략 발표는 분야평가 단계에서 진행
- (평가항목) 요건심사 통과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확보, 시장확대, 투자, 경영 혁신 및 고용 등 4개 분야별로 시장·기술현황 분석의 객관성·종합성, 기업 역량의 우수성, 전략목표의 명확성·적정성·달성가능성, 전략·실행계획의 구체성·타당성, 자기노력의 적극성 등을 평가

제출 서류

- 전산접수증 1부, 성장전략서 25부 및 첨부서류 각 1부

처리 절차



문의처

- 중소기업청 기업혁신지원과 : 042-481-6842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견기업사업팀 : 02-6009-3511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지원정책」 참조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http://kiat.or.kr>) 「사업공고」 참조
- 월드클래스 300 사이트(www.worldclass300.or.kr) 「사업공고」 참조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 ☎1357

용어설명

「World Class 기업」의 개념 : 지속적 혁신과 비전속적인 거래관계를 통해 빠르게 성장하는 글로벌 전문기업을 의미

- ① (양적규모) 성장정체를 극복하고 본격적 성장궤도에 진입한 중견기업
- ② (질적특성) 혁신성, 독립성, 성장성
 - (혁신성) 누적적 혁신을 통해 성장동력과 경쟁우위를 지속적으로 확보
 - (독립성) 특정 대기업에 계열화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성장
 - (성장성) 세계 시장에서 지배력을 확대(예시 : 세계시장 1~3위)

7-3

창업성장기술개발

| 창업기업 기술개발 지원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기술개발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창업 기업에게 기술개발 자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원 규모

약 1,450개 과제(전체 예산 1,951억원)

* '16년 지원현황 : 신청과제 5,618개 중 1,331개 선정지원(과제당 평균 1.4억원)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다음의 과제별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 창업기업과제 : 창업 후 7년 이하인 기업
 - 창조경제연계과제 : 창업 후 7년 이하인 기업 중 창조경제혁신센터(창조경제타운) 추천기업
 - 기술창업투자연계(TIPS)과제 : 액셀러레이터(엔젤투자보육 전문법인), 초기 전문VC, 선도 벤처기업 등 TIPS 운영사의 투자(확약) 및 추천을 받은 (예비)창업팀(2인 이상)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접수 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 기업의 부도/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이며, 부채비율 계산시 투자유치에 의한 항목은 제외),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파산·회생 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에 명시

지원 내용

- 창업 후 7년 이하인 창업기업에게 필요한 기술개발 자금을 총 사업비의 80% 이내에서 1~5억원(기술개발기간 : 1~2년)까지 지원

○ 세부사업 내역

구 분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중	지원방식
창업기업 과제	창업과제	최대 1년, 2억원	80% 이내	자유공모 품목지정
	(여성참여활성화과제)	(최대 1년, 1억원)		(자유공모)
	창조경제연계과제	최대 1년, 1억원		자유공모
기술창업투자연계(TIPS)과제		최대 2년, 5억원		자유공모 전략분야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업력별 지원한도 차등 폐지 및 품목지정 방식 도입(일부), 수출평가 강화
 - 지원한도 : ('16) 3년이하 1.5억원, 3년초과 2억원 → ('17) 2억원 (업력무관)
 - 품목지정 : ('16) 자유공모 → ('17) 자유공모 + 품목지정(중소기업 기술로드맵 도출 품목)
 - 선정평가 : 수출잠재력 평가 배점 대폭 상향

신청·접수

과제별 공고 참조('16.12월 중 공고 예정)

-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 신청양식은 과제별 공고에 첨부

심사·평가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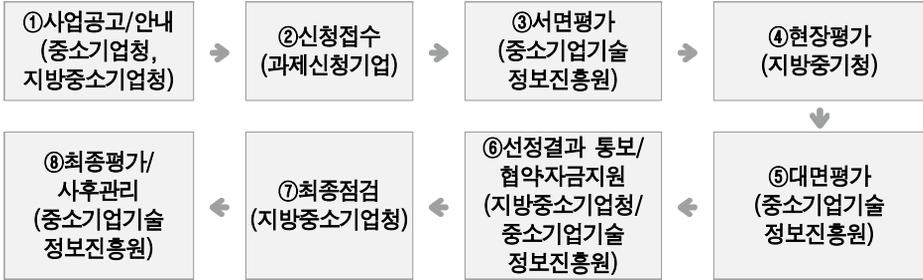
- 기술성 : 창의도전성, 기술개발 전략(타당성, 구체성, 역량 등)
- 사업성 : 수출잠재력 및 고용성과 창출 정도, 사업화 가능성 등

제출 서류

-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창업후 3년 미만인 기업은 제외), 기타 관련된 근거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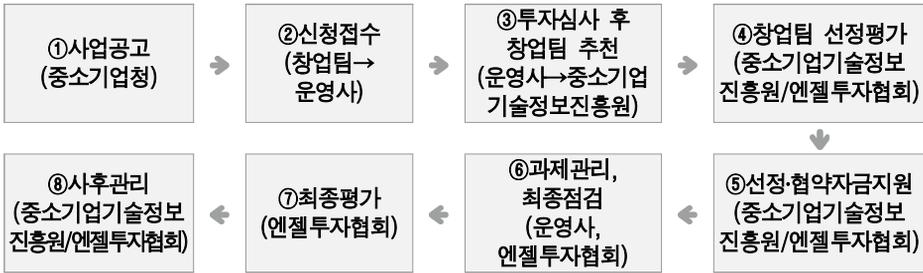
처리 절차

< 창업기업 과제 >



* 창조경제연계과제 : 서면·대면평가(2단계)를 온라인평가(1단계)로 대체

< 기술창업투자연계(TIPS) 과제 >



문의처

- 중소기업청 기술개발과 : 042-481-4447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042-388-0331, 0341
- 홈페이지 :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 ☎1357

궁금해요! 중기엔



- Q** 창업 3년 미만의 기업은 부채비율이나 자본잠식에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한가요?
- A** 자격요건의 경우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검토하므로 관련 사항을 해소한다면 신청 가능하나, 창업 3년 미만의 기업의 경우 부채비율 1,000% 이상이거나 자본전액 잠식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Q** 창업과제의 경우 주관기관 외에 참여기업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 A** 참여기업은 선택할 수 있으며, 기술개발 및 사업화에 필요한 경우 참여토록 하시면 됩니다.

7-4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 수요처(투자기업)의 구매를 전제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지원

수요처(대중견기업, 공공기관, 해외기업 등)에서 필요로 하는 신제품에 대해 기술 개발비 일부를 지원하고 수요처에서 이를 구매

지원 규모

약 715개 과제(전체 예산 1,411억원)

* '16년 지원현황 : 신청과제 1,246개 중 562개 선정지원(과제당 평균 2.01억원)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원칙으로 하며, 수요처(투자기업)로부터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자발적 구매동의서'를 발급받은 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접수 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 기업의 부도/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이며, 부채비율 계산시 투자유치에 의한 항목은 제외),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파산·회생 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에 명시

지원 내용

- (수요조사/글로벌협력 과제) 국내·외 수요처 및 투자기업(정부, 공공기관, 대중견기업 등)에서 구매의사를 밝히고 개발을 제안한 과제
- (기업제안 과제) 중소기업의 자체 아이디어(기술)나 개발기술을 수요처 및 투자기업에 제안하여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를 받아 제안한 과제

구 분	지원규모	개발비 비중		
		정 부	주관기관	수요처
국내수요처 R&D (수요조사, 기업제안)	최대 2년, 5억원 * 일부과제(국방, 안전 등)의 경우 개발기간 최대 3년	65% 이내	25% 이상	10% 이상
해외수요처 R&D (글로벌협력, 기업제안)	최대 2년, 5억원	65% 이내	35% 이상	-
민관공동투자 R&D (수요조사, 기업제안)	최대 2년, 10억원 * 일부과제(국방, 안전 등)의 경우 개발기간 최대 3년	75% 이내	25% 이상	투자기업 1:1매칭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일부과제의 개발기간 변경
 - 전략분야(국방, 안전 분야 등) 과제의 개발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

신청·접수

과제별 공고 참조('16.12월 중 공고 예정)

-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tech.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 신청양식은 과제별 공고에 첨부

심사·평가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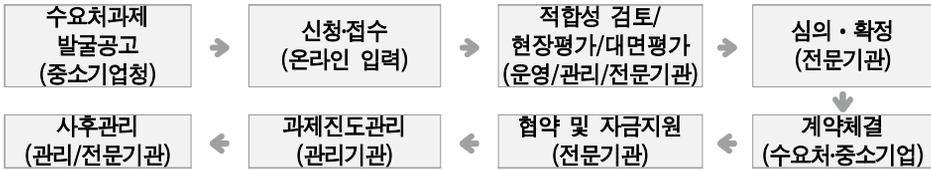
- 접수된 사업계획서 내용,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
- 현장조사 시 신청자격, 기술개발 및 사업화 역량, 과제중복성, 사업비 계상, 재무제표 등 증빙서류 확인
- 사업계획의 타당성·기술성·시장성·사업성 등에 대한 평가 실시

제출 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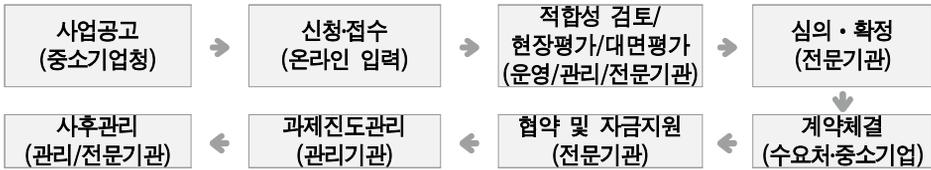
-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창업후 3년 미만인 기업은 제외), 기타 관련된 근거서류

처리 절차

< 수요조사 / 글로벌협력 과제 >



< 기업제안 과제 >



* (전문기관) 기정원 (관리기관) 지방청, 대중소재단 (운영기관) KOTRA, INKE, 기품원, 산학연협회

문의 처

- 중소기업청 생산혁신정책과 : 042-481-4582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042-388-0711~0715
- 대중소기업협력재단 : 02-368-0711~0718
- 홈페이지 :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 ☎1357

궁금해요! 중기맨



- Q** 수요처(투자기업)의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는 꼭 제출해야 하나요?
- A** 기업제안 및 수요조사과제 모두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는 필수 제출서류입니다.
- Q** 해외수요처의 신용조사 보고서는 꼭 제출해야 하나요?
- A** 기업제안과제 신청 시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발급한 국외기업 신용조사보고서는 필수제출 서류입니다. 국외신용조사보고서는 발급시까지 4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니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7-5

제품서비스 기술개발사업

| 중소기업 및 전통서비스업의 생산성 향상 및 신성장동력 창출

중소제조제품의 서비스화 및 전통서비스 분야 신규 비즈니스모델 개발 지원을 통해 생산성 향상 및 신성장동력을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규모

58억원(신규 32개 과제), '17년 신설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각 세부사업별 신청자격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사업 신청가능

- 제품서비스화 : 중소기업 영위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 신규서비스창출 : 전통서비스업* 영위 중소기업 및 관련 협단체
 - 식당 등 요식업, 숙박업, 전통시장을 포함한 소매업, 소규모 병의원, 소형 운수업 등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가 부도, 휴·폐업 상태에 있는 경우

지원 내용

내역사업명	내 용
제품서비스화 (35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출연금은 총사업비의 65% 이내, 개발기간 1년 이내, 최대 2억원 • 기존 제조제품과 서비스를 융합하기 위한 소규모 단기 상용화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신산업 창출 및 고부가가치화 지원(품목지정)
신규서비스창출 (23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출연금은 총사업비의 65% 이내, 개발기간 1년 이내, 최대 1.5억원 • 전통서비스업 분야의 신규 비즈니스 모델 창출을 위한 무형의 서비스 및 시스템 개발을 통해 중소기업의 신성장 동력화 촉진

신청·접수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 사업계획서 신청 : <http://www.smtech.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과제관리 → 과제신청 → 지원사업 선택 후,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구비서류) 등록

심사·평가 주요내용

- 창의·도전성, 기술성 : 서비스 모델 개발의 창의·도전성 및 필요성, 기술개발 과정 및 방법의 적절성, 목표달성도의 평가방법 및 정량적 측정 가능성
- 사업성 : 고용 및 매출 가능성, 생산성, 시장의 규모 및 성장성, 시장진입가능성, 사업화 계획의 타당성

지원 내용

사업계획서,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서 등

- 주관기관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중소기업 확인서(협·단체 : 협·단체 확인서)
- 4대 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
- 최근 년도 결산 재무제표(국세청 발급)
- 기타 사업계획서 작성과 관련된 근거서류(우대사항 근거 포함)
 - 신청양식은 중소기업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게재된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 서식에 참고

처리 절차

- 사업추진절차



○ 추진일정

구 분	공고	신청·접수	선정평가	협약체결
제품서비스화	'16.12월	'16.12월~'17.1월	1~2월	2월
신규서비스창출	'16.12월	'16.12월~'17.1월	1~2월	2월

문의처

- 중소기업청 기술개발과 : 042-481-4451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042-388-0312~0322
- 전용정보사이트 : www.smtech.go.kr(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
- 전화상담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7-6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 대학·연구기관과의 공동 기술개발 지원

중소기업이 대학·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개발 자원을 활용하여 기술혁신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과 대학연구기관 간 공동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규모

약 2,500개사(전체예산 1,308억원)

- 첫걸음협력(387억원) : 600개, 도약협력(308억원) : 380개
- 전략협력(460억원) : 380개
-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153억원)

* '지원기업 수는 예산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16년 지원현황 : 약 3,000개)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원칙으로 하되, 과제별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 첫걸음 협력 : 정부R&D에 처음 참여하거나 기업부설연구소를 처음으로 설치하는 중소기업
 - 도약 협력 : 종사자수 5인 이상이거나 매출액 5억원 이상인 중소기업
 - 지역유망중소기업 과제 : 지역유망중소기업의 범주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지역별로 지자체와 지방중기청이 협의하여 별도 안내 예정)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및 휴·폐업중인 경우
- ✓ 국세·지방세 체납자인 경우,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인 경우
- *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진공에서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 부터 재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인)은 참여 가능
- ✓ 기타 공고문 상 지원제외 대상

지원 내용

- 첫걸음협력(387억원) : 정부 R&D에 신규로 참여하거나 기업부설연구소를 신규 설치하려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학 또는 연구기관과의 공동R&D 지원
- 도약협력(308억원) : 기술력 우수 선점, 기술보완 등을 희망하는 기술력이 있는 중소기업의 대학 또는 연구기관과의 공동R&D 지원
- 전략협력(460억원) :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향상, R&D 성과 제고 등을 위해 대학 또는 연구기관과의 전략적 협력체계 구축 및 유망 중소기업 발굴·육성
 - 산연 전용 : 중소기업 지원 전담조직을 보유한 연구기관의 자체 지원역량과 연계한 공동 R&D 지원
 - 연구마을 : 연구 인프라가 우수한 대학연구기관 내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집적을 통한 상시 기술협력 지원
 - 지역유망중소기업 : 지역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대학·연구기관과의 공동R&D를 지원하여 지역유망기업으로 육성
- 연구장비 공동활용(153억원) : 대학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장비를 중소기업이 연구개발에 활용하도록 장비 이용료 지원

< 지원내용 및 지원한도 >

구 분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중	지원방식
첫걸음협력		최대 1년, 1억원	75% 이내	자유응모
도약협력		최대 1년, 1억원	75% 이내	자유응모
전략 협력	산연전용	최대 1년, 1.5억원	75% 이내	품목지정
	연구마을	최대 2년, 2억원	75% 이내	
	지역유망중소기업	최대 2년, 4.5억원	75% 이내	
연구장비공동활용(장비이용료)		3천만원(2회 연장 가능)	60~70% 이내	자유응모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기업이 공동연구개발에 적합한 전문가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어 첫걸음협력, 도약협력의 경우 기본적으로 매칭기관이 기업과 전문가를 매칭
- 산학연협력사업중 첫걸음협력, 도약협력, 전략협력 과제의 주관기관은 중소기업이며, 대학 또는 연구기관은 공동개발기관으로 참여
-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을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에 편입

- 전략적 산학연협력체계 구축 및 유망 중소기업 발굴·육성을 위해 지역유망 중소기업 과제 신설

신청·접수

-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 단, 연구마을·산연전용 과제는 해당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 직접 신청해야 하며, 연구마을 운영대학 및 산연전용 연구기관은 별도 안내 예정)
- 신청시기
 - 첫걸음협력, 도약협력 : 1, 4, 7월
 - 연구마을, 산연전용 운영기관 : 2월
 - 연구마을, 산연전용 지원과제 : 4, 6월
 - 지역유망중소기업 과제 : 3월
 -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 : 연중 수시 신청·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 요건검토(중소기업 여부 등을 검토), 서면평가(사업계획서를 서류로 평가), 현장조사(현장실태 등을 조사), 대면평가(사업계획의 적합성, 기술성 등을 발표) 등을 통해 과제 선정
 - * 세부 내역사업별 평가내용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공고 및 관리지침을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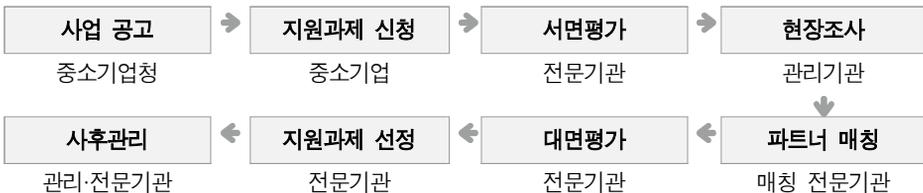
제출 서류

기술개발사업 신청서 등

- * 신청양식은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게재

처리 절차

- 첫걸음 협력, 도약 협력



○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



문의처

- 중소기업청 기술협력보호과 : 042-481-4453, 6867
지방중소기업청 제품성능기술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042-388-0735, 0736, 0742, 0740(연구장비)
한국산학연합회 : 042-720-3350 ~ 3356
-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 1357

궁금해요! 중소기업



- Q** 연구마을, 산연전용 과제에 참여하고 싶은데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A** 연구마을, 산연전용 과제는 대학·연구기관이 발굴한 과제를 자체평가를 통해 전문기관에 추천하고 있어,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대학·연구기관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 Q**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사업 바우처구매는 어떻게 하나요?
- A**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기업부담금을 납부하면 바우처(정부지원금 + 기업부담금)가 발급됩니다.
- Q** 지역유망중소기업과제에 신청 가능한 '지역유망중소기업'은 지자체에서 지정·운영하는 유망중소기업을 의미하나요?
- A** 본 사업에 신청 가능한 '지역유망중소기업'에 대해 지자체와 지방중기청이 협의하여 공고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으로, 기존에 지자체별로 지정·운영하고 있는 유망중소기업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7-7

공정·품질 기술개발사업

| 제품 및 공정개선 기술개발 지원

제품생산 시간 및 비용 절감을 위한 공정개선과 제품의 성능 및 품질 향상을 위한 제품개선 기술개발 지원

지원 규모

770개사(전체 예산 360억원)

-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695개, 298억원)
- 뿌리기업 공정 기술개발(75개, 62억원)

* '16년 지원현황 : 제품·공정 546개 270억, 뿌리기업공정 61개 57억, 현장수요형 73개 50억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단, 공정개선과제는 공장등록증 또는 직접생산 확인 증명서 보유기업
- 뿌리기업 공정 기술개발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거 지정된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주관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이거나 국가연구 개발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 주관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국세·지방세 체납자 이거나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인 경우 등

지원 내용

- 제품·공정개선(695개, 298억원) : 기존 공정 및 제품 개선을 위한 기술개발 비용을 지원
- * 과제당 5천만원 한도(총 사업비의 75% 이내), 9개월 이내

- 제품개선 : 기존 제품의 성능 및 품질 향상 등 제품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품개선 기술개발 비용을 지원
 - 공정개선 : 생산공정의 자동화·최적화 및 효율화 등 서비스R&D를 적용한 공정혁신 기술 개발 비용을 지원
- 뿌리기업공정(75개, 62억) : 기술의 파급성 및 공용성이 매우 높은 뿌리기술의 적용범위 확대를 위한 제품 적용기술 및 공정개선 기술개발 비용을 지원
- * 과제당 1억원 한도(총 사업비의 75% 이내), 1년 이내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시장수요 적기 대응을 위한 수시 시행
 - 제품·공정개선 : 연 4회 시행 → '17년 1, 3, 6, 9월
 - 뿌리기업공정 : 연 3회 시행 → '17년 2, 5, 8월
- 지방중소기업청 주관으로 지역별 특성에 따른 제품개선 기술개발 지원(별도 공고)
- 가점 사항 변경

가 점	2016년			2017년
	-기업규모(1~3점)			
	20인이상 50인미만 1점	10인이상 20인미만 2점	10인미만 3점	
	-스마트공장과 연계된 과제 : 2점 -바우처 사용기업 우대가점 : 2점 -TCB 평가결과 T4등급(양호) 이상 : 2점 -기업활력법상 사업재편 승인 중소기업 : 3점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 최대 2점			

* 세부 사항은 사업 공고문 참고

신청·접수

구 분	공고	신청·접수	선정평가	협약체결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	'16년 12월	1,3,6,9월	2~11월	3~11월
뿌리기업 공정 기술개발	'17년 1월	2,5,8월	3~10월	4~11월

심사·평가 주요내용

- 기업의 기술개발 필요성 및 역량, 기술성 및 사업성, 수출실적 등을 현장에서 평가

제출 서류

○ 사업계획서 등 온라인 신청

- * 자세한 신청 양식은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smtech.go.kr)에 게재된 사업운영 지침 참고

처리 절차



- * 주관기관(중소기업),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관리기관(지방중소기업청)

문의처

- 중소기업청 기술협력보호과 : 042-481-4443/4460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042-388-0761~3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 ☎1357

궁금해요! 중기맨



Q 지역별 특성에 맞는 제품개선 지원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A 지방기업의 정부 R&D 사업 접근 여건을 개선하고, 전국 경쟁사업 지원시 지역 특화 산업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방 중소기업청 주관으로 제품개선 R&D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조건) 5천만원 이내, 개발기간 9개월 이내, 총사업비의 75%
- (지원내용) 지역별 특화사업의 제품개선을 위한 기술개발과제 지원

7-8

중소-중견기업 기술경쟁력강화 파트너십사업

|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협력하여 기술개발 추진

중소-중견기업(후보기업 포함)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신성장아이템을 발굴할 수 있도록 공동기술개발 자금을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 규모

10개 컨소시엄(전체 예산 30억원)

- 기업협력형과제 : 7개, 20억원
- 연구소협력형과제 : 3개, 10억원

* '16년 지원현황 : 기업협력형과제 7개 컨소시엄

지원 대상

중견기업(후보기업 포함) 및 참여기업(1개 이상)

- 주관기업은 직전년도 매출액 400억원 이상(단, SW개발공급업은 100억원 이상)
- 주관기업이 단독 신청할 경우에는 참여기업 탐색 및 컨소시엄 구성 지원
- 중견기업(후보기업 포함) 및 참여기업(1개 이상)
- 주관기업은 직전년도 매출액 400억원 이상(단, SW개발공급업은 100억원 이상)
- 주관기업이 단독 신청할 경우에는 참여기업 탐색 및 컨소시엄 구성 지원

지원 내용

- 중소-중견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공동기술개발자금
- 세부사업 내역

구 분	내 용	지원기간 및 금액	정부출연금
기업 협력형과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후보기업 포함)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사전기획 및 공동기술개발 지원	2년, 6.3억원	65% 이내
연구소 협력형과제 ('17년 신설)	원천-기반기술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중소-중견기업(후보기업 포함) 컨소시엄에 대학출연연구 기술개발에 참여하는 공동기술개발 지원	2년, 8억원	65% 이내

신청·접수

'16. 12월 ~ '17. 1월

- 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심사·평가내용

- 기술성 : 필요성, 기술개발 과정 및 방법의 적절성
- 사업성 : 시장진입가능성, 사업화 계획의 타당성, 고용 및 수출가능성, 시장의 규모 및 성장성

제출 서류

사업계획서, 신용상태조회 동의서 및 청렴서약서

- 신청양식은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게재된 사업공고 및 지침 참조

처리 절차

*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문의처

- 중소기업청 기업혁신지원과 : 042-481-6832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042-388-0764
-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 ☎1357

궁금해요! 중기맨



Q 주권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지 않고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A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권기업이 단독으로 신청하면 기술매칭지원단(한국지식재산전략원 주관)에서 관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참여기업을 탐색하여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용어설명

사전기획 : 본격적인 R&D 수행에 앞서, 중소-중견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신성장아이템 발굴, 시장진출, 사업화 전략구축 등 R&D 추진전략을 수립하는 절차

7-9

중소기업 네트워크형 기술개발사업

| 5개 이상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네트워크 협력체의 공동기술개발 지원

중소기업들이 네트워크 협력체를 구성하여 신기술·신제품 개발을 통해 신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즉시 사업화가 가능한 공동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규모

약 40개 과제(전체 예산 75억원)

* '17년 신규 지원사업

지원 대상

- 혁신형 중소기업(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기업 등으로 구성된 네트워크 협력체
 - 주관기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기술혁신형 또는 벤처기업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기업
 - 공동개발, 참여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공동개발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가 부도, 휴·폐업 상태에 있는 경우
 - * 자세한 사항은 세부 공고문에 명시

지원 내용

- (1단계 : 네트워크기획지원) 중소기업간 수평적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동반 성장을 위한 민간 중심의 R&D기획 지원으로 기업이 제안한 아이템의 타당성 검증 및 R&D기획 상세화

- (2단계: R&D) 모듈 혹은 완제품 개발을 위한 중소기업간 네트워크 R&D 지원

구 분	지원규모	개발비 비중	
		정 부	수행기관
네트워크 기획지원 (19억원)	최대 6개월, 30백만원	75% 이내	25% 이상
R&D (56억원)	최대 2년, 6억원	65% 이내	35% 이상

신청·접수

과제별 공고 참조('17.1월 중 공고 예정)

-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 신청양식은 과제별 공고에 첨부

심사·평가내용

- (기획지원 선정) 제출된 개념요약서(기술개발 주제, 구현방법, 네트워크 구성계획 등)를 기준으로 기술성, 사업성, 네트워크 적합성 및 실현가능성 등을 평가
- (R&D 선정) 기획과정의 충실성, 기획결과의 우수성, 사업화 가능성 등의 평가를 통해 R&D사업으로 연계(참여비율, 성과분배 등을 포함한 계약서 체결)
- 현장조사 시 신청자격, 기술개발 및 사업화 역량, 과제중복성, 사업비 계상, 재무제표 등 증빙서류 확인
- 사업계획의 타당성·기술성·시장성·사업성 등에 대한 평가 실시

제출 서류

-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창업후 3년 미만인 기업은 제외), 기타 근거서류

처리 절차



문의처

- 중소기업청 기술협력보호과 : 042-481-4450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042-388-0722, 0723
- 홈페이지 :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 ☎1357

궁금해요! 중기맨



- Q** 네트워크 협력체 구성요건은 무엇인가요?
- A** 네트워크 협력체는 주관기관(1개), 공동개발기관(2개 이상), 참여기업(사업화 지원기관 2개 이상) 등 총 5개 이상의 중소기업으로 구성됩니다.
- Q** 1단계 기획지원 신청시 5개 이상의 기업이 다 구성되어 있어야 하나요?
- A** 네트워크 협력체 구성은 2단계 R&D 신청 전까지 구성이 되어 있으면 됩니다. 1단계 네트워크 기획지원 신청 시에는 주관기관만 구성되어 있으면 되며, 기획지원 진행 중에 네트워크 구성을 완료해야 합니다.

→ 용어설명

품목지정 : 사업공고시 전략품목을 제시하고, 제시된 품목내에서 신청기관이 자유롭게 과제를 신청한 후 선정하는 방식

혁신형중소기업 : 기술혁신형(Inno-biz) 중소기업,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

심의조정위원회 : 기술개발사업의 운영체계 및 제도개선, 평가위원회 평가결과에 대한 조정·확정을 위한 위원회

기술료 납부 : 중소기업은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시 '성공'으로 판정받을 경우 아래의 납부방식을 선택하여 납부

- ▷ (정액기술료) 정부출연금의 10%를 기술료로 납부
- ▷ (경상기술료) 정부출연금의 12%를 한도로 매출발생년도로부터 5년간 징수

7-10

기술전문기업 협력기술개발사업

| 기술전문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R&D 성과 제고

중소기업과 기술전문성을 보유한 기술전문기업 간 협력 R&D를 지원하여 개방형 혁신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규모

48억원(신규 60개 과제), '17년 신설

* 기업 신청현황 · 예산집행 등에 따라 지원과제 수는 변동 가능성이 있음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가 부도, 휴·폐업 상태에 있는 경우
 - * 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진공에서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인)은 참여 가능

지원 내용

- 기술전문기업 협력기술개발(60개, 48억원) : 중소기업과 기술전문기업간 협력 R&D 지원
 - * 정부출연금은 과제당 2억원 한도(총사업비의 65% 이내), 개발기간 2년 이내

신청·접수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http://www.smtech.go.kr>)을 통한 사업계획서 온라인 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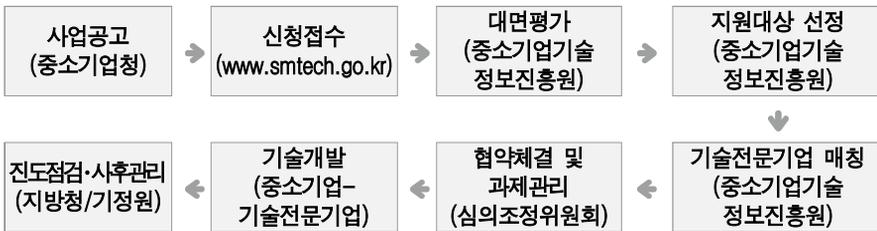
- 사업계획서 신청 : <http://www.smtech.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과제관리 → 과제신청 → 지원사업 선택 후,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 (구비서류) 등록

심사·평가내용

- 기술성 : 과제의 창의도전성 및 필요성, 기술개발 과정 및 방법의 적절성, 목표달성도의 평가방법 및 정량적 측정 가능성 등
- 사업성 : 고용 및 매출 가능성, 생산성, 시장의 규모 및 성장성, 시장진입가능성, 사업화 계획의 타당성 등

* 세부 평가항목은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http://www.smtech.go.kr>)의 사업별 공고를 참고

처리 절차



문의처

- 중소기업청 기술개발과 : 042-481-4445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042-388-0212
- 전용정보사이트 : www.smtech.go.kr(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
- 전화상담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7-11

중견기업 글로벌도약 기술개발사업

| 후불형 R&D 지원 프로그램

중견기업이 R&D 자금 투자를 선행하고 정부는 R&D 상용화 성과(수출, 매출증가율 등)에 따라 정부자금을 인센티브로 後지원 하는 기술개발 프로그램

선정 규모

60개사(전체 예산 60억원) → '17년 신규 추진사업

선정 대상

매출액이 1조원 미만의 중견기업 및 예비중견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월드클래스300 선정기업
- ✓ 휴폐업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등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지원 내용

- R&D 과제별 지원규모 : 총 사업비의 50% 이내에서 최대 5억원
- 지원기간 : 3년 이내
- 정부지원금 지원방식 : 총 정부지원금의 1/5 선지원, 4/5 후지원
 - 협약 후 정부지원금 중 20%만 선지원
 - 과제종료후 기술개발 결과를 평가하여 성공여부 결정
 - 기술개발 성공과제에 대하여 기술개발결과평가 1년이 지난 시점에 사업화 결과를 평가하여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화 목표 달성시 정부지원금 잔액(80%) 지급

신청·접수

17. 1월중

- 사업계획서 신청 : <http://www.smtech.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과제관리 → 과제신청 → 지원사업 선택 후,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 (구비서류) 등록

심사·평가내용

- (R&D 과제평가) “개발목표, 목표시장의 가치 및 수요, 개발시의성, 추진전략 및 체계, 사업 수행능력,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 등 R&D 적합성 평가
- (상용화 목표) R&D 결과물의 상용화 목표로 제시된 수출 또는 매출증가율(금액) 등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사업계획서에 반영

제출 서류

- 사업계획서,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서 등
- 주관기관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 중견기업 확인서, 기타 사업계획서 작성과 관련된 근거서류 등
 - 신청양식은 중소기업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게재된 중견기업 글로벌도약 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 서식에 참고

처리 절차



문의처

- 중소기업청 중견기업정책과 : 042-481-6815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02-6009-3502

궁금해요! 중기매



Q 후불형 R&D란 무엇입니까?

A 현행 R&D는 선정이 되면 기술개발기간 동안에 R&D에 필요한 자금을 선지급하는데 반하여, 동 사업은 선정시 총 정부지원금의 1/5만 지원하고 4/5에 해당하는 금액은 기업이 기술개발을 통한 상용화 목표를 달성한 경우에만 잔여 정부출연금을 지원하는 인센티브 구조의 R&D 프로그램입니다.
이는 기업의 R&D 책임성을 강화하고 성과중심의 R&D평가를 통해 중견기업의 글로벌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2017년 신규 도입되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용어설명

숙성평가 : 관련 기술·시장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1개월 내외의 기간동안 R&D 과제에 대한 심층 조사·분석·평가하기 위하여 7인 내외의 평가위원으로 구성·운영되는 평가를 말합니다.

평가위원회에서는 기업이 제시한 R&D 목표의 적절성, 개발비용의 적절성, 사업수행능력 및 목표 달성 가능성 등을 평가합니다.



제 8 장

기술개발 역량강화 및 인프라지원

8-1 중소기업 R&D역량제고	157
8-2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	161
8-3 뿌리기업 지원사업	165
8-4 뿌리기업의 품질혁신 지원사업	172

8-1

중소기업 R&D역량제고

| 사업화 성공을 위한 R&D기획 지원 및 현장 기술애로 해결

R&D 기획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교육과 기획을 지원하고, 현장의 기술애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규모

- R&D기획지원(55억원) : 180개 과제/3,000명 교육
 - * '16년 지원현황 : 신청과제 746개 중 178개 선정지원(과제당 평균 0.27억원), 2,645명 교육 (온라인 포함)
- 맞춤형 기술파트너 지원(51억원) : 300개 과제('17년도 신규사업)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원칙으로 하되, 과제별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 R&D기획지원사업
 - 창업과제 : 창업 후 7년 이하인 중소기업
 - 혁신과제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또는 벤처기업
- 맞춤형 기술파트너 지원사업
 - 현장 기술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접수 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 기업의 부도/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이며, 부채비율 계산시 투자유치에 의한 항목은 제외),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파산·회생 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에 명시

지원 내용

- R&D기획 및 현장애로 기술 해결이 필요한 중소기업에게 총 사업비 75~100% 이내에서 최대 25백만원(지원기간 : 4개월~1년)까지 지원

구 분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중	지원방식
R&D 기획지원	R&D기획지원	최대 4개월, 25백만원	75% 이내	자유공모 품목지정
	R&D기획역량강화교육	2일 이내	100%	-
맞춤형 기술파트너 지원		최대 1년, 20백만원	75% 이내	자유공모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R&D연계지원의 유연성 확보 및 지원횟수 제한
 - 연계지원 : ('16) 신청과제별 해당 R&D사업만 연계 → ('17) 타사업 신청자격 부합시 교차 연계 가능(예: 창업과제 → 혁신형기술개발사업)
 - 지원횟수 제한(혁신과제만 해당) : ('16). 신청제한 無 → ('17) 1회로 제한(소급 적용)
- 기획역량강화교육과 연계한 기획지원 강화
 - 기획지원 조건 강화 : ('16) 기획지원 → ('17) 先기획교육 後기획지원

신청·접수

과제별 공고 참조('16.12월 중 공고 예정)

-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 신청양식은 과제별 공고에 첨부

심사·평가 주요내용

- R&D기획지원
 - 기획의 필요성(목표 적정성), 기술성 및 준비성(기획 기술의 차별성, 사전 준비정도 등)
 - 사업성(사업화 가능성, 수출 및 고용창출 효과)
- 맞춤형 기술파트너 지원
 - 기술애로 해결지원의 필요성, 해결목표의 적정성, 해결후 경제적, 기술적 기대효과 등

제출 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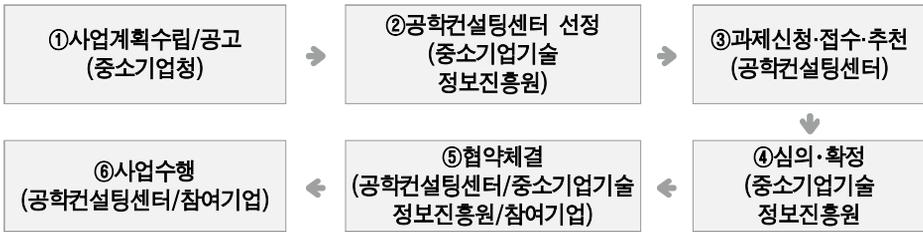
-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창업후 3년 미만인 기업은 제외), 기타 관련된 근거서류

처리 절차

< R&D기획지원 >



< 맞춤형 기술파트너 지원 >



문의처

- 중소기업청 기술개발과, 기술협력보호과 : 042-481-4447, 4443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042-388-0336, 0212, 0739
- 홈페이지 :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 ☎1357

궁금해요! 중기엔



- Q** 중소기업 R&D기획지원사업의 경우 연계 지원되는 중소기업청 R&D지원사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A** 기획결과 우수한 과제 중 창업과제는 창업성장기술개발로, 혁신과제는 기술혁신 개발사업으로 연계됩니다.
- Q** R&D기획지원의 기획기관은 어떤 역할을 수행하나요?
- A** 기획기관은 기업이 신청한 과제에 대해 기술성, 사업성, 성공가능성, 개발타당성 등을 분석·평가하는 기획업무를 수행하며, 최종보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 Q** 맞춤형 기술파트너 지원사업에서 공학컨설팅센터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 A** 공학컨설팅센터는 맞춤형 기술파트너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권역별로 선정된 국공립공과대학으로 과제 신청·접수·추천 및 과제관리 등의 역할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용어설명

R&D기획이란?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절차 등을 수립하는 일련의 과정으로서, 기술개발 3단계(기획→R&D→사업화) 중 성과제고, 사업화 성공 가능성 제고 및 리스크 감소를 위한 핵심단계

기술애로란? 기업이 가진 기술적인 문제점으로 기업의 기술사업화 및 성장에 방해가 되는 요소, 본 사업에서는 연구개발 기반을 중심으로 사업화 자문, 기술교육, 특수감정 등 다양한 분야의 지원을 통해 기업의 문제점을 해결

8-2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

| 대학·연구기관 보유 연구장비 공동이용시 장비이용료 지원

대학·연구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장비의 중소기업 공동활용을 지원하여 국가 연구장비 활용도를 높이고 중소기업의 장비부족 애로를 해소하여 기술경쟁력을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규모

약 1,200개사(전체 예산 153억원)

지원 대상

- 주관기관 : 중소기업과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의 도입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연구장비를 10대 이상 또는 1억원 이상인 연구장비를 1대 이상 보유한 대학·연구기관, 비영리연구법인, 연구개발서비스업 등
- 지정기관 : ZEUS장비활용종합포털에 등록된 연구장비를 중소기업에서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 가능한 정부출연 연구기관
- 참여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 업력에 따라 창업기업(업력 7년 이하)과 일반기업(업력 7년 초과)으로 구분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대표자 및 중소기업
- ✓ 신청과제의 내용이 사업의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 부도 또는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 ✓ 정부 타 사업 지원금으로 동 사업에 참여하려는 중소기업

지원 내용

- 주관기관(대학·연구기관 등) 및 지정기관(정부출연 연구기관)이 보유한 연구장비를 중소기업이 R&D 목적으로 공동활용시 장비이용료에 대해 바우처(쿠폰) 방식으로 지원

구 분	대 상	지 원 한도
창업기업	업력 7년 이하 기업	(정부지원금) 70% 이내 1년간 3천만원 + 추가 2천만원 (기업부담금) 30% 이상
일반기업	업력 7년 초과 기업	(정부지원금) 60% 이내 1년간 3천만원 + 추가 2천만원 (기업부담금) 40% 이상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구 분	2015년	2016년
참여기업 정부지원금	최대 7천만원	3천만원 + 2천만원+ 2천만원

- * 정부지원금 한도를 모두 사용한 참여기업에게 관리기관 승인하에 최대 4천만원 추가 지원
- * 자유형 공동활용 지원 : 미래부 ZEUS와 연계, 출연(연)을 장비제공기관으로 지정하여 출연(연)의 첨단·고급사양의 우수 연구장비를 중소기업 기술개발시 공동활용에 지원

신청·접수

- 주관기관 및 지정기관 : '17년 1월부터
- 참여기업 신청 : '17년 1월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연중 상시 접수
 - *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온라인 과제관리 → 과제신청 → 예비신청 → 신청하기 → 신청서 작성

심사·평가 주요내용

- 주관기관 : 신청기관의 참여자격 및 참여제한 여부 검토, 서면·현장평가 후 선정
- 지정기관 : 지정기관의 참여자격·참여제한 여부 및 ZEUS 등록장비 제공여부 검토 후 선정
- 참여기업 : 신청기업의 연구개발실적, 장비이용계획의 적정성, 사업화 가능성 등을 평가

제출 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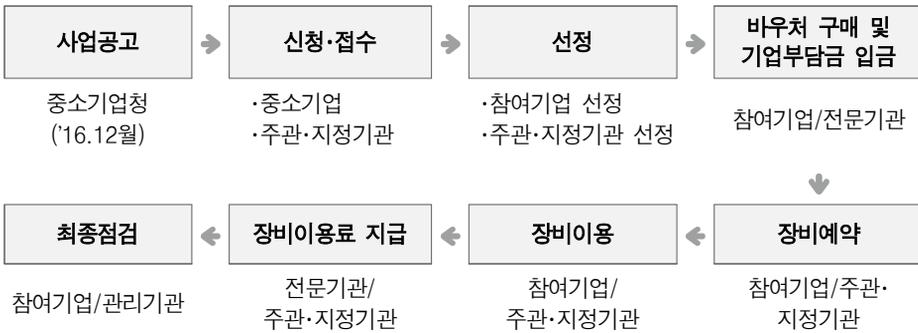
- 주관기관 : 사업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장비이용료 산출근거, 연구장비

멘토링 지원신청서 등

- 지정기관 : 사업 참여신청서 및 장비제공 동의서, ZEUS 등록장비 현황 등
- 참여기업 : 사업 참여신청서 및 장비활용계획서 등

* 신청양식은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게재된 사업관리 지침 참조

처리 절차



문의처

- 중소기업청 기술협력보호과 : 042-481-4453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042-388-0740/0741
-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 ☎1357

궁금해요! 중기맨



Q 바우처 구매는 어떻게 하나요?

A 참여기업으로 승인된 기업은 종합관리시스템(<http://www.smtech.go.kr>)을 통해 바우처 구매

· 종합관리시스템 → 온라인과제관리 → 연구장비사업관리 → 바우처 코너에서 신청 → 바우처 승인(전문기관) → 가상계좌 발급 → 기업부담금 입금 → 바우처 발행 → 연구장비 이용가능

Q 필요한 연구장비를 어떻게 찾아야 하나요?

A 주관기관, 지역, 장비명 등 다양한 검색어로 이용하고자하는 장비를 찾을 수 있습니다.

· 종합관리시스템(<http://www.smtech.go.kr>) → 온라인과제관리 → 연구장비사업관리 → 연구장비검색

→ 용어설명

‘바우처란?’ :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으로 연구장비 이용료를 대신하여 지불할 수 있는 온라인쿠폰 형태의 증서

8-3

뿌리기업 지원사업

| 뿌리기업 육성을 위한 전문기업 지정 전문인력 양성 등을 지원

뿌리기술의 육성과 발전 촉진을 위해 전문기업 지정, 뿌리기술 전문인력 양성, 자동화 첨단화 등을 지원해 드립니다.

1.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

지원 내용

- 핵심 뿌리기술을 보유하고, 성장가능성이 우수한 뿌리기업을 뿌리기술 전문기업으로 지정하여 기술개발, 자금, 인력지원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뿌리기술 전문기업으로 육성

지원 대상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뿌리기업 중 아래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한 기업
- 지정요건
 - ① 핵심뿌리기술을 보유한 기업
 - ② 총 매출액 중 뿌리기술을 이용한 제품 매출액이 100분의 50이상
 - ③ 상호출자제한기업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
 - ④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한 지정요건(중소기업청 고시 제2015-55호, '15.1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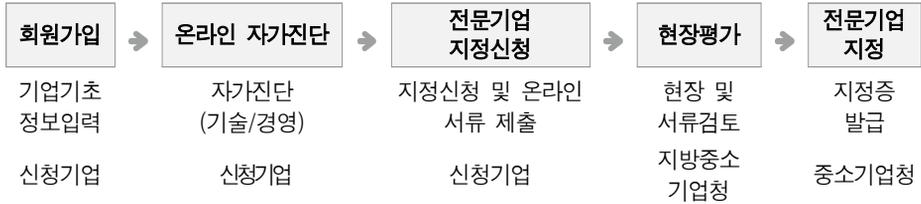
- ▶ 기술역량 : 핵심뿌리기술관련 공정/제품, 특허 등 7개 항목 평가 (60점 이상/100점)
- ▶ 경영역량 : 업력, 매출액 등 5개 항목 평가 (60점 이상/100점)
- ▶ 기술역량 점수와 경영역량 점수의 합계가 140점 이상

신청·접수

연중 상시

- 뿌리기술 전문기업 홈페이지(www.root-tech.org)을 통해 신청

신청 절차



문의처

- 중소기업청 기술협력보호과 : 042-481-4460
-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 02-2183-1623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 ☎1357

2. 뿌리기술 전문인력 양성사업

<맞춤형 코칭사업>

지원 규모 8억원

- '16년 뿌리기술 전문가 양성(맞춤형 코칭사업) : 635명

지원 대상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뿌리기업 재직자 및 뿌리산업 관련 학과를 보유한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학생

지원 내용

- 6대 뿌리산업의 26개 핵심공정별 코칭전문가(명장 등)의 기술노하우 전수 지원(15일 이내)

○ 세부사업 내역

구 분	지원내용	지원 한도		
중소기업 (C2C)	<ul style="list-style-type: none"> 뿌리중소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뿌리 산업 분야 전문가(명장, 우수숙련자)의 맞춤형 코칭 지원 1일 6시간, 최대 15일 이내 	구분	매출액	기업체부담금 비율
		신규 참여	10억 미만	0%
			50억 미만	20%
		재 참여	50억 이상	30%
재 참여	구분 없음	30%		
마이스터고 (C2S)	<ul style="list-style-type: none"> 뿌리산업 관련학과를 보유한 마이스터고 재학생을 대상으로 뿌리산업 분야 전문가의 맞춤형 현장 교육 지원 1일 6시간, 최대 15일 이내 	정부지원 100%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중소기업 매출액기준 지원한도 변경

기 존			변 경		
구분	매출액	지원한도	구분	매출액	지원한도
신규참여	구분 없음	100%	신규참여	10억 미만	100%
				50억 미만	80%
재 참여	구분 없음	100%		50억 이상	70%
			재 참여	구분 없음	70%

신청·접수

'17년 4월 공고 예정

제출 서류

뿌리기술코칭신청서, 사업자등록증(뿌리기업) 또는 고유번호증(학교) 각 1부.

* 신청양식은 뿌리기술 온라인도서관 홈페이지(<http://ppuri.auri.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심사·평가내용 |

- (중소기업) 코칭 신청내용의 필요성 및 타당성, 기술파급효과, 신청기업의 추진의지 등을 서면평가 실시
- (학교) 별도 선정평가 없음

신청 절차



문의처

- 중소기업청 기술협력보호과 : 042-481-4460, 4405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 ☎1357

<강한현장 만들기 지원사업>

지원 규모

- 10억원 : 300명 교육 / 30사 현장개선 지도
- * '16년 지원현황 : 280명 지원

지원 대상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뿌리기업 현장 직·반장

지원 내용

- 현장개선 과제의 직접적인 실천 담당자이지만, 지식과 개선능력이 부족한 현장 실무자를 대상으로 「현장개선 TOOL교육(TPS4급 인증 취득) + 일본 뿌리현장에서 한일 현장개선 컨퍼런스 + 현장개선진단 + 현장개선지도」의 일괄지원으로 생산성 향상을 통한 뿌리기업의 현장능력 강화
- * 정부보조금 50% + 기업 부담금 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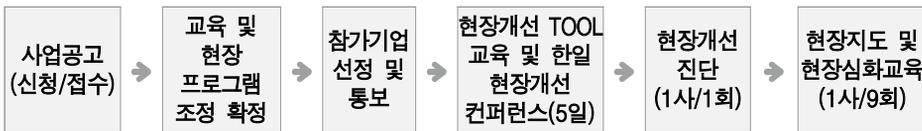
○ 세부사업 내역

프로그램		내용 및 운영방법
현장개선 TOOL교육 (TPS4급 인증취득) 및 한일 현장개선 컨퍼런스 [4월 중순~7월 중순] (3개월)	TPS교육 (일본3일) 월화수	- TPS현장개선 TOOL교육 TPS 기본, 현장활성화, 작업공정, 물류관리, 설비관리, 품질관리, 선행개선
	컨퍼런스 (일본2일) 목금	- TPS4급 자격시험 및 현장개선 실습/ 한일 현장개선 컨퍼런스 (일본기업 2사)
	30명(30사×1명)×10회=300명	
현장개선진단 [8월 중순~9월 중순] (1개월)	기업현장 진단 (1사1회)	- 진단 평가표(30개항목) 진단, 현 수준평가, 개선과제 파악 및 개선일정 확정 / 30사 × 1회 =30회
현장개선 지도 및 현장심화교육 [9월 중순~11월 말] (2.5개월)	개선지도 및 심화교육 (1사/9회)	- 뿌리기업 현장개선 리더 + 전문가 개선지도 / 4회×30사
		- 뿌리기업 현장개선 리더 + 전문개선지도 + 심화교육 (전사적 모노즈쿠리 현장개선 기법) / 5회×30사

신청·접수

- '17년 4월 공고 예정

처리 절차



문의처

- 중소기업청 기술협력보호과 : 042-481-4460
- (재)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 031-505-2444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 ☎ 1357

궁금해요! 중기맨



- Q** 현장개선 진단 및 지도시 심화교육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나요?
- A** 상반기에 현장개선 TOOL교육을 통해서 TPS4급 인증을 취득한 수료생을 대상으로 현장개선과제 지도시에 심화(현장실습)교육을 통해 현장개선 능력을 강화 시켜 드립니다.
- Q** 현장개선 진단 및 지도에 어느 나라 전문가가 오시나요?
- A** 현장개선 TOOL교육에는 일본 TPS전문가와 국내 전문가가 함께 교육하고, 현장 개선 진단 및 지도시에도 일본 전문가와 국내 전문가가 함께 지도합니다.
- Q** TPS4급 인증 시험은 일본에서 보나요? 일본에서 본다면 일본어로 시험을 보나요?
- A** 시험은 일본 현지 시험주관기관인 'TPS인증협회'에서 보지만, 시험지는 한글로 번역해서 실시합니다.

용어설명

TPS : Toyota Production System (도요타 생산방식)의 약자로 일본 자동차 회사인 도요타의 생산관리 방식으로 현장의 낭비를 제거하고 재고를 줄이는 것을 중심으로 한 가장 효율적이고 체계화된 관리방식입니다.

3. 뿌리기업 자동화·첨단화지원

지원 규모 40억원

- '16년 지원 : 30개사 지원

지원 대상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뿌리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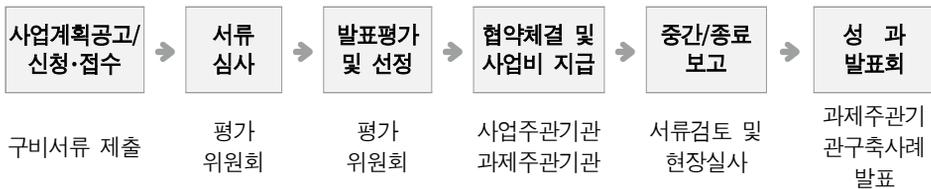
지원 내용

- 수작업 공정과 위험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뿌리기업 전반의 연속 공정 자동화 구축에 따른 설비 도입 및 설치, 사용자 교육 등 지원
 - * 지원제외 : 자동화 구축에 필요한 공간, 수작업기계류, 시험·검사 비용, 재료비, 인건비
- 지원금액 : 기업당 1억원 한도(정부지원 50%, 자부담 50%)
- 지원기간 : 8개월 내외

신청·접수

- '16.1~2월 공고 및 신청·접수
- 공고된 과제제안 요구서(RFP)에 부합하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접수 ('15년 12월 RFP 공고 예정)
 - *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홈페이지(www.kpic.re.kr)를 통해 참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다운 받아 신청

신청·접수



문 의 처

- 중소기업청 기술협력보호과 : 042-481-4460
-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 02-2183-1623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 ☎1357

8-4

뿌리기업의 품질혁신 지원사업

| 생산제품의 불량감소, 품질향상 등을 통한 기업의 품질경쟁력 향상 지원

중소기업이 무결점, 무결함의 완전제품 생산을 목표로 불량률을 관리하기 위해 품질 혁신시스템 구축 지도, 품질혁신 교육 등을 지원하며, 싱글PPM 품질인증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향상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규모

200개사(전체 예산 10억원)

* '16년 지원현황 : '16년 품질혁신지도기업 340개사

지원 대상

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서, 아래의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뿌리산업인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공정기술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1] 참조)
- 뿌리기술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별표2] 참조)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뿌리산업 공정기술을 활용하지 않거나, 뿌리기술을 이용하지 않고 사업을 영위한 기업
- ✓ 기업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기업

지원 내용

○ 세부사업 내역

분 야	내 용	지원 한도
품질혁신지도 (전문가 파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량요인 해소를 통한 품질향상 지도 • 작업표준화 및 작업환경개선 지도 • 싱글PPM, KS, ISO9001, 대기업 품질인증 획득 지도 등 	업체당 15일 이내
품질혁신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질혁신 마인드 함양 및 품질개선을 위한 전문교육 • 대기업과 공동으로 협력 중소기업 및 뿌리산업 업종별 특성에 맞는 품질혁신 교육 등 	전액 정부지원
싱글PPM 품질인증제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싱글PPM 품질인증획득 신청기업에 대한 서류심사 및 현지심사 등 	심사비 기업부담

신청·접수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접수

- 품질혁신지도 : '17. 2. 1.~ 11. 30(예산소진시 조기종료될 수 있음)
- 품질혁신교육 : 수요조사 후 교육일자 홈페이지 게시
- 싱글PPM품질인증 : 수시접수

* 온라인 홈페이지(sppm.korcham.net)→회원가입→로그인→신청하기→신청서작성

심사·평가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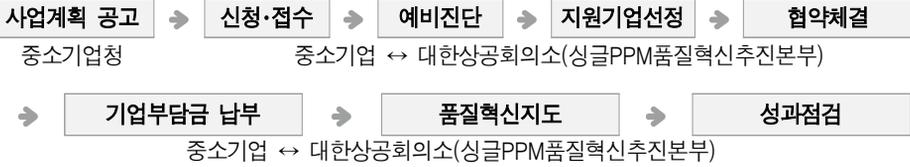
- 품질혁신지도사업은 예비진단 시 지원대상 여부 및 신청과제 적합성 유무 확인
- 품질인증제 운영은 싱글PPM 품질달성 여부 등 25개 항목 및 불량률 현황 등

제출 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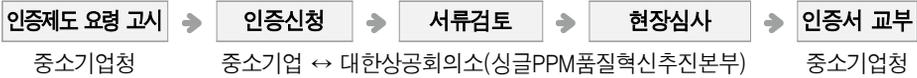
- 품질혁신지도·교육 : 신청서, 개인·기업정보 활용 동의서
- 싱글PPM 품질인증 : 신청서(불량률 현황 자료 포함), 추천서(모기업이 있을 경우), 개인·기업정보 활용 동의서
- 신청양식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 품질혁신팀(싱글PPM품질혁신추진본부)의 홈페이지 <http://sppm.korcham.net>에서 관련 서식 다운로드 사용

처리 절차

- 품질혁신지도사업



- 싱글PPM 품질인증제 운영



문의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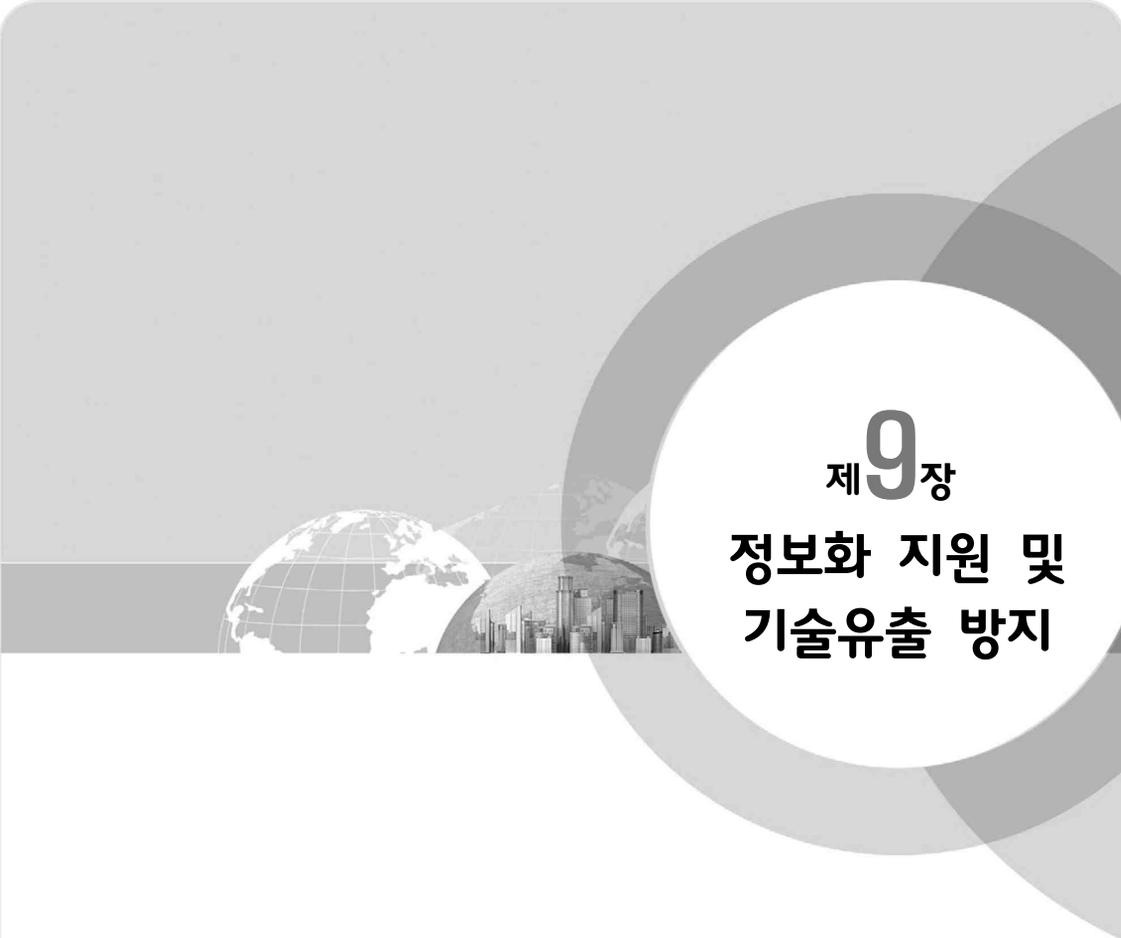
- 중소기업청 생산혁신정책과 : 042-481-4406
-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 품질혁신팀(싱글PPM품질혁신추진본부)
02-6050-3851~6 (<http://sppm.korcham.net>)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 ☎1357



- Q** 품질혁신지도사업을 신청한 기업은 어느 시점에 기업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 A** 품질혁신지도사업은 지도신청 후 예비진단 결과에 따라, 지도기업으로 선정·협약 체결 후 입금
품질인증제 운영의 심사비 납부는 현지심사 2일전까지 입금 완료하여야 함

용어설명

싱글PPM(Single Parts Per Million)이란 : 제품 백만개 중 불량품이 10개 미만의 무결점, 무결함의 완벽한 제품 생산을 목표로 불량률을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 9 장

정보화 지원 및 기술유출 방지

9-1 클라우드기반 솔루션 개발사업	176
9-2 생산현장디지털화사업	178
9-3 기술보호 역량강화	181
9-4 경영혁신 마일리지 제도	190

9-1

클라우드기반 솔루션 개발사업

| 중소기업의 경영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新IT 기반 정보화솔루션 지원

클라우드컴퓨팅 기반 저비용·고효율의 공동활용시스템(플랫폼) 및 솔루션을 구축·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은 전담인력, 유지비용, 기능개선 등의 부담없이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지원 규모

9개 협·단체 내외('17년 예산 40억)

* '16년 지원현황 : 10개 협·단체 신청, 4개 협·단체 선정

지원 대상

- (기본솔루션) 「중소기업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특화솔루션) 중소기업을 회원사로 하는 협동조합(전국, 지방, 사업), 협동조합 연합회지역), 업종별 협회·사업자단체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13 ~ '15년 개발과제로 선정된 협단체는 신청 불가
- ✓ 신청과제의 내용이 사업의 기본목적, 경영혁신플랫폼과의 기술적 환경, 공고내용과 부합하지 않은 경우 지원 제외

지원 내용

- (기본솔루션) 금융관리, 수납지급관리, 매입·매출관리, 전자세금계산서, 부가세 관리, 영업관리, 원산지증명 등의 업무 지원

※ 사용방법 : 경영혁신플랫폼 웹사이트 접속(www.smplatform.go.kr) → 회원가입 → 기본솔루션 활용

- (특화솔루션) 업종별 협·단체 소속 회원사(중소기업)의 공동 활용이 가능한 업무용 소프트웨어 개발 지원

- ▷ 지원규모 : 9개 협·단체 내외
- ▷ 지원금액 : 총 사업비의 70%, 최대 1.4억원
- ▷ 개발기간 : 최대 6개월 이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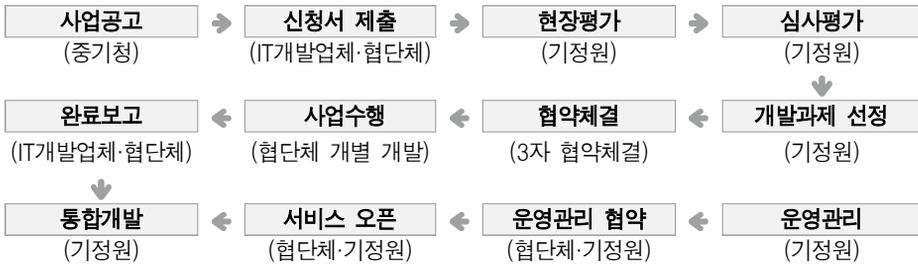
신청·접수

- 신청 자격 : 중소기업을 회원사로 하는 협동조합(전국, 지방, 사업), 협동조합 연합회(업종, 지역), 업종별 협회·사업자단체
 - * 개인 또는 기업 단독 신청은 불가
- 신청 기간 : '16. 12월 ~ '17. 1월 중 (별도 공고 예정)
 - *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 홈페이지(<http://it.smplatform.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제출 서류

- 경영혁신플랫폼 특화솔루션 개발과제 신청서
 - * 신청양식은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 홈페이지(<http://it.smplatform.go.kr>)에서 내려받기 가능

처리 절차



문의 처

- 중소기업청 기술협력보호과 : 042-481-4459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술개발지원부 : 042-388-0752~4
- 경영혁신플랫폼 컨택센터 : 1644-1736
- 경영혁신플랫폼 홈페이지 : www.smplatform.go.kr

9-2

생산현장디지털화사업

| 중소기업 생산현장 정보화를 위한 생산정보시스템 구축 지원

개별공장의 스마트화를 위한 ICT를 접목한 생산현장 맞춤형 생산정보시스템(POP, MES 등) 구축 지원 및 원산지증명시스템 구축지원

지원 규모

- 250개사(150억원)
- * '16년 지원현황 : 160개사 지원

지원 대상

신청자격, 지원조건, 우대선정, 유의사항, 지원이 안되는 기업 등 개조식 작성

- 「중소기업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단, 생산현장디지털화사업 도입/보완/확장/수출과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등록하고 생산·제조 관련 설비를 보유한 기업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소기업이거나, 사업장 면적이 500m² 미만인 기업은 공장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으로 대체 가능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등 부적합 업종 영위기업
- ✓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중소기업 또는 대표자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질서문란자로 관리중인 중소기업
 - * 금융질서문란자란 신용정보관리규약(전국은행연합회)에 따라 연체, 대의변제·대지급·부도 관련인, 금융질서 문란, 화의·법정관리·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
-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기업

지원 내용

- (도입과제) 생산정보시스템(POP, MES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기업을 대상으로 생산현장 스마트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 지원(총 사업비의 50%, 최대 6천만원 지원)
 - (보완과제) 생산정보시스템(POP, MES 등)을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기존 시스템의 보수 및 업그레이드 지원(총 사업비의 50%, 최대 4천만원 지원)
 - (확장과제) 생산정보시스템(POP, MES 등)과 연계 가능한 시스템(생산계획, 공정관리, 물류관리 등)의 추가 구축 또는 동시 구축지원(총 사업비의 50%, 최대 1억원 지원)
 - (원산지증명시스템구축과제) 원산지증명(확인)시스템 도입을 원하는 수출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연계모듈 구축 및 지원(총 사업비의 50%, 최대 1천만원 지원)
 - (수출과제 신설) 스마트공장 통합솔루션* 개발·구축 및 도입기업 생산품 및 IT 공급기업 통합솔루션의 수출 지원(총 사업비의 60%, 최대 1.8억원 지원)
- * MES, POP, SCM 등의 통합 및 제품화

신청·접수

- 기간 : '16. 12월 ~ '17. 1월 중
- *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 홈페이지(<http://it.splatform.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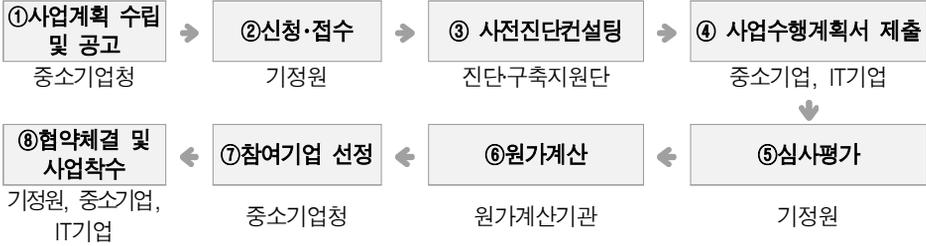
평가항목		배점
참여기업 (40)	과제적정성	15점
	실현가능성	10점
	수출역량	15점
IT공급기업 (60)	지원역량	20점
	지원전략	15점
	수출역량	20점
	사업관리	5점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 신청양식은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 홈페이지(<http://it.smplatform.go.kr>)에서 내려받기 가능

처리 절차



문의처

- 중소기업청 기술협력보호과 : 042-481-4459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술개발지원부 : 042-388-0758, 0759
- 사업신청 : it.smplatform.go.kr

9-3

기술보호 역량강화

| 중소기업의 핵심기술 보호부터 기술유출 분쟁 해결까지 지원

중소중견기업의 기술유출 방지 및 핵심기술 보호를 위해 기술보호 상담, 기술자료 임치, 기술지킴서비스,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며, 기술유출 분쟁에 대한 조정·중재를 지원합니다.

1. 기술보호 상담

지원 규모

최대 3일 무료 상담 + 추가 7일 까지 상담비용의 75% 지원

- 사전진단(최대 3일) : 무료(보안교육 포함)
- 심화코칭(최대 7일) : 비용의 75% 지원

* '16년 지원현황 : 기술보호 전문가 상담·자문 723건

지원 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평균매출액 3천억원 미만&중견기업 진입 3년 이내 중견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유흥·향락업, 숙박 등 부적합 업종 및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제외

지원 내용

- (사전진단) 보안·법률 전문가의 기업 방문을 통한 보안 취약점 등 해결방안 제시
 - 보안정책 : 정보화기기 보안, 관리 요령 및 방안 코칭
 - 보안시스템 : 해킹 등 사이버공격 관련 피해 복구 및 대응 지원
 - 법률상담 : 기술유출 피해기업의 분쟁 대응 및 소송 등 자문
- (심화코칭) 사전진단 결과 심각한 보안문제 및 기술유출 피해 발견시 심화코칭 제공

신청·접수

기술보호올타리(www.ultari.go.kr)에서 온라인 상시 신청

제출 서류

가입신청서(온라인 신청 시 필요없음)

처리 절차



문의처

- 중소기업청 기술협력보호과 : 042-481-4400, 8955
- 중소기업 기술보호 통합 상담·신고센터 : 02-368-8787
- 기술보호올타리 : www.ultari.go.kr

2. 기술자료 임치제도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평균매출액 3천억원 미만&중견기업 진입 3년 이내 중견기업
 - * 기술자료를 임치하고자 하는 법인·기관·단체 또는 사업자

지원이 안되는 기업

✓ 유흥·향락업, 숙박 등 부적합 업종 및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제외

지원 내용

- 중소기업의 핵심기술 정보를 신뢰성 있는 기관(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안전하게 보관하고, 기술유출 시 임치한 기술의 개발사실을 입증
- 임치한 중소기업의 기술을 이용하는 대기업(공공기관) 등 거래기업은 중소

기업의 파산·폐업 시 해당 임치물을 이용하여 지속적인 사용 가능

수수료 신규 300,000원/년(최초 임치계약 시 납부), 갱신 150,000원/년

신청·접수 기술자료임치센터(www.kescrow.or.kr) 온라인 및 방문 신청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임치수수료 납부기준 변경

기 존		변 경	
구분	수수료(년)	구분	수수료(년)
▪ 모든 이용기업	신규 300,000원 갱신 150,000원	▪ 모든 이용기업	신규 300,000원 갱신 150,000원
		▪ 국가핵심기술보유기업	신규 200,000원 갱신 10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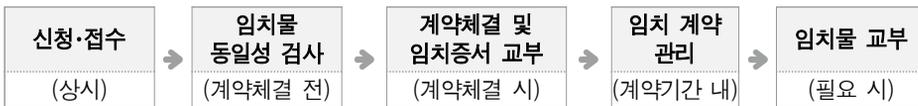
○ 기술자료 임치물을 활용한 담보 대출 및 보증 지원

- * 기술보증기금, 시중은행과 연계한 평가·보증, 대출 지원으로 임치기술의 사업화 및 기술거래 촉진
- * 지원대상) 기술임치를 이용하고 임치기술에 대한 기본정보 공시에 동의한 중소기업

〈심사·평가 주요내용〉

제출 서류 임치신청서, 임치물(기술자료),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처리 절차



문의처

- 중소기업 기술협력보호과 : 042-481-4400, 8955
- 중소기업 기술보호센터 : 02-368-8787
- 기술자료입치센터 : www.kescrow.or.kr / 02-368-8484

궁금해요! 증기맨



Q 기술입치를 이용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A 수·위탁거래 관계에서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 남용에 의한 중소기업의 기술탈취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고, 특허를 출원하지 않고 영업비밀로 유지하고 있는 기술에 대해서도 안전한 보호가 가능합니다.
또한, 임직원에게 기술보호에 대한 사전 주의를 유도하여 내부 관계자에 의한 기술유출을 방지하고, 개발기술이 안전하게 백업(Back-up)되어 개발기술이 멸실 되었을 경우에도 다시 활용이 가능합니다.

3.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지원 규모

- 총 사업비의 50% 이내, 최대 4천만원
- * '16년 지원현황 : 82개 신청기업 중 42개사 지원

지원 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1항에 따른 중소기업
- * 기술유출 피해기업 우대(경찰청 수사기록, 법원 판결문 등을 통해 증빙)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등 부적합 업종 영위 기업
- ✓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중소기업 또는 대표자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질서문란자로 관리중인 중소기업
-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기업

지원 내용

- 내부정보유출방지시스템(이동식저장장치 통제, DLP, 논리적망분리 등), PC·문서 보안솔루션(DRM, 워터마크 등), 물리적보안(출입통제, CCTV, 지문인식 등) 구축을 위한 보안솔루션 도입 지원
(단, 출입통제 및 지문인식 등 단순 물리적 보안의 경우 기업 자체 부담)

신청·접수

- 기간 : '16. 12월 ~ '17. 1월 중
- *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 홈페이지(<http://it.smplatform.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 * 신청양식은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 홈페이지(<http://it.smplatform.go.kr>)에서 내려받기 가능

〈심사·평가 주요내용〉

현장평가 평가항목	배점	심사평가 평가항목	배점
시급성 및 추진의지	40점	사업내용	30점
시스템 도입의 필요성	40점	성과지표	10점
		운영·사업관리	20점
시스템 운영능력 및 인프라	20점	참여기업의 적정성	20점
		지원기관의 적정성	20점
합계	100점	합계	100점

처리 절차



문의처

- 중소기업청 기술협력보호과 : 042-481-4400, 8955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술개발지원부 : 042-388-0758, 0759
- 사업신청 : it.smplatform.go.kr

4. 기술지킴 서비스

지원 규모 7,000개사

* '16년 지원현황 : 6,023개사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평균매출액 3천억원 미만&중견기업 진입 3년 이내 중견기업
- * 보안관제서비스의 경우는 온라인상에 통합보안장비가 구축된 경우 서비스가 가능

지원이 안되는 기업

✓ 요식업·학원·병원·유흥업소·금융 등 기술보유 여부와 무관한 업소

지원 내용

- 보안관제서비스
 - 24시간×365일 온라인상의 해킹시도 및 이상징후 분석·대응
 - 신규취약점에 관한 정보 제공 및 보안업데이트 권고

- 내부정보유출방지서비스
 - 기업당 50User 라이선스 제공
 - * 중소기업 내 서버 설치 필요 無, 소프트웨어 제공
 - 24시간×365일 기술유출 이상징후 모니터링·통보
- 악성코드탐지서비스
 - 기업당 50User 라이선스 제공
 - * 중소기업 내 서버 설치 필요 無, 소프트웨어 제공
 - 24시간×365일 기술유출 이상징후 모니터링·통보

신청·접수

- 신청방법 : 기술보호울타리(www.ultari.go.kr) 온라인 상시 신청
- 신청기간 : 연중 상시
- 처리기간 : 신청서 접수 후 1주일

〈심사·평가 주요내용〉

제출 서류

가입신청서(온라인 신청시 필요없음), 사업자등록증

처리 절차

신청·접수



보안장비 설치 및 소프트웨어 제공



24시간 모니터링 실시

문의처

- 중소기업청 기술협력보호과 : 042-481-4400, 8955
-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중소기업기술지킴센터 : 02-3489-7050, monitor@kaits.or.kr
- 기술보호울타리 : www.ultari.go.kr

5.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

지원 규모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를 통한 조정·중재 소요비용

- 단, 신청기업은 소정의 수수료 납부(조정은 최대 50천원, 중재는 신청금액에 따라 상이)

* 기술분쟁 조정 신청현황 : 37건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기술*유출 분쟁을 겪고 있거나 향후 분쟁 발생의 우려가 있는 자
 - *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술
- 평균매출액 3천억원 미만&중견기업 진입 3년 이내 중견기업
 - * 단, 중견기업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과 관련된 기술분쟁에 한정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유흥·향락업, 숙박 등 부적합 업종 및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제외

지원 내용

- 전·현직 판사, 변호사, 기술전문가 등 3~5인으로 구성된 조정부 또는 중재부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정 또는 중재로 분쟁해결을 지원
- 분쟁사건에 대한 법률 및 기술보호 전문가 자문 지원
- 손해배상액 산정 등에 필요한 기술가치평가 비용(필요 시, 기술보증기금과 연계)
- 조정 신청기업의 법률대리인 선임비용 지원(최대 500만원)
- 조정이 불성립하였으나, 상대 대기업의 기술침해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될 경우 소송비용 지원(최대 1,000만원)

신청·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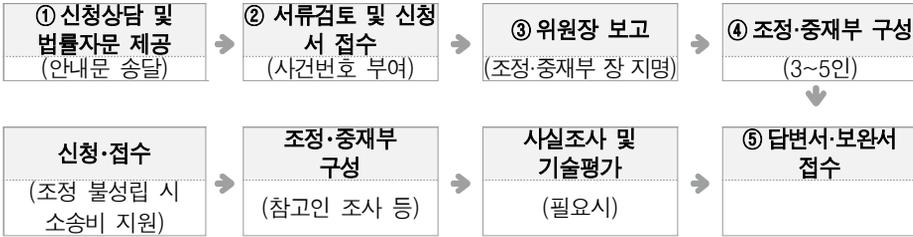
방문 또는 우편 신청(상시)

제출 서류

분쟁조정·중재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증빙자료 등(www.ultari.go.kr에서 서식 제공)

처리 절차

조정·중재부 구성부터 3~5개월 소요



문의처

- 중소기업청 기술협력보호과 : 042-481-4400, 8955
- 중소기업 기술보호센터 : 02-368-8787
- 기술보호울타리 : www.ultari.go.kr

궁금해요! 증기맨



- Q** 조정과 중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A** 조정은 조정부의 도움을 받아 당사자 간 자율적인 합의를 바탕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조정부에서 제시한 조정안을 양 당사자가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되며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중재는 당사자 간 중재로 해결한다는 합의에 의해 신청이 가능하여 법원의 재판이 아닌 중재부의 판정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중재판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 Q** 수사 또는 소송 중인 사건도 조정·중재 신청이 가능한가요?
- A** 경찰·검찰 등 수사 중인 분쟁사건 및 법원의 소송 중인 분쟁사건도 조정·중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중재의 경우 중재합의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 중재는 중재계약에 의해 법원의 심판권을 배제하는 것이므로, 중재합의의 대상인 분쟁에 관하여 소송이 제기된 경우 중재합의가 있다는 항변 시 그 소는 각하됩니다.

9-4

경영혁신 마일리지 제도

| 경영혁신 노력에 따른 마일리지 적립·활용

자발적으로 경영혁신 노력을 추진하는 기업에 우선적으로 정부지원 혜택을 부여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 경영혁신 교육 및 활동을 통해 마일리지를 적립하고 정부지원 사업 참여시 가점 등으로 활용 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게임, 도박, 사행성, 불건전 소비업종과 신용관리정보대상자로 규제를 받고 있는 기업

지원 내용

경영혁신 마일리지넷(이하 마일리지넷)을 통해 기업회원 가입 후 경영혁신 교육 및 활동에 따라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정부지원 사업에 가점 등으로 활용(상시 적립가능)

○ 교육마일리지 적립

교육프로그램 선택

마일리지 부여대상 교육프로그램 확인(마일리지넷 참조)



교육이수

해당 교육프로그램 이수



마일리지 적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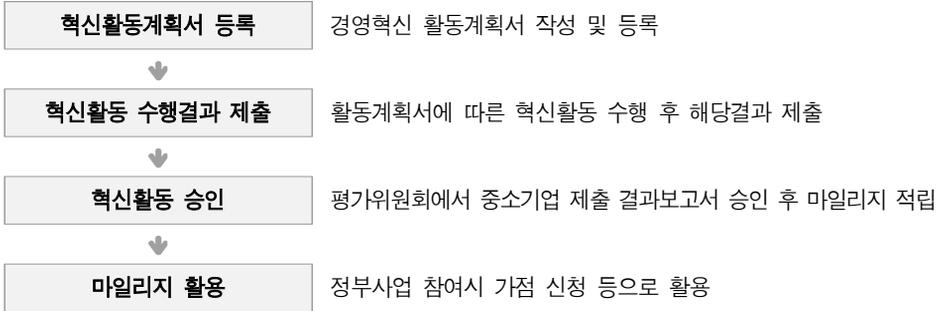
경영혁신 마일리지 적립



마일리지 활용

정부사업 참여시 가점 신청 등으로 활용

○ 활동마일리지 적립



유효 기간 경영혁신 마일리지 적립 시점부터 5년간 활용 가능

신청·접수 상시접수 및 활용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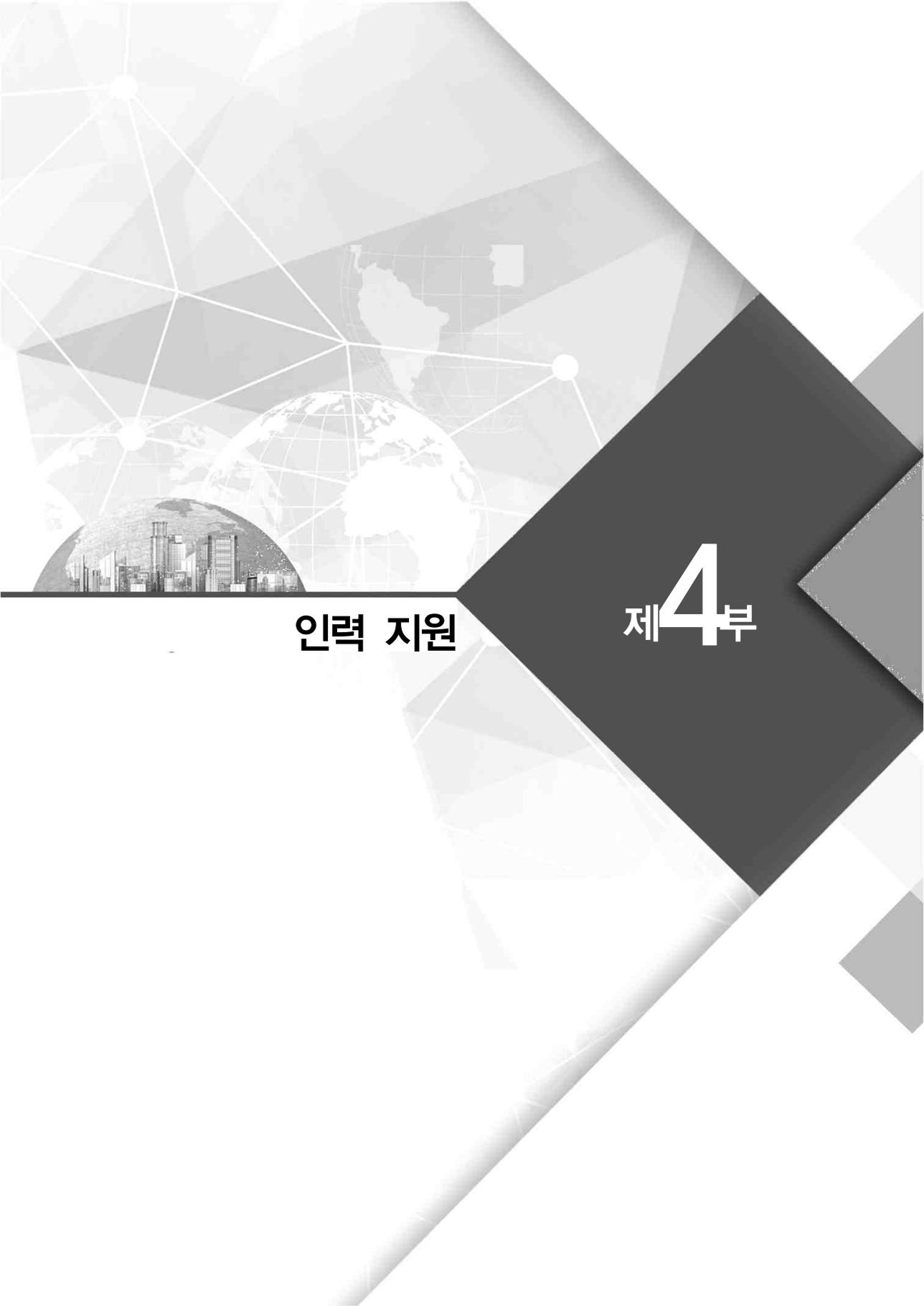
- 교육마일리지와 활동마일리지를 합산하여 500마일리지 또는 1,000마일리지부터 활용 가능 (지원혜택 사업별로 상이함)

지원 혜택 상시접수 및 활용 가능

분야	우대사업	지원	분야	우대사업	지원
R&D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WC300 지원사업	가점	수출	수출역량강화, 무역촉진단, 글로벌강소기업육성,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중국인증집중지원사업, 차이나 하이웨이 프로그램	가점
판로	중소기업제품 전용판매장 초기제품시장진입지원 제품홍보지원 온라인시장 진출 공동 A/S센터		컨설팅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 생산현장핵심기술체계화	
			인력	산업기능요원제도	
자금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한도	금융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보증 료율

문의처

- 중소기업청 생산혁신정책과 : 042-481-4496
- 전용정보사이트 : 경영혁신마일리지넷(www.mileage.or.kr)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1357



인력 지원

제4부

중소기업에 적합한
인력을 찾아드립니다.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www.smba.go.kr





제 10 장

인력 양성

10-1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	195
10-2 기술사관 육성	198
10-3 산학맞춤 기술인력 양성사업	201

10-1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

| 중소기업으로의 안정적인 인력유입 경로 확보 지원

산업계 수요와 연계한 현장중심의 직업교육을 통한 중소기업으로의 안정적인 인력유입으로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

지원 규모

180개 특성화고, 306억원

- 학교당 평균 1.5억원 내외 지원

* '16년 지원현황 : 181개 특성화고, 306억원

지원 대상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의 특성화고등학교

지원 내용

- (교육지원) 교수학습자료 개발, 프로젝트형 수업, 진로지도 프로그램 등을 Module별로 지원
- (취업지원) 중소기업 채용 협약 '취업맞춤반' 지원
- (산학연계지원) 기업체 CEO, 해당분야 기능장 등 외부 전문가 및 산학겸임 교사 채용 연계지원

신청·접수

'17. 1월 예정

-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sanhakin.smba.go.kr) 통한 온라인 신청
- (평가항목) 사업목표의 명확성, 추진계획 및 체계의 합리성, 사업 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가세부항목 및 배점 기준 등은 별도의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진행

신청 서류

사업계획서

* 신청양식은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sanhakin.smba.go.kr)에 게시된 공고를 통해 별도 확인

추진 절차

절차	내용	일정
사업공고 (중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기업특성화고인력양성사업 공고 사전설명회 개최 	1월
↓		
사업신청 (학교→중진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규학교) 당해연도 신규 참여학교 서류 신청·접수 (기존학교) 완료보고서 및 사업계획서 신청·접수 	1월
↓		
선정 및 성과평가 (평가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규학교) 사업계획서 검토 후 발표 평가 및 선정 (기존학교) 완료보고서 및 사업계획서 검토 후 발표 평가 및 선정 	2월~3월
↓		
수정사업계획서 작성 및 사업착수 (참여학교↔중진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별 사업비 확정에 따른 수정사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 	4월~5월
↓		
사업비교부 (중진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별 총 사업비 교부 	4월~5월
↓		
중간점검 (지방중기청→ 참여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참여학교 사업 운영현황 중간점검 실시(지방중기청) 	9월
↓		
사업비 정산 (중진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탁정산기관 선정 및 참여학교 사업비 정산 실시 	차년도 3월
↓		
결과보고 (중진공→중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해연도 특성화고인력양성 사업 결과보고 	차년도 4월

문의처

○ 중소기업청 인력개발과 : 042-481-4465

- 중소기업진흥공단 인력개발처 : 055-751-9862~4, 9824, 9874
-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sanhakin,smba.go.kr) 참고



궁금해요! 중기엔

- Q**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중소기업 특성화고인력양성사업의 핵심 프로그램은 무엇이 있을까요?
- A** 취업 예정기업의 맞춤 교육을 수행하고 취업을 약속하는 취업맞춤반, 기업의 애로과제를 학생의 과제 능력 향상에 중심을 둔 1팀-1기업 프로젝트, 산학연계 전 공동아리 등이 있습니다.
- Q** 취업맞춤반에 참여할 시 중소기업에게는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 A** 채용 이후 추가 교육비용 없이 맞춤형 인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산업기능요원 소요인원 배정시 우선선정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청이 주관하는 다양한 사업 선정평가시 가점이 부여되는 등 각종 인센티브가 존재합니다.

용어설명

- ※ 취업맞춤반
 - 특성화고생을 고용하고자 하는 중소기업과 취업을 희망하는 특성화고생, 특성화고가 취업확정 협약을 맺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현장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 후 취업으로 연계하는 프로그램

구 분	내 용
학 교	협약체결 중소기업의 요구기술을 정밀 분석하여 기업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 협약학생을 대상으로 교육
학 생	기업 맞춤형 교육 이수 이후 졸업과 동시에 해당 중소기업 취업
기 업	학교가 기업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직무 분석시 참여하고 참여학생이 취업맞춤반 수료 후 채용

- * 3자협약 : 학교-학생-중소기업이 취업약정 3자협약을 맺고 협약기업이 요구하는 현장맞춤 교육 실시 이후 채용 연계되는 프로그램(선매칭-후교육-취업)
- * 2자협약 : 학교-중소기업이 취업약정을 통해 협약기업이 요구하는 맞춤교육을 실시하고, 맞춤 교육을 이수한 학생 중에서 채용연계(선교육-후매칭-취업)

10-2

기술사관 육성

| 특성화고-전문대학 연계 중소기업 중간기술인력 양성

특성화고-전문대 연계, 4~5년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중소기업 현장혁신형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여 중소기업에 취업 연계

지원 규모

기술사관 육성 16개 사업단, 33.84억원 (중기청)

- 사업단 평균 2.12억원 내외 지원

* '16년 지원현황 : 17개 사업단, 36억원

지원 대상

- 사 업 단 : 특성화고-전문대-산업체 연계 사업단
- 중소기업 : 부동산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 대상
- 학 생 : 사업에 참여하는 특성화고 및 전문대 학생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동산업, 일반유희주점업, 무도유희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갬블링 및 베테업, 무도장 운영업

지원 내용

분 야	내 용
학 교	• 교육연수비, 교육과정 개발비, 강사비, 실습기자재 구입비, 운영비 등
학 생	• 직업교육, 연계대학 진학, 졸업 후 협약기업 취업 등
기 업	• 우수 기술인력 확보, 병역지정업체 우선 선정 등

신청·접수

온라인 신청·접수(sanhakin.smba.go.kr)

- 신규신청 사업단은 특성화고-전문대 간 2:1이내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

심사·평가내용

- 사업추진체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학생·교원 지원 활동, 실습실·기자재 보완·활용, 사후 관리체제, 예산 집행계획 등
- * 평가 세부항목 및 배점 기준 등은 별도의 평가계획을 수립·시행

신청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 * 신청양식은 중소기업인력지원 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sanhakin.smba.go.kr)에서 다운로드

추진 절차**문의처**

- 중소기업청 인력개발과 : 042-481-4365
- 중소기업진흥공단 인력개발처 : 055-751-9872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궁금해요! 중기맨



Q 사업에 참여하는 학생은 협약 대학으로 진학해야 되나요?

A 특성화고-전문대학 연계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협약 대학 및 학과로 진학해야 됩니다.

Q 산업기능요원으로 군복무를 대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A 기술사관 육성사업 졸업자가 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협약기업으로 취업할 경우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우대하고 있습니다(보충역은 산업기사 자격을 필요로 하지 않음)

10-3

산학맞춤 기술인력 양성사업

|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통한 중소기업 맞춤형 기술인재 양성

중소기업과 대학(전문대·일반대)을 연계하여 맞춤 기술인력을 양성 및 공급을 통해 중소기업 인력애로 해소 및 청년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 규모

14개 대학(전문대 12, 일반대 2), 28억원

○ 대학당 2억원 이내

* '16년 지원현황 : 14개 대학(전문대 12, 일반대 2), 28억

지원 대상

중소기업 수요에 부응하는 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우수한 산학협력 역량을 갖춘 대학

-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지원이 안되는 대학

- ✓ 정부재정지원 제한 대학
- ✓ 중기청 '기술사관 육성사업' 등 유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대학은 신청 가능하나, 해당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동일 학과는 동 사업 참여 불가
- ✓ 동 사업에서 지정 취소된 대학은 당해연도를 포함하여 3년간 참여 제한
- ✓ 동 사업에 신규 신청하여 탈락한 대학은 당해연도 참여 제한

신청 유형

신청대학은 산학협력 유형 3개(협화·단체형, 중소기업형, 복합형) 중 1개 유형을 선택하여 중소기업 및 협·단체(또는 중소기업)와 '예비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신청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협 단체 : 구성원의 과반수가 중소기업자로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및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협동조합사업협동조합협동조합연합회

구 분	협화·단체형	중소기업형	복합형
특화기능	· 대학과 협화·단체간 산학협력 체결 · 회원사 인력 수요, 공동채용 등 관리	· 대학과 중소기업간 산학협력체결 · 중소기업별 맞춤 산학협력 체제 구축	· 협화·단체형 및 중소기업형 병행
공통기능	· 1팀-1프로젝트, 현장실습, 맞춤교육 등 산학협력 프로그램 운영 · 대학은 산학맞춤 기술인력 공급, 중소기업은 우수인력 채용		

지원 내용 '기업-대학-학생 (졸업예정)'간 협약을 통해 맞춤교육, 현장실습, 프로젝트 등 산학프로그램 지원

구 분	내 용
맞춤교육	· 기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실무중심의 맞춤교육으로 전공수업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 100시간(일반대 120시간) 내외 실시
현장실습	· 중소기업 이해연수 교육 실시 후, 취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실제 중소기업 현장 기술연수(4주 이상)를 실시하여 취업연계 지원
1팀-1프로젝트	· 교수-학생-기업이 팀이 되어 기업에서 요구하는 공정개선, 제품디자인, 신규아이템 개발 등의 프로젝트 수행

신청·접수 '17. 2월예정

-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sanhakin.smba.go.kr) 통한 온라인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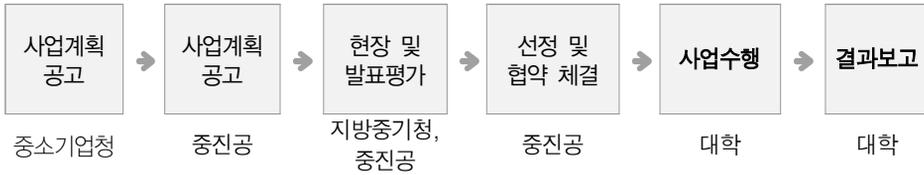
심사·평가내용

- (평가항목) 사업계획의 충실성 및 교육환경,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 평가세부항목 및 배점 기준 등은 별도의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진행

신청 서류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 신청양식은 중소기업인력지원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sanhakin.smba.go.kr)에 게시된 공고를 통해 별도 확인

처리 절차



문의처

- 중소기업청 인력개발과 : 042-481-6875
- 중소기업진흥공단 인력개발처 : 055-751-9866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2017년 지원시책」 참조
-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anhakin.smba.go.kr) 참고

궁금해요! 중기맨



- Q** 산학맞춤 기술인력 양성사업에 참여하는 학생과 기업은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A** 참여학생은 전공수업과는 별개로 산학맞춤교육, 1팀-1프로젝트, 현장실습 등 산학협력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전문화된 심화교육 이수 후에 대학과 협약된 우수중소기업으로 취업할 수 있으며, 참여기업은 동 사업을 통해 양성된 전문 기술인력을 안정적으로 채용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제 11 장

인력유입 촉진

11-1 중소기업 계약학과 사업	205
11-2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209
11-3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	213
11-4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우선공급	216
11-5 중소기업 인식개선(현장체험)	218

11-1

중소기업 계약학과 사업

| 선취업-후진학 기반 구축을 통한 중소기업 우수인재 양성

중소기업청이 대학과 협약을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학위과정을 설치하고, 근로자(학생)-중소기업-대학 간 3자 협약으로 운영되는 계약학과를 통해 중소기업 우수인재 양성 및 근로자(학생)의 장기재직을 유도합니다.

지원 규모

전국 52개 주관대학 67개 계약학과 및 참여학생을 대상으로 학과운영비 및 등록금 등 지원 ('17년 사업비 10,279백만원)

* '16년 지원현황 : 학생(근로자) 1,575명

지원 대상

- (재교육형) 해당기업 6개월 이상 재직한 근로자
- (재교육형 동시채용) 입학당시 해당기업에 재직 경력이 없어야 함
 - 단, 학기개시일 기준 해당 기업에 취업해야 함
- (채용조건형) 해당기업에 재직할 경력이 없어야 함
 - 단, 졸업일 기준 취업해야 함

지원 내용

- (재교육형) 중소중견기업 재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소속 직원의 재교육을 위하여 주말, 야간의 학위과정을 운영하고 학비 일부를 지원(중소기업 기준, 등록금의 65% 이내에서 지원)
 - 재교육형 동시채용 : 재교육형 근로자가 최초 학기 개시와 동시에 중소중견기업에 신규 채용되는 경우로 학비 전액 지원
- (채용조건형) 핵심인재 유입을 위해 기업이 '학위지원 계약 체결'을 전제로 인재를 채용하고, 대학의 맞춤형 교육과정을 통해 해당학위 졸업 후 해당기업에 의무 근무하는 경우로 학비 전액지원

신청 자격

- (기업)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 단, 부동산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 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겐블링 및 베틀업, 무도장 운영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제외
- (학생) 현 근무 중소기업 6개월 이상 재직한 근로자(재교육형) 또는 중소기업 채용예정자(채용조건형)

추진절차

단 계	수행 방법	비 고
사업공고	·신규 주관 대학 모집공고 (http://sanhakin.smba.go.kr)	중소기업청 (별도공지)
↓		
신청·접수	·신규 주관대학의 참여 신청서 제출 및 접수	대학 → 관리기관 (별도공지)
↓		
현장 실태조사	·신청서류 검토 및 신청대학 현장실사	관리기관 → 대학 (별도공지)
↓		
대면평가	·전문위원회를 통해 신청대학에 대한 대면평가 실시	중진공 → 대학 (별도공지)
↓		
주관대학 선정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주관대학 최종선정	중소기업청 (별도공지)
↓		
협약	·주관대학-관리기관 간 설치 및 운영 협약 체결	당사자 (별도공지)
↓		
학생/기업 모집	·(재교육형)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이 소속 근로자를 입학을 희망하는 대학에 추천 ·(채용조건형·재교육형의 동시채용)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과 기업이 각각 대학에 참여 신청	주관대학 (봄학기 : 11~2월) (가을학기 : 6~8월)
↓		
3자 계약	·(재교육형) 학생 선발이 완료되면, 기업대표-근로자-대학 간 3자 계약 체결 ·(채용조건형·재교육형의 동시채용) 학생과 기업을 대학이 선발한 후, 상호 매칭이 완료되면 3자 계약 체결	계약 당사자 (학기개시 전)
↓		
학과운영	·계약학과 학위과정 운영	주관대학

신청·접수

- (대학) 신규 주관대학 모집공고 기간 내에 관할 소재지 지방중소기업청에 우편 또는 방문 신청
- (학생 및 기업) 봄 학기 모집기간 11~2월, 가을학기 모집기간 6~8월에 전국 중소기업 계약학과 운영 주관대학에 신청서 제출
 - 세부 학사일정은 학교별(학과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해당 학과로 문의 요망

신청·접수

- 담당부처 : 중소기업청 인력개발과(042-481-4493)
- 수행기관 : 중소기업진흥공단 인력개발처(055-751-9821, 9867)
- 전국 중소기업 계약학과 주관대학 ('17 봄학기 기준 전국 52개 대학 67개 학과)
 - <https://sanhakin.smba.go.kr> → 정보마당 → 참여학과현황 → 계약학과

궁금해요! 중기맨



- Q** 중소기업 대표자도 계약학과에 입학할 수 있나요?
- A** 현행 중소기업 계약학과 운영지침 제3조 2항에서는 법인등기부에 등재된 대표 및 이사는 선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 대표자의 계약학과 입학은 불가능합니다.
- Q** 중소기업 계약학과 등록금은 얼마인가요?
- A** 중진공은 매년 1월, 전국 대학 등록금 평균의 약 60% 수준으로 책정된 중소기업 계약학과 기준등록금을 공시하고 있으며, 2017년 기준등록금은 전문학사 과정 1,726,600원, 학사 과정 2,268,600원, 석·박사 과정 2,927,500원입니다.
- Q** 졸업 후 기업에서 반드시 근무해야 하나요?
- A** 네, 그 기간을 의무 근무기간이라 하는데 이는 학위과정을 이수한 참여학생이 해당 대학 졸업일을 기준으로 참여기업에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하는 기간을 말합니다. 재교육형은 졸업 후 1년, 재교육형 동시채용과 채용조건형은 졸업 후 2년을 의무 근무해야 합니다.
- Q** 재학 중에 근무 중인 회사가 폐업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 A** 재학 중 근무 중인 참여기업이 폐업, 구조조정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퇴직하게 된 경우, 정부에서 지원된 등록금은 반납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본인의 희망에 의해 퇴직하거나 취업을 포기한 경우 또는 학업을 중도 포기한 경우에는 정부에서 지원받은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11-2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 유도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에 복리이자를 더하여 5년 이상 장기 재직한 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정책성 공제

지원 대상

- 중소기업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상 지원업종 영위기업
- 중소기업 근로자(핵심인력)
 - 중소기업 대표자가 지정한 인력(학력, 경력, 자격무관)으로 직무기여도가 높아 사업주가 장기재직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근로자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부동산업, 주점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무도장 운영업
- ✓ 휴·폐업, 세금(국세) 체납 기업

가입 요건

- 가입 기간 : 5년(최초 가입시), 3~5년(재가입시 선택가능)
- 공제 납입금 : 사업주와 핵심인력이 5년간 2,000만원 이상 (매월 34만원 이상) 공동적립
 - 『핵심인력 : 사업주 = 1 : 2 이상』 의 비율로 납부
- 최소 가입금액 : 5년간 2,000구좌이상 (1구좌=1만원)
- 공제 금리 : 1.61% (2016년 지급이자율 기준, 매년 변동)

가입 혜택

- 중소기업 사업주
 - 납입금에 대하여 손금(필요경비) 인정 및 세액공제(납입금액의 25% 또는 전년대비 증가분의 50%(중견기업은 세액공제 협의 중))
- 핵심인력
 - 5년 만기금 공제금 수령 시 기업납입금의 소득세 50% 감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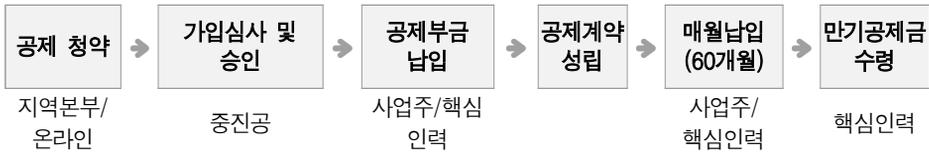
○ 중기청 지원사업 우대 및 연계지원

분류	사업명	연계·우대 내용	도입시기
수출 (8)	수출역량 강화사업	수출인력 공제가입 지원(300만원 한도, 현 장평가시 가점 1점)	'16.1
	고성장기업(가젤형) 수출역량 강화사업	지원기업 선정평가시 가점 2점	'17.1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대기업 동반 해외진출 선정시 가점 1~3점	'17.1
	차이나 하이웨이	중국 진출희망 기업 선정시 가점 1~3점	'17.1
	무역촉진단 파견사업(시장개척단, 해 외전사회)	참여실적 배점인정(최대 25점)	'17.1
	해외규격인증 지원사업	지원기업 선정 평가시 가점 2점	'17.1
	글로벌 강소기업	지원기업 선정 평가시 가점 1~3점	기반영
	월드클래스 300 프로젝트	지원기업 선정 평가시 가점 3점	'16.5
인력 (7)	중소기업 연수사업	공제가입인력 연수참여시 연수비 할인(30%)	기반영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제도	지원기업 선정 평가시 가점 10점	기반영
	중소기업 계약학과	재교육형 등록금 정부지원금 10% 추가지원	기반영
	중소기업 장기재직자 주택 우선공급	5년 가입시 가점 3~5점	'16.5
	산학맞춤 기술인력 양성사업	산학협력 프로그램 협약시 선정우대	'16.4
	산업기능요원 제도	지원기업 선정평가시 가점 5점	'16.6
판로 (4)	인재육성형 전용자금	전용자금(200억원) 지원, 금리인하(0.1%p)	'16.1
	장애인기업 시제품 제작지원	지원기업 선정시 가점 2점	'16.7
	제품 판로촉진 지원사업	지원기업 선정시 가점 1점	'16.5
	성능인증제도	지원기업 선정시 가점 1~2점	'17.1
창업 (6)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지원기업 선정평가시 가점 1점	'16.5
	창업보육센터	BI 운영평가시 가점 2점	'16.6
	민간투자 주도형 기술창업 지원(TIPS)	지원기업 선정평가시 가점 1점	'17.1
	창업선도대학	지원기업 선정평가시 가점 1~3점	'16.5
	창업도약패키지사업	지원기업 선정평가시 가점 1점	'17.1
	청년창업사관학교	지원기업 선정평가시 가점 1점	'17.1
R & D (12)	글로벌 창업 및 외국인창업 지원사업	지원기업 선정평가시 가점 1점	'17.1
	창업성장 기술개발사업	지원기업 선정평가시 가점 1~2점	'16.8
	기술혁신 개발사업	지원기업 선정평가시 가점 1~2점	'16.8
	시장창출형 기술개발사업	지원기업 선정평가시 가점 1~2점	'16.8
	R&D 기획역량 사업	지원기업 선정평가시 가점 1~2점	'16.8
	상용화 기술개발사업(구매조건부)	지원기업 선정평가시 가점 1~2점	'16.8
	경영혁신 마일리지 제도	1인당 마일리지 100포인트(최대 500포인트)	기반영
	제품 공정개선 지원사업	지원기업 선정평가시 가점 1~2점	'16.8
	산학연 협력 기술개발사업	지원기업 선정평가시 가점 1~2점	'16.8
	융복합기술 개발사업	지원기업 선정평가시 가점 1~2점	'16.8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	지원기업 선정평가시 가점 1~2점	'16.8
	정보화지원사업(생산현장 디지털화)	지원기업 선정평가시 가점 1~2점	'17.1
정보화지원사업(기술유출방지 시스템 구축)	지원기업 선정평가시 가점 1~2점	'17.1	
기타 (5)	미래혁신창출 기업혁신 디자인사업	지원기업 선정평가시 가점 5점	'16.5
	중소기업 컨설팅지원사업	지원기업 선정평가시 가점 2점	'16.6
	뿌리기업 지정증 발급	지원기업 선정평가시 가점 1~2점	'17.1
	명문장수기업 확인	일자리창출 정책참여 가점 2점	'16.5
	국방절충교역사업	지원기업 선정평가시 가점 3점	'16.9

가입 방법

-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를 방문하여 공제계약 청약
-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공제계약 청약 신청

처리 절차



문의 처

- 중소기업청 인력개발과 : 042-481-4424
- 중소기업진흥공단 성과보상사업처 : 02-6678-4265~8
-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www.sbcplan.or.kr
- 내일채움공제 고객센터 : 1800-7900

궁금해요! 중소기업



- Q** 중소기업의 대표자도 핵심인력의 자격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까?
- A**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근로자(핵심인력)에게 지급하는 성과보상금(인센티브)이므로 개인기업의 대표자 및 법인기업의 대표이사는 핵심인력의 자격으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내일채움공제는 가입기업의 1) 대표이사, 2) 최대주주, 3) 실질경영주에 해당되면 가입이 제한됩니다.
- Q** 공제 가입인원의 제한이 있습니까?
- A** 내일채움공제는 가입인원 제한이 없으며,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 중 사업주가 지정하는 핵심인력은 모두 가입 가능합니다.
- Q** 기업납입금은 핵심인력의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 A** 중소기업 기여금은 근로제공 이외에 '5년 이상 재직'의 추가적인 조건(초과근무를 하는 시점에 성취 여부가 불분명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지급되는 인센티브로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Q** 공제계약의 중도해지 시 해지환급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 A** 공제계약의 중도해지 시, 해지환급금은 해지 사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급됩니다.
- ① 중소기업 귀책에 따른 해지 : 중소기업 납입금 및 해지이자, 핵심인력 납입금 및 해지이자 전액을 핵심인력에게 지급
 - ② 핵심인력 귀책에 따른 해지 : 중소기업 납입금 및 해지이자 중소기업에, 핵심인력 납입금 및 해지이자 핵심인력에게 지급
다만, 핵심인력의 사망 및 업무상 재해로 인한 해지일 경우에는 전액 핵심인력에게 지급

11-3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

| 인력을 모범적으로 육성하는 중소기업 발굴 및 지원

인재에 대한 투자를 통해 생산성과 수익성을 향상시키고, 그 성과를 근로자에게 보상하여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해 나가는 우수기업을 발굴해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으로 지정합니다. 이를 언론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막연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중소기업 취업 및 중소기업의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지원 규모

‘17년 300개사 예정(연 예산 6억원)

* ‘14년 100개사, ‘15년 150개사, ‘16년 200개사 지정

신청 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신청접수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한(휴업기간은 불포함) 기업
 - * 개인기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5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연월일, 법인기업은 법인설립등기일
- 단,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이 적용되지 않는 업종(부동산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무도장 운영업)은 제외

지정 혜택

- 인재육성형 기업 전용자금 신청 자격 부여
- 중진공 융자잔액 한도 상향 및 매출액 한도 조건 예외 적용
- 중진공 연수 참여시 연수비용의 50% 감면
- 병역특례 지정업체 신청시 가점 5점 부여

-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현장탐방기 제작 및 홍보
- 인재육성 우수사례집 발간 및 배포, 주요 일간지 보도 등 홍보
- 우수 중소기업 전용채용관 운영 등 채용지원 등

지정 절차



지정 기준

- 정량지표(100점 만점)의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이며,
- 정성지표(100점 만점)의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기업

평가 방법

- 정량평가 : 신청기업이 제출한 증빙자료를 토대로 정량지표를 서면평가
- 정성평가 : 정량평가를 통과한 기업을 대상으로 평가팀이 직접 방문하여 정성지표를 평가하고, 서면평가 시 제출했던 자료를 점검

신청·접수

‘17 상반기 중 중소기업청 공고 후 신청 접수

-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홈페이지 (www.sme-hrd.or.kr)에서 기업회원 가입 후 온라인 신청 접수

문의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인력개발처 (055-751-9828~9)

평가 지표

구분	부문	영역	평가지표		배점	평가 방법
정량 지표 (100)	인재육성 노력 (A) (30)		A-1-1	교육훈련비	20	서 면 평 가
			A-1-2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가입	가점 (10)	
			A-1-3	신규 우수인재 채용률	10	
	인재육성 성과 (B) (70)	기업 성과 (25)	B-1-1	매출액 증가율	5	
			B-1-2	매출액 영업이익률	5	
			B-1-3	기업의 성장성	15	
			B-1-4	기술 및 경영 혁신성	가점 (5)	
			B-1-5	글로벌 경쟁력	가점 (5)	
		성과 보상 (45)	B-2-1	대기업 대비 임금 수준	25	
			B-2-2	정규직 비율	10	
B-2-3	근로자 평균 근속년수		10			
정성 지표 (100)	인재육성 CEO의 의지 (25점)	CEO의 의지	C-1-1	인재육성에 대한 CEO의 의지와 이해도	15	현 장 평 가
			C-1-2	산·학·관 협력 참여 등	10	
	인재육성 체계 (30점)	인재육성 인프라	C-2-1	인재육성 프로그램 실행을 위한 기업 인프라의 적합성	30	
			인재육성 프로그램 (45점)	C-3-1	인재육성 프로그램의 기업 적합성	
	C-3-2	인재육성 프로그램 시행방법의 적절성		25		

11-4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우선공급

| 주택 공급을 통해 중소기업 장기재직 유도

중소기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에게 국민임대주택 등을 우선적으로 공급하여, 주거생활을 안정화하고 중소기업으로 인력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원 규모

1,000호 내외(주택건설업체의 공급물량에 따라 변동 가능)

* '16년 지원 현황 : 870호('16.8.31 기준)

지원 대상

중소기업에 5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

- 과거 근무경력을 포함하여 중소기업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며, 4대보험 가입내역서 등으로 입증해야 함
- 공고한 날을 기준으로 무주택이어야 하며, 주택 보유사실 은폐·서류 위조 등의 경우 선정 및 계약 취소됨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동산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 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겜블링 및 베틀업, 무도장 운영업

지원 내용

-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인 국민·민영·공공주택 및 국민임대주택 등의 분양 또는 임대 우선권 부여

신청·접수

지방 중소기업청 및 제주특별자치도에 방문 또는 우편 신청·접수

| 확인·추천기준 |

- (확인) 중소기업 재직기간·무주택 여부 등 대상자 자격요건 충족 여부
- (추천) 대상자 자격요건 충족 시, 중소기업 재직기간·제조 소기업 재직여부·수상경력 등 배점기준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 고득점 순으로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사업주체에게 추천

신청 서류

신청서, 서약서, 중소기업 4대보험 가입내역서 등

* 신청서류는 해당 지방중소기업청 홈페이지 참조

처리 절차



문의처

- 중소기업청 인력개발과 : 042-481-4365
- 지방 중소기업청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궁금해요! 중기맨



Q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특별공급은 몇 번 신청 및 공급이 가능한가요?

A

주택특별공급은 국토해양부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원칙적으로 1회에 한하여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추천되었더라도 사정상 주택공급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차 신청할 수 있습니다.

11-5

중소기업 인식개선 (현장체험)

| 취업 예비층의 인식개선을 통한 중소기업 유입 유도

우리 경제의 뿌리가 되는 중소기업의 역할과 가능성을 바로 알림으로써 청년층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는 교육체험 사업

지원 규모 20,000명 (19.7억원)

지원 대상 참여자 : 중고등대학생, 학부모 등 / 현장체험기업 : 제한요건 없음
* 중고등학생 및 학부모는 개인 단위가 아닌, 학교 단위로만 신청 가능

지원 내용

○ 참여자 : 중소기업에 대한 이해 활동 및 체험 기회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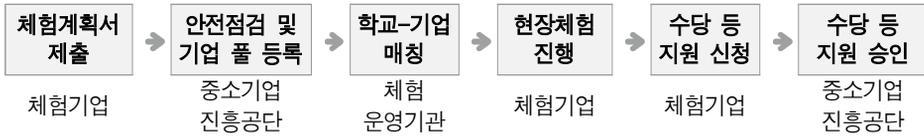
중학생	고등학생, 학부모	대학생
▪ 강소기업 현장탐방교육	▪ 중소기업 이해 연극특강, 토크콘서트	▪ 중소기업 체험캠프

○ 현장체험기업 : 현장체험 기회 제공 시 관리수당 및 전용 용자자금 등 지원
▪ 관리수당 : 기념품비, 관리인력 수당 등 지원 (15만원 내외)
▪ 전용 용자자금 : '인재육성형 기업 전용 정책자금' 지원대상에 포함
* 대출조건 : 운전자금 5억 / 5년, 시설자금 10억 / 8년 (고용창 출 시 이율·한도 우대)

신청·접수

○ 중소기업인접촉공단 인력개발처에 유선 문의(055-751-9825) 후 체험계획서 제출
○ 현장 안전점검 후 체험기업 풀에 등록되며, 학교에서 희망하는 기업을 신청하여 매칭

처리 절차



문의처

- 중소기업청 인력개발과 : 042-481-4467
- 중소기업진흥공단 인력개발처 : 055-751-9825



판로 지원

제 5 부

전방위 판로개척을
지원합니다.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www.smba.go.kr



중기백과 함께 알아보는 판로지원



- Q** LED 조명 제품을 개발하는 기업입니다, 공공기관에 납품을 하고 싶는데 방법이 있는지요?
- A** LED조명은 중소기업간 경쟁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직접생산확인을 받은후 공공구매종합정보망을 통하여 공공구매 입찰에 참여해 보십시오.(직접생산확인제도, 공공구매종합정보망 참조)
- Q** 직접생산 확인을 받아 공공기관에 납품을 하는 업체입니다, 직접생산 확인 현장 실태조사에 번거로움이 있는데 매년 직접생산 확인을 받아야 하는지요?
- A** 과거에는 1년 단위로 확인서를 발급하였으나, 매년 현장 실사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10.10월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직접생산 확인 유효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 Q** 2008년부터 기능성 등산스틱을 생산해 온 기업입니다, 판로 확보가 어려워 등산관련용품을 생산하는 몇 개 업체와 공동 브랜드를 만들려고 합니다.
- A** 공동상표를 개발하려는 기업이 5개 이상이라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상표개발 소요 비용의 70%를 지원해 드리며 공동상표의 홍보도 지원해드립니다.(중소기업 공동상표 지원 참조)
- Q** LCD TV를 생산해 판매하는데 최근 판매가 늘면서 AS에 대한 대응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해결책이 없을까요?
- A** 중소기업의 공동 AS센터를 통해 AS를 지원해드리는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을 신청하시면 전국 AS 지점망을 통해 AS콜센터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건설 자재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공공기관에 납품하려고 하는데 성능인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업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구매담당자가 꺼려하네요.

A 공공기관에 납품된 중소기업 제품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공공기관의 손해를 배상해주는 성능보증제도가 있습니다. EPC(성능인증), NEP, NET, GS, 우수조달제품으로 인정받은 제품이 가입대상입니다. 성능인증을 받으셨으니 가입하실 수 있고, 보험료율은보증보험 형식이어서 제품가격의 0.1~0.5% 정도로 저렴합니다.

Q 퓨전소스를 개발해 프랜차이즈 기업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홍보를 하려니 인력이 부족한데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언론매체를 통해 중소기업 제품을 홍보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우수 제품을 선정해 TV, 신문 등의 언론매체 프로그램에 노출시키는 것으로 매년 1,000여개 제품이 지원받고 있습니다.(중소기업제품 홍보지원 참조)

Q 생활용품을 주로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대형 유통업체로 납품을 하고 싶는데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요?

A 중소기업 구매상담회와 판매전에 참여해 보십시오. 중소기업청에서는 대형 유통업체 구매담당자와 중소기업간 만남의 장을 마련하여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를 돕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19회의 구매상담회를 통해 2,850개 업체를 지원하고 43회 판매전을 통해 540여개 업체를 지원하였습니다. (구매상담회 지원 사업 설명 참조)

Q 온라인 교육업을 시작한 지 1년 정도 되었습니다.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되지 않아 마케팅 부분에 애로가 많습니다.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하고 싶은데요.

A 중소기업 CEO를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마케팅 실전 교육이 있습니다. 마케팅 전략 기획부터 상품 및 서비스 기획, 판로 개척 및 활성화 전략, 마케팅 문제해결 등 총 4단계로 프로그램이 짜여져 있습니다.(중소기업 마케팅 기반조성 사업설명 참조)



제 12 장

중소기업에 유리한 공공기관 납품제도

12-1 중기간 경쟁제품,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225
12-2 직접생산확인제도	228
12-3 계약이행능력심사	230
12-4 적격조합 확인제도	232
12-5 조합 추천 소액 수의계약	234
12-6 공공구매론(Loan)	236

12-1

중기간 경쟁제품,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 중소기업만 수주하는 공공구매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 구매대상'에 지정된 품목은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으로 조달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 공공기관 구매액이 10억원 이상의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품목
-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분리발주) 대상 공사의 범위
 - ▷ 「건설산업기본법」상의 종합공사는 20억원 이상인 공사
 - ▷ 전문건설공사 및 전기·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등 전문공사는 3억원 이상인 공사로 직접 구매 대상품목의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공사
-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유효기간 3년('16.1.1~'18.12.31)이며, 유효기간 만료전 차년도 적용 경쟁제품 신청·접수 및 지정

지원 내용

- 공공기관 입찰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대상품목은 직접생산확인을 받은 중소기업간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하며, 입찰 방식은 '계약이행 능력심사'를 통해 낙찰 가격을 보장
 - * 대상제품 지정 현황('16년)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204개(레미콘, 아스콘 등)
- 공사용 자재 중 직접구매 대상으로 분리된 품목은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으로부터 분리 발주하여 직접구매

직접구매 제외경우

- 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 관련 공사로 발주가 시급하다고 인정되는경우 (다만,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른 다수공급 자계약에 따라 단기계약이 체결된 품목은 제외)

- ②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로 인해 국방·국가안보가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사의 경우
- ③ 그밖에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사용 자재 직접 구매가 곤란하다고 공공기관의 장과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장이 협의한 경우
 - ▷ 도서, 벽지지역 등 공사현장의 특성상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시 안정적인 공사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 ▷ 원자재 가격파동 등으로 원활한 자재수급이 곤란한 경우
 - ▷ 공사용 자재 직접 구매 시 공사의 품질 확보가 곤란하거나 공사비용이 현저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 공공주택 등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 공사로서 입주자의 해당 자재에 대한 선호도가 낮아 분양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
 - ▷ 특정 공사용 자재와 관련하여 과거 잦은 납기 지연으로 공사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던 경우
 - ▷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가 어려운 경우

신청·접수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품목 지정 신청은 관련조합, 한국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가 신청하거나 해당제품을 직접 생산·제공하는 10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연명하여 신청
 - * 신청양식은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 → 공지사항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으로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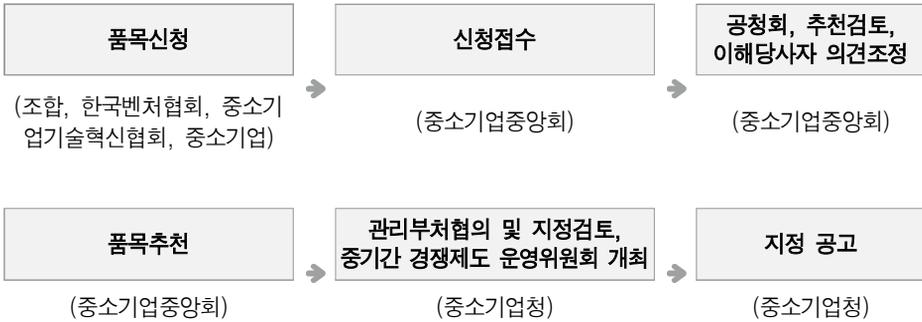
유의사항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공공기관에 납품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신용평가 등급, 직접생산확인,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을 미리 받아야함

신청 서류

- 지정추천 신청서, 이사회 의사록(사본), 신청서 기재내용 관련 증빙자료(생산 업체별 납품실적증명서, 세금계산서, 예상물량 관련 증빙서), 직접생산 확인 기준

처리 절차



문의처

- 중소기업청 공공구매판로과 : 042-481-4546
- 중소기업중앙회 공공구매지원부 : 02-2124-3241~2
- 공공구매종합정보망 : www.smpp.go.kr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궁금해요! 중기맨



Q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되면 무엇이 좋은가요?

A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대기업과 수입 유통업체를 제외한 국내 중소기업만 입찰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계약방식을 경쟁 입찰로 하여 중소기업자 사이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12-2

직접생산확인제도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여 입찰참여자격을 부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발주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거나 1,000만원 이상의 소액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면 직접생산확인 증명이 필요합니다.

지원 규모

(14) 23,959개사, (15) 24,017개사, (16.11) 24,753개사

지원 대상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한 경쟁입찰 및 1천만원 이상 소액 수의계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상호출자제한기업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
-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아닌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
- ✓ 직접생산확인 위반으로 취소되어 신청제한기간 중에 있는 중소기업

지원 내용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하여 직접생산 확인 후 증명서 발급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업체에 한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등 참여 가능

신청·접수

-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수시)
- 처리기간 : 14일 이내(토요일,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제외)

심사·평가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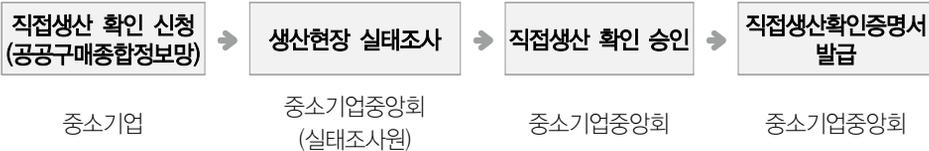
-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따른 제품별 생산공장·시설·인력·공정 등

신청 서류

제품별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따른 증빙서류

- 사업자등록증명(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생산공장 관련서류 : 공장등록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분), 임대차 계약서 등(임차시)
- 생산인력 증빙서류 : 4대보험 중 택일하여 사업자 가입증명(가입자명 명기)
- 특정자격증 보유여부 필수품목의 경우 자격증 사본 등
- 생산설비 증빙서류 : 필수장비의 경우 재무제표 상 감가상각명세서, 매입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처리 절차



문의처

- 중소기업청 공공구매판로과 : 042-481-8918
- 중소기업중앙회 공공구매정보센터 : 02-2124-3251~9
- 공공구매종합정보망 : www.smpp.go.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궁금해요! 중기맨



Q 직접생산 확인시 소요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리나요?

A 현장 실태조사 생략 제품의 경우 관련 구비서류가 완비되면 대부분 당일 처리가 가능하며, 현장 실태조사가 필요한 품목의 경우에는 관련 구비서류 완비 후 약 1~2주 가량 소요되니, 충분한 시간을 갖고 준비하세요.

12-3

계약이행능력심사

|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구매시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심사기준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서 최저가 낙찰제를 배제하고 일정한 납품가격을 보장(낙찰 하한율 88%)하기 위한 제도로써, 적절한 납품이행능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선별하고 품질 관리 우수 및 정부정책 호응도가 높은 중소기업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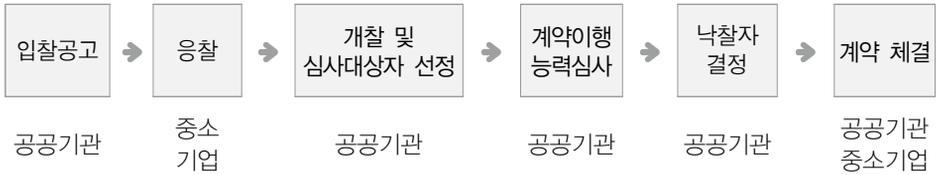
심사 내용

- 최저가로 응찰한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심사기준은 납품이행능력, 입찰가격, 신인도 및 결격사유로 구성)
 - 10억원 이상 : 입찰가격 55점, 납품이행능력 45점(납품실적 5점, 기술능력 10점, 신용평가등급 30점)으로 평가
 - 10억원 미만 : 입찰가격 70점, 납품이행능력(신용평가등급) 30점 비율로 평가
 - * 신인도(+3~-2점)과 결격사유는 공통 적용
- 기재부장관 고시금액(현행 2.1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소기업, 소상공인, 창업초기기업(5년 이내) 및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경우 신용등급평가에 관계없이 만점으로 평가

제출 서류

- 계약이행능력심사 신청서
- 이행능력심사 자기 평가 및 심사표
- 이행능력심사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
- 물품납품실적증명원 또는 물품납품실적확인서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처리 절차



문의처

- 중소기업청 공공구매판로과 : 042-481-8918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궁금해요! 중기맨



- Q** 소기업, 소상공인과 창업초기기업의 경우 신용평가 등급을 받지 않아도 신용평가 부분에 대하여 만점을 받을 수 있는지요?
- A**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현행 2억1천만원) 미만의 입찰에서는 소기업, 소상공인, 5년 이내 창업초기기업 및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 등급서의 유무에 관계없이 신용평가 부분의 만점(30점)을 부여합니다.

12-4

적격조합 확인제도

| 조합을 통한 영세 중소기업의 공공기관 입찰참여

적격조합 확인제도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단독으로 참여하기 어려운 영세 중소기업의 공동수주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원 규모

적격조합(16.10) 135개 조합, 203개 제품

확인 요건

- 해당 조합 조합원이 1/2 이상이 물품을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자일 것
- 경쟁제품의 품질관리 및 사후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을 것
- 조합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고 허가 사항이 정관에 명시되어 있을 것
- 중소기업청이 인정하는 공공구매 업무 관련교육을 연간 10시간 이상 이수한 상근 임직원을 2명 이상 보유할 것
- 해당 조합원사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시장점유율이 50% 이하일 것

유의 사항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별도로 독립하여 같은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이중투찰 금지)

지원 내용

- 적격조합 요건을 갖춘 조합에 대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부여
- 조합은 입찰 참여자격을 갖춘 2개 이상의 소속 조합원사를 대표하여 입찰에 참여 가능

신청·접수

- 신청서 작성 후 중소기업청 공공구매판로과에 접수(수시)
 - * 신청양식 :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다운로드

처리 절차



문의처

- 중소기업청 공공구매판로과 : 042-481-4546
- 중소기업중앙회 공공구매지원부 : 02-2124-3241
- 공구매종합정보망 : www.smpp.go.kr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궁금해요! 증기맨



- Q** 적격조합제도는 왜 시행하나요?
- A** 독자적으로는 경쟁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받기 힘든 영세·소기업의 수주기회 증대를 위해 해당 기업이 관련조합을 통해 공공시장에 참여토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12-5

조합 추천 소액 수의계약

| 중소기업의 공공시장 진출기회 확대

소기업·소상공인의 공공시장 수주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추정가격 5,000만원 미만의 제품을 구매할 때 조합이 추천한 자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적용 품목

- 추정가격 5,000만원 미만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해당품목(제품 품목은 공공구매종합정보망 하단에 상시 공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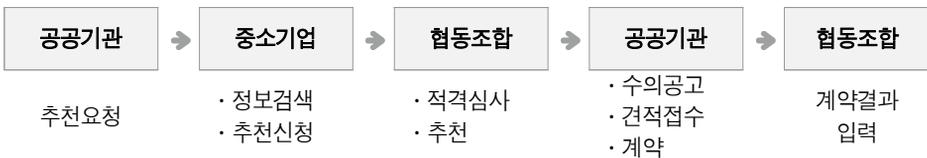
신청·접수

- 중소기업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 '소액수의 계약시스템'에 신청

유의사항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별도로 독립하여 같은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이중투찰 금지)

처리 절차



문의처

- 중소기업청 공공구매판로과 : 042-481-4546
- 중소기업중앙회 공공구매지원부 : 02-2124-3241

- 공공구매종합정보망 : www.smpp.go.kr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궁금해요! 증기맨



Q 조합추천 소액 수의계약은 조합원사만 참여가능한가요?

A 추정가격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 관련 조합은 비조합원사를 최소한 1개 이상 포함하여 총 5개 이상을 추천하여야 하며, 낙찰자 결정시 비조합원사가 받는 불이익은 전혀 없으므로, 비조합원사도 얼마든지 참여 가능합니다.

12-6 공공구매론(loan)

| 중소기업만 수주하는 공공구매

공공기관과 납품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에게 계약을 근거로 납품이행에 필요한 생산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금융상품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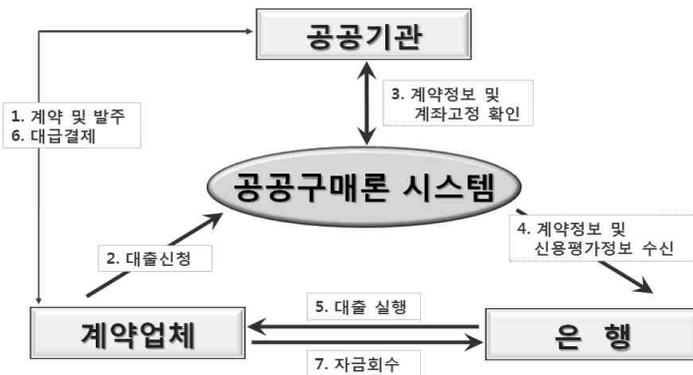
지원 규모 공공구매론 대출실적 : (‘13)1,064억원, (‘14)1,341억원
(‘15)1,498억원, (‘16.11)1,037억원

지원 대상 중소기업과 납품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

- 지원 내용**
- 공공기관과 납품계약을 체결한 계약을 근거로 신용대출
 - 선수금을 제외한 계약금액에서 기업의 신용등급에 따라 최대 80%까지 대출

신청·접수 연중수시, 온라인(www.smpp.go.kr 접속)으로 신청

처리 절차



문의처

- 중소기업청 공공구매관로과 : 042-481-4468
- 공공구매론 운영(중소기업중앙회) : 1666-9988(내선 : 3)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궁금해요! 중기맨



Q 공공구매론은 시중의 모든 은행에서 이용가능한가요?

A 공공구매론은 현재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광주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등 총 6개 은행을 통해 이용이 가능합니다. 향후 참여은행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제 13 장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13-1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239

13-2 성능인증제도

242

13-1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 공공기관 중소기업 물품구매액의 10% 이상

공공기관은 물품을 구매할 때 물품구매액의 10% 이상을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성능인증, NET, NEP, GS, 우수조달물품 등 16종)을 우선 구매하여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판로를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액

* ('12) 2.11조원, ('13) 2.54조원, ('14) 2.62조원, ('15) 3.11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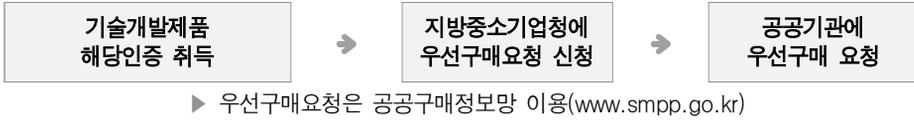
지원 대상

- NET·NEP(기술표준원), GS(미래부), 우수조달물품·우수조달공동상표 지정 물품(조달청), 성능인증·구매조건부 R&D사업·민관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중소기업청), 녹색인증 제품(녹색인증 사무국), 중소기업융복합 기술개발제품, 산업융합품목, 개발선정품, 성과공유기술개발 성공제품, 산업융합적합성인증 제품, 우수산업디자인상품

지원 내용

- 공공기관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성능인증, NET, NEP, GS, 우수조달물품, 우수조달 공동상표 지정물품, 구매조건부 R&D사업제품·민관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제품 등 8종)을 구매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에 의해 수의계약이 가능
- 기술개발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이 지방중소기업청에 우선구매를 요청할 경우, 지방중소기업청은 해당 제품의 수요가 있는 공공기관에 구매를 요청함

처리 절차



문의처

○ 관할지역중소기업청

소 속	연락처	소 속	연락처
서울	02-2110-6329	대전·충남	042-865-6155
부산	051-601-5124	울산	052-210-0044
대구·경북	053-659-2233	강원	033-260-1641
광주·전남	062-360-9141	충북	043-230-5370
경기	031-201-6934	전북	063-210-6481
인천	032-450-1134	경남	055-268-2543

○ 기술개발제품 인증기관

NEP,NET (과학기술)	기술표준원	043-870-5502	우수조달물품 우수조달공동상표 지정물품	조달청	070-4056-7525
NET(교통신기술) NET(건설신기술)	국토교통부 (신교통개발과) (기술정책과)	044-201-3818 /044-201-3555	NET (환경신기술)	환경부 (환경기술 경제과)	044-201-6672
NET (보건신기술)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	044-202-2966	NET (방재신기술)	국민안전처 (재난안전 산업과)	02-2100-0465
NET (전력신기술)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	044-203-5243	녹색인증	녹색인증 사무국	02-6009-3981
GS	미래창조과학부 (소프트웨어산업과)	02-2110-1849	우수산업 디자인상품	한국디자인진흥원	031-780-2253

- 공공구매종합정보망 : www.smpp.go.kr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궁금해요! 중기맨



- Q** 성능인증(EPC Excellent Performance Certification)
- A**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에서 개발한 기술의 품질과 생산 이행능력을 증명하여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우선구매 가능하도록 인증하는 제도
- Q** GS(Good Software / 우수소프트웨어)
- A** 미래창조과학부가 우수소프트웨어에 대하여 인증하는 제도로서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대상에 해당됨
- Q** NEP(NEW Excellent Product / 신제품인증)
- A** 기술표준원이 신제품에 대하여 인증하는 제도로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에 해당
- Q** NET(New Excellent Technology / 신기술 인증)
- A** 기술표준원이 제품기술에 대하여 인증하는 제도로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에 해당
- Q** 우수조달물품
- A** 중소기업·벤처기업에서 생산하는 신기술, 우수품질 제품을 조달청이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하는 제도로 국가계약법상 공공기관이 해당물품을 수의계약으로 우선구매 가능함
- Q** 우수조달 공동상표 지정물품
- A** 5이상의 중소기업자가 개발·보유한 공동상표 물품 중 우수물품을 우수조달 공동상표로 지정하여 판로를 지원하는 제도로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에 해당되며 국가계약법상 수의계약이 가능함
- Q** 구매조건부 R&D 사업을 통해 개발에 성공한 제품, 민·관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공공부문)을 통해 기술개발에 성공제품
- A** 제품이 개발되면 공공기관이 구매를 조건으로 하는 R&D 사업으로 중소기업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임, 공공기관이 구입할 수 있는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임
- Q** 녹색인증대상제품
- A**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32조 및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인증해주는 제도로서 산업부 산하 녹색인증사무국에서 인증 및 관리 추진,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에 해당됨
* 홈페이지(www.greencertif.or.kr)

13-2

성능인증제도

|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이 되도록 인증 부여

중소기업청에서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성능을 인증하여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를 지원합니다.(성능인증 취득과 동시에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제도'의 대상으로 편입)

지원 규모

성능인증 발급 누적건수 : ('14) 966건, ('15.12) 1,411건, ('16.10) 1,620건

지원 대상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 내용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의 지원내용과 동일

인증대상 품목

- 신기술인증제품, 특허제품, 기술혁신개발제품, 벤처기업·기술혁신형기업 제품 등 21종
- 대상품목 상세내용은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 참조(www.smba.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고시에서 검색)
- 유효기간 : 인증일로부터 3년

신청·접수

연중 수시 접수

-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제출 서류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직접 신청

- 성능인증신청서, 규격설명서
 - * 직접 작성
- 안전·품질·환경·보건 분야 자격 증빙서류, 기술도면 등(필요시)
 - * 성능인증신청서에 첨부

처리 절차



* 적합성심사 및 성능검사 기간을 제외하고 30일 이내 처리

문의처

○ 각 지방중소기업청

소 속	연 락 처	소 속	연 락 처
서울	02-2110-6322	울산	052-210-0044
부산	051-601-5145	강원	033-260-1642
대구·경북	053-659-2506	충북	043-230-5334
광주·전남	062-360-9160	전북	063-210-6441
경기	031-201-6974	경남	055-268-2564
인천	032-450-1175	제주시험연구원	064-723-2101
대전·충남	042-865-6156		

- 공공구매종합정보망 : www.smpp.go.kr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궁금해요! 증기맨



Q 성능인증서를 발급받는데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리나요?

A 성능인증은 신청에서 발급까지 약 1~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제 14장

마케팅, 홍보 지원

14-1 중소기업 마케팅 역량강화	245
14-2 혁신제품발굴연계시스템(아임스타즈) 운영	248
14-3 정책매장 아임쇼핑 설치운영	250
14-4 온라인 시장진출	252
14-5 오프라인 시장진출	254
14-6 중소기업 공동 A/S 지원	256
14-7 중소소모성자재 납품기업지원	258
14-8 공영홈쇼핑(아임쇼핑) 우수제품 입점판매	261

14-1

중소기업 마케팅 역량강화

| 우수기업 혁신제품의 판로·유통시장 진출 촉진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벤처기업이 마케팅 사업계획을 수립·실행함으로써 핵심역량과 시장 경쟁력을 제고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규모

100개사 내외(전체 예산 46.3억원)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지원대상으로 하되, 사업성, 기술력, 수출고용성과 등을 평가하여 성장잠재력이 우수한 기업
 - * 국내 제조업 중 일반 소비자가 구매 가능한 B2C 품목을 생산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
 - * 단, 홍보의 경우 『의약품·의료기기·건강기능식품 등』의 경우는 '광고사전심의 규정 / 상품 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대한 규정에 의거하여 지원결정(심의비용 지원 불가)

지원이 안되는 기업

✓ 1차 식품, 주류, 건설자재, 부품 등 중간재, 기업형 의료기기, 수입품 등

지원 내용

- 자율선택 패키지 사업으로써 희망 분야 모두 선택 가능
 - (마케팅전략수립) 판매전략 수립, 마케팅 역량강화 교육, 개인·그룹 상담회를 통한 중소기업의 마케팅 역량강화 도모
 - (제품개선) 마케팅전략 수립과 연계하여 상품성 향상이 필요한 제품에 대해 성능 향상·디자인 개발·품질 개선 등 지원

- (해외수출) 희망 해외시장 조사(유통·물류체계 등), 해외소비자 반응조사 등의 컨설팅을 통해 해외진출 역량강화 지원
- (브랜드 개발) 중소기업 브랜드 개발 및 관리 전략수립 지원
- (홍보) 방송, 온라인, 인쇄, 옥외 등 광고 매체에 홍보 마케팅
 - * 상기 홍보매체 외 사업 목적에 부합되는 매체 또는 참여기업이 희망하는 매체의 경우 활용 가능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지원 대상을 ‘제품’ 위주에서 ‘기업’ 위주로 개편
 - * ('16년) 1개 기업 1개 제품 지원 → ('17년) 1개 기업 다수 제품 지원
- 단일사업 개별신청 방식에서 자율 선택·집중형 구조로 사업 개편

신청·접수

수시 모집

- 이임스타즈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www.imstars.or.kr)
- 평가 및 선정방법 : 사전검토 → (서면평가) → 대면평가 → 선정

제출 서류

사업계획서(확약서 등 포함),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또는 임가공계약서), 제품 설명서, 각종 제품 관련 증명서

처리 절차

- 지원절차



문의처

- 중소기업유통센터 : 02-6678-9311, 9316, 9326, 9335
- 중소기업청 공공구매판로과 : 042-481-4434, 8950
- 아임스타즈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www.imstars.or.kr)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궁금해요! 중기맨



Q 식품도 지원 가능한가요?

A 1차 농·수산물은 지원 불가하고 2차 가공식품을 국내에서 직접 생산·제조업체는 지원 가능합니다. 다만 관련 기관으로부터 상품제조 허가나 신고를 필한 제품으로 냉장(냉동)식품이거나 일정기간 이상 상온 보관이 용이한 가공식품으로 정부공인 인증(HACCP 등)을 받은 제품에 한해 지원이 가능합니다.

- * 가공식품군 : 과자류, 면류, 음료류, 즉석조리식품, 통조림, 견과류
- * 가공식품 추가 제출서류 : 영업허가신고대장, 품목제조신고대장, 정부 공인 품질 인증 관련 서류, 시험성적서 결과 서류

Q 희망하는 사업을 선택할 수 있나요?

A 희망하는 사업은 모두 선택가능합니다. 단 '제품개선'의 경우 '마케팅전략수립'을 지원한 기업에 한해 지원이 가능합니다.

14-2

혁신제품 발굴 · 연계 시스템(아임스타즈) 운영

| 중소기업 제품의 발굴 및 유통망 연계를 위한 기반구축

우수 중소기업의 아이디어 혁신제품을 발굴,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중소기업과 국내외 유통채널(MD)들이 서로 쉽게 만날 수 있도록 혁신제품 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원 규모

5,000개 제품

지원 대상

중소기업이 제조·위탁하여 생산한 소비재 완제품, 국내 제조 기업에서 공급받아 판매하는 중소유통기업의 상품 중 ‘우수중소기업 발굴·연계시스템’에 등록을 신청한 제품

지원이 안되는 기업

✓ 주류, 의약품, 소프트웨어, 건강보조기능 식품, 산업재, 원·부·중간자재류, 부품 등

지원 내용

- (혁신제품 데이터베이스화) 창업·혁신기업의 아이디어 혁신제품을 발굴·선별, 상품 검색이 가능하도록 데이터베이스 구축
 - * 중소기업의 혁신제품 등록정보를 유통MD가 상품성, 시장성 검증 후 DB화
- (상품정보 제공) 국내외 다양한 유통채널들이 실시간으로 혁신제품 정보를 검색·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신청·접수

수시접수

- 아임스타즈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www.imstars.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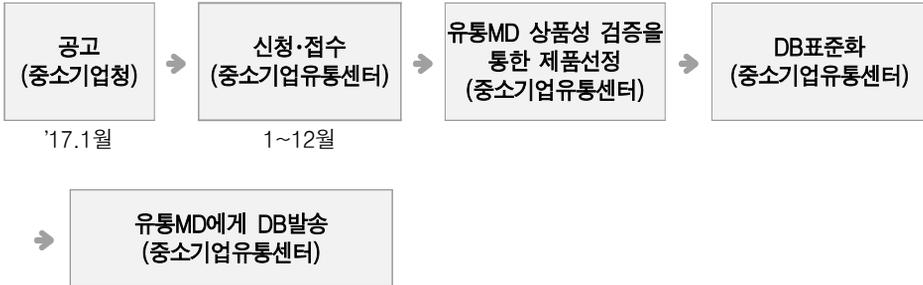
심사·평가 내용

- 상품성, 가격경쟁력, 품질 등을 종합평가하여 혁신제품 선정

신청 서류

- 사업신청서, 제품정보카달로그(이미지), 사업자등록증, 전년도 재무제표

처리 절차



문의처

- 중소기업유통센터 : 02-6678-9413
- 중소기업청 공공구매판로과 : 042-481-4434, 8950
- 아임스타즈 홈페이지(www.imstars.or.kr) 참조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14-3

정책매장 아임쇼핑 설치·운영

| 중소기업제품의 시장검증과 유통망 연계 지원

중소기업제품 전용판매장인 ‘정책매장 아임쇼핑’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이 생산한 우수제품의 시장검증과 유통망 연계 판매를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2,600개사 아임쇼핑 매장 입점(예산 25억원)

* '16년 지원현황 : 2,600개사

지원 대상

상품을 제조하는 국내 중소기업 및 그 상품을 취급하는 중소기업, 아이디어와 기술력이 뛰어나 시장에서 잘 팔릴 수 있는 우수중소기업의 소비재 완제품

* 규모 및 업태 : 중소기업(제조 및 유통사)

* 생산지 : 국내 제조 및 OEM(국내 중소기업 원천기술 보유) 표기제품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대기업, 중견기업, 수입제품, 1차식품 등 제외
 - * 단, 선정심사 시 사업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입점 가능
- ✓ 매장별 취급 제한 품목은 해당 매장 입점 제한
 - * (하나로) 식품, (휴게소) 차량용품 및 디지털 제품 일부

입점상품 선정시 우대

- 공영홈쇼핑 방송상품으로 선정된 상품 및 초기제품 시장진입 사업 완료 기업
- 아이디어가 뛰어나고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신기술 · 신제품

지원 내용

- 자체 판매장 개설이 어렵거나 신상품의 신규 시장진출이 필요한 중소기업의 아이디어 우수제품을 대상으로 판매 공간 제공

-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독립매장 또는 샵인샵 방식으로 매장 운영하며 전시판매를 위한 인테리어 제공, 판매 전문인력 지원을 통한 판촉·홍보
- 국내외 바이어 초청 구매상담회 개최, 판매행사 등을 통해 유통망 진출 및 판매성과 제고

신청·접수

수시모집

- 아임스타즈 홈페이지(www.imstars.or.kr) 통한 온라인 신청

심사·평가 내용

- 적합성, 상품성, 마케팅력 등을 종합 평가하여 입점제품 선정

처리 절차

- 신청업체 입점 선정위원회 : 격월 선정(필요 시 수시 개최)



문의처

- 중소기업유통센터 : 02-6678-9990
- 아임스타즈 홈페이지(www.imstars.or.kr) 참조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궁금해요! 증기맨



Q 중소기업제품전용판매장 지원 사업에 신청하여 선정된 기업은 입점 진행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A 선정된 업체는 해당 판매장 담당자가 유선 또는 E-MAIL을 통해 입점에 필요한 서류안내 및 매장입점에 대한 일정(상품입고 등)을 안내해 드립니다.

14-4

온라인 시장진출

| 중소기업의 온라인시장 경쟁력 강화

중소기업제품의 온라인 쇼핑물 입점에 필요한 온라인DB 제작 등 인프라 조성과 온라인 판매 가능한 제품들을 모아 판매기획전을 개최하고 홈쇼핑판매를 지원하는 등 중소기업의 온라인 시장진출을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온라인DB제작 600개, 상품기획전 43회, 홈쇼핑 240회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 제조·위탁하여 생산한 소비재 완제품(일반소비자가 구매 가능한 제품)

- 국내제조 또는 OEM(국내 중소기업 원천기술 보유) 표기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제품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주류, 의약품, 소프트웨어, 건강보조/기능식품, 산업재, 원부자재류, 부품 등

지원 내용

- (온라인판매관리지원) 판매관리시스템을 통한 혁신제품 온라인쇼핑물 입점·통합관리기능 제공 및 온라인마케팅 교육지원
- (온라인DB제작) 온라인쇼핑물 시장 진출을 위한 혁신제품 상세페이지·홍보 동영상 DB 제작지원
- (온라인 상품기획전) 혁신제품 판매 및 촉진을 위한 온라인쇼핑물 기획전 운영
- (소셜커머스 입점지원) 소셜커머스 입점 및 기획전 등 홍보·판매 지원
- (TV홈쇼핑 방송지원) TV홈쇼핑사와 연계한 우수제품 방송판매를 통해 판매성과 제고
- (인터넷홈쇼핑 방송지원) 인터넷홈쇼핑을 통한 혁신제품 인터넷판매방송 및 온

라인쇼핑몰 연계로 신규판로 확대 및 판매성과 제고

신청·접수

- 아임스타즈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www.imstars.or.kr)
 - * 세부일정은 아임스타즈 홈페이지 혹은 마케팅지원사업 공고문 참고

신청 서류

- 사업신청서, 제품카달로그(이미지), 사업자등록증 등

문의처

- 중소기업유통센터 : 02-6678-9451, 9452, 9454
- 중소기업청 공공구매판로과 : 042-481-4434, 8950
- 아임스타즈 홈페이지(www.imstars.or.kr) 참조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우측 「중기 지원시책」 코너 참조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궁금해요! 중기맨



Q 상세페이지 제작을 위한 이미지 자체가 없는데 지원 받을 수 있나요?

A 상세페이지 제작지원은 제품 이미지 촬영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지 별도로 없어도 신청 및 지원이 가능합니다.

14-5

오프라인 시장진출

| 중소기업의 오프라인 유통망 연계 판매

‘우수중소기업 발굴·연계시스템’에 등록된 중소기업 혁신제품을 대상으로 대형유통망 내 판매기획전을 개최하여 판촉·홍보 및 시장검증을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오프라인 판매기획전 10회(전체 예산 6.0억원)

지원 대상

중소기업이 제조·위탁하여 생산한 소비재 완제품 및 국내 제조기업에서 공급받아 판매하는 중소유통기업의 상품 중 ‘창조혁신제품 발굴·연계시스템’에 등록된 제품

지원이 안되는 기업

✓ 주류, 의약품, 소프트웨어, 건강보조·기능식품, 산업재, 원부자재류, 부품 등

지원 내용

- (판매기획전) 대형유통망 전문기관이 협력하여 상품기획하고 이를 해당 유통망내 편집매장 방식으로 판매홍보
 - * 전문기관 : 혁신제품 DB를 활용, 계절·테마별 상품기획 제안
 - * 유통망 : 전문기관이 상품기획 제안을 보완하여 판매·홍보하고 시장성이 검증된 우수제품은 해당 유통망 입점기회 부여

신청·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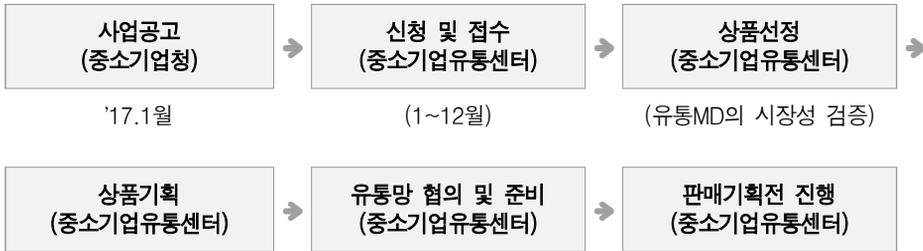
수시 모집

- 아이스타즈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www.imstars.or.kr)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제품정보카달로그(이미지), 사업자등록증, 전년도 재무제표

처리 절차



문의처

- 중소기업유통센터 : 02-6678-9583
- 중소기업청 공공구매관로과 : 042-481-4434, 8950
- 이임스타즈 홈페이지(www.imstars.or.kr) 참조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info.go.kr),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14-6

중소기업 공동 A/S 지원

| A/S콜센터와 전국적 지점망을 활용한 상담처리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고도 자금, 인력 등이 부족해 자체적으로 A/S 시스템을 갖추기 어려운 중소기업에게 전국적인 A/S 시스템을 지원하여 중소기업 제품 경쟁력 강화와 고객 신뢰도 향상을 통해 판로 확대를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500여 업체(전체 예산 62.7억원)

지원 대상

국내 공장에서 일반 소비재 완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자체 A/S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국내 제조가 아닌 외국에서 생산된 제품(해외 OEM, 단순 수입 제품 등)
- ✓ A/S 해당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한 건설자재, 부품 등 중간재 및 의류 등 일회성·소모성 생활소비재 등

지원 내용

- 콜센터 및 전문 상담요원을 통한 각종 고객문의, 불만, 민원 처리 및 관리
- A/S 대행사를 통해 제품 수리교환반품에 대한 A/S 처리 지원
- 콜센터로 축적된 정보(상담사례, 불만사항, 구매정보 등)를 D/B화하여 제공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한 기업부담금 제도 도입(30%)

신청·접수

수시모집

- 아임스타즈 홈페이지(www.imstars.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현장조사 평가 시 접수한 증빙서류 및 업체 현황(사무실, 공장 등) 방문확인

신청 서류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재무제표(최근 2년), 카다로그, 기타 인증 등

문의처

- 중소기업유통센터 : 02-6678-9382, 9383, 9386, 9389
- 중소기업청 공공구매판로과 : 042-481-4434, 8950
- 아임스타즈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www.imstars.or.kr)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우측 「중기 지원시책」 코너 참조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궁금해요! 중기맨

Q 중소기업 공동 A/S 센터의 참여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A 중소기업 공동 A/S 센터는 참여 후 3년간 지원하며, 중소기업이 독자적인 A/S 인프라 및 운영 역량을 구축하여 성공적으로 자립을 도모드리기 위해 3년 지원 후 2년 유예 심의를 거쳐 최장 5년까지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14-7

중소소모성자재 납품기업 지원

| 소모성자재 납품기업(MRO) 판로지원

중소 소모성자재납품업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마케팅지원, 공동 MRO물 시스템을 통한 구매대행사업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규모

250개사(전체 예산 5억원)

* '16년 지원현황 : 교육 및 코칭(136개사), 입찰정보 분석제공 등 판로지원(39개사),

지원 대상

국내 중소기업 소모성자재 납품기업, 중소기업 구매대행기업 등

지원이 안되는 기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5항에 해당하는 대규모 자재 구매대행업자

지원 내용

- MRO 시장의 마케팅 역량강화 (온라인 교육 및 1:1 심화 코칭) 및 판로 지원 (공공기관 입찰정보 분석제공)등 입체적 중소기업 지원 서비스
- 세부사업 내역

분 야	내 용	지원 한도
온라인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 입찰에 참여하기 위한 기본적인 법령 및 시스템 이용법 등 공공 MRO 시장 진출을 위한 기본적인 역량 교육 • MRO 물품 구매 관리, 물류 관리, 시스템 구축 등 MRO 시장 마케팅을 위한 기본적인 정보 제공 	
판로정보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매기관 소모성자재 입찰정보 및 중소기업 현황, 취급제품 등 납품, 구매와 관련된 종합 정보를 지원 	
코칭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 MRO 구매 대행 업무를 위한 1:1 맞춤형 현지 컨설팅 • 취급 품목 및 목표시장 등 회사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전략제시 	
공동MRO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 MRO 물 시스템 운영으로 공공기관에 대한 종합적 판로 지원 및 기업 홍보 기회 제공 	

신청·접수

- 세부 사업별로 신청·접수기간이 상이함에 따라 사전 문의 필수

신청 서류

사업신청서

- * 신청양식은 지원사업별로 상이함에 따라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sbmro.or.kr)에 게재
세부 공지사항 참고

처리 절차



- * 지원사업별로 처리절차가 상이함에 따라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sbmro.or.kr)에 게재된
세부 공지사항 참고

문의처

- 중소기업청 동반성장지원과 : 042-481-8869
- 중소기업유통센터 : 02-6678-9331, 9329
-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sbmro.or.kr) 및 대표전화(1544-0906)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 ☎1357

궁금해요! 중소기업



Q 중소기업기업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기존 중소기업자는 모두 해당이 되는 것인가요?

A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라 해도 「독과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기업 계열회사인 경우 중소기업기업으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Q 구매대행기업은 납품기업과 어떻게 구분되나요?

A 구매대행기업이란 구매시스템 및 물류/배송 체계를 구축하고 있거나 계약을 통해 이용하고 있는 소모성자재 납품기업입니다.

※ 구매시스템 : 계약을 통한 B2B 구매대행을 영위할수 있도록 구축된 내부 온라인 시스템으로 각종 소모성자재의 상품소싱, 주문, 배송, 정산, 거래처관리, 실적관리 등의 기능을 보유

※ 물류/배송 체계 : 구매시스템을 통해 주문된 상품을 주문사에 전달하는 수송 및 보관체계

Q 비소모성자재로 분류되는 물품은 어떤 종류들이 있나요?

A 생산에 직접 관여하는 원자재(건축 철강, 목재, 시멘트, 모래, 석유, 석탄 등) 및 식자재, 간행물(신문, 잡지 등), 유형고정자산(선박, 차량, 전동차, 기계설비 등)

14-8

공영홈쇼핑(아임쇼핑) 우수제품 입점판매

| 중소기업 및 농축수산물 전용 TV홈쇼핑

중소벤처기업 제품과 농축수산물 위주로 100% 방송 편성하고 TV홈쇼핑 업계 최저 판매수수료를 23% 적용으로 중소기업인과 농어민의 홈쇼핑 시장개척을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약 1,500개 제품

지원 대상

중소기업 제품, 국내 농축수산물과 가공품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대기업, 중견기업 및 해외기업이 국내외 중소기업에 위탁생산(OEM : 주문자 상표부착 / , ODM : 제조자 생산개발)한 제품

지원 내용

- 홈쇼핑 입점 판매수수료율 : 평균 23%
- 창업R&D 등 창의혁신제품, 벤처이노비즈 신제품, 6차산업화제품 등 정부의 정책지원을 받은 사업화 우수제품 판매·홍보시 우대

신청·접수

연중

- 아임쇼핑몰 접속(www.immall.co.kr) → 몰하단 “입점안내” 온라인 신청

신청 서류

신상품 기술서, 회사소개서, 특허·인증 등 증빙서류



수출 지원

제6부

수출 첫걸음부터 글로벌 마케팅까지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www.smba.go.kr



중기벤처와 함께 알아보는 수출지원



- Q** 국내시장의 포화 및 FTA체결로 기회가 확대된 시장을 진출해보고자 합니다. 해외 전시회를 참가하고 싶은데 지원사업은 없나요?
- A** 해외전시회를 참가하고자 하는 기업은 참여방식에 따라 두가지 사업을 통해 지원이 가능합니다. 개별기업별로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중소기업 수출역량강화사업에 참여하시어 개별전시회 지원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으며, 업종별 단체전시회의 구성원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무역촉진단 파견사업에 참여하시면 전시회 참가에 소요되는 부스비용 등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수출역량강화사업, 무역촉진단 파견사업 설명 참조)
- Q** 수출 300만달러 정도인 수출유망중소기업 선정기업입니다. 시장다변화를 위해 사업을 지원받고 싶은데 직접 지원사업은 없나요?
- A** 최근 2년간 수출실적이 100만달러 이상 500만달러 미만이며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은 수출역량강화의 수출고도화 사업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장 다변화를 위한 시장조사, 해외시장 특화 제품디자인 개발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각 수출지원센터를 통해 전국 300개사를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 수출성공패키지사업 설명 참조)
- Q** 의료기기를 유럽에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사업 규모가 커지고 고가인 제품의 특성상 제품의 신뢰도 제고 및 판매 후 유지보수가 필요하여, 이번에 해외 지사를 설립하려하는데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 있는지요?
- A** 해외 현지에 있는 '수출 인큐베이터'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2개 수출인큐베이터를 통해 현지에서 저렴한 사무실을 제공받아 해외지사 설립준비를 하실 수 있습니다. (수출인큐베이터 운영 설명 참조)
- Q** 이번에 SASO 인증을 갱신하는데 인증지원금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인증 받은 후 신청하는 건가요? 아니면 받기 전에 해야 하는 건가요?
- A** 신규로 획득하려고 하는 규격인증만 지원하므로 이미 획득한 인증에 대한 갱신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신규획득의 경우에도 규격인증을 획득하기 전에 미리 신청하셔야 합니다. 또한, 사업신청기간 최대 3개월 이전에 규격인증을 획득한 기업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사업 설명 참조)

제 15장

초보에서 글로벌까지 다양한 수출지원

15-1 수출성공패키지	267
15-2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	271
15-3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275
15-4 무역촉진단 파견사업	279
15-5 대·중소기업 동반진출지원	281
15-6 해외유통망 진출지원	284
15-7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사업	287
15-8 수출인큐베이터 운영	292
15-9 고성장기업 수출역량강화사업	295
15-10 수출금융융자	297
15-11 차이나 하이웨이 사업	300
15-12 전자상거래수출시장지원	303
15-13 글로벌 협력 지원	305
15-14 GMD(글로벌시장개척전문기업)사업	307
15-15 수출고용 특별자금	310
15-16 해외 기술교류 지원	312
15-17 중견기업 해외마케팅 맞춤형 지원사업	314

15-1

수출성공패키지

| 역량별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중소기업 글로벌 역량에 따라 수출기업화, 수출고도화로 구분하여 수출 전 과정에 이르는 준비·마케팅 활동을 기업 맞춤형으로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1,950여개사(전체 예산 478억원)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상 제조업, 제조관련 서비스업, 지식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휴·폐업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등
 - * 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진공에서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참여 가능
- ✓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단계에 3회 이상 참여한 기업
- ✓ 수출성공패키지 참여제한 업체 등

우선선정 (수출기업화 사업에 한정)

- 전년도 수출기업화 사업에 참여한 결과 “우수기업”으로 평가된 기업

지원 내용

- 수출준비활동, 현지화 컨설팅, 홍보·광고/온라인마케팅 등 8개분야 40여개 세부 사업 제공하며, 기업이 선택한 사업비용의 최대 70% 지원 (VAT 별도)

○ 세부사업

분 야		지원내용(예시)	정부 지원한도
수출준비	수출 준비	경영멘토링, 수출브랜드개발, 영문 웹사이트 제작, 온라인카다로그, 상품페이지 제작, 시제품/샘플(발송)/앱/사은품 제작, 외국어자료 통번역, 지재권 등록, 해외규격인증획득, 정품인증	(수출기업화) 2,000만원
	현지화 컨설팅	인증시험 컨설팅, 디자인-매뉴얼제작 등 현지화 컨설팅 지원	(수출고도화) 3,000만원
거래선 발굴	홍보·광고/온라인 마케팅	TV·신문·잡지·SNS 홍보, 기업홍보 동영상, 광고제작, 홈쇼핑, 오프라인매장 입점대행, 온라인쇼핑몰 구축 운영, 검색엔진, PPL	*매출액 규모에 따라 차등지원
	조사 컨설팅	시장동향조사, 소비자리서치, 바이어발굴조사, 바이어DB 타겟 마케팅, 해외진출전략컨설팅, 바이어 신용조사	(100억원 미만) 70%,
	전시회, 상담회	해외전시회 참가(개별), 현지 바이어매칭 상담회, 바이어초청설명회/제품시연, 체험단이벤트, 런칭행사, 세미나	(100억원~300억원) 60%,
계약체결	계약 체결전	보험료/보증료 할인, 단체보험, 환변동보험, 공익관세사, 계약서 작성(지불조건 포함) 지원	(300억원 이상) 50%
	계약 체결후	통관/선적필요서류, 결제관련서류, 수출물류, 사후관리필요서류(관세환급신청서 등), 사후관리(민간네트워크, 등)	
해외진출	해외 진출	현지법인 설립, 지재권 등록, 현지 시험인허가 등	

신청·접수

'17.1월(별도 공고)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 온라인 신청
- 현장평가(글로벌 역량평가) 시 재무제표 등 증빙서류 확인

글로벌 역량평가

- 수출기반역량, 수출기획역량, 수출실행역량, 지속성장역량, 공통역량(재무건전성) 등 5개 분야로, 업종에 상관 없이 33개 지표로 구성 (www.exportcenter.go.kr 에서 확인)

신청 서류

사업신청서, 신용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 신청양식은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에 운영지침 게시

문의처

구 분	전 화	주 소
서울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02-2110-6334 6335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과천정부청사 1동 (우 : 13809)
경기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031-201-6948 6941	경기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반달공원역 (우 : 16705)
경기북부사무소 수출지원센터	031-820-9030 9033	경기도 양주시 평화로 1215 섬유종합지원센터2층206호(우 : 11497)
인천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032-450-1135 1133	인천시 남동구 은봉로 82(논현동) (우 : 21632)
강원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033-260-1675 1673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262(퇴계동) (우 : 24427)
부산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051-601-5166	부산시 해운대구 APEC로 30 BEXCO 제2전시관 3층 371호 (우 : 48060)
울산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052-210-0063 0064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915 울산경제진흥원 1층 (우 : 44248)
대구경북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053-659-2244 2248	대구시 달서구 성서4차 첨단로 122-11 (월암동 1111) (우 : 42724)
경남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055-268-2541 2545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532번길 50(신월동) (우 : 51439)
대전충남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042-865-6155 6153	대전시 유성구 가정북로 104 (우 : 34111)
충북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043-230-5374 5371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2로 48(양청리) (우 : 28119)
광주전남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062-360-9193 9192	광주시 서구 경열로 17번길 12 (우 : 61928)
전북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063-210-6485 6486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 (효자동 2가) (우 : 54966)
제주 수출지원센터	064-753-8757 8758	제주도 제주시 연삼로 473(이도이동) 2층 (우 : 63217)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 문의	055-751-9776 9773	http://exportcenter.go.kr 가입관련 단순애로 등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 온라인 수출지원센터(www.exportcenter.go.kr, 055-751-9776)
- 중소기업청 해외시장과(042-481-3980, 8935)

궁금해요! 증기맨



Q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 거래처로 규제를 받았던 기업도 참여 할 수 있나요?

A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은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인)은 참여가 가능합니다.

15-2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

| 한국형 히든챔피언 후보기업 발굴육성

혁신성과 성장잠재력을 겸비한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해외마케팅, R&D지원 등을 통해 국내 최고수준의 월드클래스 후보기업으로 육성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원 규모 100개사(전체 예산 305억원)

* '16년 지원현황 : 글로벌 강소기업 121개사 선정·지원

지원 대상 혁신성과 성장잠재력을 겸비한 지역의 우수 중소기업

- (기업규모) 매출액 100억원(SW부문은 25억)~1,00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
- (글로벌지향성) 직전년도 매출액 대비 직·간접 수출비중 10%이상
- (기술혁신역량 등) 3년 평균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 1% 이상 또는 5년 평균 매출액증가율 8% 이상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휴·폐업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등
-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 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진공에서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인)은 참여 가능
- ✓ 월드클래스 300 기업, 글로벌 전문기업 선정기업
- ✓ 기업이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 ✓ 중소기업지원사업 참여제한 업체 등

우대사항

- 벤처, 이노비즈, 경영혁신형, 녹색인증기업, 수출유망중소기업, 온누리상품권 백만누리캠페인 참여기업,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유턴기업 등에 우대

지원 내용

- R&D, 해외마케팅, 지역자율프로그램(지자체) 등을 패키지로 지원
- 글로벌 강소기업 전용 프로그램

구 분		내 용	지원 방법
국 비	R&D	▶ 우수 R&D과제에 대한 R&D자금지원	▶ 2년간 65%이내, 최대 6억원
	해외 마케팅	▶ 기업의 글로벌 성장전략수립 지원 ▶ 목표시장 맞춤형 글로벌 마케팅 및 수출 세부프로그램 지원	▶ 4년간 최대 2억원, 연간 최대 1억원 지원 * 기업당 50~70% 이내지원
지 방 비	지역 자율 프로그램	▶ 인력, 금융, 지식재산, 글로벌 진출 등 다양한 기업수요 맞춤형 지원	▶ 지역 자율프로그램을 통한 차별화된 기업지원

* 평가결과 일부 기업은 R&D 및 해외마케팅 지원(국비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음

① 글로벌강소기업 전용 R&D지원(기술혁신개발사업 글로벌강소기업과제)

- 사업공고 : '16. 12월 및 '17. 2월 예정
- 정부출연금 : 총사업비의 65%이내에서 최대 2년간, 6억원까지 지원
- IP전략수립 의무지원

② 해외마케팅 지원 프로그램(4년간 2억원 한도)

구분	프로그램명	지원내용	지원방식
1	글로벌 성장전략 수립	중장기 글로벌 성장전략 수립 지원	바우처 한도내 자율적 활용
2	글로벌 브랜드 개발	글로벌 브랜드 개발 및 컨설팅비 지원	
3	기업홍보 및 홈쇼핑 동영상 제작	홈쇼핑, 전시회 등 활용 가능한 동영상 제작 지원	
4	해외전시회 참가	부스 임차료, 장치비 및 전시물품 운송료 비용 지원	
5	해외세일즈랩	신규 해외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현지 전문가를 발굴하여 세일즈랩으로 활용	
6	수출 IP전략수립	신제품 개발 아이디어 단계부터 출시 및 사후관리 까지 전주기 IP 경영전략을 맞춤형으로 지원	

* 단, 해외전시회 참가는 정부지원 총액의 50% 이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며, '17. 수출바우처 도입에 따라 세부 프로그램은 변경 가능

○ 글로벌 강소기업 연계지원 프로그램

① 중소기업청 해외마케팅 우대지원

구분	사업명	우대사항	지원한도
1	• 무역촉진단 파견사업	배점부여	1천만원
2	•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	가점(2점) 부여	인증비용의 40~90% 지원
3	• 수출인큐베이터 입주지원	가점(5점) 부여 * 단, 공실규모 등 감안 우선입주	임대료지원 1년차 80%

* 단, 개별사업별 지원한도 및 비율 등은 사업별 2017년 운영계획에 따라 변동 가능

② 정책금융 등 기타 연계지원

- 중소기업진흥공단 ‘수출금융’ 대출한도 확대 : 10억원→30억원
- 기업은행 수출강소기업 프로그램, 신한은행 협약보증 등 지원
- 향후 타 금융권 등과 협약을 거쳐 추가 우대 상품 제공 추진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글로벌 강소기업 조기 선정, 성장전략서 작성 양식 간소화, 졸업기업의 재참여 허용 (1회한), 우수 졸업기업 ‘월드클래스 300’ 추천 확대 등

신청·접수

‘16. 12월중 공고 예정

- 신청·접수 : 지자체 및 지역혁신기관에서 개별공고 및 신청·접수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 통한 온라인 신청후 사업신청서 소재지 관할 지방중기청(또는 광역사도)에 접수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 등 첨부서류 포함) 10부 등

- 신청양식은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 지자체 및 지역혁신기관의 사업공고상에 게재

처리 절차

글로벌 강소기업 성장위원회에서 기업선정 및 지역사업계획을 구성하여 중기청에 사업을 신청하면, 중기청에서 지역사업계획 평가후 지역별 기업수 배분 및 기업 확정

시행 계획 공고	I 단계 : 지역별 기업선정·추천			II 단계 : 지역별 기업수 배분 및 기업확정		
	신청 접수	선정 평가	중앙에 사업 신청	신청 접수	중앙평가	지원 기업 확정
	'16.12월	~'17.1월	~'17.2월	~'17.2월	'17.2월	'17.2월
중소 기업청	글로벌강소기업 선정위원회			중소기업청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소 기업청	

* 글로벌 강소기업 선정위원회 : 지자체, 지방중기청, 지역혁신기관이 참여하여 지역유망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계획 수립 및 기업선정·추천, 기업지원프로그램 구성 등을 논의하고 중요안건을 의결하는 지역협업 네트워크

문 의 처

- 중소기업청 기업혁신지원과 : 042-481-4484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전담기관) : 02-6009-3512, 3514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R&D전문기관) : 042-388-0322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2017년 지원시책」 참조

* 전화상담은 국번 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15-3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 자금·보증·해외마케팅 지원시 우대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하여 수출지원기관의 해외 마케팅, 수출금융·보증 등 우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수출실적이 500만불 미만인 기업이 참여 할 수 있으며, 중기청, KOTRA, 무역보험공사 등 23개 수출지원유관 기관을 통해 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 규모 1,000개사 내외(상·하반기 2회 선정)

* '16년 선정현황 : (상반기) 458개사 선정, (하반기) 287개사 선정

지원 대상 제조업이나 서비스업(붙임1 참조)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전년도 또는 신청년도 수출실적이 500만불 미만인 기업(내국신용장 수취액 포함)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순수내수기업(전년도 및 신청년도 수출실적이 전혀없는 기업)
-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업체 또는 대표자
 - * 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진공에서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인)은 참여 가능
- ✓ 휴·폐업중인 업체
- ✓ 대외무역법 제53조의2, 제54조에 해당하는 해당하는 범죄로 유죄를 선고받고, 그 형 집행이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가 대표로 있는 업체
- ✓ 그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합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업체 또는 대표자
- ✓ 기타 사업공고시 신청제한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

심사시 중점사항

- 수출신장 유망성, 수출활동 수행능력, 기술성, 재무평가, 혁신성 등
- 서비스업 활성화를 위해 서비스업을 위한 별도 평가기준 마련

<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평가기준 비교 >

제조업 평가기준		서비스업 평가기준	
▶ 수출신장유망성 6개항목	45점	수출신장유망성 3개항목	35점
▶ 수출활동수행능력 3개항목	15점	수출활동수행능력 3개항목	15점
▶ 기술성 3개항목	15점	서비스제공 능력 5개항목	25점
▶ 재무평가 4개항목	20점	재무평가 4개항목	20점
▶ 혁신평가 1개항목	5점	혁신평가 1개항목	5점

지원 내용

- (해외마케팅 지원참여 우대) 국방 절충교역 대상품목 추천 및 참여시 우대, 해외전시회·박람회 참가시 우선지원, 수출인큐베이터 사업 참여시 우대, 바이어 발굴, 상담대행 등 해외시장개척활동 지원
- (금융 및 보증지원) 수출입금융, 여신지원시 금리 및 수수료, 환전수수료 및 환가료율 우대, 수출신용보증료 할인, 보증한도 및 비율우대, 보증심사 완화
- (기타) 국내외 기술시장정보 분석 제공, 국가기술은행(NTB) 정보 서비스 무료 이용 등

신청·접수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

온라인 신청

* 로그인 → 수출지원사업 → 수출유망중소기업 사업신청 → 지정신청서 및 이행계획서 입력

신청 서류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신청서 및 수출이행계획서(인터넷 접수),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동의서(인터넷 접수), 전년도 및 신청년도의 수출실적증명원(현장 확인), 전년도 재무제표(현장 확인)

[붙임 1]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원대상 서비스업의 범위

한국표준산업분류	
번호	업종명
3701	하수 및 폐수 처리업
381	폐기물 수집 운반업
382	폐기물 처리업
39	환경 정화 및 복원업
46	도매 및 상품중개업(수출업에 한함)
47911	전자상거래업
493	도로화물 운송업
501	해상 운송업
521	보관 및 창고업
52913	화물 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52991	화물운송 중개,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52992	화물포장, 검수 및 헐량 서비스업
58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911	일반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
5912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제작 관련 서비스업
59201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612	전기통신업
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631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
639	기타 정보 서비스업
63991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
701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
702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
713	광고업
714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71531	경영컨설팅업
721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서비스업
729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732	전문 디자인업
73902	번역 및 통역서비스업
73903	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개업
73909	그외 기타 분류안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41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7532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75992	전시 및 행사 대행업
75994	포장 및 충전업
85504	온라인 교육 학원(기술 및 직업훈련교육을 제공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8565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901	창작, 예술관련 서비스업

15-4

무역촉진단 파견사업

| 전문업종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해외시장개척활동을 지원

중소기업의 글로벌화 및 수출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전문업종 위주의 단체전시회, 시장개척단 파견 등을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1,800개사 내외

* '15년 지원현황 : 전시회 186회, 시장개척단 4회 등 총 160억원 지원

지원 대상

업종별 중소기업 단체·협회·조합·수출유관기관 및 중소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타 정부 부처 및 지자체 등에서 지원하는 전시회 또는 개별 지원받는 업체는 제외

지원 내용

- 해외전시회 : 업체당 11백만원 한도 내에서 공통경비의 50%
 - * 공통경비 : 임차료, 장치비, 전시물품 운송비 등

신청·접수

중소기업해외전시포털(www.sme-expo.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로그인 후 홈페이지 메뉴 중 "지원사업 → 주관단체 → 참가신청"

제출 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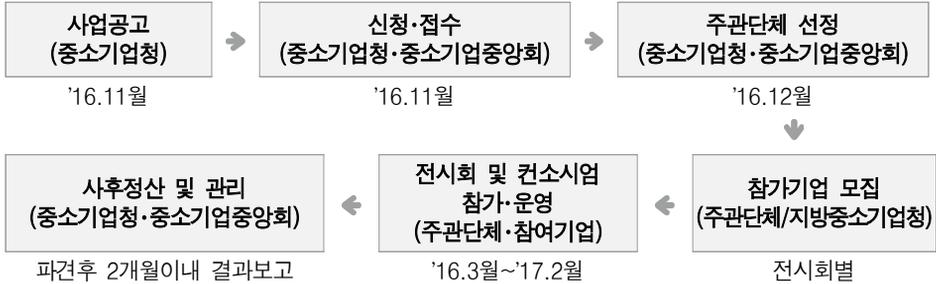
- 참가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수출 실적 및 각종 인증 자료 등 주관단체별 요구 자료

(주관단체)참고 및 증빙서류

- 부스임차료 및 장치비/m²(전시회 브로셔 등), 부스임차 계약서(사전임차의 경우), 전시물품 운송 견적서, 전시회 수준 평가자료 등

- 전시참가 희망업체 수요조사 결과
- 부스임차료 등이 신청 시기에 확정되지 않은 해외전시회는 관련 증빙자료를 전년 기준으로 제출

처리 절차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국제통상부 : 02-2124-3181~4
- 중소기업 해외전시포탈 (www.sme-expo.go.kr)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궁금해요! 증기맨



- Q** 한국관 단체 참가가 아닌 개별참가 전시회 지원은 가능한가요?
- A** 한국관 단체참가가 아닌 개별참가 전시회 지원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www.kotra.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5-5 대·중소기업 동반진출지원

| 대기업 네트워크 및 인프라 활용 중소기업 수출지원

대기업의 해외네트워크 및 인프라(거점 및 유통망 등)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 확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기업 또는 공기업의 업종별, 지역별 특성에 맞추어 단체전시회참가, 수출상담회 개최, 대기업 해외유통망에 입점 등을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 규모

800개사 내외, 업체당 1,000만원 이내

지원 대상

중소기업에 관한 법률에 준하는 중소기업으로 1회 파견 시 5개사 중소기업 이상의 컨소시엄형태로 구성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휴·폐업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등
- ✓ 참여 중소기업이 5개사 미만인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컨소시엄의 경우

지원 내용

- 한류연계 : 해외 현지 글로벌 한류 문화행사와 연계한 수출상담회(B2B), 판매전(B2C) 지원
 - (한류마케팅) 연예기획사-중소기업 간 러닝개런티 계약, 간접광고(PPL) 등을 통한 한류마케팅 및 판촉 지원
- 해외홈쇼핑 : 해외홈쇼핑 방송지원, 시장개척단 파견을 통한 중소기업 해외 수출상담 및 시장조사 지원
- 해외거점 : 대기업 해외 온·오프라인 거점을 활용한 중소기업 해외 판로개척, 해외진출 기업의 현지화·안정화 지원 등

[유형별 주요 지원내역]

과제유형	지원 세부내용
한류연계	○ 현지 판촉활동 및 수출상담 소요비용의 50 ~ 100% 지원 * 부스임차료 50%, 장치비 80%, 운송료(편도)의 100%, 기타 공동홍보부스·간담회비·부대행사 경비 지원 ○ 러닝개런티 계약, 간접광고(PPL) 등을 통한 한류마케팅 콘텐츠 제작/프로모션 비용의 60%이내 지원, 기타 판촉활동 연계 판매활동 지원
해외홍소핑	○ 해외홍소핑 방송지원사업(주관기업 보유 해외플랫폼 활용) ○ 해외홍소핑 시장개척단 파견시 상담장/차량 임차, 통역비, 인쇄비/간담회비/소모품비 등 해외마케팅비 80%이내 지원 * 동반진출 투자재원 활용, 주관기업과의 협의를 통해 전체 예산의 80%이내에서 정부지원금 조정가능
해외거점 (역직구포함)	○ 해외 온라인몰 입점 판매, 오프라인 내 상품전 등 소요비용의 60% 지원(업체당 20백만원 한도) * 현지 장치비, 마케팅비, 운송(통관), 기타 운영비 등 ○ 제품기능 개선 등에 따른 현지화 비용, 既 진출 중소기업의 해외현지 안정화 활동 비용의 60% 지원(업체당 50백만원 한도)

신청·접수

'17. 1월~수시

- 대중소기업협력재단(www.win-win.or.kr)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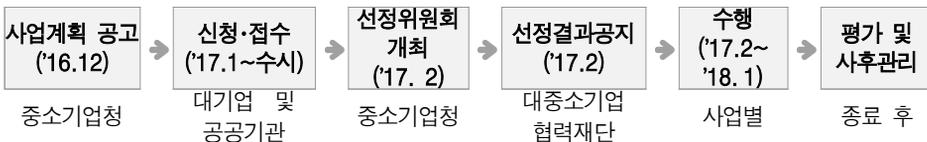
심사·평가 주요내용

- 대기업 또는 공공기관의 동반진출 계획 타당성, 효율성 및 이행가능성, 파급효과 등

제출 서류

-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 지원신청서 내용에 대한 참고 및 증빙자료

처리 절차



문의처

- 중소기업청 해외시장과 : 042-481-3965
- 대중소기업협력재단 글로벌협력부 : 02-368-8752~55
- 동반성장위원회(www.winwingrowth.or.kr)
대중소기업협력재단(www.win-win.or.kr) 홈페이지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 ☎1357

궁금해요! 중기맨



- Q** 대기업과 공기업이 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이유가 있나요?
- A**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 20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기관입니다. 이 법에 근거해 대기업은 동반성장지수를 공공기관은 중소기업 지원계획과 추진실적을 평가받고 있습니다.
- Q** 참여하는 대기업과 공기업에게는 어떤 혜택이 주어지나요?
- A** 참여대기업과 공기업은 중소기업의 해외판로지원 활동이 평가 등에 반영되고 포상 및 보도자료 등을 통하여 동반성장에 앞장서는 기업으로 홍보되어지고 있습니다. 협력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투자재원 출연 시 해당 출연금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용어설명

동반성장지수란 :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동반성장의 수준을 평가하여 계량화한 지표를 말합니다.

투자재원이란 : 협력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인력개발, 해외진출 등을 지원하기 위해 출연하는 상생협력기금을 말합니다.

15-6

해외유통망 진출지원

| 우수 중소기업 제품(B2C)의 해외 진출 지원

해외정책매장, 대리점(상) 등을 통해서 상품성이 우수한 중소·중견기업 제품(B2C)의 해외소비시장 진출을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 규모

600개사(전체 예산 30억원)

- 해외정책매장 : 4개소 운영, 400개사
- 대리점(상) : 20개 대리점(상) 지정·운영, 200개사
- * 지원기업 수는 매장 수행사, 대리점(상)의 입점제품 선정 정도에 따라 변동 가능

지원 대상

국내에서 생산된 중소·중견기업 소비재 제품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세금을 체납 중인 기업(기업 및 대표자)
- ✓ 휴·폐업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등
- 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진공에서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인)은 참여 가능

지원 내용

- (매장입점) 해외에 설치(지정)된 해외정책매장, 현지 유통매장 내 중소중견기업 제품의 입점을 통해 판매 및 현지 유통망 진출 지원
 - * '16.11월 현재 해외정책매장 3개국 5개소(미국 LA, 중국 베이징·정저우·선양, 베트남 호치민), 현지 대리점(상) 14개 지정 운영 중
- (현지화) 입점 선정상품에 대해 현지 진출에 필요한 전문가 코칭과 제품포장, 디자인, 번역 등의 현지화 지원

- (프로모션) 매장 입점제품의 판매제고를 위해 홈쇼핑 입점, 판촉전·매칭상담회 참여 등을 통한 홍보마케팅 지원

신청·접수

연4회(분기별 1회) 입점제품 선정(모집시기 홈페이지 내 별도 공지)

- 해외유통망진출사업 홈페이지(b2c.gobizkorea.com) 통해 온라인 접수
- 회원가입 후 기업정보 및 제품정보 등록 필수

심사·평가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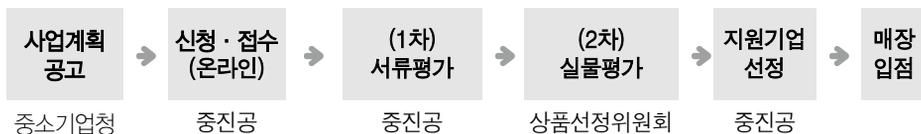
- (서류평가) 중소중견기업 여부, 업종판정, 신용상태 등 기본평가 후 시장성, 제품경쟁력 등 해외진출 위한 준비 등을 평가
- (실물평가) 상품선정위원회에서 상품 실물평가를 통하여 가격경쟁력, 품질 등 시장경쟁력 평가
 - * 상품시장경쟁력(시장성, 가격경쟁력 등), 수출준비도(포장·매뉴얼·카탈로그 등 현지화, 해외 규격인증 획득), 해외마케팅능력(무역·해외마케팅 위하 전담조직 보유 여부 등) 등을 평가

신청 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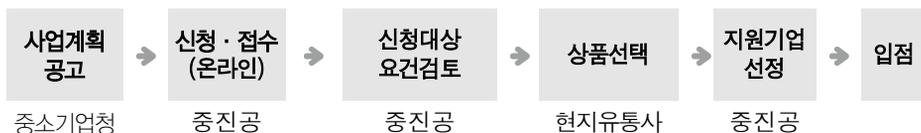
사업신청서, 기업(신용) 및 개인정보 수집·조회 동의서

처리 절차

<해외정책매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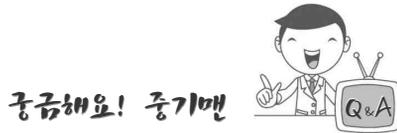


<대리점(상)>



문의처

- 중소기업청 해외시장과 : 042-481-4355
- 중소기업진흥공단 전략마케팅팀 : 055-751-9761, 9763
- 해외유통망진출사업 홈페이지(b2c.gobizkorea.com), 해외유통망 상품소싱팀 ☎1599-1836



Q 해외에서 생산된 ODM, OEM 제품도 참여 가능한가요?

A Made in Korea 제품만 가능합니다. 중국, 동남아 등 해외에서 ODM, OEM 생산제품은 안됩니다.

Q 제조사가 아닌 유통회사인데 지원이 가능한가요?

A 제조가 아닌 유통회사는 지원이 불가능하며, 제품 제조사의 신청시만 지원 가능합니다.

Q 사업 참여 시 업체 부담금은 얼마나 되나요?

A 업체 부담금은 따로 없지만 현지에 입점한 제품이 구매수요가 없어 쉽백(Snip-Back)하는 비용은 업체가 부담해야 합니다.

용어설명

해외정책매장 : 중진공의 관리(매장 운영비 지원)하에 현지에서 우수제품을 전시·판매하는 매장
대리점 : 중진공 상품DB 내 우수제품을 직접 소싱하여 현지에서 판매하는 매장(홍보비 일부 지원)

15-7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사업

| 해외규격인증획득에 필요한 인증 및 시험비용 지원

해외에서 중소기업 제품의 신뢰도를 높여 수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수출대상 국가에서 요구하는 CE, NRTL 등 해외규격 인증마크 획득에 소요되는 비용의 50~70%를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1,200여 개 사, 전체 예산 106.5억 원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전년도 수출액 5,000만불 미만)
 - ▷ 우선선정 : 차이나 하이웨이 참여기업, 해외전시판매장 입점기업,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홈쇼핑 판매기업, 창업 초기기업(2회이상 탈락 후 기술평가) 등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 * 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종진공에서 재 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인)은 참여 가능
- ✓ 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미완료된 상태인 기업
 - * 사업참여 제한조치를 받은 기업으로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 * 지자체 등 타 정부기관으로부터 동일 해외규격인증획득으로 지원금을 받은 기업

유의사항 등

- 신청업체가 인증획득 업무를 컨설팅기관에 대행하는 경우에는 사업기간 및 비용, 인증획득 가능성 등에 대해 컨설팅을 거친 후 신청서 제출
- 신청서에 기재된 컨설팅기관(컨설턴트)은 신청일 현재 중소기업청에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에 등록된 것에 한함
- 중국인증분야의 경우 지정된 수행기관을 통해 인증획득이 추진됨

지원 내용

- 기업규모별 정부출연금 차등 지원
 - * 중소기업 : 70%, 중견기업 : 50%
- 창업기업(신청연도 기준 창업 3년 이내 기업-'13~'16년도 설립기업)이 당해 연도 2회 이상 탈락 후 창업기업 우대지원을 신청하면 지방중소기업청 담당자, 전문가자문단 등 관계 전문가 기술평가를 실시하고, 인증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다음 차수에 우대지원

신청·접수

구분	1차	2차	3차	4차	5차
접 수	1~2월	3~4월	5~6월	7~8월	9~10월

- * 온라인 접수(www.exportcenter.go.kr) 후 지방청 평가결과에 따라 협약, 인증 획득 후 완료보고에 따라 출연금 지급
- * 자세한 일정은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주요 지원사업/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참조

제출 서류

- 중소기업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신청서 1부
- 이용정보 이용 및 이용 동의서 1부
- 중소·중견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1부
- 시험·인증 청구서 또는 계약서 1부.(고부가가치 인증분야에 한함)
- 기타 기업특성 선택항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각1부(해당기업에 한함)
 - ▷ 전년도재무제표사본 및 전년도 수출실적증명원,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 ▷ 전년도, 전전년도 수출실적증명원
 - ▷ 수출실적증명원 (전년도 수출실적증명원)
 - ▷ 참여기관에서 발행한 확인서 1부
 - ▷ 해당국가에서 발행하는 사업자 등록증
 - ▷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 1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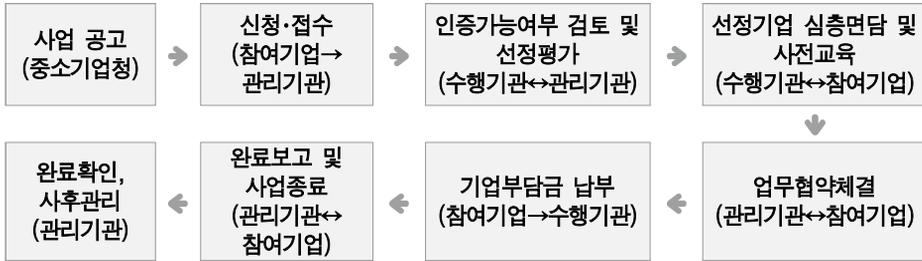
- ▷ 외국어카타로그 및 국내외발행(외국어) 홍보지 사본1부
 - ▷ 해당 품질시스템 인증서 각 1부
 - ▷ 회사 조직도 및 부서별 인력현황표 1부
 - ▷ 특허(또는 전용실시권 계약서)·실용신안등록증 1부
 - ▷ 교육이수 수료증 제출
 - ▷ 창업기업 사업자등록증(개인) 또는 등기부등본(법인) 1부
 - ▷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 확인서 1부
 - ▷ 경영혁신 마일리지 사용 확인서 1부
 - ▷ 환변동보험 청약증권
- (중국인증분야) 중국 상표등록증, 수출계획 및 현황보고서, 중문 카타로그 등 중국 진출을 위한 사전 준비 단계 입증서류

처리 절차

○ 중국인증 외 분야

사업계획 공고	중기청	▶ 매년 홈페이지 등에 공고
신청서 접수	지방청	▶ 신청업체 사업자등록증 소재지 또는 공장등록증 소재지가 위치한 관할 지방중기청에 접수
신청업체 평가	지방청	▶ 평가기준에 따른 평점 및 지원 우선순위 결정
지원대상업체 선정	중기청 (전문가위원회)	▶ 지원대상 업체 선정 ▶ 과제 중복, 인증획득 가능성, 비용적정성 등 심의
협약체결	관리기관	▶ 관리기관 - 주관기업 협약 체결
인증획득 추진	주관기관 (컨설팅기관)	▶ 인증신청, 제품시험, 공장심사준비
사후관리 및 중간점검	지방청, 관리기관	▶ 과제추진 상황 및 비용지출 확인 ▶ 인증획득 가능성 점검 등
완료보고	주관기업	▶ 인증획득 여부 및 지원성과 등 보고
인증사실 확인 출연금 지급	관리기관	▶ 인증사실확인 ▶ 정부출연금 정산 지급

○ 중국인증 분야



문의처

○ 일반해외규격인증

-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해외규격인증지원센터
- * 전화 : 02-860-1312~3, FAX : 02-860-1319
- * 사이트 : www.exportcenter.go.kr

○ 고부가가치 인증분야 및 중국인증분야

-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중소기업수출인증사업단
- * 전화 : 02-2164-0172~6, FAX : 02-507-8118
- * 사이트 : www.exportcenter.go.kr

궁금해요! 중기엔



- Q**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에 신청하여 선정된 기업은 어느 시점에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 A** 동 사업은 사후정산 방식으로 정부 지원금이 지급 되고 있습니다. 해외규격 획득을 완료하신 후에 완료 보고를 해주시면 지급 됩니다.
- Q** 기존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에서 지원하고 있는 중국인증과 신한류지역(중국) 인증 집중지원사업과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A**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은 기업이 직접 인증획득을 추진 후 인증획득 비용만을 지원하는 반면, 신한류지역(중국) 인증 집중지원사업은 수행기관이 직접 인증획득을 절차를 추진하며 대행료뿐만 아니라 책임회사 등록 대행 노무 법률자문 등과 같은 부가지원을 One-stop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용어설명

CE : 유럽 내에서 유통되는 상품 중 소비자의 건강, 안전, 위생 및 환경보호 차원에서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제품에 적용되는 인증

NRTL : 미국의 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산업용품에 대하여 작업자의 안전을 위하여 27개 분야에 대해 공인시험소의 인증이 요구됨

(중국)책임회사 등록대행 : 책임회사는 민, 형사상 책임을 지는회사로서 중국 화장품 위생허가 및 의료기기 인허가 신청시 필수사항임

15-8

수출인큐베이터 운영

| 임차료의 80% (2차년도는 50%) 지원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현지에 진출하는 중소기업의 조기정착 및 수출경쟁력 배양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외 주요 교역 거점에 수출인큐베이터를 설치·운영합니다.

지원 규모

세계 13개국 22개 지역 298개 입주실 및 수출사랑방 운영

지원 대상

제조업(전업률 30%), 도매업 또는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휴·폐업 중인 기업 또는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 화의 법정관리 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업체(실질적 기업주 포함)

지원 내용

- 임차료의 80%(2차년도는 50%) 지원
- 사무공간(12~20㎡) 및 공동회의실, 사무집기 및 전화·인터넷전용선 제공
- 마케팅전문가, 법률·회계컨설턴트의 자문 및 컨설팅
- 현지 시장 정보제공 및 마케팅 네트워크 구축 지원
- 현지 파견 직원의 현지 조기 정착을 위한 서비스·행정지원
- 수출사랑방을 통한 중소기업의 단기 출장 지원

신청·접수

주신청서, 사업자등록증, 파견자 재직증명서, 파견자 이력서, 파견자 고용보험가입내역서, 입주활동계획서, 최근 3개년도 재무제표,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 관리 시스템 정보활용을 위한 동의서

신청 서류

사업신청서, 신용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 신청양식은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에 게재된 사업운영 지침에 첨부

처리 절차**문의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국제협력처 : 055-751-9673, 9678
- 수출인큐베이터 홈페이지 : <http://hp.sbc.or.kr>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2017년 지원시책」 참조
-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
- 중소기업 정책정보 : www.bizinfo.go.kr

궁금해요! 중기맨



- Q** 수출인큐베이터 입주기업이 아니더라도 수출사랑방을 이용할 수 있나요?
- A** 수출사랑방은 중소기업인이라면 누구나 이용가능하며 임시 사무공간, 상담실, PC 등을 무료로 지원합니다.
- Q** 입주기간은 어느 정도 됩니까?
- A** 입주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2년이며, 입주활동실적에 따라 1년 추가연장이 가능합니다. 1년 입주 후 입주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연장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입주활동의 적극성, 입주 후 수출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입주연장 승인여부를 검토합니다.

→ 용어설명

수출사랑방 : 수출상담, 시장조사 등 현지 마케팅 활동을 위하여 수출인큐베이터 설치 지역 내 단기 출장 중소기업을 위해 임시 사무공간, 통신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비즈니스 편의 제공 (1회 사용 기간은 14일 이내로 하며, 연간 30이내 사용 가능)

15-9

고성장기업 수출역량강화사업

| 고용 또는 매출이 빠르게 성장하는 고성장 기업 발굴·육성

고성장기업이 자율적으로 수출마케팅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창의적인 해외시장 개척이 가능하도록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 규모

고성장 기업 620업체 내외(예산 310억원)

* 2016년 지원현황 : 618업체(예산 300억원)

지원 대상

- 상시종업원수 5인 이상으로서, 최근 4개년간('13~'16년) 상시근로자 또는 매출액 성장률이 연평균 20% 이상인 중소기업(단, 지방소재 기업은 연평균 15% 이상)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휴폐업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등
 - * 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 ✓ '16년 중소기업 수출역량강화사업 참여기업, 글로벌강소기업으로 지정된 기업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지원 내용

- 수출마케팅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의 70%~50%(최대 1억원)까지 차등지원
 - * 기업 매출액에 따른 지원 비율 : (100억 미만) 70%, (100억~300억 미만) 60%, (300억 이상) 50%

신청·접수

- 사업공고 : '17. 1월중
- 신청 및 접수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 통한 온라인 신청

제출 서류

- 사업신청서(수출마케팅 계획서 포함), 신용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등
 - * 신청양식은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에 게재된 사업운영 지침에 첨부

처리 절차

< 선정 절차 >

사업공고	신청접수	서류심사 및 현장평가	마케팅 통합교육	발표평가 및 선정	협약체결	사업수행
'17.1월	'17.1월	'17.2월	'17.3월	'17.3월	'17.4월	'17.4월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
-------	----------	------

* 세부일정 변동 가능

문의처

- 중소기업청 중견기업정책과 : 042-481-6813
- 중소기업진흥공단 : 055-751-9492~5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 ☎1357

15-10

수출금융용자

| 수출품 생산에 필요한 자금소요를 지원

수출품 생산비용에 필요한 자금소요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기반 조성

용자 규모

1,750억원

- * 2015년 신청기업 2,895개사 중 2,621개사 선정지원, 업체당 평균 2.3억원
- * 2016년 10월말 신청기업 2,175개사 중 1,644개사 선정지원, 업체당 평균 2.6억원

지원 대상

- 용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생산품(용역, 서비스 포함)을 수출 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용자 범위

- 수출계약(L/C, D/A, D/P, Local L/C, T/T, M/T, 구매확인서, O/A, 해외조달계약에 따른 P/O, 해외유통망 P/O) 또는 수출실적에 근거한 수출품 생산비용 등 수출 소요자금

용자 조건

- 대출금리(기준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에서 0.3%p 차감
- 대출기간 : 1년 이내
 - ▷ 수출계약기준 : 수출품 선적(또는 용역 납품) 후 수출환 어음 매입시 정산.-
 - ▷ 수출실적기준 : 대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일시 상환.

○ 대출한도 : 기업당 20억원 이내

- * 해외조달시장 참여중소기업 및 글로벌 강소기업, 무역보험공사의 환변동보험 및 중소기업+단체보험 가입기업, 글로벌성장사다리 선정기업, 해외수요처 연계 R&D 성공제품, 직매입 계약을 체결한 GMD(글로벌 시장개척 전문기업) 및 GMD 매칭 중소기업, 수출향상기업은 기업당 30억원 이내
 - * 유망소비재산업 관련 제품 수출기업은 40억원 이내
 - * 해외조달시장 참여중소기업 : UN 및 UN산하기구, WTO정부조달협정양허기관, FTA정부조달협정 양허기관의 조달계약에 입찰하여 낙찰받는 기업
 - * 글로벌강소기업 : 수출성장 잠재역량이 높은 수출중소기업을 집중 지원하여 수출 5천만불 이상의 글로벌강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선정
 - * 글로벌성장사다리 선정기업 : 중소·중견기업을 글로벌 수출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한국무역보험공사 선정
- ▷ 수출계약기준 : 수출실적 및 계획을 근거로 산정한 회전한도 내에서 수출계약액의 90% 이내
- ▷ 수출실적기준 : 최근 1년간 수출실적의 70% 또는 최근 6개월간 수출실적 범위 내

용자 방식

- 중진공 직접대출

신청·접수

-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제출 서류

-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용자신청서’ 작성 및 온라인신청



접수 시기

- 2016.12.23 ~ 자금 소진시까지

문의처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or.kr)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57

15-11

차이나 하이웨이 사업

| 중국 진출을 위한 계획 수립 및 마케팅 지원

중소기업의 성공적인 중국 진출을 위한 계획 수립과 해외마케팅을 준비단계와 이행단계로 구분하여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210개사 내외

지원 대상

중국에 既 진출하였거나 신규 진출을 추진 중인 중소기업 또는 초기 중견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휴·폐업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등
-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 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진공에서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인)은 참여 가능
- ✓ 기업이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 ✓ 중소기업 지원사업 참여제한 업체 등

지원 내용

- 기업이 업종·지역별 전담직원과 공동으로 중국 진출 마케팅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한 자율마케팅을 추진하는 비용 70% 지원
- 희망 시, 중국 기초교육, 민간 전문기관 통한 중장기 전략 컨설팅 등 지원
- 본 사업 선정기업은 '중국인증 집중지원 사업' 우선 선정
 - * 중국 CCC, CFDA 등 인증 획득 대행서비스 비용 60% 지원
- 전년도 참여 결과 우수기업에 대해 2년차 재지원

구분	프로그램 명	연간 지원한도	지원비율
1년차	준비단계	진출 계획 수립	-
		중장기 전략 컨설팅	25~40백만원
	이행단계	중국 기초교육, 시장조사	50백만원*
2년차	준비단계	진출 계획 수립	-
	이행단계	자율마케팅	50백만원*

* 중장기 전략 컨설팅 추진기업은 자율마케팅 한도를 1년차 30백만원, 2년차 70백만원 적용

신청·접수 '16.12 ~ '17.1월 (별도 공고)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 온라인 신청
- 현장평가(중국진출역량진단)시 증빙서류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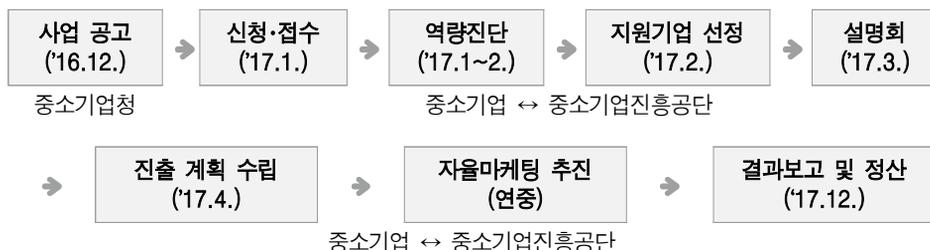
중국진출역량진단

- 수출 인프라, 시장 이해역량, 수출마케팅 실행역량, 지속성장역량, 재무건전성 등 5개 분야로 구성
- *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 공고에서 확인

신청 서류 사업신청서, 신용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등

* 신청양식은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 공고에서 확인

처리 절차



문의처

- 중소기업청 해외시장과(042-481-4392)
- 중소기업진흥공단 마케팅사업처(055-751-9763)
-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15-12

전자상거래수출시장지원

| 온라인을 통해 우수제품 해외진출지원

글로벌온라인쇼핑몰 입점지원, SNS·파워블로거 활용 마케팅 등 온라인 채널을 활용하여 중소·중견기업 제품의 해외시장 수출을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3,290개사(전체 예산 99억원)

- 글로벌온라인쇼핑몰 입점 : 3,000개사
- SNS 마케팅 : 290개사

지원 대상

국내 제조업·지식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세금을 체납 중인 기업(기업 및 대표자)
- ✓ 휴·폐업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등
 - * 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진공에서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 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인)은 참여 가능

지원 내용

- (글로벌온라인쇼핑몰 입점) 글로벌온라인쇼핑몰 입점·판매에 필요한 상품페이지 제작, 홍보, 배송, CS, AS 등 판매 전 과정을 판매전문기업을 통해 지원
 - * 글로벌온라인쇼핑몰 : 아마존, 이베이, 타오바오, 라쿠텐, 쿠팡 등
- (SNS 마케팅) 중국 웨이보 등 블로그의 파워블로거 활용 마케팅 및 바이두, 페이스북, 유튜브 등 파급력 있는 SNS 활용 마케팅 지원

신청·접수

'16.2월~(예산 소진시까지)

- (글로벌온라인쇼핑몰 입점) 고비즈코리아 홈페이지(kr.gobizkorea.com) 통해 온라인 접수
- (SNS 마케팅) 별도 공지

심사·평가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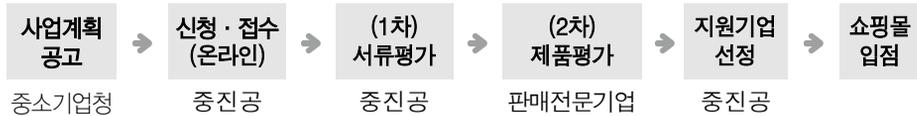
- (서류평가) 중소기업 여부, 업종판정, 신용상태 등 기본평가
- (제품평가) 판매전문기업이 참여기업의 제품의 상품성, 시장성, 가격 경쟁력, 판매 가능성, 배송 적합성 등을 평가

신청 서류

사업신청서, 기업(신용) 및 개인정보 수집·조회 동의서

처리 절차

<글로벌온라인쇼핑몰 입점>



문의처

- 중소기업청 해외시장과 : 042-481-4575
- 중소기업진흥공단 온라인수출지원팀 : 055-751-9771, 9776
- 고비즈코리아 홈페이지(kr.gobizkorea.com)

15-13 글로벌 협력 지원

| 산업협력을 통한 해외진출 지원

외국 정부 및 중소기업 지원 유관기관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우리 중소기업의 글로벌화를 지원합니다.

지원 분야

분 야	내 용
국제 협력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 정부 및 중소기업 지원 유관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우리 중소기업의 글로벌화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협력 네트워크 구축 확대를 통한 중소기업 해외진출지원 기반 구축 - 해외 협력파트너 알선 (합작투자, 전략적 제휴 및 기술협력 등) - 정부 등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해 현지진출 및 현지정착 지원
APEC 중소기업 혁신센터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PEC 역내 회원국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을 통한 우리 중소기업 역내 진출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PEC 역내 중소기업 현장에 경영·기술전문가를 파견하여 진단 및 맞춤형 컨설팅 지원 - 우리 중소기업과 APEC 역내 중소기업 간 비즈니스 상담회 지원

지원 대상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중소기업

신청·접수

- 사절단, 세미나, 상담회 등 개별행사는 일정 확정시 '홈페이지(www.sbc.or.kr)의 공지사항'을 통해 신청접수
- 산업협력관, 코리아데스크 등 현지 지원사업은 국제협력처로 문의

처리 절차



문의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국제협력처 : 055-751-9672, 9675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2017년 지원시책」 참조
- 중소기업 정책정보 : www.bizinfo.go.kr

15-14

GMD(글로벌 시장개척 전문기업) 사업

| 해외시장 진출지원

GMD(글로벌 시장개척 전문기업, Global Market Developer) : 신시장·유망품목 발굴에서 최적 유통채널 분석 및 진입지원, 통관·배송, 사후관리까지 수출 전 과정에 걸쳐 통합지원하는 수출전문회사

지원 규모

전체 예산 120억원

- 중소·중견 GMD : 연 70개
- 중소·중견 GMD가 선정하는 수출유망 중소·중견기업 : 연 330개
- 사업구조 : GMD를 선정 후, GMD가 직접 수출유망 중소기업을 발굴·매칭하여 수출마케팅 프로그램을 추진
 - * 지원기업 수는 예산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 * '16년 지원현황 : 47개 GMD, 300개 중소기업

지원 대상

GMD

(기존회사 GMD) 50개 내외

- 해외시장 전문 : 전년도 수출실적(수출대행 포함) 100만불 이상인 기업
- 전자상거래 전문 : 최근 2년 이상의 해외쇼핑몰 판매대행 경험 및 실적 보유 기업으로 전년도 서비스 기업 수출 50만불 이상이거나, 최근 3년 이상의 해외독립몰 서비스 경험 및 실적 보유기업으로 쇼핑몰 구축 지원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운영중인 기업
- 해외B2G 전문 : 최근 2년내 조달시장 수출 성사실적이 있거나 MOU, 벤더등록증 등 조달 관련 자격증명 확인기업
(단, 벤처기업, 이노비즈, 메인비즈 기업은 100만불로 예외요건 적용)

(창업 GMD) 20개 내외

- 종합상사·대기업 등 무역관련 업무경험자 중 무역회사 창업 희망자 또는 동 경력자가 창업한지 3년 이내의 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세금(국세 및 지방세)을 체납중인 경우
-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외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 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 기업회생신청, 청산절차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 ✓ 기업이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휴·폐업중인 경우
-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 대외무역법 제5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로 유죄를 선고받고, 그 형 집행종료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가 대표자인 업체
- ✓ '17년 수출기업화 사업 및 차이나하이웨이사업 선정기업은 본 사업 중복 불가

지원 내용

(GMD에 대한 지원)

- 해외시장개척에 필요한 시장개척 비용(평가결과에 따라 70백만원 ~ 150백만원 사업비 한도내에서 보조율 30~80% 차등 지원)
 - 시장조사, 바이어발굴 등 직접비와 상담, 오피, 계약 등 수반되는 전담인력 인건비, 출장비 등 간접비
- GMD 및 매칭기업에 대한 무역촉진단 구성 및 참가 지원
- 중진공 정책자금을 통하여 직매입계약을 체결한 GMD에 직매입자금 융자지원(최대 30억원)
- 기존회사 GMD의 경우 전문무역상사(무역협회)로 자동 지정
- 해외규격인증, 수출유망 R&D 등 타 수출사업 연계지원

(GMD 매칭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 수출제품 현지화 비용을 지원(보조율 70%)하되 GMD의 직매입 또는 수출대행계약 여부에 따라 지원금 차등
 - (대행계약) 제품 현지화를 위한 라벨·스펙변경, 카달로그·샘플제작, 허가·인증·통관·검역, 홍보·프로모션 등 최대 20천만원
 - (GMD 직매입) 매칭 중소기업이 판매를 위해 직접 지출하는 라벨·스펙변경, 카달로그·샘플제작, 허가·인증 등에 최대 1천만원

* 단, 항공료, 체재비, 통역비 등 인건비 성향의 비목은 지원 제외

- 매칭된 GMD가 주관하는 무역촉진단 참여 지원
- 중진공 정책자금을 통하여 수출물량 생산에 필요한 운전자금 및 수출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설비증설 자금 융자지원
- 해외규격인증, 수출유망 R&D 등 타 수출사업 연계지원

신청·접수

‘17. 1. 4 ~ 1. 31(약 4주간)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 통한 온라인 접수

신청 서류

사업신청서, 중소기업수출지원 프로그램 구성·운영계획, 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신청양식은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에 게재된 사업운영 지침에 첨부

처리 절차**문의처**

- 중소기업청 해외시장과 : 042-481-4499, 중소기업진흥공단 : 055-751-9723
- 각 지방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www.exportcenter.go.kr)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2017년 지원시책」 참조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15-15

수출고용 특별자금

| 수출 및 고용촉진한 소상공인에 자금지원

해외수출 소상공인 및 일자리를 창출한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500억원

지원 대상

GMD

- 해외수출실적이 있거나, 청년일자리를 창출한 소상공인
 - 수출 소상공인 특별자금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출 실적이 있는 소상공인
 - 청년드림 특별자금 :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이거나, 청년 고용 창출 소상공인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유흥 향락 업종, 전문 업종 등 용자제외 대상업종(별표)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지원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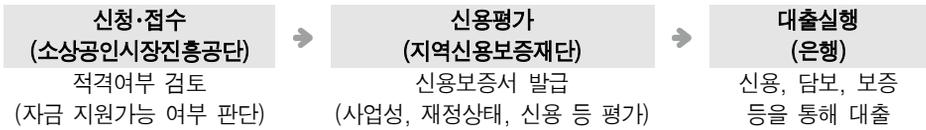
- 대출금리(변동금리) : 매분기 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 공고
- 대출한도 : 업체당 7천만원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 취급 금융기관(19개) : 국민, 기업, 신한, 우리, 산업, 한국씨티, KEB 하나, 부산, 대구, 광주, 전북, 경남, SC, 제주, 농협중앙회, 저축은행중앙회, 수협중앙회, 새마을금고, 신협중앙회

신청·접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국 59개 지역센터에서 신청·접수

제출 서류

사업자등록증, 정책자금 신청서류 등

처리 절차**문의처**중소기업청 소상공인정책과(042-481-4361) /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1588-5302)

15-16

해외 기술교류 지원

| 외국기업과의 기술이전, 합작투자법인 설립 등 기술교류 지원

외국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보유한 국내 중소기업을 발굴·선정하거나 국내 중소기업의 우수기술을 외국기업에 홍보하여 기술이전, 라이선스 계약 체결, 합작법인 설립 등 기술교류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중견기업은 제한적 참여 가능)

지원이 안되는 기업

✓ 게임, 도박, 사행성, 불건전 소비업종과 신용관리정보대상자로 규제를 받고 있는 기업

지원 목적

- 기술교류 활성화 및 기술수출을 통한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혁신 및 성과창출 유도

지원 내용

- 외국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발굴한 기술수요에 대해 기술공급 가능 기업을 공모하여 국내외 기업간 매칭을 통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
- * (지원예정국가) 베트남, 멕시코, 이란, 필리핀, 미얀마

신청·접수

연 10회 이상(별도 공고)

- 이노익스체인지 홈페이지(www.innoxchange.or.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수요기업 발굴

현지 정부 추천

해외 수요기업 진단

코디네이터의
현장진단 및 검증

공급기업 발굴

국내 기술공급 가능
기업 발굴, 사전매칭

현지 파견

공급기업 현지파견,
비즈니스 매칭

- 기술수요에 대응하여 공급가능 기업들로 구성된 '융합기술투자단'을 현지에 파견하여 매칭 및 비즈니스 상담행사 개최
- * 항공료 및 숙박비용은 기업에서 부담

신청·접수

연 10회 이상

- 교류기업 모집공고(국가별 연중 2~6회 진행 예정)를 통해 매칭기업 선정
- 국내-외 기업 간 사전 매칭이 완료된 기업만 파견 가능
- 온라인 신청 : 전용사이트 이노익스체인지 (www.innoxchange.or.kr) 접속 → 로그인 후 '해외기술교류 신청 바로가기' 배너 클릭 후 신청서 작성
- * 자세한 내용은 사이트 공지사항 참조

기대효과

기술이전, 합작법인 설립, 공동 연구·생산, 산업기술 패키지 판매 등 실효적 해외진출 성과 도출

문의처

- 중소기업청 생산혁신정책과 : 042-481-4496
-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 031-628-9625
- 전용정보사이트 : 이노익스체인지 (www.innoxchange.or.kr)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15-17

중견기업 해외마케팅 맞춤형 지원사업

|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중견기업의 수출지속률 제고를 위한 기업 특성에 따른 수출전주기(수출제품화 → 현지조사 → 통관 → 현지판매)를 묶음 지원방식으로 수출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제공 방식으로 지원해 드립니다.

선정 규모

100개사(전체 예산 100억원) → '17년 신규 추진사업

선정 대상

매출액이 1조원 미만이고, 수출금액이 5천만불 미만인 중견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월드클래스300 선정기업
- ✓ 산업통상자원부 월드챔프사업 선정기업
- ✓ 휴폐업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등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우선선정

-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중견기업 글로벌도약 기술개발사업”에 선정된 기업으로 수출로드맵 적정성 평가 통과기업
- '18년부터는 “중견기업 해외마케팅 맞춤형 지원사업”을 통해 수출성과가 높게 나타나 “우수기업”으로 평가된 기업('17년도는 해당 없음)

지원 내용

- 수출교육, 디자인개발, 해외시장 정보제공 및 마케팅 지원 등 기업이 자율적으로 구성한 수출마케팅 프로그램 수행에 필요한 재원 지원
- 중견기업의 수출마케팅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의 50% 지원(나머지 50%는 기업부담)
- 지원한도 : 최대 1억원

신청·접수

'17. 1월중

-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 통한 온라인 신청

심사·평가내용

- 기업의 수출마케팅 목표, 마케팅서비스 영역 및 비용의 타당성, 사업화목표(매출/수출액, 시장개척 등)의 적정성 등 기업이 제출한 수출로드맵(수출사업계획서)의 적합성 평가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신용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 신청양식은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에 게재된 사업운영 지침에 첨부

처리 절차**문의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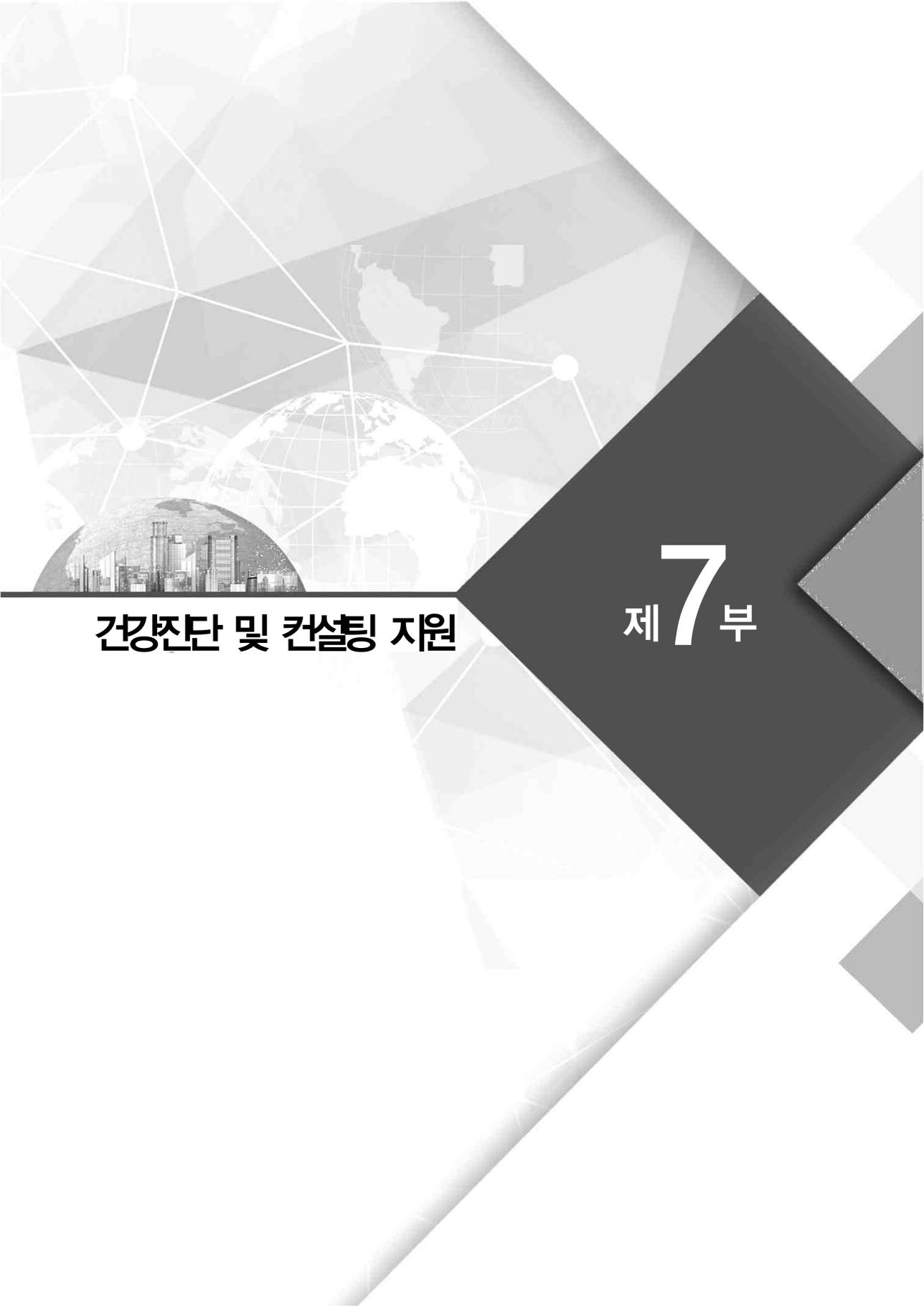
- 중소기업청 중견기업정책과 : 042-481-6815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02-6009-3503
- 각 지방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www.exportcenter.go.kr)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2017년 지원시책」 참조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궁금해요! 중기맨



Q 산업부 및 중기청의 수출바우처 사업에 선정된 기업도 참여 할 수 있나요?

A 산업부 및 중기청 수출바우처 사업은 총 9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어 사업 신청은 여러 사업에 참여가 가능하나, 기업별도 당해 연도에 1회만 선정·지원이 가능함에 따라 다른 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동 사업에 선정지원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선정시기가 비슷하여 여러 사업에 동시에 선정된 경우 기업입장에서 유리한 사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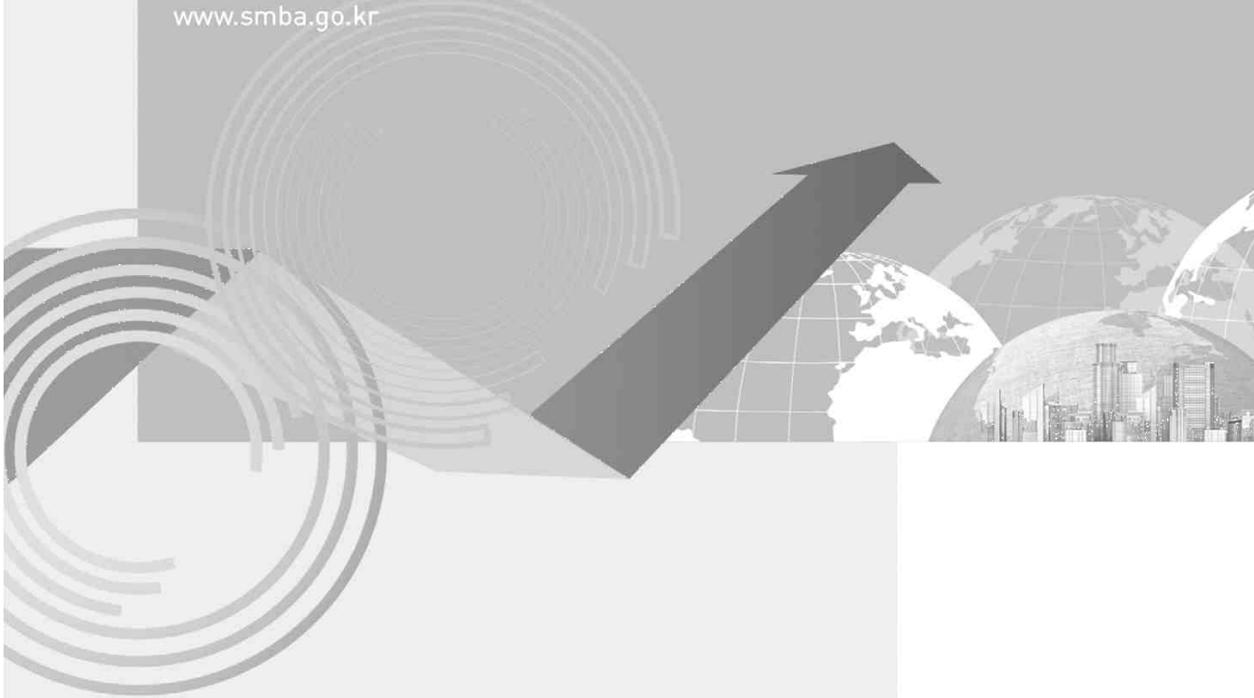


건강진단 및 컨설팅 자원

제 7 부

중소기업의 건강을 진단하고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www.smba.go.kr



중기백과 함께 알아보는 건강진단 및 컨설팅 지원



- Q** 온라인 교육업을 시작한 지 1년 정도 되었습니다. 최근 유사한 서비스를 하는 경쟁업체들이 생겨나 경영에 애로가 많은데 컨설팅을 받아볼 수 있을까요?
- A** 경영전문가가 기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조언해 드리는 사업이 있습니다. '지속성장컨설팅 지원사업'을 신청하시면 업체당 5,000만원 한도내에서 소요 비용의 55%를 정부에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Q** 경기악화로 인해 최근 1년간 매출액이 작년 대비 50% 이상 감소했습니다. 회생이 불가능할 듯한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요?
- A** 전문 컨설팅을 받아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중기청의 "진로제시 컨설팅 사업"을 신청하시면 전문컨설턴트가 무료로 회사의 현재상황을 진단하여 구조개선/회생절차/사업정리와 같이 진로를 처방해 드립니다. 또한 회생컨설팅과 같은 중기청의 관련사업으로 연계지원도 받을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 Q** 각국 정부의 환경규제로 인해 중소기업도 녹색경영을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자체적으로 녹색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있을까요?
- A** 중소기업의 녹색경영 수준은 S,A,B,C,D의 5개 등급으로 구분하는데, 녹색정보 사이트(www.greenbiz.go.kr)의 자가진단을 통해 자체적으로 녹색경영 수준을 평가해 보실수 있습니다. 또한 '녹색경영 평가' 또는 '그린비즈 컨설팅'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전문가의 정밀한 평가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 Q** 이제 1년 된 중소기업인데 금융, 법률, 마케팅 등은 사내에 전문가가 없어 애로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전문적으로 지원해주는 서비스가 있나요?
- A** '중소기업 경영애로 해소 비즈니스지원단'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회계, 금융, 법률 등 각 분야별 전문가가 늘 대기하고 있으니 국번없이 1357로 전화하시거나 각 지방중소기업청을 방문하셔서 도움을 요청하세요.



제 **16**장
외부 전문가 노하우

16-1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321

16-2 원스톱 기업애로 종합지원

326

16-1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 전문가 컨설팅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

중소기업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여 창업기업의 성장단계 진입 및 성장기·정체기 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근본체질 강화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

지원 규모

530개사(전체 예산 61.5억원)

- 경영·기술(400개, 53.5억원), 특화형(30개, 3억원), 원스톱창업지원(100개, 5억원)
 - 지원기업 수는 예산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 16년 지원현황(선정기준) : 경영·기술(824개), 특화형(18개), 원스톱창업지원(129개)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중 다음의 기업

구 분	지원 대상	컨설팅 내용
경영·기술	• 업력 제한 없음	• 경영·기술 전 분야 (경영전략, 인사조직, 마케팅/영업, 재무/회계, 고객만족, 글로벌경영전략(FTA), 생산혁신, 품질, 정보기술, 에너지/녹색경영, R&D, 사업전환 등)
특화형	• 업력 제한 없음	• 新서비스업분야, 미래성장산업, 창조경제 혁신센터 추천업체 등
원스톱 창업지원	• 제조업 영위 기업 중 - 예비 창업 -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 - 재창업자 * 단, 재창업자는 재창업자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자(중진공 정책자금)	• 창업공장 설립(변경) 승인 등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별표1] 지원제외에 해당하는 업종
- ✓ 사업 신청 시 동 사업을 수행중인 경우
- ✓ 신청하고자 하는 컨설팅 내용이 기 지원받은 컨설팅 내용과 유사·중복으로 판명된 경우
- ✓ 각종 인증, 투자유치, 정책자금, 매뉴얼 및 지침서 작성, 디자인 개발 의뢰, 시스템 도입 (구축) 등 용역성 서비스
- ✓ 신청기업 또는 컨설팅기관(컨설턴트)이 허위로 수행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
- ✓ 기타 신청기업 또는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국세 및 지방세 체납, 부도·화외·법정관리종이 거나 금융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경우 등
 - * 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 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지원가능

지원 내용

과제 및 업력에 따라 전체 컨설팅 비용의 일정 부분을 지원

구 분		정부지원비율	최대 지원금
경영·기술	업력 7년 미만	65%	최대 20백만원
	업력 7년 이상	30 ~ 50%	최대 30백만원
원스톱 창업지원		65%	최대 5백만원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혁신계획서 현장평가를 통한 선정, 역량강화 워크숍 추진 및 컨설턴트 매칭 방법 변경
 - 중소기업이 제출한 혁신계획서를 바탕으로 현장평가를 실시하여 지원기업 선정
 - 중소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워크숍 추진 후 중소기업에서 컨설턴트 직접 매칭

기존('16)		변경('17년)	
과제명	선정방식	과제	선정방식
경영·기술·특화형 (매월접수)	신청(매칭) → 사전진단평가 → 수행계획평가 → 선정	경영·기술·특화형 (분기접수)	신청 → 현장평가 → 선정 → 워크숍(매칭)
원스톱 창업지원 (수시접수)	신청(매칭) → 온라인 선정평가	좌 등	

신청·접수

‘17년 2월부터 분기별 접수

- 중소기업 컨설팅 플랫폼 홈페이지(www.smbacon.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 신청기업에 대한 컨설팅 필요성, 추진의지 등을 평가
 - 현장평가 : 지원과제를 선정하기 위해 컨설팅 신청기업의 컨설팅 목적 및 필요성, 추진의지, 기대효과 등에 대해 실시하는 현장방문 평가

제출 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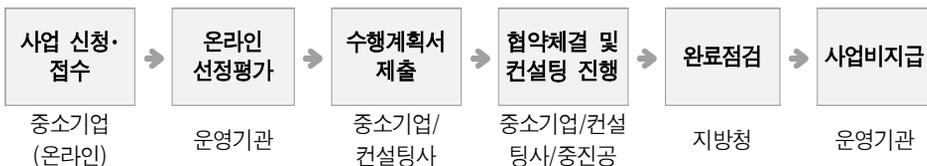
- 컨설팅 사업 참여신청서, 혁신계획서
- 제출방법 : 중소기업 컨설팅 플랫폼 홈페이지(www.smbacon.go.kr) 온라인 제출

처리 절차

- 경영·기술·특화형 컨설팅



- 원스톱창업지원 컨설팅



문의처

- 중소기업청 지식서비스창업과 : 042-481-8909
- 중소기업진흥공단 창업기술처 : 055-751-9845, 9844
- 중소기업 컨설팅 플랫폼 : www.smbacon.go.kr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궁금해요! 중기엔



- Q**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 거래처로 규제를 받았던 기업도 참여 할 수 있나요?
- A**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은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참여가 가능합니다.
- Q** 협약 이후 회사 경영사정으로 컨설팅과제 추진 일정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 A** 협약변경 승인 요청서를 컨설팅지원사업 홈페이지에 제출하여 중진공의 승인을 받으면 됩니다. 단, 컨설팅 기간은 1회에 한해서 2개월 이내 연장이 가능합니다.
- Q** 현재 '16년 컨설팅 과제를 수행중인데, '17년도 경영·기술 과제에 추가 신청가능한가요?
- A** '16년 과제 진행 중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16년 사업 완료 후 신청 가능합니다.
- Q** 타 중앙정부 및 지자체 등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컨설팅 사업에 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알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 A** 중소기업 컨설팅 플랫폼(www.smbacon.go.kr)의 컨설팅 길라잡이 코너를 통해 다양한 컨설팅 사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 중에 있습니다.

<별표 1> 지원제외업종

코드	해 당 업 종
33402중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33409중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451	자동차 판매업 중 소매업
46102중	주류, 담배중개업
46331	주류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47	소매업(단, 전자상거래(47911) 기업은 지원)
55~56	숙박 및 음식점업(관광호텔업 제외)
5821중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
64~66	금융 및 보험업(단, 기타 금융지원서비스업(66199) 중 핀테크(FIN-TECH) 기업은 지원)
68	부동산업
7152	비금융 지주회사
7153	경영컨설팅 및 공공관계 서비스업
711	법무관련 서비스업
712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8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851~854	교육서비스업
86	보건업
731	수의업
9112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9122	오락장 운영업
91113	경주장운영업
9124	갬블링 및 배팅업
9129	기타오락관련 서비스업
94	협회 및 단체
96	기타 개인서비스업(산업용세탁업(96911) 제외)
97~98	가구내 고용 및 자가서비스 생산활동
99	국제 및 외국기관

16-2

원스톱기업애로종합지원

| 기업애로 전문가 상담 및 현장클리닉 지원

기업의 각종 경영·기술애로를 상시 상담해드리는 제도입니다. 금융, 법률, 마케팅, 기술 등 각종 애로사항을 상시 상담해 드리고, 상담으로 해결이 어려운 경우는 현장을 찾아가서 문제를 해결해 드립니다.

지원 규모

- 48억원(전문가 상담 30억원, 현장클리닉* 지원 18억원)

* '16년 지원 : 상담 69,379건, 현장클리닉 : 1,448기업

지원 대상

- 상담 : 예비창업자,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 등 각종 경영·기술 상 애로가 있는 자
- 현장클리닉(현장해결)*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소기업

* 현장클리닉 : 상담으로 해결이 어려운 과제에 대해 전문가가 현장을 찾아가 해결(최대 7일)

현장클리닉 지원 제한

< 지원제외 업종 >

- ✓ 농업, 임업 및 어업(01110~03220)
- ✓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33402中),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33409中)
- ✓ 주류 및 담배 중개업(46102), 귀금속 중개업(46109), 주류(46331) 및 담배(46333) 도매업, 사행성 오락게임용품 도매업(46463), 귀금속 도매업(46492)
- ✓ 소매업(47111~47999), 숙박 및 음식점업(55111~56220), 부동산업(68111~68222)
- ✓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58211, 58219中)
- ✓ 법무관련 서비스업(71101~71109),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71201~71209)
- ✓ 비금융지주회사(71520), 경영컨설팅(71531) 및 공공기관서비스업(71532),
- ✓ 수의업(73100), ✓ 오락장 운영업(91221~91229), 갬블링 및 베틀업(91241, 91249), 그 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91291~91299)
- ✓ 협회 및 단체(94110~94990), 기타 개인 서비스업(96111~96999)

< 지원제외 업무 >

- ✓ 관세환급 청구 대리 등 관세법에 의한 수출입 절차 등 대행, 세무조정(기장) 대행, 특허출원 및 등록 대행, 인준 등 관련 분야에 대한 대행 업무
- ✓ 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의 대리, 산재 등 기타 소송 관련 대행 업무

지원 조건

- 상담은 무료, 현장클리닉은 1일당 35만원(기업부담금* 30% 또는 10%)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소기업은 30%, 소공인은 10%

상담 신청

- 전 화 : 국번없이 1357
- 인터넷 : <http://link.bizinfo.go.kr>
- 방 문 : 지방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아래 참조)

문의처

- 중소기업청 고객정보화담당관실 : 042-481-4592, 4397
- 지방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지방청 비즈니스지원단	전 화	주 소
서울	02-2110-6351~4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부산	051-831-1357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 335로 8
대구·경북	053-659-2270~3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 첨단로 122-11
광주·전남	062-360-9137~9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17번길 12
광주·전남 제주센터	064-723-2101~3	제주도 제주시 월평9길 2-21
경기	031-201-6805~7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경기북부	031-820-9040~1	경기도 양주시 평화로 1215
인천	032-450-1148~50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82
대전·충남	042-865-6181~3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104
충남(천안)사무소	041-564-3862	충남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울산	052-283-0031~2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915
강원	033-260-1625~6	강원 춘천시 안마산로 262
충북	043-230-5307~8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2로 48
전북	063-210-6436~8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
경남	055-268-2546~7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532번길 50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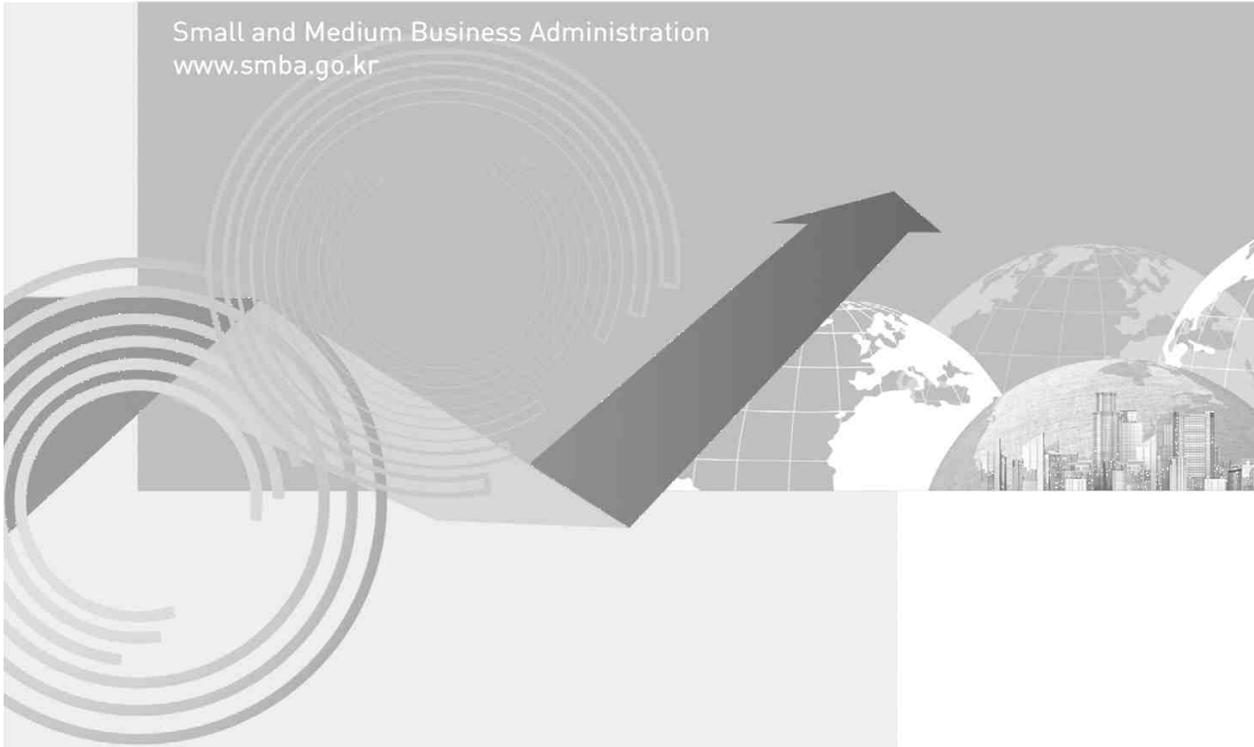


소상공인 전통시장

제 8 부

소상공인·전통시장
멋지게 변신하세요.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www.smba.go.kr



중기백과 함께 알아보는 소상공인 전통시장



- Q** 지금 영업하는 슈퍼마켓을 그만두고 새로운 사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교육을 받고 싶은데 받을 수 있는지요?
- A** 성장가능성 높은 유망업종 중심으로 업종전환희망자를 선발해 재기의욕 고취, 이론·실습 등 60시간 내외의 재창업패키지교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재창업 패키지 사업설명 참조)
- Q** 8년째 동네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변 100m 이내에 미용실이 10개나 되다보니 단골손님까지 뺏기고 있는데요, 경쟁력 있는 점포로 거듭나고 싶습니다.
- A** 업종별 소상공인의 역량강화를 위해 신메뉴개발, 최신 전문기술 등을 지원하는 '전문기술교육'을 지원합니다.(소상공인 경영교육 사업설명 참조)
- Q** 치킨점을 운영하는데 처음 오픈했을 때와 달리 요즘에는 많이 힘이 듭니다. 만약 문을 닫기라도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 A** 자영업자가 폐업이나 노령 등으로 인한 생계위협에 대비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공제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저 5만원부터 1만원 단위로 100만원까지 납입하실 수 있고, 연 복리이자율이 적용됩니다.(소상공인 공제제도 사업설명 참조)
- Q** 인천 지역에서 커피전문점을 운영해볼까 하는데 상권분석에 애로가 많습니다. 현재 직장을 다니는 관계로 자주 가볼 수도 없는 형편인데 지원받을 수 있나요?
- A** 상권정보시스템(<http://sg.biz.or.kr>)에 접속하시면 전국 1,200대 상권의 상세한 상권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경쟁점포, 인구(유동인구 포함), 시설 등 상권분석에 필요한 49종의 정보가 수록돼있고, 전자지도 형태로 제공돼 원하시는 지역의 상권을 편리하게 분석해보실 수 있습니다.(상권정보시스템 사업설명 참조)

- Q** 장사를 하고 있는 전통시장의 시설이 너무 낡아 방문객이 점점 줄어듭니다. 시설을 개선하고 싶지만 상인들의 힘만으로는 어려운데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 A** 정부와 지자체가 전통시장 등에 주차장, 공동화장실, 아케이드, 고객지원센터 등 고객 편의시설 설치와 개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케이드 등 일부시설에 대해서는 사업비의 10%이내에서 민간이 자부담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설명 참조)
- Q** 전통시장 상인회입니다. 시장에 입주한 점포의 상인들에게 상인 교육을 할 예정인데 지원받을 수 있는지요?
- A**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전통시장을 만들기 위해 상인대학, 맞춤형 교육, 전문교육, ICT 교육 등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지원하고 있으며 교육비는 전액무료입니다.(시장경영혁신지원 사업설명 참조)



제 **17** 장
**교육, 컨설팅 및
정보제공**

17-1 신사업창업사관학교	333
17-2 소자본 해외창업지원	336
17-3 상권정보시스템	339

17-1

신사업창업사관학교

| 현장 체험 중심의 창업교육지원

성장가능성이 높은 신사업 아이디어로 창업하려는 예비창업자를 선발하여 이론교육, 점포경영체험, 창업멘토링을 패키지로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 규모 450명 내외(103.4억원)

* '16년 지원현황 : 412명

지원 대상 예비창업자

- 최근 3년간 공단에서 발굴한 신사업 아이디어 또는 동 수준에 해당하는 아이디어로 창업하고자 하는 자 (단, 음식점업, 주점업 창업 아이디어는 제외)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자
 -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 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 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는 참여 가능 (국세, 지방세 등 특수채무의 경우는 완납 필수)
-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 ✓ 정부지원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 ✓ 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
- ✓ 소상공인지원자금 융자제한 대상 업종으로 창업하려는 자
- ✓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지원 내용

- 이론교육 : 창업을 위한 공통·경영 및 전문교육 150시간 내외 실시
- 점포체험교육 : 이론교육 수료생에게 체험점포에서 경영체험과정 제공(16주)

- 창업멘토링 : 점포체험기간 동안 개인별 전담 멘토링 지원
- 사업화지원 : 우수졸업생을 선발하여 매장모델링, 마케팅 등 사업화자금 지원 (120명, 최대 2천만원까지, 단, 자부담 50%)

신청·접수 '16. 12. 13 ~ '17. 1. 12

- 지역별 소상공인 전용교육장 방문 및 우편 접수
 - * 우편접수는 신청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심사·평가 주요내용〉

- 서류 및 면접평가를 통해 지역별로 선발(5개 지역 1기당 225명 내외/2기 운영)
 - ▷ 창업의지, 적극성, 사업계획 구체성, 전문성 및 유사경력 등 창업준비도 및 창업마인드 평가

이론교육장소	주 소	연락처
서울 전용교육장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110. 대성스카이렉스 102동 3층	02-723-0174
부산 전용교육장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63, 부산우체국 12층	051-463-0212
대구 전용교육장	대구광역시 북구 옥산로17길 14, 리치프라자 2층	053-353-7667
광주 전용교육장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좌로 268, KDB생명빌딩 24층	062-367-0135
대전 전용교육장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227, 동서빌딩 6층	042-363-7494

제출 서류

입교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사업자 등록여부 사실증명원(관할 세무서에서 발급한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증명서류), 창업 적성검사 결과표 등

* 신청양식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에 게재된 사업공고 참조

처리 절차

구분	교육생 모집공고 및 신청·접수	교육생 선정 결과통보	이론교육	점포 경영체험 및 멘토링	사업화지원
5기	'16.12.13 ~'17.1.12	'17.2월	'17.2월 ~3월	'17.4월 ~7월	'17.8월 ~11월
6기	'17.4월 ~'17.5월	'17.6월	'17.6월 ~7월	'17.8월 ~11월	'17.12월 ~'18.3월
	소상공인지장 진흥공단	공단→ 교육생	전용교육장	체험점포	개별 사업화 수행

문의처

-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지원과 : 042-481-4528, 4430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2017년 지원시책」 참조
- 소상공인지장진흥공단(www.semas.or.kr) : 042-363-7811

궁금해요! 증기맨



- Q**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A** 만 19세 이상으로서 신사업 분야의 예비창업자이면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Q**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입학시 부담금이 있나요?
- A** 교육생 부담금은 없습니다.

용어설명

신사업 아이디어 업종이란? 최근 2년 사이 신기술·지식을 접목하여 기존에 없던 독창적인 상품 또는 서비스를 사업화 한 것(예시: 3D프린팅 정밀모형 제작판매, 디지털 장례업, 반려견 놀이방 등)

17-2

소자본 해외창업지원

| 신흥개도국 해외창업을 위한 해외 인큐베이팅 운영

신흥개도국 해외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 또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인큐베이팅을 통한 해외 진출을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87명 내외(예산 10억원)

지원 대상

해외창업을 준비 또는 실행단계에 있는 예비창업자 및 소상공인

- 우대 : '12~'15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舊 소상공인진흥원) 해외창업 국내 교육 수료생

지원이 안되는 자

- ✓ 단순 관심, 업종 미선정, 자금 미확보 등 사업계획이 불분명한 자
- ✓ 해외체류에 법적인 문제가 있는 자
- ✓ '14~'16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해외 인큐베이팅 참가자
- ✓ 소상공인지원자금 융자제한 대상 업종을 영위 중인 자

지원 내용

해외 인큐베이팅 운영을 통한 현지 창업활동 지원

- (해외 인큐베이팅) 현지사정에 능통한 민간전문기관을 활용, 사전준비(시장·사업타당성 조사 등) 및 현지 창업서비스(인허가, 법률 등 분야별 멘토링) 밀착 제공(6주)

구 분	세부내용
사무공간 지원	▪ 해외창업 준비를 위한 사무실, 인프라 등 지원
사업 타당성 검토	▪ 희망업종의 사업타당성, 현지 적용 가능성 판단
시장조사 실시	▪ 업종별 시장현황 및 트렌드 조사
사업파트너 매칭	▪ 창업아이템에 대한 현지 파트너 발굴 및 섭외
법인설립 지원	▪ 사업자등록을 위한 절차 및 서류작성 등 지원
멘토 자문	▪ 법률·회계·투자 등 분야별 전문가 멘토링 실시
홍보·마케팅지원	▪ 현지 파트너 섭외, 아이템 홍보 등 구체화된 사업아이템에 대한 마케팅 전략 및 활동 지원
현지네트워크 교류	▪ OKTA, KOTRA, KOICA 등 해외 공공기관의 협력 및 현지 한인과의 간담회 등 교류증진
사후관리	▪ 창업자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

* 인큐베이팅 前 사전 오리엔테이션 과정 별도 운영(3일, 국내)

구 분	세 부 내 용
창업국가	▪ 창업환경, 산업, 법제도, 문화, 진출입지, 자금조달 방안 등
업종선택	▪ 현지 유망 업종 및 업종선택 방법, 현지 유망업종 분석 등
창업사례	▪ 현지 창업 및 실패사례, 성공방법, 팀빌딩, 애로사항, 유의할 점 등

신청·접수

- 신청 및 접수 ('17. 2월 이후, 2~4회/연) → 참가자 선정 ('17. 3~9월) → 해외 인큐베이팅 ('17. 4~11월)

* 국가별로 2~4회 운영하며, 별도 공고를 통해 공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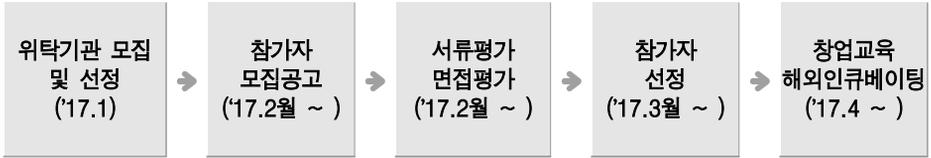
제출 서류

- 참가신청서
- 사업계획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창업적성검사 결과표

* 창업적성검사 : 워크넷(<http://www.work.go.kr>)접속 → 직업정보·심리검사 → 직업심리검사(성인용 심리검사) → 창업적성검사(20분) → 결과표 인쇄 → 제출

* 참가비(자부담) : 왕복항공료, 식비, 숙박비(1/2) 등이며 반환되지 않음

처리 절차



* 국가별로 2~4회 운영하며, 추진일정은 별도 공고를 통해 공지.

문의처

-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지원과 www.smba.go.kr / (042)481-4491, 4495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교육지원실 www.semas.or.kr / (042)363-7812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 www.bizinfo.go.kr / 전화상담 ☎1357

17-3

상권정보시스템

| 창업의 성공파트너 상권정보시스템

창업예정지의 점포현황, 인구구성, 주거형태, 유동인구, 임대시세, 매출정보 등 상권 분석에 필요한 자료를 37개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49종의 상권분석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역별·업종별 상권분석 정보 제공
 - ▷ 지도상에서 선택지역의 인구구성, 경쟁업소 현황, 유동인구, 임대시세, 매출정보, 주요·집객 시설 등의 상권분석 정보를 제공
- 창업과밀지수 및 경고등 표시 서비스
 - ▷ 상권내 업종별 과밀정도를 평가한 지표로, 출점시 예상되는 경쟁 수준을 측정하여 성공 확률을 예측할 수 있는 서비스
 - ▷ 소비수준, 유동인구, 밀집도 등을 바탕으로 신규 출점시 매출전망 등을 종합지수화하여 '경고등' 형태로 표시 : 주의(노랑) - 위험(주황) - 고위험(빨강)
- 점포평가서비스
 - ▷ 창업 예정지의 점포 접근성, 예상매출 등을 분석·평가해 주는 서비스
 - ▷ 창업예정지 주소, 희망업종, 창업비용, 매장면적 등을 입력하면 카드거래 데이터를 기반으로 성장성, 안정성, 활성화, 구매력, 유동지수 등을 분석
- 점포이력서비스
 - ▷ 특정 점포의 과거 개·폐업 변화 이력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現 위치 점포에서 과거 영업한 업소를 추적 가능
 - ▷ 업소를 추적 가능

이용 방법

- 인터넷 이용
 - ▷ 상권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sg.smba.go.kr>) 회원가입 후 이용

○ 모바일 이용

▷ 안드로이드마켓 및 앱스토어에서 '소상공인마당' 검색하여 앱 다운로드 후 이용

문의처

- 콜센터(1644-5302)
-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정책과 : 042-481-4597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1644-5302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궁금해요! 증기맨



Q 상권정보시스템 데이터는 어떻게 구축되며 언제 갱신되나요??

A 상권정보는 37개 국가·공공·민간기관으로부터 10종 DB, 27종 데이터를 수집하여 상권정보시스템에 수록 가능한 형태로 가공한 뒤 제공됩니다. 갱신주기는 데이터마다 편차가 있지만, 최소 일단위에서 최대 연단위로 갱신됩니다. 데이터의 출처와 갱신안내는 서비스별 보고서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용어설명

상권 : 상업상의 세력이 미치는 정도로 상업상의 거래가 행하여지는 공간적 범위인 Trading area, marketing area 등으로 상권정보시스템에서는 통계청 조사·집계구, 도로망을 반영한 36만개 블록(업소수 50개 이상)이 2개이상 연결된 영역을 의미

주요시설 : 일정한 유동인구를 규칙적으로 발생시키는 시설, 공공기관, 은행, 병원, 학교 등

집객시설 : 유동인구의 발생이 많은 시설로 백화점, 영화관, 대형쇼핑시설, 스포츠경기장 등

제 18 장

맞춤형 경영개선 및 협업화 지원

18-1 소상공인 경영교육	342
18-2 역량 Jump-Up 프로그램	344
18-3 소상공인컨설팅 지원	346
18-4 소상공인 무료법률구조 지원	348
18-5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	350
18-6 나들가게 육성	353
18-7 프랜차이즈화 지원	356
18-8 프랜차이즈 수준평가 및 연계지원	359
18-9 소공인 특화센터 사업	362
18-10 소공인 제품 판매촉진 사업	364
18-11 소공인 제품·기술 가치향상 사업	366
18-12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 및 지원	368

18-1

소상공인 경영

| 업종 고급기술과 경영기법을 배우는 경영교육 지원

소상공인이 경영·기술 환경 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경영개선교육 및 전문기술 교육을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 규모 11,000명 내외(42억원)

○ '16년 지원현황 : 11,000명

지원 대상 소상공인(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자)

지원이 안되는 자

- ✓ 교육신청 당시 휴·폐업 또는 공단 사업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 ✓ 소상공인지원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을 영위 중인 자

지원 내용

- 전문기술교육(8,000명) : 소상공인의 역량 강화를 위해 신 메뉴개발, 최신 전문기술 등 업종별 고급기술교육을 지원(수행 : 민간교육기관)
 - * 교육비 지원 : 민간교육기관 교육비의 90%까지(1회당 최대 50만원 한도, 1인당 2회(중복과정 제외) 지원)
- 경영개선교육(3,000명) : 소비자 트렌드, 업종별 경영전략 및 CS교육 등 경영개선교육 지원
(수행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국 지역센터)
 - * 교육비 무료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기 존		→	변 경	
구분	지원한도		구분	지원한도
소상공인 전문기술교육	70%이내 (최대40만원)		소상공인 전문기술교육	90%이내 (최대50만원)

신청·접수

'17.1월 ~ 예산소진시까지

○ 온라인을 통한 수시 신청 및 접수

* 소상공인 지식배움터(edu.sbiz.or.kr) → 소상공인 경영교육 → 교육 검색 → 원하는 '교육과정'

처리 절차**교육생모집공고**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교육신청·접수**

교육생 → 공단

교육수강

교육기관 ↔ 교육생

교육비 지원신청

교육생 ↔ 공단

문의처

-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지원과 : 042-481-4528, 4430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2017년 지원시책」 참조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 ☎ 042-363-7821

궁금해요! 증기맨

- Q** 소상공인 경영교육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A** 소상공인 지식배움터 - 소상공인 경영교육 - 원하시는 업종 또는 지역의 민간 교육기관을 확인하신 후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세부 교육프로그램은 해당 민간교육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유선문의 가능
- Q** 소상공인 경영교육 수강시 교육비는 얼마나 지원되나요?
- A** 1인당 연간 2회(동일과정은 수강 불가), 교육비의 90%까지만 지원되며, 최대 한도는 과정당 50만원입니다.
- Q** 교육비를 미리 지원받을 수는 없나요?
- A** 교육비는 교육생이 미리 선납하여야 하며 교육수로 후, 수수료, 사업자등록증 등 교육수로여부를 확인한 후 교육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 Q** 교육비 지원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A** 소상공인 지식배움터에서 교육비 지원신청메뉴를 선택하신 후,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신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18-2

역량Jump-Up프로그램

| 소상공인의 영업환경 개선을 위한 컨설팅 및 연계지원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위기진단(컨설팅) 후 연계지원을 통해 영업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규모

500개 업체 지원(20억원)

지원 대상

전년대비 매출액 15%이상 감소 또는 2년 이상 매출액이 연속 감소한 소상공인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 ✓ 매출액(수입금액)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매출액(수입금액)이 "0"원으로 신고된 경우
- ✓ 니들가게 지원사업, 협동조합 활성화사업, 신사업 육성지원사업 등 공단 유사사업 수혜업체

지원 내용

- (위기진단) 해당 업종 전문가가 현장 방문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위기 진단·분석 및 해결방안 도출 등 지원
- (연계지원) 신제품·브랜드 개발, 마케팅 지원 등 수요자 맞춤형 지원
 - * 연계지원 대상자는 위기진단 컨설팅 수진업체 중 평가 후 선정되며, 부가가치세 및 전체 사업비의 10%는 본인 부담
- 세부사업내용

구 분	지원 내용	지원조건	지원조건
역량 Jump-Up 프로그램	-위기진단컨설팅 권고안에 대한 연계지원 -신제품개발, 브랜드개발, 마케팅지원, 법률자문, 내외부리모델링 지원	-연 1회 지원·협약기간 2개월 -최대 400만원 지원	전체 사업비의 10% 신청인 본인 부담 (VAT 별도 부담)

신청·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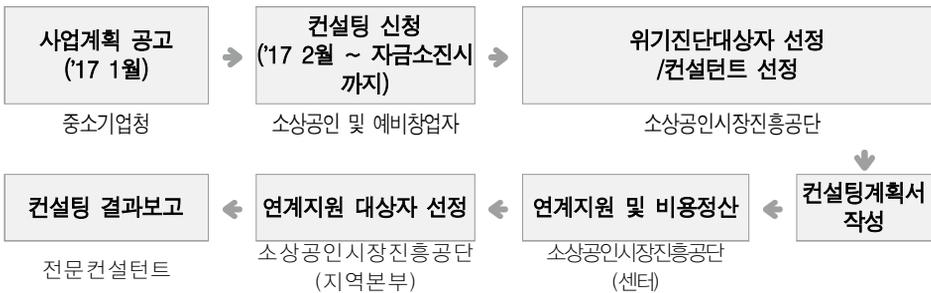
'17. 2월 ~ (자금소진시까지)

- 소상공인포탈(<http://www.sbiz.or.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제출 서류

- 공통 :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온라인 등록)
- 기존창업자 :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사업장가입자별고지 현황, 보험자격득실확인서

처리 절차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컨설팅지원실 042-363-7832~3
- 소상공인컨설팅 홈페이지 : <http://www.sbiz.or.kr>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궁금해요! 중기맨



Q 소상공인컨설팅 후 역량 Jump-Up프로그램을 신청해도 되나요?

A 소상공인컨설팅과 별도로 연 1회 지원이 가능하며, 역량Jump-Up프로그램 지원 대상에 해당하신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18-3

소상공인컨설팅 지원

| 소상공인의 경영능력 강화를 위한 컨설팅

소상공인의 경영안정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경영·마케팅전략·기술전수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규모

3,600개 업체 지원(36억원)

지원 대상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음식, 도소매 등 생활형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또는 예비창업자

*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는 근로자 10인 미만

지원이 안되는 기업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지원 내용

- 소상공인의 경영능력 등의 강화를 위해 전문인력을 활용한 컨설팅 지원으로 안정적 영업기반 확보 및 성공적인 업종전환 지원
 - * 도덕적 해이 및 부실 컨설팅의 경우 지급비용 환수, 자격 박탈 등 제재 조치
- 정책자금 연계 지원 등으로 소상공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 강화
- 세부사업내용

구분	수행	일수(기간)	컨설팅 내용	지원조건
소상공인 컨설팅	전문 컨설턴트	2~5일	소상공인에 대한 영업환경 개선 및 매출 증대를 위한 장기 집중관리 컨설팅 지원	자부담금 125천원 이내(10%)

신청·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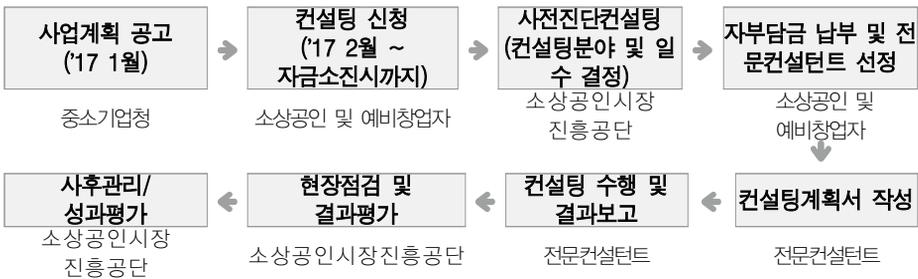
'17. 2월 ~ (자금소진시까지)

- 소상공인포탈(<http://www.sbiz.or.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제출 서류

- 공통 :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온라인 등록)
- 기존창업자 :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사업장가입자별고지 현황, 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예비창업자 : 사업자등록증 또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처리 절차



문 의 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컨설팅지원실 042-363-7832~3
- 소상공인컨설팅 홈페이지 : <http://www.sbiz.or.kr>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궁금해요! 증기맨 

Q 컨설팅 업체부담금은 어느 시점에 납부해야 하나요?

A 사전진단을 통해 컨설팅 분야 및 지원일수가 결정이 되면, 자부담금 납부관련 안내문을 휴대전화 문자서비스를 통해 전달하여 드립니다.

18-4

소상공인 무료법률구조 지원

| 소상공인 상거래 관련 무료법률지원

지원 규모 500개 업체(1억원)

지원 대상 중위소득 125% 이하인 소상공인(일반과세자 포함)

지원이 안되는 기업

✓ 승소가액 2억원 이상, 근로관계와 대응된 사건은 제외

지원 내용

○ 소상공인의 상행위 관련 민사사건에 대한 변호사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 제반 소송비용

* 예) 물품대금, 상가보증금, 상가임대차, 신용불량자 개인회생 및 파산, 기타 상거래 관련 소송사건

신청·접수 연중(자금소진시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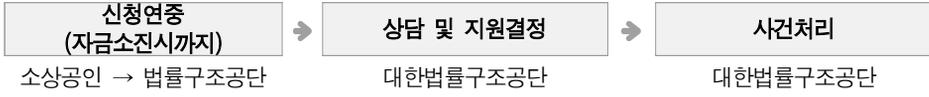
* 신청서류를 준비하여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 출장소에 제출

제출 서류

구 분	간이과세자 (연 매출 4,800만원 미만)	일반과세자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등본 • 사업자등록증(간이과세자용) • 피해사실 입증자료(계약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등본 • 사업자등록증 • 사업주 소득금액(월 260만원 이하) 증명원 <세무서> • 피해사실 입증자료(계약서 등)
선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증명 등 <국민연금공단>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세무대리인 원본대조필) • 임금지급대장(대표자 직인 날인) 등 → 상시종업원수 확인 가능한 1개 서류만 제출

* 전자정부(G4C) 정보망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지 않음

처리 절차



문의처

-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042-363-7832~3)

18-5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

| 소상공인 간 협업 및 공동사업 지원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사업은 소상공인 간 협업 및 공동사업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협동조합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 규모

400개 설립지원(244억원)

지원 대상

5인 이상의 소상공인이 참여한 협동조합

-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법인설립 및 등기완료된 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법인설립 및 등기 완료된 수익사업을 하는 협동조합
- 협동조합 구성원은 최소 80% 이상이 지원제외대상 외 소상공인(5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함
(대기업은 소상공인협동조합 구성원으로 참여 불가, 참여 시 사업신청 제한)
 - 소상공인 정의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및 “同 시행령”에 따름

지원이 안되는 자

- ✓ 중소기업청 소관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
- ✓ 유흥·향락업 및 전문업, 주점업, 입시학원업 등
 - *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대상 업종 참조
- ✓ 대기업 프랜차이즈 가맹점
- ✓ 협동조합 등기임원 중 접수일 현재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등 확인)

지원 내용

협업인프라(1억원 한도 내), 판로확대 및 협업전문교육·컨설팅 지원

- 협업인프라 구축 : 공동브랜드·공동마케팅·공동장비구매·공동R&D·공동네트워크

- 소요비용 원칙 : 정부(70%), 자부담(30%, 현금출자 원칙)
- 기타사항 : 청년협동조합의 경우, 협업사업 지원 시 자부담금 비율 우대(30%)
- 판로지원 : 박람회·전시회 참가 및 TV홈쇼핑 등 온라인 판매 지원 등
- 협업전문교육·컨설팅 : 협동조합의 이해, 협업사업 필요성, 조합설립 및 운영 방법 등

신청·접수

온라인을 통한 신청·접수

- 신청방법 :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사업 홈페이지(<http://coop.semas.or.kr/>)
- 신청기간 : 사업공고일로부터 ~ 예산소진 시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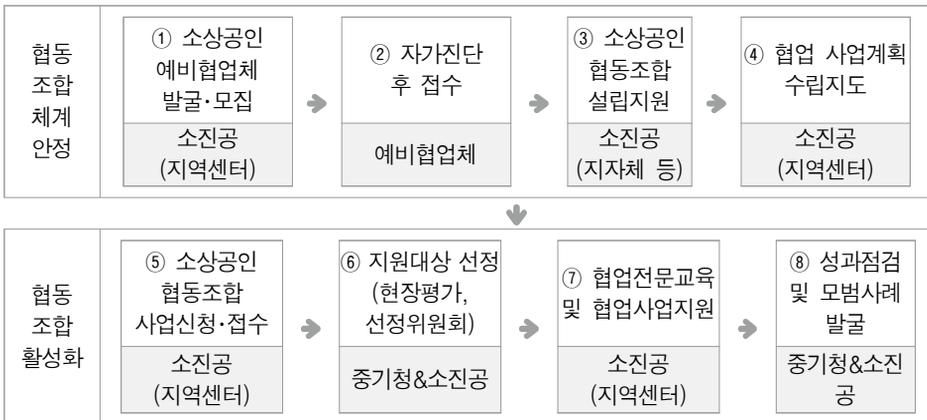
심사·평가 주요내용

- 협업사업계획의 타당성, 실현가능성, 기대효과 등
- 협동조합의 지속성장 가능성 등

제출 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지방세·국세완납증명서, 기타 선정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

처리 절차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042-363-7711~3,7722~7), 홈페이지(www.semas.or.kr)
-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지원과(042-481-4491/5), 홈페이지(www.smba.go.kr)

궁금해요! 중기맨



Q 협동조합이란?

A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Q 협동조합 종류는?

A 소비자협동조합, 직원협동조합,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보건의료 사회적협동조합, 사업자협동조합(생산·판매자협동조합) 등이 있는데, 이중 소상공인 협동조합 활성화사업에 해당되는 조합은 사업자협동조합(생산·판매자협동조합)임.

18-6 나들가게 육성

| 동네 슈퍼마켓의 경쟁력 제고 지원

동네슈퍼가 변화와 혁신을 통하여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나들가게 신규개점, 점포운영 개선, 공동마케팅 등을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2,100여개 나들가게(예산 64억원)

- 신규개점 지원 : 제한 없음
- 점포경영 지원 : 1,000개 내외 나들가게, 6억원
- 나들가게 선도지역 : 22개 지자체 1,100개 내외 나들가게, 58억원
- * '15년 지원현황 : 1,500개 나들가게(개점 300개, 경영개선 600개, 선도지역 나들가게 600개)

지원 대상

- 아래의 ①,②를 모두 충족하는 동네슈퍼
 - ① 점포 총면적 165㎡ 미만인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 점포(슈퍼마켓)
 - * 점포면적 : 화장실, 주차장 등 공용면적을 제외한 매장 면적
 - ② 나들가게 POS프로그램 설치를 위한 POS 기기 보유

지원 내용

- 신규개점 지원
 - (POS 프로그램) 점포유형별 맞춤형 POS 프로그램 설치 및 교육
 - (엠블럼) 나들가게 인증 엠블럼 설치
- 점포경영 지원
 - (점포경영 개선) 점주의 선택에 따라 상품진열 개선, 점포운영 현장지도 및 컨설팅 등을 지원(소요비용의 10% 이내에서 점주 자부담)
 - (공동마케팅) 나들가게 공동세일전 개최시 홍보물 및 고객사은품 지원

- (온라인 상품공급사) 나들가게 POS를 통해 온라인으로 상품 주문 가능
- (자금대출) 경영안정자금 용자(최대 7천만원, 소상공인정책자금 연계)
- 나들가게 선도지역 : 나들가게 선도지역에서 실시하는 모델숍 육성, 점포시설 및 경영 개선, 경영역량 교육 등 각종 지원사업 참여기회 제공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지난해 시범 운영되었던 ‘나들가게 공동세일전’이 ’16년부터는 정규행사로 연 2회 (설명절, 추석명절 등) 이상 개최되며, 나들가게로 운영 중인 점포는 누구나 참여 가능함

신청·접수

’17 1월부터 예산 소진시 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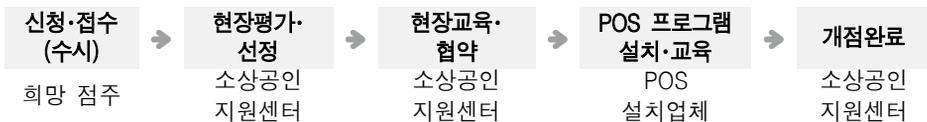
- 신규개점 지원 : 온라인 신청(www.nadle.kr) 또는 소상공인지원센터 (전국 59개) 방문 신청
- 점포경영 지원 : 나들가게 POS를 통해 지원 신청
- 나들가게 선도지역 : 각 선도지역 지자체에서 발표하는 사업계획 및 공고 내용에 따라 신청

제출 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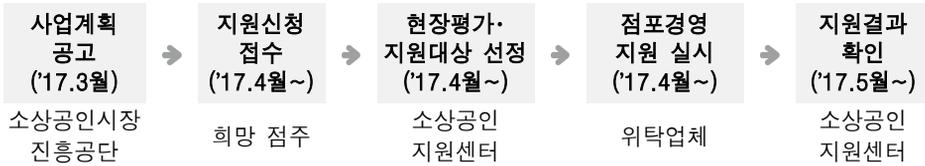
- 신규개점 지원 : 나들가게 참여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 * ‘나들가게 참여신청서’는 온라인(www.nadle.kr) 또는 소상공인지원센터를 방문 하여 작성 가능
- 점포경영 지원 : 별도 제출서류 없이 나들가게 POS로 신청

처리 절차

- 나들가게 신규개점



○ 나들가게 점포경영 지원



문의처

- 나들가게 콜센터 : 국번없이 1566-9082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유통혁신실 : (042) 363-7741~5
-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지원과 : (042) 481-8939

궁금해요! 증기맨



- Q** 나들가게 상품공급사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세요!
- A** 나들가게에 저렴한 상품공급을 위해 온라인 상품공급사를 운영 중이며, 나들가게는 POS, 스마트폰, 웹을 통해 손쉽게 상품공급사별 상품을 비교하고 발주할 수 있습니다. 가격비교를 통해 저렴한 상품 구매가 가능하며, 공급사별로 수시로 진행되는 다양한 프로모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Q** 나들가게 선도지역 지원사업은 무엇인가요?
- A** 지역특성에 맞게 나들가게를 집중 육성할 수 있도록 기초자치단체를 '나들가게 선도지역'으로 선정하여 국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12개의 선도지역을 지원하였으며, 올해는 22개 선도지역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선도지역에 위치한 나들가게는 해당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모델숍 육성, 점포시설·경영 개선 등 각종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8-7

프랜차이즈화 지원

| 프랜차이즈 본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되고자 하는 소상공인 또는 소규모 운영체를 대상으로 프랜차이즈 브랜드로써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가맹본부 시스템 체계, 브랜드 디자인 및 IT환경 구축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와 멘토링, 홍보 등을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 규모

40개 업체 내외(업체당 최대 4천만원 지원)

* '16년 지원현황 : 44개 기업(유망27, 중소10, 연계지원 7)

지원 대상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로 성장을 희망하는 예비 프랜차이즈와 신규 프랜차이즈

- 자격요건 : 외식업, 서비스업, 도소매업 종사자로서 업력 최소 1년 이상
- 유망프랜차이즈는 직영점(사업주 본인) 1개 이상 또는 가맹점 10개 미만
- 중소프랜차이즈는 가맹점 10개 이상~20개 미만
- 연계지원은 가맹점 20개 이상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동일한 브랜드로 동일사업에 중복 신청하는 업체
- ✓ 휴·폐업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등
- * 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진공에서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인)은 참여 가능

지원 내용

- 소상공인의 경영노하우를 체계화하여 가맹본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및 브랜드 디자인 개발 등 선택적 종합지원

○ 세부사업 내역

지원분야	항목	내용	지원한도
	시스템 체계 구축	표준매뉴얼 작성 및 가맹본부로서의 체계 구축 * 기존 사업모델 구체화 및 내·외부 환경조사를 통해 표준화 작업	업체당 개발비용 80%지원, 최대 40백만원 (최대 2지원분야의 항목별 선택가능)
브랜드 디자인	BI·CI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나타내어 소비자에게 브랜드 파워를 가질 수 있는 BI·CI 개발	
	캐릭터	브랜드를 대표할 수 있는 캐릭터 개발	
	포장디자인	쇼핑백, take-out 용기 등의 디자인 개발	
	인테리어	가맹점의 인테리어 컨셉을 도출하고 트렌드와 효율성을 접목시킨 인테리어 디자인 개발	
IT환경 구축	모바일 홈페이지	스마트폰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홈페이지, App, QR코드 등 개발	
	웹 홈페이지	해당 브랜드 홈페이지 개발	
	온라인쇼핑몰	제품 상세 페이지 등 온라인 판매 관련 개발	
마케팅	신생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한 마케팅 전략 수립 및 홍보 사진 등 마케팅을 위한 기본사항 지원 * 팸플릿, 전단지 등 홍보수단 제작을 위한 지원 제외		
멘토링	선배 프랜차이즈 CEO와 매칭을 통해 멘토시스템을 마련하여 경영노하우 전수 * 면담, 이메일 등 매칭 상담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지원내용을 종합한 지원항목 BOX에서 수요자가 선택하여 최대 2분야 신청가능

기 존		변 경	
구분	지원한도	구분	지원한도
① 지원분야 선택적 통합지원	80% (40백만원)	① 지원분야 개별지원	80% (40백만원)
- 시스템 체계 구축 (사후관리 포함)	신규, 연계 구분없음	- 시스템 체계 구축	최대 2분야 까지 지원
- 브랜드 디자인		- 브랜드 디자인	
- IT환경 구축		- IT환경 구축	
- 마케팅 지원		마케팅 지원	
② 홍보 및 멘토링	-	② 홍보, 멘토링, 교육	-

- 이익공유 협동조합형 프랜차이즈 신규 설립 및 기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협동조합형 프랜차이즈로 전환시, 우대지원(90%지원, 50백만원 한도)

신청·접수

'17. 1월중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에서 제출서류 확인·작성하여 우편으로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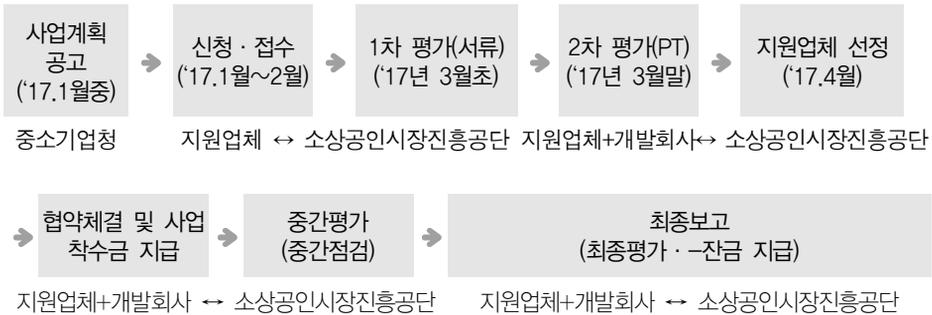
심사·평가 주요내용

- 1차 서류평가 : 사업아이템 및 성공가능성 등 사업계획서 평가(1.5~2배수 선정)
- 2차 PT평가 : 사업에 투입될 개발회사와 매칭하여 개발계획 평가(최종선정)

신청 서류

- 신청서, 사업설명자료, 모든 직영점·가맹점 리스트 및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사본, 최근2년 재무재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등
- * 1차 통과(서류평가)업체에 한해 2차 평가(PT평가)시 재무제표 등 증빙서류 확인
- * 재무제표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확인 대체 가능

처리 절차



문의처

-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지원과 : 042-481-3952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042-363-7754, 7756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18-8

프랜차이즈 수준평가 및 연계지원

| 가맹본부 역량 평가 및 수준별 연계지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자율 신청에 따라 가맹본부의 역량을 평가합니다. 프랜차이즈 시스템 구성 요소간의 관계 등을 평가하며, 이에 따라 수준별 연계지원을 실시합니다.

평가 대상

외식업, 서비스업, 도소매업 업종에 해당되는 가맹본부로서 업력 최소 1년 이상

- 직영점 보유 : 직영점 1개 이상과 가맹점 10개 이상
- 직영점 미보유 : 가맹점 20개 이상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가맹사업 업력 1년 미만, 가맹점포 수 10개 미만 또는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가맹 본부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

평가 내용

- 프랜차이즈 특성(가맹본부·가맹점사업자·계약·시스템·관계·성과 등)을 포함하여 평가하며, 평가결과에 따른 수준별 연계지원

등 급	지 원 내 용	비 고
I 등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프랜차이즈 엠블렘 제작 및 홍보 지원 • 3년 연속 1등급 프랜차이즈 '명예의 전당'입성 	우수프랜차이즈로 지정
II 등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프랜차이즈 엠블렘 제작 및 홍보 지원 • 가맹본부 브랜드 재정비 지원(자율선택제, 비용의 70%, 40백만원 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스템 체계 재정비 - 브랜드 디자인(BI·CI, 캐릭터, 포장디자인, 인테리어) - IT환경 구축 분야(웹홈페이지, 모바일홈페이지, 온라인쇼핑몰) - 브랜드 파워 제고(마케팅 전략 수립 등) * 홍보수단 제작을 위한 지원 제외 	

등 급	지 원 내 용	비 고
III등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맹본부 브랜드 재정비 지원(자율선택제, 비용의 70%, 40백만원 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스템 체계 재정비 - 브랜드 디자인 분야(BI·CI, 캐릭터, 포장디자인, 인테리어) - IT환경 구축 분야(웹홈페이지, 모바일홈페이지, 온라인쇼핑몰) - 브랜드 파워 제고(마케팅 전략 수립 등) * 홍보수단 제작을 위한 지원 제외 	
IV등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맹본부 브랜드 재정비 지원(자율선택제, 비용의 70%, 40백만원 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스템 체계 재정비 - 브랜드 디자인 분야(BI·CI, 캐릭터, 포장디자인, 인테리어) - IT환경 구축 분야(웹홈페이지, 모바일홈페이지, 온라인쇼핑몰) - 브랜드 파워 제고(마케팅 전략 수립 등) * 홍보수단 제작을 위한 지원 제외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프랜차이즈 페스티벌 참가 지원(비용일부 자부담) • 프랜차이즈 산업인력 교육 지원(가맹점주, 임직원 등) • 브랜드 홍보지원(공동사업설명회 등)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수준평가 심사비 국비 일부 지원
- 기업규모별, 업종별로 평가 및 등급 부여

신청·접수

'17. 3월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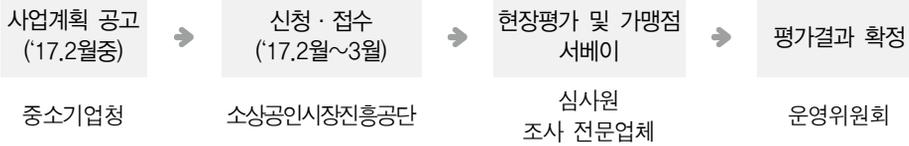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에서 제출서류 확인·작성 하여 이메일(fc@semas.or.kr) 또는 우편으로 제출(평가비용 : 무료)

제출 서류

프랜차이즈 수준평가 심사 신청서 및 사업자등록증, 3개년 재무제표 1부 등

- * 심사원 현장진단 평가 시 재무제표 등 증빙서류 확인, 재무제표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확인 가능

처리 절차



문의처

-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지원과 : 042-481-3952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042-363-7754, 7756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궁금해요! 증기맨



Q

프랜차이즈 수준평가에 자부담금이 있나요?

A

프랜차이즈 수준평가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자율적으로 신청하여 평가가 진행되며, 평가비용에 대해서는 일부 국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준평가 이후 연계지원에 대해서는 비용의 70%, 최대 40백만원까지 국비로 지원합니다.

18-9

소공인 특화센터 사업

| 소공인 밀집지역 경쟁력 제고를 위한 맞춤형 현장지원

소공인의 성장·발전을 위해 경영기술교육, 신기술 컨설팅, 공동사업 및 판로 개척 등 집적지의 업종·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센터 별로 맞춤형 현장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 규모

전국 36개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운영

지원 대상

센터가 소재한 지역의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제조업자(소공인)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에서 지역, 업종확인 가능

지원 제외 업종

표준산업분류 중분류기준 제조업24개 업종 중 ①담배 제조업/②코르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③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제조업/④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⑤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지원 내용

특화교육, 컨설팅, 자율사업 등 지원

- (특화교육) 상호 정보교류, 경영·기술 역량 배양 등을 위한 교육사업
- (컨설팅) 경영애로 및 판매촉진(상품기획 등) 전문컨설팅
- (공동사업, 판로개척 등) 문화·예술 협업을 통한 디자인개선, 원자재 공동구매·생산, 수출·고용창출을 위한 공동사업 수행 등 지역·업종을 고려한 자율사업 프로그램 운영

신청·접수

연중 신청·접수 (방문, 센터 별 사업 일정에 따라 모집)

* 센터별 사업 세부내용 및 지원조건은 지역 소공인특화센터에 문의

처리 절차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지원실 : 042-363-7902, 7904, 7905, 7906
-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정책과 : 042-481-8923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지원사업-소공인 지원」 참조

〈 소공인특화센터 현황('16년 11월말 현재) 〉

	시도	시군구	분야	기관명	대표전화
1	서울	중구(을지로동)	인쇄	서울인쇄산업협동조합	02-2277-2922
2	서울	종로구(창신동)	의류봉제	한국의류산업협회	02-741-5366
3	서울	영등포구(문래동)	기계금속	한국소공인진흥협회	02-2634-7727
4	서울	중구(신당동)	의류봉제	한국의류업종살리기공동본부	02-3672-4348
5	서울	성북구(장위동)	의류봉제	서울패션섬유봉제협회	02-919-9623
6	서울	성동구(성수동)	가족신발	서울산업진흥원	02-2115-0530
7	서울	종로구(봉익동)	귀금속	서울주얼리산업협동조합	02-741-8755
8	서울	서초구(반포4동)	섬유(커튼 및 블라인드)	사단법인 한국차양산업협회	070-4848-0972
9	경기	시흥시(신천동)	기계금속	시흥산업진흥원	070-4170-5973
10	경기	화성시(팔탄면)	자동차부품	화성상공회의소	031-354-3641
11	경기	고양시(장항동)	인쇄	(재)경기테크노파크	031-913-6611
12	경기	부천시(신흥동)	전기장비	부천대학교 산학협력단	032-234-5911
13	경기	안양시(호계1동)	전자부품	(사)한국시험인증산업협회	031-423-6726
14	경기	광주시(오포읍)	가구	(사)한국소셜콘텐츠타인진흥회	070-4436-3155
15	경기	용인시(영덕동)	전자부품	(재)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	031-8067-5041
16	인천	연수구(송도3동)	기타기계 및 장비	(사)한국소호진흥협회 인천지회	032-723-9980
17	부산	동구(범일동)	의류봉제	부산디자인센터	051-631-2050
18	부산	부산진구(범천동)	귀금속	부산경제진흥원	051-636-7518
19	부산	부산진구(범천동)	가족신발	동의대학교 산학협력단	051-890-2333
20	광주	동구(충장동)	의류봉제(한복)	광주대학교 산학협력단	062-228-2348
21	광주	동구(서남동)	인쇄	광주디자인센터	062-236-5013
22	대구	북구(노원동)	광학(안경테)	한국광학공업협동조합	053-355-0994
23	대구	중구(성내동)	귀금속	대구도심재생활문화재단	053-661-2357
24	대전	동구(정동)	인쇄	대전경제통상진흥원	042-226-5556
25	대전	대덕구(상서동)	기계금속	한밭대학교 산학협력단	042-939-4827
26	대전	대덕구(오정동)	기타기계 및 장비	한남대학교 산학협력단	042-629-7728
27	전북	전주시(팔복동)	기계금속	전주벤처기업육성협의회	063-219-0342
28	전북	완주군(소양면)	종이(전통한지)	전라북도 공예협동조합	063-247-5004
29	전남	광양시(옥곡면)	기계금속	광양상공회의소	061-793-2030
30	전남	강진군(대군면)	비금속광물(청자)	강진문화재단고려청자연구소	061-430-5790
31	충남	금산군(금산읍)	식료품(인삼)	금산국제인삼약초연구소	041-750-1653
32	서울	금천구(독산동)	의류봉제	(사)서울의류협회	02-865-9213
33	서울	도봉구(방학동)	섬유제조(양말)	(사)한국기업혁신진흥원	070-7862-9617
34	경기	성남시(상대원동)	식료품(제과제빵)	성남산업진흥재단	031-750-2890
35	충북	청주시(중앙동)	인쇄	서원대학교 산학협력단	043-225-1026
36	전북	순창군(순창읍)	식료품(장류)	(재)전북경제통상진흥원	063-717-1302

18-10

소공인 제품 판매촉진 사업

| 수출중심 소공인 맞춤형 판로개척 지원

우수한 직접생산제품을 보유하고 성장 잠재력이 있는 소공인의 국내외 판로개척을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 규모

300개사 내외

- * 전국공모형 : 250개사, 소공인특화센터 추천형 : 50개사
- * '15년 지원현황 : 208개사(1~4차 모집), 평균 30백만원 내외

지원 대상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제조업자(소공인)로,

- 제조업력 3년 이상(폐업 업력 포함)이며,
- 자사제품을 직접생산하는 기업
 - 수입제품, 1차 농수산물물 유통하거나, OEM(주문자의 요청에 따라 제품을 생산, 주문자의 상표를 부착·납품)·ODM(상품의 기획·개발·생산·품질관리·출하까지 전 과정을 서비스하고 주문자의 상표를 부착·납품)아웃소싱(제품의 생산 등을 외부업체에 위탁하고 자사 상표를 부착하여 납품) 등 위수탁생산하는 기업은 지원 제외
 - 지원 제외 제조업종 : 담배제조업, 코크스·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의료용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직전년도 수출실적이 1만불 이상인 기업(간접수출실적 포함) 우대

지원 제외 기업

- ✓ 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자
- ✓ '15~'16년 동사업을 지원받은 자

<우선선정>

- 직전년도 수출실적이 1만불 이상인 기업(간접수출실적 포함)

지원 내용 판매촉진 역량교육, 컨설팅 및 시장조사 등 4개 분야의 지원 과제를 정부지원한도 내에서 기업이 자율선택

지원 항목	내용	정부지원한도
성장전략수립	성장전략 수립(1년)을 위한 전략전문가 컨설팅	500만원
시장조사	시장조사	2,000만원
브랜드개발	제품디자인 개선, 포장디자인 개선	
광고·홍보	방송광고, 지면광고, 지하철광고, 버스광고, 인터넷광고, 카탈로그 제작, 홍보영상물 제작, 홍보판촉물 제작	
판매행사	행사참가, 팝업스토어 개최, 바이어 초청행사 개최	
판로확보	온라인 쇼핑몰(B2C)* 판매대행 연계, 국내외 전시회 참가 * 이베이, 아마존, 라쿠텐, 타오바오, 쿠팡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h.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신청·접수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h.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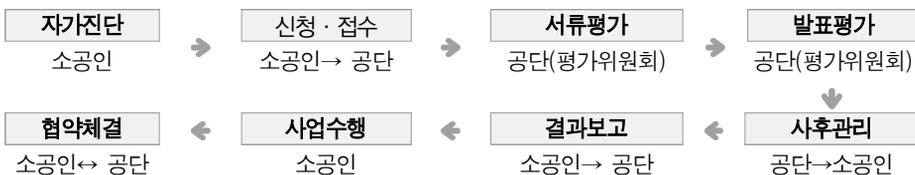
〈심사·평가 주요내용〉

- 제품의 경쟁력, 지원 필요성, 사업추진 의지 등

제출 서류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 신청양식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h.or.kr)에 게재된 공고문에 첨부

처리 절차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지원실 : 042-363-7909, 7914
-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정책과 : 042-481-8923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h.or.kr), 「지원사업-소공인 지원」 참조

18-11

소공인 제품·기술 가치향상 사업

| 숙련기술을 보유한 소공인 기술역량향상 지원

소공인이 보유한 제품·기술의 부가가치 향상과 기술경쟁력 기반 마련을 위해 계획 수립 → 과제개발비를 단계별로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120개 과제 내외

- 전국공모 과제(70개 내외), 소공인특화센터 연계 과제(50개 내외)
- * '16년 지원현황 : 96개 과제 선정·지원, 평균 50백만원 내외

지원 대상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제조업자(소공인)로

- 업력이 3년 이상(폐업 업력 포함)
 - * 단, 소공인특화센터 연계 지원과제의 경우 해당 센터의 관할지역, 업종에 해당해야함
 - * 지원 제외 제조업종 : 담배제조업, 코크스·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의약품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지원 제외 기업

- ✓ 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자
- ✓ '15~'16년 동사업에 주관기관으로 참여하여 지원받은 자

지원 내용

소공인의 특성을 고려 2단계로 구분하여 단계별 지원

- (1단계) 사업계획서 수립 지원
 - 서류평가 통과 업체와 과제기획전문가를 매칭하여 개발목적, 개발내용 등 사업계획 수립을 체계적으로 지원
 - * 단, 소공인이 희망할 경우 사업계획서를 직접 작성·제출 가능
- (2단계) 과제개발비 지원
 - 발표평가를 통과한 최종 소공인 지원과제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과제 개발비*의 80% 이내 지원

- * 지원항목 : 연구장비·재료비, 시제품 제작비, 성능인증 검사비, 위탁개발비, 기술자문비 등 단, 연구시설·장비의 경우 임차비 지원만 가능(구입 불가)
- 단독과제의 경우 30백만원 이내, 협업과제*의 경우 50백만원 이내 지원
- * 협업과제란 2개 이상 소공인이, 대학·연구원(소) 등과 함께 수행하는 과제를 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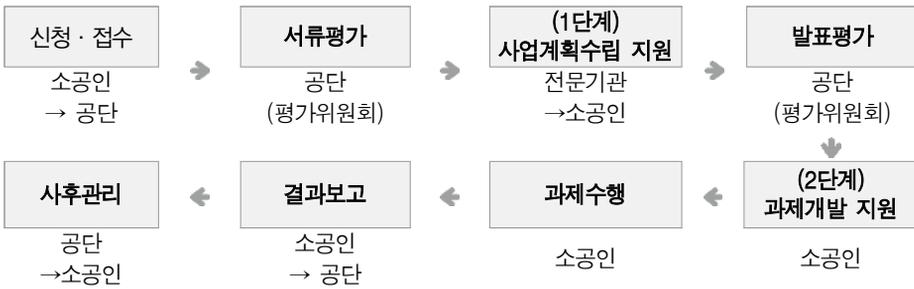
신청·접수 '17년 상반기 중 공고(3회 내외)를 통한 신청·접수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h.or.kr)에서 공지 확인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자가진단표 및 증빙서류

- * 사업 공고 시 사업 신청관련 제출서류 공지 예정

처리 절차



- * 1차 평가의 경우 신청·접수 규모 및 예산에 따라 생략 가능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지원실 : 042-363-7917~8
-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정책과 : 042-481-8923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h.or.kr), 「지원사업-소공인 지원」 참조

18-12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 및 지원

|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에 대한 무료 상담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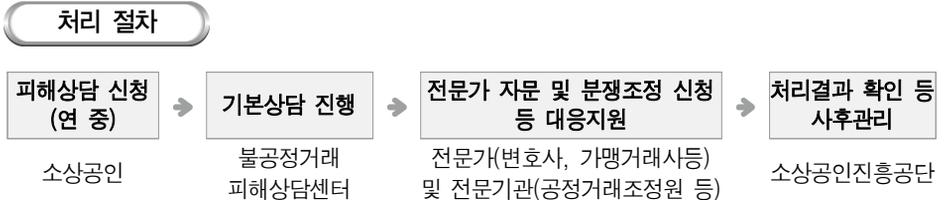
대기업·가맹본부 등의 불공정 거래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를 상담하여, 전문가·전문기관과 연계하여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상담 센터 전국 59개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설치·운영(소상공인지원센터)

지원 대상 불공정거래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 지원 내용**
- (상담지원) 전국 59개 상담센터에서 불공정거래 피해상담
 - (전문가 파견) 변호사, 가맹거래사 등 불공정거래 전문가들이 피해유형별로 1:1 지원(필요시 현장파견)
 - (기타) 불공정거래 피해에 대한 예방활동 및 법령·제도 개선

신청·접수 전국 59개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소상공인지원센터) 전화·방문 등



문의처

-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 국번없이 1357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유통혁신실 : 042-363-7759
-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정책과 : 042-481-4368

궁금해요! 증기맨



Q 불공정거래행위란?

A 대기업, 가맹본부, 대리점 본사 등의 사업자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부당한 방법으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제 **19** 장
소상공인 재기지원

19-1 희망리턴패키지	371
19-2 재창업패키지	373
19-3 소기업·소상공인공제	375

19-1 희망리턴패키지

| 소상공인의 안정적 폐업 및 임금근로자로의 전환 발판 마련

폐업예정 소상공인의 안정적 폐업 및 임금근로자로의 전환 발판 마련을 통해 소상공인의 폐업 충격을 완화하고 재기를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75억원, 7,500여개 업체

지원 대상 취업 의사가 있는 폐업예정 소상공인(또는 기 폐업한 소상공인)
 ▷ 연매출액이 1.5억원 이상일 경우 취업성공패키지 추천서 지원불가

지원이 안되는 기업

✓ 비영리사업자(또는 법인), 임대사업자

지원 내용

폐업단계	→	폐업이후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정리 컨설팅 · 재기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성공패키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상담·직업훈련·취업알선(고용노동부) · 전직장려수당 지원 · 전환대출 융자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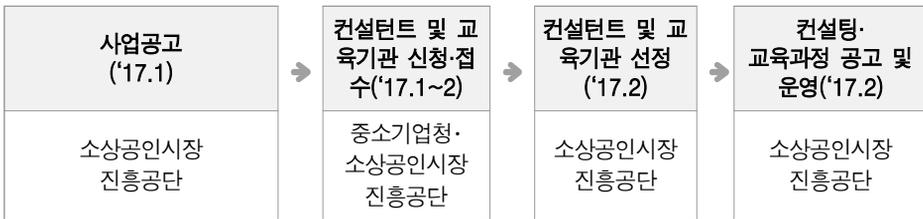
- 사업정리컨설팅 : 폐업 시 절세 및 신고사항, 자산·시설 처분방법 등에 대한 일반/세무/부동산 분야 컨설팅 지원
- 재기교육 : 민간 위탁교육기관을 통해 취업 기본역량(면접, 이력서), 취업정보, 개인신용관리 등의 교육 지원
- 전직장려수당 : 사업정리 컨설팅 혹은 재기교육을 받고 폐업신고 및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최대 75만원 분할 지급)

- 취업성공패키지 : 취업 상담 및 활동계획 수립,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을 제공하는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와 연계 지원

신청·접수

-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hope.sbiz.or.kr) 통한 온라인 신청

처리 절차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 042-363-7836~8
-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지원과 : 042-481-8997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 ☎1357

궁금해요! 중기맨



Q 전직장려수당은 지원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A 사업정리 컨설팅 혹은 재교육을 받고 폐업신고 및 취업활동(취업성공패키지 1 단계 수수료 또는 취업성공)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최대 75만원 분할 지급

19-2 재창업패키지

| 유망업종으로의 업종전환을 지원

특화형 및 비생계형 업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에게 교육 및 멘토링을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 규모 2,500명 내외(25억원)

* '16년 지원현황 : 2,500명

지원 대상 업종전환 예정자 또는 폐업자

* 고소득 전문직(변호사, 변리사, 의사, 한의사, 세무사, 회계사 등), 유흥향락업종(유흥주점, 도박게임장 등)은 지원 제외

지원 내용

- 재창업교육 : 과정당 60Hr 이내로 의식전환, 힐링교육, 업종전문 이론 및 실습교육 등으로 구성(수행 : 민간교육기관)
- 재창업멘토링 : 안정적인 재창업을 위해 희망자에 한해 멘토링 지원(수행 : 멘토단)

신청·접수 '17.3월 ~ 예산 소진시까지

- 온라인을 통한 수시 신청 및 접수
 - * 소상공인 지식배움터(edu.sbiz.or.kr) → 재창업패키지교육 → 지역별 교육과정 검색 → 원하는 '교육과정' 클릭 → 세부 내용 확인 후 하단에 '신청하기' 클릭

처리 절차



문의처

-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지원과 : 042-481-4528, 4430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2017년 지원시책」 참조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 ☎ 042-363-7827

궁금해요! 증기맨



- Q** 재창업패키지 교육은 교육생 자부담금이 있나요?
- A** 교육비는 전액 국비 지원으로 교육생 자부담금은 없습니다.

19-3 소기업·소상공인공제

| 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노란우산공제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폐업 등의 어려움이 닥칠 때 공제금을 지급받아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가입 대상

- 소기업 : 업종별 3년 평균 매출액 일정수준 이하 업체
 - * 도·소매업(50억원), 숙박·음식업 및 개인서비스업(10억원), 운수업(80억원) 등
- 소상공인 : 소기업 중 광공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그 외 업종은 5인 미만)

가입 방법

- 중소기업중앙회 및 모집위탁법인(시중은행 등) 방문, 공제상담사, 우편 등
 - ▷ 가입금액 : 월 최저 5만원부터 최고 100만원(1만원 단위)
 - * 중도해지 시 가입기간에 따라 납입한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관련 세법에 따라 이미 받은 소득공제 금액에 대해 과세하게 됨

공제금 지급

- 지급 사유 : 폐업, 법인대표자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퇴임, 가입자의 사망, 가입기간이 10년이 경과하고 가입자 연령이 60세 이상인 경우
- 지급 금액 : 적립한 부금에 연 기준이자율*을 적용한 금액
 - * 폐업·사망시 2.4%, 노령·퇴임시 2.1%(16.4분기 기준)
 - * 부금납입월수 30회 이하에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원금보장이 되지 않음

가입자 혜택

- 12개월 이상 납부 시 누적 납입금액(90%)을 한도로 대출 지원
- 납부 공제부금에 대해 소득공제(연 300만원 한도 내 추가 소득공제)
 - * 사업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는 소득공제 500만원,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300만원, 1억원 초과인 경우 2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
- 상해 사망 및 후유장애 발생 시 월 부금액의 150배까지 보험금 지급(가입후 2년간)
- 수급권 보호를 위해 공제금의 압류, 담보 및 양도 금지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공제 : www.8899.or.kr. 국번없이 1666-9988, 전화 02-2124-3342~3
-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지원과 : 042-481-8997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궁금해요! 증기맨



Q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 '노란우산공제'는 일반보험과 어떻게 다른가요?

A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가 어려운 경제상황에 놓인 경우 최소한의 생활 안정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채권자의 압류가 제도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별도의 지급 시기나 납입 기간에 관계없이 폐업이나 질병, 부상 등 공제사유가 생기면 가입기간과 연령에 관계없이 지급받을 수 있어 국민연금을 보완합니다, 또한 부금 납입기간 12개월 이상이면 무담보·무보증으로 납입부금 90% 한도 내 저리대출이 가능하고 공제가입 후 2년 내 가입자의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애 발생 시 부금월액의 최고 150배까지 보험금이 지원되는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 20 장

전통시장 활성화

20-1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378
20-2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381
20-3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383
20-4 상권활성화	386
20-5 온누리상품권 발생	389
20-6 전통시장 ICT 육성	392
20-7 청년상인 육성	394
20-8 전통시장 대학 협력사업	397
20-9 상인교육 및 시장인프라 지원	400
20-10 시장마케팅 지원	403
20-11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406
20-12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	409

20-1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 전통시장의 편의시설 건립 및 노후시설 개선 지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고객편의시설 등의 건립과 노후 시설의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규모

285곳(754억원)

- * '17년 지원현황 : 285곳, 시장당 2.6억원(754억원)
-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은 지역발전특별회계 시·도자율편성사업으로 매년 각 시·도의 예산 편성 금액에 따라 달라짐

지원 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전통 시장·상점가·상권 활성화구역 중 사업추진 주체를 보유한 곳

- * 상인회, 상점가진흥조합,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민법상 법인 등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 제9조 각호
 - * 농수산물공판장, 가축시장, 시장정비구역, 개인시장, 도시정비구역, 부정행위시장 등
- ✓ 상인조직이 정상적으로 활동하고 있지 않은 시장
 - * 휴면조합, 해지된 상점가진흥조합, 민법이 아닌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기타 등

<지원우대>

- 재해로 인한 시장 등의 전년도 피해복구비 보전
- 시장·군수·구청장이 중장기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지정한 상권활성화구역
- 시·도지사위와 시장·군수·구청장이 합의하여 연차사업으로 추진중인 시장
- 전기·가스·소방시설 등 화재예방시설의 설치 또는 개량·보수를 하고자 하는 시장

지원 내용

- 진입도로, 아케이드 등 고객접근 및 편의시설 설치
- 시설물 개보수(전기·가스·소방시설 등의 교체·개량) 등 노후시설 개선
- 테마거리 조성 및 홍보시설(거리정비, 홍보·상징조형물 등) 설치
- 배달센터(택배시설), 고객쉼터, 자전거보관소 등 문화·편의시설 설치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사전동의율 하향(전체 상인의 80%이상 → 자부담 분담시 80%, 그 밖의 경우 60%)
- 임대료 자율동결 합의사항 우대지원(정규 평가배점 + 우선지원 대상 포함)
- 화재공제 가입률에 따라 우대지원(우선지원 대상(전체상인 50% 이상) 포함, 가점(5점) 반영)

신청·접수

‘16.12월~’17.2월 중 (‘18년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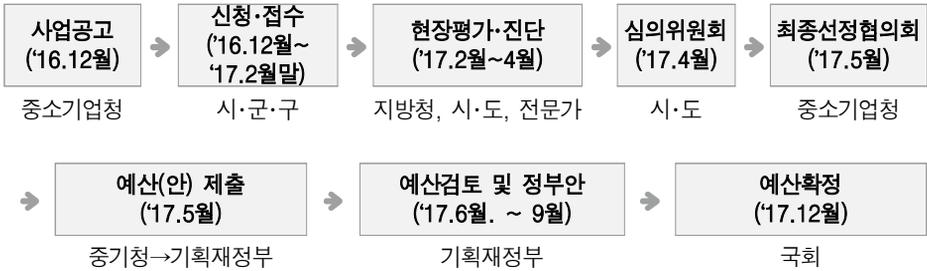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회 등에서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신청

심사·평가 주요내용**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동의서, 연구용역 및 컨설팅 보고서, 견적서, 시장·상인회 등록증

* 신청양식은 중소기업홈페이지(www.smba.go.kr)에 게재된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에 첨부

처리 절차



문의처

- 중소기업청 시장상권과 : 042-481-4563, 4516
- 지방자치단체(시·군·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담당부서
-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궁금해요! 중소기업



Q 시설현대화사업의 보조비율 및 자부담 면제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A 지원 비율은 국비(60%), 지방비(30%), 민간부담(10%)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따라 5% 이내의 범위에서 부담 가능합니다.
다만, 화장실, 진입도로, 상·하수도, 안전시설, 고객편의시설, 공동물류창고, 공동판매장 등은 민간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20-2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 전통시장 주차장 건립 및 공공·시설주차장 이용 보조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가장 큰 불편사항인 주차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주차장 건립 지원 및 전통시장 인근의 공공·시설주차장 이용을 보조합니다.

지원 규모

110개 시장(988억원)

* '16년 지원현황(1,001억원) : 95곳(주차장 건립지원), 19곳(공공·시설주차장 이용보조)

지원 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상점가·상권 활성화구역

지원이 안되는 시장

-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 제9조 각호
 - * 농수산물공판장, 가축시장, 시장정비구역, 개인시장, 도시정비구역, 부정행위시장 등
- ✓ 상인조직이 정상적으로 활동하고 있지 않은 시장
 - * 휴면조합, 해지된 상점가진흥조합, 민법이 아닌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기타 등

지원 내용

- 주차장이 부족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주차장 건립·개보수 지원
- 부지확보 등으로 주차장 건립 곤란시 전통시장 인근 공공·시설주차장 이용 보조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부지확보 협약서 징구 등 사전준비 절차 미이행 시장 참여 제한, 부지매입 및 자부담 확보 완료시장 우선 지원

신청·접수

'16.12월~'17.1월 중

- 지방자치단체(시·군·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회와 협의 후 지방중기청에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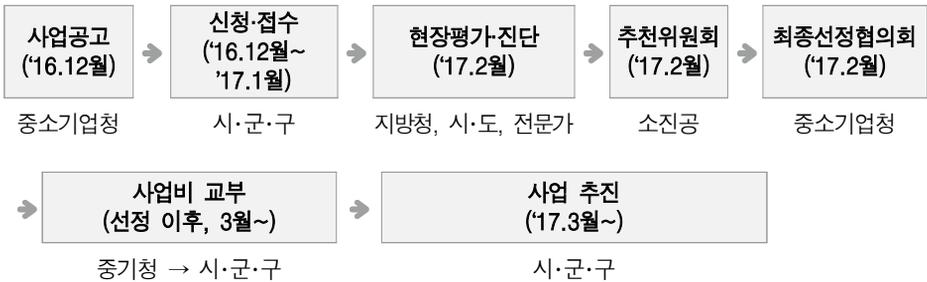
심사·평가 주요내용

- 사업의 효율성, 부지 확보 등 사업추진 가능성, 시장활성화 등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부동산 매매 동의서, 이해관계자 사전동의서, 시장자문 또는 사전컨설팅 결과보고서(총사업비 1억원 이상) 지방비 투·융자 심사 결과서 또는 당해연도 심사계획서(실시한 경우에 한함)

* 신청양식은 중소기업홈페이지(www.smba.go.kr)에 게재된 사업공고안 참조

처리 절차



문의처

- 중소기업청 시장상권과 : 042-481-4563, 4516
- 지방자치단체(시·군·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담당부서
-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궁금해요! 중기맨 

Q 주차환경개선사업의 보조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A 지원 비율은 국비(60%), 지방비(40%)이며, 시설현대화와는 달리 시장 자부담이 없습니다

20-3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 개성과 특색이 있는 전통시장 육성

전통시장의 개성과 특색을 살려 외국인이 즐겨 찾는 글로벌명품시장, 지역의 역사·문화·관광 자원과 연계한 문화관광형시장, 지역 우수시장을 발굴하여 전통시장 활성화 롤모델을 구축하는 지역선도시장, 1시장 1특색을 살려 대표브랜드를 창출하는 골목형시장을 육성합니다.

지원 규모

167곳 내외 지원(99곳 선정, 565.5억 원)

- * '16년 지원현황 : 신규 98곳 포함 157곳, 558.5억원 지원
- 글로벌명품시장 : 10곳, 80억 원(3년간 시장당 50억 원 이내)
- 지역선도시장 : 10곳, 44억 원(3년간 시장당 최대 25억 원 이내)
- 문화관광형시장 : 84곳, 248.5억 원(3년간 시장당 최대 18억 원 이내)
- 골목형시장 : 60곳, 179억 원(1년간 시장당 6억 원 이내)
- * 사업비 편성 : 국비 50%, 지방비 50% 매칭
- * 문화관광형, 골목형, 글로벌명품시장은 '17년까지 165곳, 200곳, 10곳 육성 목표
- * 수요 등을 고려하여 지원 규모 조정 가능

지원 대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 상점가 중 상인조직을 보유한 곳으로서 시장의 개성과 특색을 발굴하여 특성화 시장으로 발전 가능한 시장
 - 상인조직 : 상인회, 상점가 진흥조합,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민법에 의한 법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골목형시장 및 문화관광형시장은 기존에 문화관광형시장이나 문전성시(문체부)를 지원받은 시장은 제외
- ✓ 같은 해 1개 사업만 참여 및 단계별(골목형→문화관광형→지역선도시장→글로벌명품) 지원은 가능하나 역으로 참여 불가
- ✓ 기존 지원을 받은 시장은 동일사업 중복 지원 제외

〈지원우대〉

- ‘대한민국 우수 전통시장’ 인증 전통시장 및 상점가
- 최근 3년 이내 정부포상 실적(중소기업청장상 이상)이 있는 시장

지원 내용

시장별 특성을 발굴하여 살거리·즐길거리·볼거리 마련을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

- 글로벌명품시장 : 외국인이 가고 싶은 전통시장 육성에 필요한 글로벌 상품·마케팅, 한류공연, 외국인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등
- 지역선도시장 : 지역적 특색과 개성이 우수한 시장을 발굴하여 지역 대표시장으로 육성하기 위한 생활 문화공간 조성, 야시장, 한류공연, 전통체험 등
- 문화관광형시장 : 문화자원과 관광자원을 연계하여 관광과 쇼핑이 가능한 시장을 육성하기 위해 문화공연, 축제, 민속체험, 이벤트 등
- 골목형시장 : 1시장 1특색을 발굴하여 주민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신메뉴 상품과 레시피 개발, 대표 브랜드 육성, 상품 진열 등

신청·접수

- ‘16. 12월 ~ ’17. 1월
 - 관할 지역 지방 중소기업청 방문 또는 우편접수(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심사·평가 주요내용

- 공통 : 상인조직의 사업 추진 역량, 지자체의 사업 추진 의지, 시장 활성화 수준, 상인회 조직화 수준 등
- 글로벌명품시장·지역선도시장 : 시장이 보유하고 있는 글로벌 특성과 상권 환경 및 지리적 환경, 사업 추진 인프라 등
- 문화관광형시장 : 시장이 보유하고 있는 문화, 관광 자원과의 연계 가능성, 특화된 역사 요소 등 스토리텔링 가능성 등
- 골목형시장 : 시장이 보유하고 있는 특화상품, 차별화된 서비스 등

제출 서류

○ 사업신청서

- * 신청양식은 중소기업청(www.smba.go.kr),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홈페이지에 게시

처리 절차



문의처

- 중소기업청 시장상권과 : 042-481-4335, 4547, 4562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특성화지원실 : 042-363-7621, 7782, 7623(글로벌명품시장, 지역선도시장), 7622, 7788, 7626(문화관광형시장), 7781, 7783, 7786, 7787, 7627(골목형시장)
-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궁금해요! 중기맨



- Q** 현재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에 전혀 참여하지 않고 있는데 한꺼번에 모든 시장을 다 신청해도 되나요?
- A** 현재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에 참여하고 있지 않다면 신청 대상이 되므로 각 사업 모두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중복적으로 선정이 되지 않으므로 시장 특성에 가장 적합한 사업에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0-4

상권활성화

| 시장과 주변상권을 연계하여 상권전반에 대한 활성화 지원

개별시장 또는 상점가만을 지원하는 방식을 확장하여 시장과 주변상권을 연계하여 상권전반에 대한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규모

6개 상권활성화구역(구역당 3년간 총 18억원 지원, 연 6억한도)

* '15년 지원현황 : 6곳, 36억원 지원 ('14년 선정, 국비 100%)

지원 대상

신청일 현재 아래 상권활성화구역의 법적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곳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4호

구역 법적 요건

- ✓ 시장 또는 상점가가 하나 이상 포함된 곳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이 100분의 50 이상 포함된 곳
- ✓ 해당 구역 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시·군·구의 인구 50만 이상은 700개, 50만미만은 400개) 이상의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곳
- ✓ 구역 내 시장·상점가의 매출액, 인구 및 사업체 수 등 3개 항목 모두 최근 2년간 연속 감소(인구는 구역이 속한 행정동의 인구)하여 해당 구역의 상업활동이 위축되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곳

지원 내용

- 상인교육, ICT 융합 등 상인 경쟁력 강화사업
- 공동마케팅, 공동 상품·디자인 개발 등 공동사업
- 빈점포 활용, 청소 및 노점 관리 등 상권관리사업
- 고객 및 지역주민 대상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고객 유치사업
- 관광(테마)거리조성, 축제·홍보행사 개최 등 상권홍보사업

○ 상권관리기구 자생력 확보를 위한 비즈니스모델 발굴 사업 등

- * 기반시설(건축물로 등록될 수 없는 야외무대, 공연장, 상징조형물 등) 설치비는 당해년도 국비의 20% 이내로 제한

시범사업 성과

'11년 ~ '13년, 6개 구역*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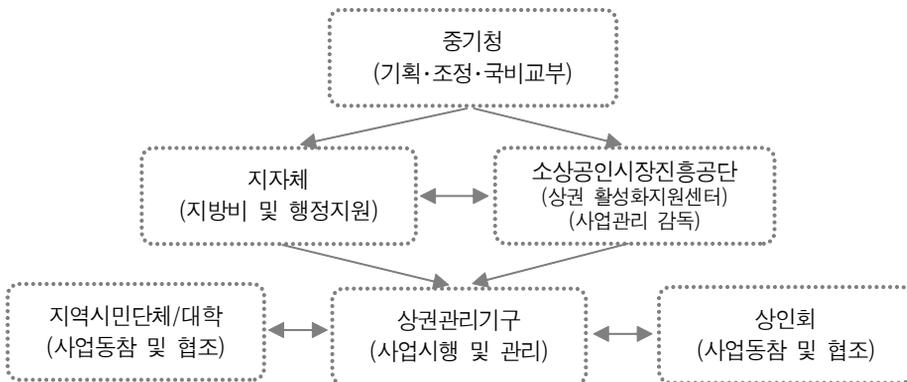
- 온라인 콘텐츠(홈페이지, 앱 등) 발굴
- 상권별 스토리 발굴을 통한 대표이미지(BI, 캐릭터 등) 구축 및 홍보물 제작
- 문화예술을 접목한 상권특성별 이벤트 개최로 고객 및 매출 확대

- * 서울 마포, 경기 성남, 강원 동해, 충북 청주, 부산 동구, 경남 창원

신규구역 운영

'14년 ~ '16년, 6개 구역지원

지원구역	내용
경기 성남	도시 상권의 재생 주체인 '상인'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경기 의정부	상권활성화 사업을 통한 구역내 브랜드아이덴티, 행복페스티벌, 공동마케팅 및 상인교육 등의 경영 혁신 사업 추진
충남 부여	지역의 정체성 확보를 통한 매력 넘치는 부여 조성
전남 순천	관광(테마)거리조성, 축제·홍보행사 개최 등 상권홍보사업진행
울산 울주	전국 산악관광1번지 영남알프스마켓타운 클러스터 구축
부산 해운대	자유로운 문화와 예술 소비를 통해 자유 활동구역을 확보하고 외부 이벤트 유치 등 지속적인 문화·예술 기획 진행

사업추진체계

문의처

- 중소기업청 시장상권과 : 042-481-4335, 4560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042-363-7782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궁금해요! 중기맨



- Q** 상권활성화구역 법적요건 충족이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전부 만족해야 신청가능한가요?
- A**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4호에 따라 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20-5

온누리상품권 발행

| 전국의 가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어느 곳에서나 OK

온누리상품권은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SSM)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의 매출 촉진을 위해 발행하는 상품권으로, 시중의 13개 금융기관 및 BC카드에서 구매 가능하며, 전국의 가맹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발행규모

- '17년 약 1조원 규모 온누리상품권 발행·판매
 - * '16년 실적 : 1조원 판매

상품권 구매처

- 지류상품권 : 13개 금융기관
 - 새마을금고, 농협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우체국, 신한, 수협,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 전자상품권 : BC카드 및 6개 금융기관
 - BC카드(02-3475-8491), 농협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상품권 사용처

- 전국 전통시장 및 상점가 가맹점에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
 - 가맹점은 전통시장통통(www.sijangtong.or.kr) 및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0)에서 확인
 - * 전자상품권은 전통시장 및 전용 온라인쇼핑몰(<http://onnurimarket.kr>)에서도 사용 가능, 사전에 BC카드 홈페이지(www.bccard.com)에서 소득공제(기명등록), 인터넷/ISP 등록 필요
- 가맹점 신청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점포에서 상시적으로 직접 사업을 하는 상인
 - 신청 및 등록절차

가맹 신청서를 지방중소기업
청에 제출

상인, 시장



가맹점(가맹시장) 자격요건
심사

지방중소기업청



가맹점 승인 및 등록(DB등록)

지방중소기업청

- * 신청서는 전통시장통통(www.sijangtong.or.kr) - 온누리상품권 -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

가맹점 제한업종

- ✓ 도소매업 또는 용역업이 아닌 업종
- ✓ 담배·주류·모피제품·도박기계·귀금속 도매업, 금융업, 보험, 골프장운영업, 부동산업 등 전통 시장법 시행령 제9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제한업종

특 징

- 상품권 판매·회수 수수료 전액을 국비 지원(상인 부담 없음)
-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작하여 위·변조가 어렵고, 보안성·안전성 확보

상품권 이미지

- 지류상품권

일만원권



오천원권



삼만원권



- 전자상품권

오만원권(전자)



오만원권(팔도)



십만원권(전자)



십만원권(팔도)



문의처

- 중소기업청 시장상권과 : 042-481-4574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마케팅지원실 : 042-363-7641~7644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상품권 콜센터(☎ 1357 → 0번)
-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궁금해요! 증기맨



Q 온누리상품권은 어디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A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법에 의해 등록된 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현재 전국 전통시장 등에 18만개 점포가 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전통시장통통 홈페이지(www.sijangtong.or.kr)에서 가맹점 검색 및 조회도 가능하니 많은 사용 바랍니다.

20-6

ICT 전통시장 육성

| 전통시장의 모바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

ICT카페, 전통시장 앱 등 기 구축된 인프라를 활용하여 전통시장 콘텐츠와 ICT를 융합하고 상인과 고객이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모바일 마케팅 역량강화

지원 규모

- (ICT추진단) 총 200개 시장 5,000명 교육 (예산 5억원)
- (ICT카페구축) 총 30개 시장 지원 (예산 3억원)

지원 대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 정한 전통시장, 상점가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를 보유한곳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65조에 따른 시장 상인회
 - 「유통산업발전법」 제 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사업)협동조합
 - 「민법」에 따라 시장 상인이 설립한 법인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67조에 따른 시장 관리자

지원이 안되는 시장

- ✓ (공통) 정부 사업 참여 제한 등으로 사업 추진이 부적합한 시장
- ✓ (ICT카페) 기존 ICT전통시장육성사업 기지원시장

지원 내용

- (ICT추진단운영) IT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ICT추진단을 통해 직접 시장을 방문하여 스마트폰 활용 등 모바일 기초교육과 '매력넘치는 우리시장' 앱을 활용한 스마트전단지·쿠폰 발급 시스템의 활용교육 등 상인들의 ICT역량강화

- (ICT카페구축)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따라 PC 등 ICT장비, 테이블 및 의자 등 고객편의기구, ICT전통시장을 상징하는 인테리어 지원

신청·접수

- 연중 수시신청 (예산범위 내)

제출 서류

- ICT교육신청서, ICT카페구축신청서
 - 신청양식은 중소기업청(www.smba.go.kr),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h.or.kr) 홈페이지 게시

문의처

- 중소기업청 시장상권과 (042) 481-4560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042) 363-7778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 www.bizinfo.go.kr / 전화상담 ☎1357

궁금해요! 증기맨



Q

ICT추진단은 무엇 인가요?

A

IT전문인력이 직접 시장을 방문하여 상인을 대상으로 집체교육 및 밀착교육 실시하고 온라인 판로 개척을 위한 모바일 마케팅 교육 실시

20-7

청년상인 육성

| 청년에게 희망을, 전통시장에 활력을

전통시장 빈점포를 활용하여 미래 전통시장을 이끌어갈 청년상인 창업지원 및 청년상인 집적지구인 청년몰 조성으로 청년인력의 신규 고용창출 및 전통시장의 변화와 혁신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규모

- (청년몰) 17개 시장, (창업지원) 20개 시장, 200개 점포 (193.5억원)
 - '16년 지원현황
 - * 청년몰 조성 : 17개 시도 127.5억원(시도당 15억원 이내, 국비 50% 지자체 40% 자부담 10%)
 - * 창업지원 : 22개 시장, 208점포, 51억원(점포당 2.5천만원 이내, 국비 60~100%)

지원 대상

- 전통시장 내 청년상인 육성을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
(청년몰 : 일정구역 내 20점포 이상 확보 시, 창업지원 : 시장당 빈점포 5개 이상 확보 시 신청 가능)
 - 「전통시장법」 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또는 상권활성화 구역, 같은 법 제65조에 따라 상인회를 등록한 상점가
 - 청년상인은 만 39세 이하(미성년자 제외)에서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조정 가능

지원이 안되는 시장

- ✓ 정부사업 참여제한 등으로 사업추진이 부적합한 시장은 지원 제외

지원 우대

- '대한민국 우수 전통시장'인증 전통시장 및 상점가
- 최근 3년 이내 정부포상 실적(중소기업청장상 이상)이 있는 시장
- 자치단체 사업비용 매칭시 우대
- 자치단체가 빈점포 매입 또는 장기임차(5년이상) 등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시 우대

지원 내용

- 청년몰 조성 : 전통시장 일정구역 내 20개 점포 이상의 청년점포 및 고객 휴게공간상인 협업공간 등 문화쇼핑·놀이가 집합된 Mall 조성 지원
 - 청년몰 구성 → 청년상인 입점 → 공동마케팅, 점포 컨설팅·경영 교육 등
- 창업지원 : 창업교육, 체험 점포 운영, 임차료·인테리어 비용, 컨설팅, 홍보·마케팅 지원 등 전통시장 빈점포 내 청년상인 창업 지원에 필요한 비용
 - 전략업종 선정 → 공모 및 선정자 창업교육 → 체험점포 운영 → 정식 입점 → 경영·판로 지원
- * 지원제외 : 판매를 위한 재료비, 시설·집기류 등 개인 자산(비품)

신청·접수

- '16. 12월 ~ '17. 1월
 - 관할 지역 지방 중소기업청 방문 또는 우편접수(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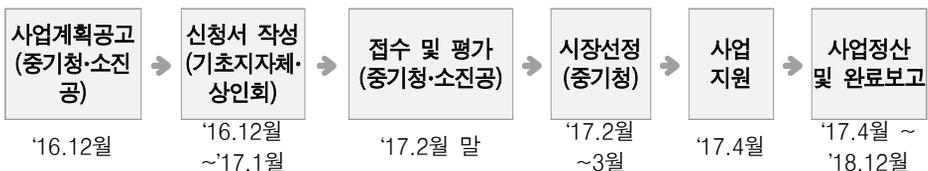
심사·평가 주요내용

- 서류심사 : 시장의 사업 참여 결격여부, 가·감점 등 검토
- 현장평가 : 시장입지현황, 사업추진 실적 및 정부사업 참여현황 등
- 발표평가 : 사업추진 의지, 추진인프라, 추진계획의 적정성 및 사업운영의 적정성

제출 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각 5부
 - 신청양식은 중소기업청(www.smba.go.kr),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홈페이지 게시

처리 절차



문의처

- 중소기업청 시장상권과 : 042-481-4335, 8930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권육성실 : 042-363-7771, 7772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 www.bizinfo.go.kr / 전화상담 ☎1357

궁금해요! 증기맨



Q 청년상인 모집은 언제어나요?

A 청년상인 육성사업 지원대상 선정 후, 청년상인 입점을 위한 전략업종 등을 고려하여 시장별 별도 청년상인 모집 공고를 하게 됩니다.

20-8

전통시장 대학협력사업

| 대학생의 창의적 아이디어 접목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촉진

창의적 아이디어를 갖춘 문화기술디자인학과 대학생들이 다양한 성과물을 전통시장에 접목시켜 매출 증대 등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촉진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규모

17개 전통시장-대학 (29.6억원)

* '16년 지원현황 : 22개 시장-대학 지원(대학당 최대 1.3억원 지원)

지원 대상

전통시장과 협업하는 2~4년제 대학교

* 「전통시장법」 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및 동법 제65조에 따라 상인회를 등록한 상점가

지원이 안되는 시장

(전통시장)

- ✓ 특성화사업 참여시장(글로벌명품, 문화관광형시장, 골목형시장)
- ✓ 상인조직이 정상적으로 활동하고 있지 않은 시장
 - * 휴면조합, 해지된 상점가진흥조합, 민법이 아닌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기타 등

(대학)

- ✓ 중소기업청 등 정부지원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대학교
 - * 교육부에서 발표한 '15학년도 정부재정지원 가능대학 명단 참조

〈지원우대〉

- '대한민국 우수 전통시장' 인증 전통시장 및 상점가
- 최근 3년 이내 정부포상실적(중소기업청장상 이상)이 있는 시장

지원 내용

창의적 아이디어를 시장 현장에 적용하는데 필요한 자금(대학당 최대 1.5억원)

- (커뮤니티 공간) 공감과 소통을 위한 문화공간과 상품으로 전통문화 체험, 휴식, 관광공간 등 소비 및 놀이, 커뮤니티 공간 형성
- (ICT 접목) 시장 특성과 장점을 스마트·온라인화된 소비패턴에 맞춰 소비자가 쉽게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
- (특화상품개발) 전통시장의 인기상품과 대표상품 개발, 시장 고유 브랜드로 특성화하여 소비자 인지도 제고 및 타 업종으로 파급
- (이미지혁신) 고객 쇼핑환경과 영업 공간 환경정비를 통한 테마 공간 조성 등 시장 이미지 제고
 - * 사업 결과물의 소유권은 시장 상인회에 귀속하며, 타사업에서 이미 시행중인 사업 성격(공동 마케팅, 시장홍보, 상인교육, 장보가배송서비스 등)은 중복 지원 불가
 - * 2년차 시장은 성과평가를 통해 하위 30%는 지원 제외, 70%는 차등 지원

신청·접수

'16. 12월 중

- 신청서 작성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및 사업추진 전문기관 방문 및 우편 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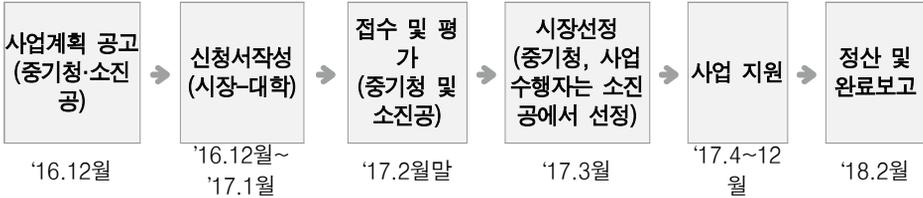
- 현장평가 : 사업추진이지, 지역밀착성, 시장편의성, 사업이해도, 실현가능성 등
- 대면평가 : 대학의 시장지원현황, 추진계획 및 추진체계 적절성, 창의성, 구체성, 기대효과 등
 - * (대학) 전통시장 지원 관련 학점 연계시 5점 가점, (시장) 최근 3년간 정부사업 참여 중 포상 실적에 있는 시장 우대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시장등록증

- * 신청양식은 중소기업청(www.smba.go.kr),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홈페이지 게시

처리 절차



*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문의처

- 중소기업청 시장상권과 : 042-481-4517, 8929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컨설팅지원실 : 042-363-7581, 7562
 - * 중소기업청(www.smba.go.kr)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공지사항
 -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궁금해요! 중기맨



- Q** 대학협력사업의 지원 연한과 지역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 A** 대학당 2년 최대 1.3억원 지원되며, 대학비율에 따른 지역당 비율 할당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서울·경기권, 충청권, 강원권, 호남권, 영남권 5개 권역)
- Q** 연차에 상관없이 시장의 지원금액은 동일한가요?
- A** 2년차 시장의 경우에는 성과평가를 통해 상위 70%는 차등 지원하고, 하위 30%는 지원 제외됩니다.

20-9

상인교육 및 시장인프라 지원

| 교육컨설팅인력 지원으로 상인조직 역량 강화 및 안전점검으로 화재예방 유도

시장 특성에 맞는 맞춤형 실무교육 및 컨설팅으로 시장 자생력을 제고하고, 전문인력(시장매니저) 지원으로 상인조직 역량 강화를 유도함과 동시에, 사고에 취약한 전통시장의 안전점검 및 화재예방 등으로 시장 인프라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규모

아래 지원내용 참조 (192.6억원)

* '16년 지원현황 : 상인교육 36천명, 시장매니저 144곳 146명, 컨설팅 1,356건, 안전점검 747곳

- 상인교육 : 30,000명 목표(32.9억원, 국비100%)
- 상인조직역량강화(시장매니저) : 140곳 140명 내외, 2년 지원(연간 18억원, 국비 70~30%)
- 시장활성화컨설팅 : 시장자문, 점포지도 1,100건 목표 (7억원, 국비100%)
- 전통시장 안전관리 : 안전점검(29.7억원, 국비 100%), 화재감시시스템(105억원, 국비 70%)

지원 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 정한 전통시장, 상점가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를 보유한 곳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시장상인회
-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 안전점검은 무등록시장도 지원 가능

지원 내용

마케팅, 상인교육, 시장매니저, 안전점검 등 사업비의 30~100% 지원

○ 상인교육

교육형태	내 용
상인대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인대학, 60곳) 점포경영, 고객만족, 판매기법 등 종합교육 ◦ (점포대학, 40곳) 디자인경영, VMD, POP, SNS마케팅 등 특화교육
상인대학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도자과정(5곳) : 상인회장 및 임원, 상인대학 졸업상인
ICT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CT 정보화 마인드 함양 및 활용능력 배양
맞춤형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 특성 및 수요에 맞는 상인의식개혁, POP, 친절서비스, 외국어 등
청년상인아카데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창업 및 가업승계를 유도하여 전통시장 활력 제고
선진시장탐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외 선진시장 견학을 통해 시설개선 및 경영기법 벤치마킹
워크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단위 교육을 통한 역량배양, 네트워크 구축

- 상인조직 역량강화(시장매니저) : 행정·유통분야 전문인력 채용시 국비 보조
 - * 급여 1,700천원 기준, 시장 규모별(소,중,대) 국비 70~30% 지원(상인화지자체 30~70%)
- 시장활성화컨설팅 : 시설현대화·경영혁신·상권개발·시장정비사업 자문 및 상품 디스플레이, 점포인테리어 등 점포 지도 제공
- 전통시장 안전관리 : 소방·전기·가스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화재감시 시스템 설치 지원

신청·접수

'16. 12월 중(일부사업은 연중 수시)

- 신청서 작성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우편(마감일 소인분까지)혹은 팩스 송부

심사·평가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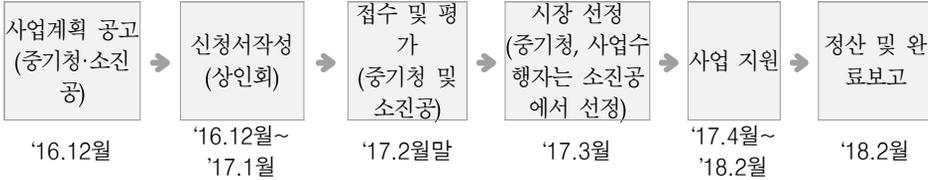
- 시장활성화수준, 사업수행능력, 시장선진화(원산지표시율 등), 상인회조직화 등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 * 신청양식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h.or.kr) 홈페이지에 게시

처리 절차



*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문의처

- 중소기업청 시장상관과 : 042-481-4517, 8929(상인교육, 시장매니저, 컨설팅) 042-481-6870, 6871(안전점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042-363-7843, 7844(상인교육), 7865(시장매니저), 7862(시장활성화컨설팅), 7775(안전점검)

* 중소기업청(www.smba.go.kr)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공지사항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궁금해요! 증기맨



- Q** 맞춤형교육 등은 몇 명이 신청해야 시장으로 강사 파견이 가능한가요?
- A** 20명 신청시 강사가 직접 방문하여 교육을 제공합니다.
- Q** 시장매니저 사업기간을 연장하면, 퇴직금 발생시 국비 보조가 가능한가요?
- A** 순수인건비의 용도로만 지원하여 퇴직금, 연장근로수당, 4대보험료(상인회부담분)와 출장비 등의 비급여적 인건비는 상인회에서 부담하여야 합니다.

20-10

시장마케팅 지원

| 공동마케팅·그랜드세일 및 우수시장박람회 등 마케팅 활동 지원

세일·경품행사 등을 지원하는 공동마케팅 및 그랜드세일, 지역 우수상품을 판매하는 지역상품전시회, 유공포상·우수시장 벤치마킹 기회 제공의 전국우수시장박람회 개최 등 전통시장 마케팅 활동 및 홍보를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공동마케팅 260곳, 우수시장박람회 1곳, 지역상품전시회 6곳
(39.7억원)

* '16년 지원현황 : 공동마케팅 263곳, 그랜드세일 516곳, 코리아세일페스타 400곳, 우수시장박람회 1곳, 지역상품전시회 7곳

- 공동마케팅 : 260곳(33.7억원, 시장규모별 차등 지원, 국비 90%, 자부담 10%)
- 전국우수시장박람회 : 1곳(4.5억원, 국비 70%, 지자체 30%)
- 지역상품전시회 : 6곳(1.5억원, 국비 70%, 지자체 30%)

지원 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 정한 전통시장, 상점가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를 보유한 곳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시장상인회
-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지원 내용

공동마케팅, 지역상품전시회 등의 마케팅 활동은 국비 70%~100% 지원

- 공동마케팅 : 공동마케팅(연중), 명절그랜드세일(2·9월), 대규모세일행사(5, 10월) 기간 세일, 특가판매, 경품행사 등 이벤트 실시에 따른 마케팅·홍보비 지원
- 전국우수시장박람회 : 유공 포상, 우수시장 벤치마킹 기회 제공 및 지역 우수상품시장 홍보를 위한 전시회 개최 비용 지원
- 지역상품전시회 : 지역 우수상품 및 특산품 판매 및 홍보를 위한 전시회 개최 비용 지원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그랜드세일 등 대규모세일행사 확대(연4회, 회당 300~500곳)
* 그랜드세일 2회(설·추석), 대규모세일행사 2회(5·10월)

신청·접수

'16. 12월 중

- 신청서 작성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우편(마감일 소인분까지) 혹은 팩스 송부

심사·평가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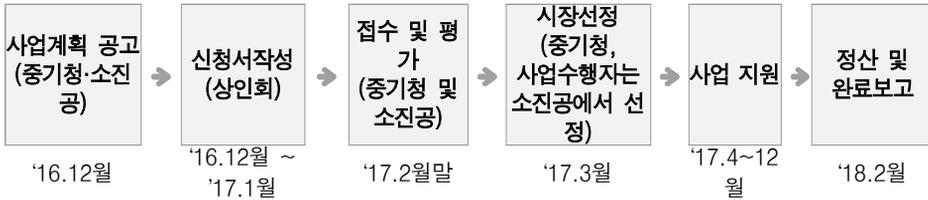
- 시장활성화수준, 사업수행능력, 시장선진화(원산지표시율 등), 상인회조직화 등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 * 신청양식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홈페이지에 게시

처리 절차



*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문의처

- 중소기업청 시장상권과 : 042-481-4517, 8929(공동마케팅, 그랜드세일)
042-481-4574(전국우수시장박람회, 지역상품전시회)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마케팅지원실 : 042-363-7631, 7633, 7646(공동마케팅, 그랜드세일), 7635(전국우수시장박람회), 7631(지역상품전시회)

* 중소기업청(www.smba.go.kr)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공지사항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궁금해요! 증기맨



Q 공동마케팅 사업의 세부적인 지원내용은 무엇인가요?

A 세일·경품행사, 예술작품 전시회 개최, 유·청소년 대상 전통시장 체험학습, 공동쿠폰사업, 공동포인트 제작 지원, 시장 홍보물 제작 및 송출, 홍보전단, 홈페이지 제작, BI·CI개발, 테마골목 브랜드, 패션쇼 등 시장 특성에 맞는 형태가 있어요

20-11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 전통시장만의 차별화된 장보기·배송서비스 지원

전통시장만의 차별화된 장보기·배송서비스 지원

대형마트 및 SSM에서 실시 중인 배송서비스와 차별화된 전통시장만의 장보기·배송서비스를 도입 하여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장보기·배송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 규모

- '17년 총 84개 전통시장 지원(예산 18.6억 원)
- * '16년 지원 현황 : 66곳 지원

지원 대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 정한 전통시장, 상점가, 활성화 구역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를 보유한 곳
 -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시장 상인회
 -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에 따른 상점가 진흥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 「민법」에 따라 시장·상점가·시장활성화구역의 상인이 설립한 법인
 -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 제67조에 따른 시장 관리자

지원 내용

- 장보기 및 배송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사업 홍보 및 주문관리 시스템 구축 등 지원
- 지원내용 및 금액 : 콜센터, 배송기사, 장보기 도우미 인건비

< 분야별 월 인건비 단가 >

구 분	콜센터	배송인력	장보기도우미
월 인건비	1,360천원	1,570천원	700천원

○ 지원비율 : 연차에 따라 국비 90~50% 지원

< 연차별 국비 지원 비율 >

연 차	사업비 부담비율	비 고
1년차	국비 90%, 자부담 10%	-
2년차	국비 70%, 지방비·자부담 30%(상인회 10% 이상)	지방비 미지원시 자부담 30%
3년차	국비 50%, 지방비·자부담 50%(상인회 10% 이상)	지방비 미지원시 자부담 50%
정착	국비 50%, 지방비·자부담 50%(상인회 10%이상)	지방비 미지원시 자부담 50%

신청·접수

- (신규) '17. 4~5월 중
- * 관할 지자체에 신청서 및 사업 계획서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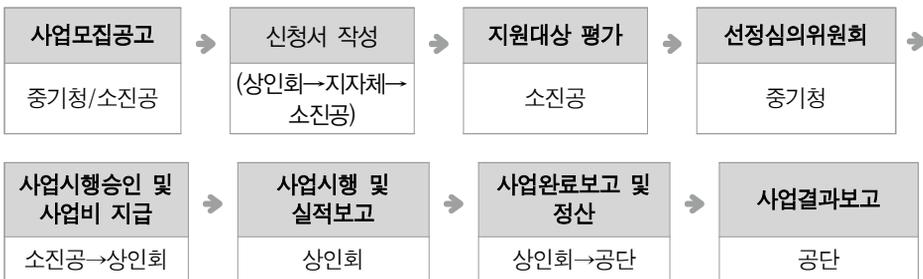
< 심사·평가 주요내용 >

- 시장 선진화 수준, 상인회 조직화, 배송 인프라 구축현황 등

제출 서류

- 사업 신청서, 사업 계획서, 상인회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 * 신청양식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홈페이지에 게시

처리 절차



문의처

- 중소기업청 시장상권과 (042)481-4560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마케팅지원실 (042)363-7633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 www.bizinfo.go.kr / 전화상담 ☎1357

궁금해요! 중기맨



- Q** 선정 후 지원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A** 전통시장 정보기 및 배송서비스 지원사업은 선정후 최대 3년차까지 지원이 됩니다. 단, 매년 점검 및 평가를 통해 지원이 先 종료 될 수 있습니다.
- Q** 3년 지원 종료 후, 신규시장으로 사업신청이 가능한가요?
- A** 3년 지원 종료 후에 신규 시장으로 사업 신청은 불가하며, 정착시장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정착시장은 사업 모델발굴 육성을 위해 추진되며, 최대 2년까지 지원 예정입니다.

20-12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

| 저렴한 비용의 공제료로 전통시장 화재 시 피해 보상

전통시장 상인을 회원으로 순보험료로만 공제료가 산출된 저가의 보장성 공제 사업을 도입, 가입자 납부 공제료로 재원을 조성하여 화재 시 피해를 보상해드립니다.

사업 내용

- 상인이 납부한 공제료로 공제기금을 조성하고 사업운영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하여 저가의 보장성 화재공제사업 운영
- 대형화재 발생가능성이 상존해 있는 전통시장의 사회재난 안전망 구축과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복구 및 서민생활안정 지원

상품 안내

- 가입대상 : 전통시장 특별법 상 전통시장 (등록, 인정, 기타)
- 가입단위 : 시장(상인회) 및 개별점포
- 가입목적물 : ① 건물(자기점포, 임차점포), 시설(내외부 마감재, 조명시설 및 부대시설) 및 집기
 - ② 재고자산
 - ③ 타인의 신체 및 재물(화재배상책임 특약)
- 가입기간 : 가입일(공제금 납입일)로부터 1년(종료일의 16:00까지)
 - * '17년 1월부터 가입가능
- 보상방식 : 가입한도(건물3천만, 동산3천만) 내 실손보상
- 상품구성 : 기본상품(재물손해), 임차자배상책임 특약, 화재배상책임 특약
- 납입방법 : 연납
- 공 제 료 : 건물구조급수에 따라 2개 등급(A, B)으로 차등

〈자가점포 건물 1천만, 동산 1천만 기준 예시〉

구분		건물	동산	계	
주계약	재물손해	A급	27,400원	38,600원	66,000원
		B급	43,100원	58,400원	101,500원
특 약	화재배상책임	- 대인 : 1인당 사망1억, 부상 2천만원 한도 - 대물 : 1억 한도		6,200원	
	임차자배상특약	건물 공제료의 10% 차감			

〈건물구조급수에 따른 등급구분〉

급별	주요구조부	기둥/보/바닥	지붕(틀)	외벽
A급(1~2급)		내화구조	내화구조 / 불연재료	내화구조
B급(3~4급)		상기 이외의 것		

지원이 안되는 점포

- ✓ 사업자등록이 안되어 있는 점포(사업자등록번호 확인)
- ✓ 전통시장 내 위치하지 않은 일반 점포

신청·접수

-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으로 송부

제출 서류

- 가입신청서
- 건물구조급수를 A로 선택한 경우 건물자재를 확인할 수 있는 건축물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1부.

*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또는 철근콘크리트조 불연재료지붕 명시 확인 필

문의처

- 중소기업청 시장상권과 : 042-481-4563, 4516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권육성실 : 042-363-7773
- 전통시장 화재공제 홈페이지 : fma.semas.or.kr

처리 절차



궁금해요! 중기맨



- Q**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 A** 가입을 원하시면 '17년 언제든지 상시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접수, 심사의 절차를 거쳐 공제료를 납입완료하시면 납입일로부터 가입이 인정됩니다.
- Q** 민영보험사의 화재보험과 전통시장 화재공제 상품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A** 가장 큰 차이는 보상 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민영보험사에서 판매되는 화재보험은 대부분 실손이 아닌 비례보상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실제가액 부동산 5천만, 동산 2천만 원인 가입목적물에 가입금액 부동산 2천 5백만, 동산 1천만원 짜리 상품을 가입하고 일부(50%) 화재 발생 시, 민영 화재보험은 실제가액의 50%만을 보험에 가입하였으므로 실지금액은 부동산 1,250만, 동산 500만원만을 지급합니다. 이를 비례보상이라 합니다. 하지만 전통시장 화재공제 상품은 실손보상으로 부동산 2천5백만, 동산 1천만을 보상하며 확정된 피해액을 한도 내 전액 보상합니다.



제 **21** 장
소상공인 정책자금

21-1 소공인특화자금	413
21-2 성장촉진자금	415
21-3 일반경영안정자금	420
21-4 수출고용특별자금	422

21-1

소공인특화자금

| 숙련기술 기반의 소공인 지원

숙련기술 기반의 소공인이 필요로 하는 장비 도입, 경영안정 등에 필요한 자금 지원

지원 규모

4,100억원

지원 대상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소공인

* 주요업종 : 수제화, 의류·섬유, 가죽·가방, 기계·금속가공, 인쇄 등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유흥 향락 업종, 전문 업종 등 용자제외 대상업종(별표)에 해당되지 아닐 것
- ✓ 휴·폐업,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개인 또는 기업 등

지원 내용

- 대출금리(변동금리) : 매분기 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 공고
- 대출한도 : 업체당 1억원 (시설 5억원)
- 대출기간 : 운전자금(5년, 거치 2년) / 시설자금(8년, 거치 3년)
- 대출 취급 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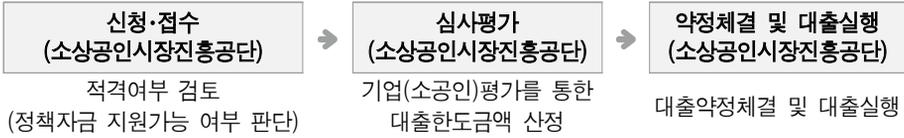
신청·접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국 59개 지역센터에서 신청·접수

제출 서류

사업자등록증, 정책자금 신청서류 등

처리 절차



문의처

- 국번없이 1357,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정책과(042-481-4361)

21-2

성장촉진자금

| 장수 소상공인의 재성장 및 재도약 지원

“성장기” 및 “성숙기” 소상공인에 대한 활력 제고 및 성장·재도약 자금 지원

지원 규모

2,300억원

지원 대상

사업자등록증 기준 업력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유흥 향락 업종, 전문 업종 등 용자제의 대상업종(별표)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 ✓ 휴·폐업,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개인 또는 기업 등

지원 내용

- 대출금리(변동금리) : 매분기 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 공고
- 대출한도 : 업체당 1억원(시설분야 2억원 한도)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 취급 금융기관(19개) : 국민, 기업, 신한, 우리, 산업, 한국씨티, KEB하나, 부산, 대구, 광주, 전북, 경남, SC, 제주, 농협중앙회, 저축은행중앙회, 수협중앙회, 새마을금고, 신협중앙회

신청·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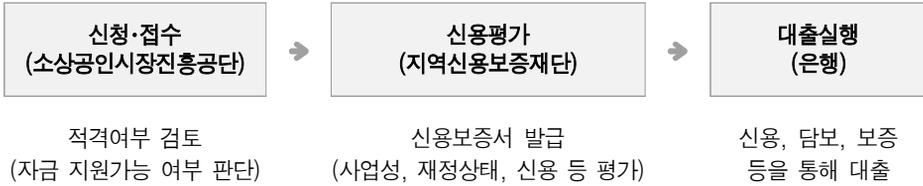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국 59개 지역센터에서 신청·접수

제출 서류

사업자등록증, 정책자금 신청서류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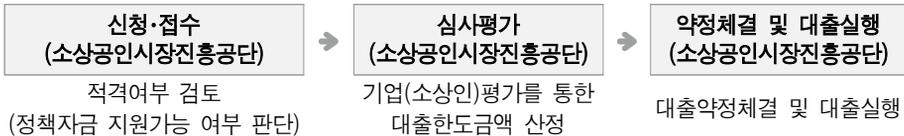
처리 절차

< 상품·영업 서비스 분야 : 대리대출 >



* 순수신용·부동산 담보의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담 후 협약은행에 방문하여 대출실시

< 시설분야 : 직접대출 >



문의처

- 국번없이 1357,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정책과(042-481-4361)

<별표 1> 소상공인 정책자금 용자제외업종

표준산업분류	업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109 중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1	주류 도매업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전통주 등"의 매출액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가능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16 중	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221 중	주류 소매업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전통주 등"의 매출액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가능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도소매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55112	여관업
56211	일반유희주점업
56212	무도유희주점업
58122 중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9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게임 아바타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단, 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은 신청가능)
68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단, 부동산관리업(6821),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하는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6822)은 신청가능 -부동산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자문및중개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거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표준산업분류	업종
69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71520	지주회사
71531 중	컨설팅 또는 자문서비스 중 부동산컨설팅 서비스
731	수의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87에 해당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가능(국세청은 보건업)
91113	경주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21 중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1 중	복권 판매업
91249	기타 캐블링 및 베틀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안마원 규모(300M2 이하)의 안마시술소는 장애인자 금 신청가능)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 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기업청장 이 지정한 업종

< 별표 2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원센터 연락처

구분	센터	전화(FAX)	구분	센터	전화(FAX)	구분	센터	전화(FAX)
- 수도권 지역 지원센터	(서울)중부센터	(02)720-4711 (02)730-9360	- 광역지역 지원센터	(광주)남부센터	(062)366-2122 (062)366-2136	- 충청권 지역 지원센터	(대전)북부센터	(042)864-1602 (042)864-1606
	(서울)동부센터	(02)2215-0981 (02)2215-0984		경기인천지역 본부	(062)954-2084 (062)954-2085		(대전)남부센터	(042)223-5301 (042)223-0665
	(서울)서부센터	(02)839-8312 (02)839-8730		(광주)북부센터	(062)525-2724 (062)525-2726		(충남)안산센터	(041)567-5302 (041)567-5308
	(서울)남부센터	(02)585-8622 (02)585-8626		(전남)목포센터	(061)285-6347 (061)285-6349		(충남)논산센터	(041)733-5064 (041)733-5067
	(서울)북부센터	(02)990-9101 (02)990-9104		(전남)여수센터	(061)665-3600 (061)665-3607		(충남)서산센터	(041)663-4981 (041)663-4980
	(강원)춘천센터	(033)243-1950 (033)244-9164		(전남)순천센터	(061)741-4153 (061)741-4159		(충남)공주센터	(041)852-1183 (041)852-1186
	(강원)강릉센터	(033)645-1950 (033)645-3695		(제주)제주센터	(064)751-2101 (064)751-2103		(충북)청주센터	(043)234-1095 (043)234-1091
	(강원)원주센터	(033)746-1950 (033)746-1990		(전북)전주센터	(063)231-8110 (063)231-8112		(충북)충주센터	(043)854-3616 (043)854-3619
	(강원)삼척센터	(033)575-1950 (033)575-1953		(전북)남원센터	(063)626-0371 (063)626-0372		(충북)음성센터	(043)873-1811 (043)873-1814
	- 부산·대구·경남 지역 지원센터	(부산)북부센터		(051)341-8052 (051)342-8175	(전북)익산센터		(063)853-4411 (063)853-4413	(충북)제천센터
(부산)남부센터		(051)633-6562 (051)633-0675	(전북)군산센터	(063)445-6317 (063)445-6316	(충북)옥천센터	(043)731-0924 (043)731-0926		
(부산)동부센터		(051)761-2561 (051)761-2564	(전북)정읍센터	(063)533-1781 (063)533-1783				
(부산)중부센터		(051)469-1644 (051)469-3286	(경기)수원센터	(031)244-5161 (031)244-5123				
(울산)울산센터		(052)260-6388 (052)260-2472	(경기)평택센터	(031)656-5302 (031)8024-5917				
(경남)창원센터		(055)275-3261 (055)275-3264	(경기)화성센터	(031)8015-5301 (031)8015-5304				
(경남)진주센터		(055)758-6701 (055)758-7102	(경기)광명센터	(02)2066-6348 (02)2066-6347				
(경남)김해센터		(055)323-4960 (055)323-4963	(경기)성남센터	(031)788-7341 (031)788-7345				
(경남)통영센터		(055)648-2107 (055)648-2109	(경기) 의정부센터	(031)876-4384 (031)876-4386				
- 대구·경북 지역 지원센터		(대구)남부센터	(053)629-4200 (053)628-4314	(경기)부천센터	(032)655-0381 (032)655-0383			
	(대구)북부센터	(053)341-1500 (053)341-3900	(경기)고양센터	(031)925-4266 (031)925-4269				
	(경북)안동센터	(054)854-3281 (054)854-3284	(경기)안양센터	(031)383-1002 (031)383-0550				
	(경북)구미센터	(054)475-5682 (054)475-5681	(경기)안산센터	(031)482-2590 (031)482-2593				
	(경북)포항센터	(054)231-4363 (054)231-4365	(인천)남부센터	(032)437-3570 (032)437-3574				
	(경북)경주센터	(054)776-8343 (054)776-8346	(인천)북부센터	(032)514-4010 (032)514-4014				

21-3

일반경영안정자금

| 소상공인의 점포운영 자금을 지원

소상공인의 경영애로를 해소하고 영업지속률을 높이기 위하여 점포운영 자금 지원

지원 규모

9,350억원

지원 대상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자 (광업·제조·건설·운수업은 10인 미만)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유흥 향락 업종, 전문 업종 등 용자제외 대상업종(별표)에 해당되지 아닐 것
- ✓ 휴·폐업,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개인 또는 기업 등

지원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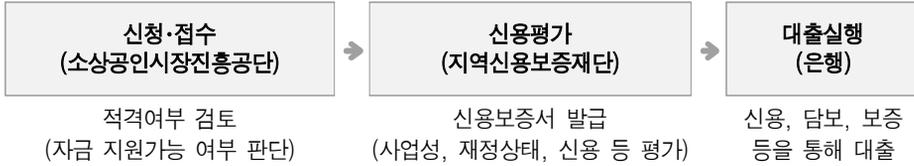
- 대출금리(변동금리) : 매분기 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 공고
- 대출한도 : 업체당 7천만원 (장애인기업지원자금은 별도의 대출한도·금리 등이 적용)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 취급 금융기관(19개) : 국민, 기업, 신한, 우리, 산업, 한국씨티, KEB하나, 부산, 대구, 광주, 전북, 경남, SC, 제주, 농협중앙회, 저축은행중앙회, 수협중앙회, 새마을금고, 신협중앙회

신청·접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국 59개 지역센터에서 신청·접수

제출 서류

사업자등록증, 정책자금 신청서류 등

처리 절차

* 순수신용·부동산 담보의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담 후 협약은행에 방문하여 대출실시

문의처

- 국번없이 1357,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정책과(042-481-4361)

21-4

수출고용특별자금

| 소상공인의 수출 및 고용 활성화 지원

수출 소상공인 및 청년 고용창출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 자금 지원

지원 규모

500억원

지원 대상

수출 실적이 있는 소상공인, 청년사업자 또는 청년근로자 고용
소상공인

* 청년사업자 : 만 39세 이하 / 청년근로자 : 만 29세 이하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유흥 향락 업종, 전문 업종 등 용자제외 대상업종(별표)에 해당되지 아닐 것
- ✓ 휴·폐업,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개인 또는 기업 등

지원 내용

- 대출금리(변동금리) : 매분기 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 공고
- 대출한도 : 수출소상공인 1억원 / 청년사업자·청년근로자 고용사업자 7천만원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 취급 금융기관(19개) : 국민, 기업, 신한, 우리, 산업, 한국씨티, KEB하나, 부산, 대구, 광주, 전북, 경남, SC, 제주, 농협중앙회, 저축은행중앙회, 수협중앙회, 새마을금고, 신협중앙회

신청·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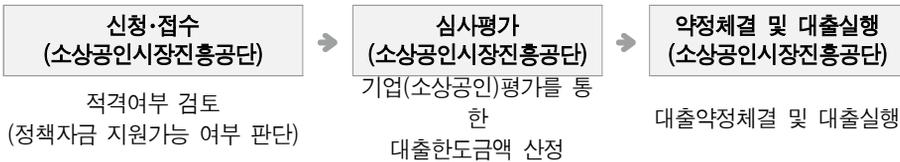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국 59개 지역센터에서 신청·접수

제출 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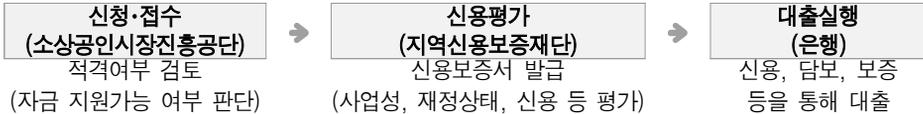
사업자등록증, 정책자금 신청서류 등

처리 절차

< 수출소상공인 : 직접대출 >



< 청년사업자·청년근로자 고용사업자 : 대리대출 >



* 순수신용·부동산 담보의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담 후 협약은행에 방문하여 대출 실시

문의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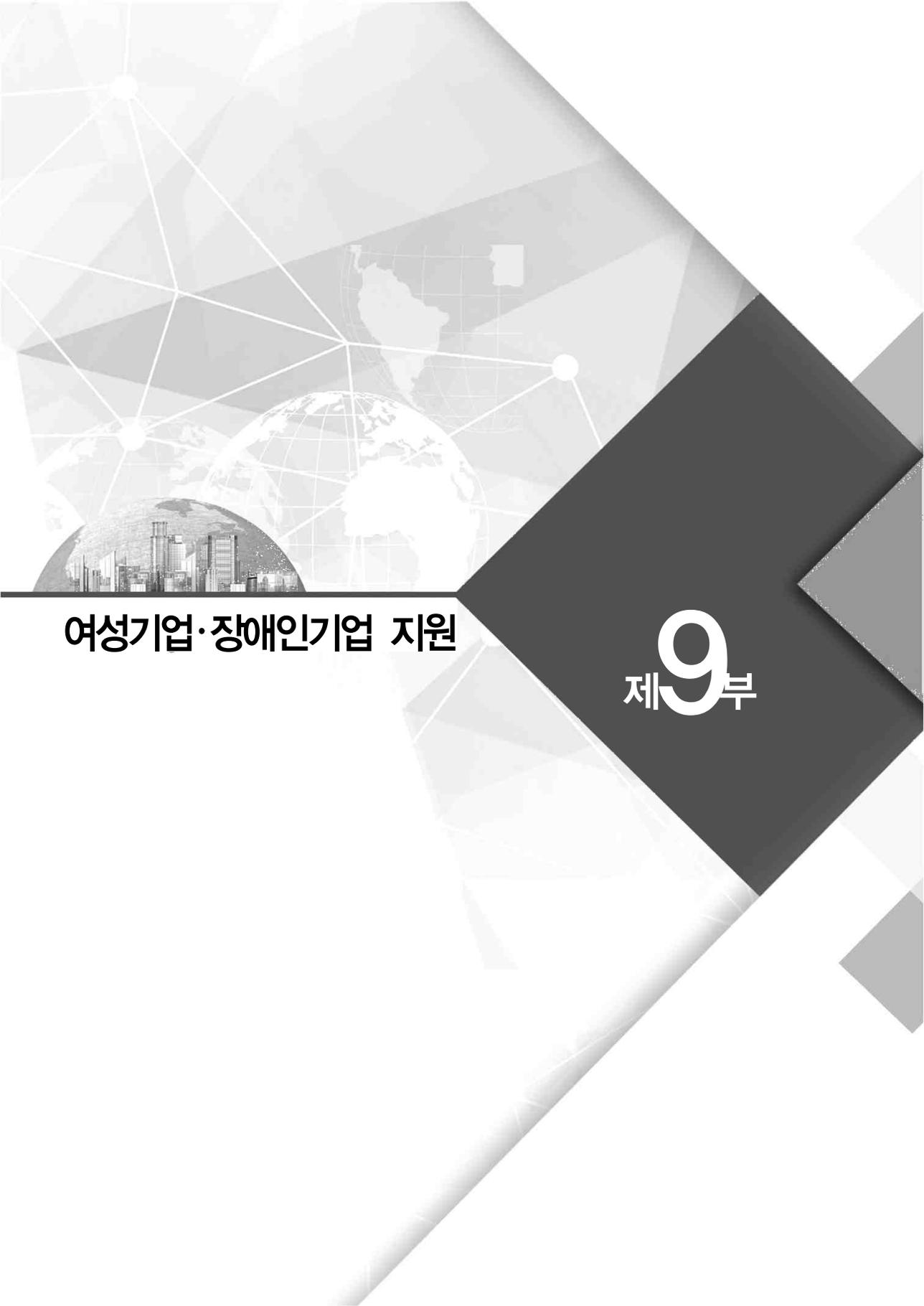
- 국번없이 1357,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정책과(042-481-4361)

궁금해요! 증기맨



Q 수출실적은 직수출만 가능한가요?

A 직수출과 간접수출 모두 가능합니다. 단, 한국무역협회 또는 시중은행에서 발급한 수출실적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실적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여성기업·장애인기업 지원

제9부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www.smba.go.kr



중기매과 함께 알아보는 여성기업·장애인기업 지원



- Q** 가사일을 하다 보면 불편한 사항 등을 개선한 아이디어를 많이 생각하는데요, 이를 제품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A** 중소기업청은 이러한 분야를 단계적으로 도와드리기 위해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를 지역별로 운영하고 있으며, 창업부터 기술개발, 시제품화, 판로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각 지역별 센터에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립니다.
- Q** 여성기업 확인서는 어디에서 발급받나요?
- A** 기업이 위치한 해당지역의 지방중소기업청에서 발급해드립니다. 여성기업으로 확인을 받기 위해서는 여성대표자로서 실질적으로 경영에 참여하고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중소기업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시면 업무 위탁을 받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지회에서 7일 이내 현장실사를 통해 여성기업 확인여부를 결정하고 최종적으로 지방중소기업청에서 검토하여 온라인상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성기업확인서 발급사업설명 참조)
- Q** 여성기업을 운영하다 보니 경영상 애로사항이 있어도 어디가서 도움을 청해야 할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쉽게 물어보고 저의 일 같이 해결해주는 곳은 없나요?
- A** 중소기업청은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내에 "여성경제인 DESK" 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애로사항의 해결방법을 찾아 낼 수 있으며, 필요시 전문가가 직접 애로해결을 도와 드릴수도 있습니다.
- Q** 후천적 시각장애인입니다. 나이도 젊은데 집에만 있을 수도 없고 해서 창업을 해보려 합니다. 시각장애인이 창업할 수 있는 분야는 어떤 것이 있나요?
- A** 안마나 역술, 의류리폼 사업 등을 많이 하십니다. 특히 시각장애인의 경우 안마를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구요, 관련 창업교육이 필요하다면 원스톱 장애인 창업교육을 신청하셔서 창업기초교육과 특화교육을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원스톱 장애인 창업교육 사업설명 참조)

- Q** 청각장애인인데 작은 국수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매출이 어느 정도규모에 올라 동남아 시장으로 진출해볼까 하는데 지원받을 수 있는지요?
- A** 우수 장애인기업을 발굴해 국내외 전시회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해외전시회의 경우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산업재산권 출원과 홍보 브로셔, 제품 카탈로그 제작 등 홍보도 지원해 드리니 이용해보세요. (장애인기업 맞춤형 지원 사업 설명 참조)



제 22 장

여성기업·장애인기업 지원

22-1 여성CEO MBA 교육	429
22-2 전국 여성CEO 경영연수	431
22-3 여성창업보육센터 지원	432
22-4 여성창업경진대회	435
22-5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438
22-6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지원	441
22-7 여성기업 해외진출 지원	444
22-8 여성 가장 창업자금 지원	446
22-9 여성경제인 DESK 운영	448
22-10 TV홈쇼핑 판매지원	450

22-1

여성CEO MBA 교육

| 여성CEO 역량강화 및 네트워크 구축

여성 경영자를 대상으로 분야별 전문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역량강화 및 경영혁신 아이디어 창출을 통한 기업 경쟁력 제고와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16회 교육 개최, 여성CEO 500명

* '16년 지원현황 : 27회 교육 개최, 여성CEO 950명

지원 대상

여성CEO 및 임원

지원 내용

강사료, 교재비, 홍보비 등

- 분야별 경영실무 교육 (마케팅, 재무, 경영전략 등)
- 경영자문컨설팅 제공 (법률, 자금, 수출 등)
- 네트워크 프로그램 (워크숍 및 성공기업방문)

신청·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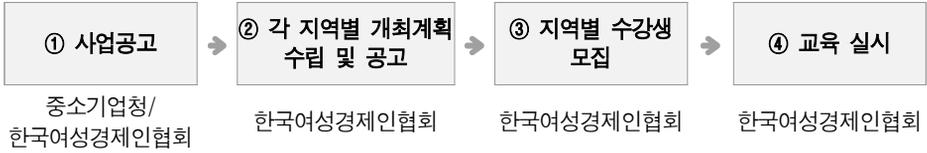
'17. 3~12월(지역별 개최일정 상이)

- 사업 신청 : 여성기업 종합정보포털(www.wbiz.or.kr) → 회원가입 → 교육/연수 → 여성CEO MBA 교육 → 온라인신청

제출 서류

여성CEO MBA 교육 신청서 및 사업자등록증

처리 절차



문의처

- 중소기업청 공공구매판로과 : 042-481-4376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 02-369-0924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궁금해요! 중기맨



- Q** 여성CEO MBA 교육을 수강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 A** 지역별 개최 일자가 상이한 관계로, 해당 지역의 지회로 문의하시거나 홈페이지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여성기업 종합정보포털(www.wbiz.or.kr) → 교육/연수 → 여성CEO MBA 교육 → 온라인 신청
- Q** 여성CEO MBA 교육을 수강할 수 있는 자격은 무엇인가요?
- A** 기본적으로 여성CEO 및 여성기업 임원이시면 누구나 수강 가능합니다.

22-2

전국 여성CEO 경영연수

| 전국 여성경제인 간 정보교류 및 네트워킹 강화

전국 여성CEO들이 한 자리에 모여 경험 및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 업종 및 지역 간 네트워킹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규모

전국 여성CEO 700여명

* '16년 지원현황 : 전국 여성CEO 731명

지원 대상

전국 여성CEO 누구나 참여가능

지원 내용

강사료, 교재비, 홍보비, 장소임차료 등

- 전문가 초청강연, 정책토론회, 여성경제인간 네트워크 프로그램, 문화체험 등

신청·접수

공고일로부터 선착순으로 신청가능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각 지회를 통해 신청 가능

제출 서류

전국 여성CEO 경영연수 참가 신청서

처리 절차



문의처

- 중소기업청 공공구매판로과 : 042-481-4376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 02-369-0912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22-3

여성 창업보육센터 지원

| 여성의 창업 촉진 및 일자리 창출지원지원

여성 창업 초기기업 및 예비창업자의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 창업보육공간과 경영 활동을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16개 지역 센터 205개 창업보육실 운영('17년 하반기 경기북부 센터 개설 예정)

지원 대상

창업 2년 이내의 여성기업 및 예비여성창업자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금융기관의 신용불량거래자인 경우
- ✓ 국세, 지방세 체납자 및 기타 정부지원사업 부적격자

우선선정

- 여성창업경진대회 수상자

지원 내용

- 창업보육실(입주공간) 제공
 - ▷ 입주기간 : 입주일로부터 1년(2년 연장가능)
 - * 입주공간면적 : 33.1㎡ 내외
 - ▷ 입주시설 : 공동 사무기기, 초고속인터넷, 보안장비 제공
- 여성기업 경영지원 제공
 - ▷ 경영, 회계, 법무, 마케팅 등 전문가 컨설팅 제공
 - ▷ 산업디자인 개발, 산업지적재산권 및 각종 인증획득 지원
 - ▷ 국내외 판로지원(국내외 박람회 참가지원, 시장개척단 파견 지원)

- 여성기업 기업환경 조성
 - ▷ 중소기업 지원정책, 여성기업지원사업 등 정보제공
 - ▷ 여성기업(인), 유관기관, 지역단체 등 네트워크 형성

신청·접수

- 신청 : 해당 지역의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에 신청
 - ▷ 신청서류는 여성기업통합정보망(www.wbiz.or.kr)에서 다운로드 가능
 - ▷ 보육실 공실 발생 시 입주기업 수시 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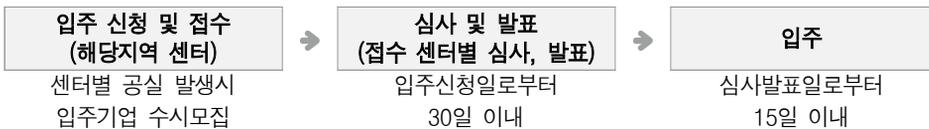
심사 및 평가 주요 내용

- 창업자역량, 사업계획서 타당성, 상품화가능성, 시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신청 서류

- ▷ 입주신청서, 사업계획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최근 2개년 재무제표(해당자에 한함), 대표 자이력서, 회사소개서 각 1부

처리 절차



문의처

- 중소기업청 공공구매판로과 : 042-481-4376
- 여성기업 종합정보포털(www.wbiz.or.kr) : 02-369-0993
- 각 지역센터 연락처

센터명	전화번호	소재지
중앙	(02) 369-0916	06224)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21 삼영빌딩 4층
서울	(02) 702-4244	04701)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386 삼협빌딩 6층
부산	(051) 465-1001	48730)부산시 동구 중앙대로 296번길 3-3 극동빌딩 4층
대구경북	(053) 742-5192	42040)대구시 수성구 화랑로2길 107 조이빌딩 5층
광주	(062) 527-1612	61250)광주시 북구 무등로 180번길 5 2층
대전	(042) 526-2862	34025)대전시 유성구 테크노2로 187, 미건 테크노월드 2차 2층
인천	(032) 260-3600	21633)인천시 남동구 남동대로 215번길 30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8층
울산	(052) 998-8585	44677)울산시 남구 돌질로 20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3층
강원	(033) 241-3475	24234)강원도 춘천시 후석로 366 2층
경기	(031) 211-0293	16490)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420 DSD빌딩 3층
충북	(043) 236-6561	28558)충북 청주시 흥덕구 예체로 167 4층
전북	(063) 272-9906	54940)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주천서로 477 2층
경남	(055) 212-1241	51408)경남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362 창원컨벤션센터 502호
제주	(064) 726-4467	63277)제주시 관덕로 15길 23 선우빌딩 2층
충남	(041) 569-0572	31110)충남 천안시 서북구 동서대로 168 충남타워 10층
전남	(061) 284-4343	58567)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약4로 86 4층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궁금해요! 중기맨



- Q** 입주시 임대보증금, 월세, 관리비는 어떻게 산정, 관리되나요?
- A** 전국 16개 지역센터에 여성창업보육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임대보증금은 300만원에 월세는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리비는 지역 특성에 따라 해당 입주사 무실 전용면적에 센터별로 책정된 m2당 건물관리비를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Q** 입주당시 사업자등록이나 법인설립이 되어 있어야 하나요?
- A** 모집 대상에 예비여성창업자도 모집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입주신청 입주당시 사업자등록이나 법인설립이 반드시 되어 있어야함 하는 것은 아닙니다.
- Q** 여성창업보육센터가 다른 창업보육센터와 차별되는 점은 무엇인가요?
- A** 여성기업만 입주를 할 수 있기에 입주기업간 네트워크 구축이 용이하며, 여성기업의 특징을 반영한 자체 육성사업 연계의 용이성이 있습니다.

22-4

여성창업경진대회

| 여성의 창업 촉진 및 창업분위기 조성

예비여성 창업자들의 창의적이고 우수한 창업아이템을 조기에 발굴, 육성하고, 여성의 창업분위기를 조성하여 적극적인 창업을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12개팀(대상 1, 최우수상 2, 우수상 3, 장려상 6)

* '16년 12개팀 수상

지원 대상

사업아이디어, 창업 아이템 등 우수비즈니스모델을 보유한 예비 창업자 및 창업 후 2년 미만 여성기업

지원 내용

- 시상 및 포상(1,000만원 이내 및 중소기업청장상). 수상자는 여성창업보육실 입주 우대
- 역량강화를 위한 사전교육 제공, 여성CEO 멘토와 수상자 강의 멘토링을 통한 성공경험 전수
- 시제품 제작지원, 제품디자인 및 지적재산권(IP) 획득, 홍보물제작(영상, 브로셔 등) 마케팅, CI 개발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맞춤 지원 실시

신청·접수

- 신청 : 여성기업 종합정보포털 홈페이지 접수
 - ▷ 신청서류는 여성기업 종합정보포털 홈페이지(www.wbiz.or.kr)에서 다운로드 가능

<심사 및 평가 주요 내용>

- 서류평가
 - ▷ 아이디어부문: 창업준비도(창업동기, 경영·인력현황, 독창성 등 35%), 기술성(기술의 우수성, 기술개발의 진척도 등 20%), 사업성(시장규모, 성장가능성 등 35%), 경영진(핵심기술보유 인력확보 등, 5%), 재무계획성(소요자금 분석의 타당성, 자금조달계획의 타당성 5%)
 - ▷ 실전창업부문: 창업준비도(창업동기, 경영·인력현황, 독창성 등 25%), 기술성(기술의 우수성, 기술개발의 진척도 등 30%), 사업성(시장규모, 성장가능성 등 25%), 경영진(핵심기술보유, 인력확보 등 10%), 재무계획성(소요자금 분석의 타당성, 자금조달계획의 타당성 10%)
 - ▷ 사회문제부문: 창업준비도(창업동기, 경영·인력현황, 독창성 등 30%), 기술성(기술의 우수성, 기술개발의 진척도 등 20%), 사업성(시장규모, 성장가능성 등 35%), 경영진(핵심기술보유, 인력확보 등 10%), 재무계획성(소요자금 분석의 타당성, 자금조달계획의 타당성 5%)
- 발표평가
 - ▷ 발표평가 : 창업개요(인력현황, 비전 및 PT능력, 등 35%), 기술성(기술의 우수성, 기술의 파급 효과 등 20%), 시장성(35%), 경쟁력(5%), 성장성(성장전략의 타당성, 자금조달계획 등 5%)

제출 서류

- 참가신청서, 사업계획요약서, 사업계획서, 자격사항에 대한 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 (해당자에 한함) 각 1부

처리 절차



문의 처

- 중소기업청 공공구매판로과 : 042-481-4376
- 여성기업 종합정보포털 (www.wbiz.or.kr) : 02-369-0911

○ 각 지역센터 연락처

센터명	전화번호	소재지
중앙	(02) 369-0911	06224)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21 삼영빌딩 4층
서울	(02) 702-4244	04701)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386 삼협빌딩 6층
부산	(051) 465-1001	48730) 부산시 동구 중앙대로 296번길 3-3 극동빌딩 4층
대구경북	(053) 742-5192	42040) 대구시 수성구 화랑로2길 107 조이빌딩 5층
광주	(062) 527-1612	61250) 광주시 북구 무등로 180번길 5 2층
대전	(042) 526-2862	34025) 대전시 유성구 테크노2로 187, 미건 테크노월드 2차 2층
인천	(032) 260-3600	21633) 인천시 남동구 남동대로 215번길 30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8층
울산	(052) 998-8585	44677) 울산시 남구 돌질로 20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3층
강원	(033) 241-3475	24234) 강원도 춘천시 후석로 366 2층
경기	(031) 211-2235	16490)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420 DSD빌딩 3층
충북	(043) 236-6561	28558)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예체로 167 4층
전북	(063) 272-9906	54940)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주천서로 477 2층
경남	(055) 212-1241	51408) 경남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362 창원컨벤션센터 502호
제주	(064) 726-4467	63277) 제주시 관덕로 15길 23 선우빌딩 2층
충남	(041) 569-0572	31110) 충남 천안시 서북구 동서대로 168 충남타워 10층
전남	(061) 284-4343	58567) 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약4로 86 4층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22-5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 여성기업의 공공조달시장 판로 확대

여성이 소유하고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에 대한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을 통해 공공기관의 여성기업제품 우선구매 및 경쟁입찰 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원 규모

여성기업 11,500개사

* 여성기업 확인서를 신청한 기업에 한함, 위 지원 규모를 초과하더라도 신청 가능

지원 대상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여성기업

* 여성이 소유하고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으로, 법인의 경우 여성대표자가 최대출자자인 상법상의 회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 사업자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법인의 경우, 상법상의 회사가 아닌 기업
 - *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
- ✓ 여성대표자가 최대출자자가 아닌 경우
- ✓ 여성이 실질적으로 경영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지원 내용

-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신청·접수

연중수시(온라인신청)

-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 접속 → 중소기업 회원가입 → 기업 확인서 신청/발급 → 여성기업확인 → 신청/발급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 및 자가진단 → 정보입력 및 신청서류 업로드

| 심사·평가내용 |

- 서면조사를 통한 여성대표의 해당기업 소유여부 확인 및 직접방문조사를 통한 여성대표의 직접경영여부 확인

신청 서류

- 법인사업자: 여성기업 확인 신청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사업자등록증, 주주명부(주식회사), 사원명부(유한회사), 정관(유한책임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 주식 등 지분관계도, 주식 등 변동사항명세서(필요시)
- 개인사업자: 여성기업 확인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동업계약서(공동대표인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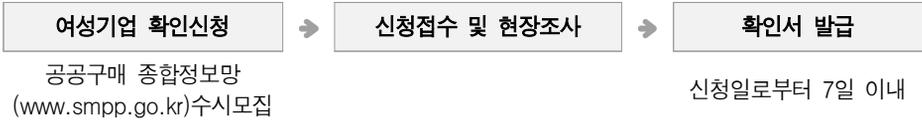
문의처

- 중소기업청 공공구매판로과 : 042-481-4376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 02-369-0910
- 지역별 여성기업 확인 신청서 접수기관(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국지회) 연락처

지회명	전화번호	소재지
본회	(02) 369-0910	06224)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21 삼영빌딩 4층
서울	(02) 702-4244	04701)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386 삼협빌딩 6층
부산	(051) 465-1492	48730)부산시 동구 중앙대로 296번길 3-3 극동빌딩 4층
대구경북	(053) 756-0006	42040)대구시 수성구 화랑로2길 107 조이빌딩 5층
광주	(062) 527-6028	61250)광주시 북구 무등로 180번길 5, 2층
대전	(042) 526-2861	34025)대전시 유성구 테크노2로 187, 미건 테크노월드 2차 C동 228호
인천	(032) 260-3602	21633)인천시 남동구 남동대로 215번길 30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8층
울산	(052) 998-8585	44677)울산시 남구 돈질로 20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3층
강원	(033) 233-5505	24234)강원도 춘천시 후석로 366 2층
경기	(031) 211-0292	16490)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420 DSD빌딩 3층
충북	(043) 231-7807	28558)충북 청주시 흥덕구 예체로 167 4층
전북	(063) 272-9973	54940)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주천서로 477 2층
경남	(055) 212-1240	51408)경남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362 창원컨벤션센터 502호
제주	(064) 726-6008	63277)제주시 관덕로 15길 23 선우빌딩 2층
충남	(041) 569-0570	31110)충남 천안시 서북구 동서대로 168 충남타워 10층
전남	(061) 281-2612	58567)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약4로 86 한양애드가 4층
경기북부	(031) 850-3777	11497)경기도 양주시 평화로 1215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204호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처리 절차



- Q**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은 얼마나 걸리나요?
- A**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신청서류를 업로드 하고 신청하시면 서류 접수 후 7일 이내에 여성기업 확인서의 발급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여성기업 종합정보포털(www.wbiz.or.kr) → 교육/연수 → 여성CEO MBA 교육 → 온라인 신청
- Q** 저희회사가 다른지역으로 이전했는데 주소 변경이 가능한가요?
- A**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로그인 후 나의업무 → 기업확인서 신청/발급 → 여성기업 확인에서 재발급 신청 버튼을 클릭하여 정보입력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신 후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각 지회에 연락하시면 재발급 절차가 진행됩니다.

용어설명

여성기업이란?

「여성기업지원에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여성기업은「여성기업지원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으로서 여성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1. 대표권이 있는 임원(이하 "회사대표"라 한다)으로 등기되어 있는 여성이 최대출자자[자기의 명의로 소유하는 출자지분(주식회사인 경우에는 「상법」 제344조의3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최대인 자를 말한다]인 「상법」 상의 회사(회사 대표로 등기되어 있는 여성이 2명 이상인 경우로서 그 합한 출자지분이 최대인 회사를 포함한다)
2. 여성이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

22-6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지원

| 여성기업제품 홍보사이트 운영 및 입찰정보서비스 제공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의무화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공공구매 홍보사이트를 통해 공공기관에 여성기업제품 정보를 제공하며 여성기업의 공공조달시장 판로확대 및 입찰 참여기회 증대를 위해 업종별 맞춤형 입찰정보와 전자입찰 실무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규모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업체

* '16년 지원현황 :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홍보사이트 운영 (1197업체, 9971개 제품 등록)

지원 대상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여성기업

지원 내용

-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홍보사이트 제품 등록·홍보를 통해 공공기관 구매 증대
 - ▷ 여성기업제품 정보 제공 등을 통해 공공기관이 여성기업제품을 적극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입찰정보서비스 운영 및 입찰실무교육을 통해 여성기업 판로 확대 지원
 - ▷ 여성기업 업체에서 제공받고 싶은 입찰공고에 대한 업종을 직접 설정하여 필요한 입찰정보만을 메일로 수신
 - ▷ 입찰의 개요 및 절차, 계약방법, 투찰금액 산정 및 적격심사 등 입찰관련 교육 제공

신청·접수

연중수시(온라인신청)

-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홍보사이트(shopping.wbiz.or.kr) 일반회원가입 (가입시 회사정보입력) → 확인업체 자동인증 → 제품등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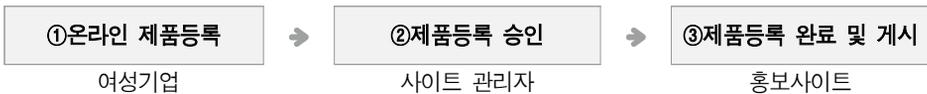
- 여성기업 맞춤형 입찰정보서비스(bid.womanbiz.or.kr) 일반회원가입(가입시 회사정보입력 및 여성기업 확인서 첨부) → 관리자 승인 → 입찰공고 업종설정
- 여성기업 맞춤형 입찰정보서비스(bid.womanbiz.or.kr) 회원가입 후 교육참여 신청

제출 서류

- 여성기업 확인서

처리 절차

- 여성기업제품 홍보사이트 운영



- 여성기업 맞춤형 입찰정보서비스 운영



문의처

- 중소기업청 공공구매관로과 : 042-481-4376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 02-369-0913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궁금해요! 중기매



- Q** 공공기관의 여성기업제품 우선 구매제도는 무엇인가요?
- A**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하여 공공기관은 여성기업 제품의 일정비율이상 구매를 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일정비율이란 물품 및 용역은 각 구매총액의 5%, 공사의 경우는 3%을 의미합니다.
- Q** 여성기업 제품은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
- A**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여성기업 제품정보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여성기업확인 업체수 : 약 24천개), 사이트 로그인 후 첫 화면의 상단「마이페이지-기업정보조회-여성기업-엑셀다운로드」를 클릭하면 업체명과 품목명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홍보사이트(shopping.wbiz.or.kr)를 통해서도 여성기업 제품을 확인할 있습니다.
- Q** 여성기업 확인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A**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동 법 시행령 제8조(지원절차 등의 고시)에 의거,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서는 중소기업청 고시(제2016-49호)「여성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여성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해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업무』를 추진해 오고 있으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22-7

여성기업 해외진출 지원

| 수출여성기업육성-여성특화제품 해외진출 One-Stop지원

여성기업의 해외시장 진출확대를 위하여 해외시장조사, 바이어 발굴, 무역실무교육 등 해외마케팅 활동을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여성기업 213개사

지원 대상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조 ①항에 의한 여성기업

지원 내용

사업비의 80% * 참가업체 자부담 20%

- 신규수출기업화
 - ▷ 무역전문가와 참가기업간 1:1 맞춤형 무역 컨설팅 지원
 - ▷ 유관기관과 연계한 유료 바이어정보 지원
- 해외지사화 : 아래 항목 중 최대 3개 항목 선택
 - ▷ 신규거래선 발굴(바이어, 파트너 찾기), 전시상담회 참가
 - ▷ 물류, 통관 컨설팅, 해외출장지원
 - ▷ 기존 거래선 관리(유통, A/S, C/S 관리 포함), 현지 유통망 입점
 - ▷ 시장, 산업동향 조사, 인허가 취득 지원
 - ▷ 브랜드 홍보, 프로젝트 참가
 - ▷ IP 등록, 현지 법인 설립
- 해외전시회 참가
 - ▷ 부스 공간 및 장치비
 - ▷ 통역비의
- 무역실무교육
 - ▷ 내수기업, 수출초보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무역실무교육
 - ▷ 기수출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해외 유망시장 진출전략 교육

신청·접수

연중 사업공고를 통해 참가기업 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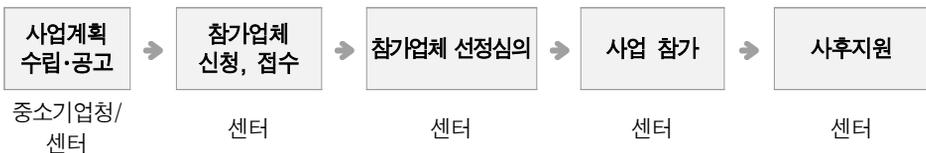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를 통해 참가신청(www.wbiz.or.kr)

신청 서류

- 기본제출서류
 - ▷ 참가신청서, 요약서 및 수출활동계획서 각1부
 - ▷ 제품 카탈로그 1부
 -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추가제출서류(보유기업에만 해당)
 - ▷ 재무제표 (B/S, I/S) 사본 1부(최근 2개년)
 - ▷ 수출실적증명원(최근 2개년)
 - ▷ 각종 인증서 및 정부포상 증빙 사본 1부

심사 및 평가 주요 내용

- 참가업체 선정기준에 의거, 선정위원회에서 선정
 - ▷ 수출활동계획서(20%), 상품성(20%), 정책호응도(10%), 매출액(10%), 수출액(20%), 마케팅 활동(15%), 기타 우대사항(5%)

처리 절차**문의처**

- 중소기업청 공공구매판로과 : 042-481-4376
-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 02-369-0915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22-8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

| 여성가장 대상 창업자금(임대보증금) 최대5,000만원 지원

창업을 원하는 저소득층 여성가장을 대상으로 2.0%의 저렴한 금리로 최고 5,000만원까지 임대보증금을 지원하여 가계안정과 자활의지를 제고하며 여성의 경제활동을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30명 내외

* '16년 지원현황 : 17명 선정지원, 지원금액 530백만원, 1인당 평균 3,117만원 지원('16. 11월말 기준)

지원 대상

저소득 여성가장이면서 생계형 창업을 희망하는 자로 사실상 가족을 부양하는 여성

- 신용등급 1~7등급
- 저소득계층
- 부양가족*이 1인 이상인 자

* 부양가족기준: 25세 미만의 자녀, 65세 이상의 부모(양가), 장애인, 질병 등으로 경제활동이 어렵거나 장기실직 1년이상의 배우자. 단, 25세 이상의 자녀는 학생, 군인, 3등급 이상 장애인 경우, 65세 미만의 부모는 장애자, 중환자 등인 경우에 인정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신용관리대상자 (신용등급 8, 9, 10등급)
- ✓ 사업자등록 신고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자
- ✓ 동 사업과 같은 목적으로 운영되는 지원 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 ✓ 동 업종 창업의 경우 폐업한지 6개월 미만의 경우
- ✓ 창업 업종이 성인전용의 유흥, 퇴폐, 사치, 향락 및 오락업종, 간이주점의 경우

○ 우대사항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상의 한부모가정,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창업교육30시간 수료자 등은 가산점 부여

지원 내용

- 임대보증금 최대 5,000만원까지 최대 6년 지원(최초 2년, 기간연장 2회 가능)
- 연 2.0% 고정 금리, 분기별 납부

신청·접수

'17. 1. 1 ~ 12. 31 자금 소진시까지 수시 모집

- 사업 신청 : 여성기업 종합정보포털(www.wbiz.or.kr) → 창업지원 → 여성 가장창업자금 → 해당 지회 문의 → 각종 증빙서류 방문 및 우편발송

심사·평가내용

- 신청자의 경영능력, 자금조달 능력, 해당업종 종사여부, 사업실현가능성, 시장전망, 건물 채권확보 가능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정

제출 서류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신용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부동산 시세 확인서 등 (우편발송 가능)

문의처

- 중소기업청 공공구매관로과 : 042-481-4376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 02-369-0913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22-9

여성경제인 DESK 운영

| 여성기업인의 경영애로와 정책 아이디어 접수 및 해결 창구

여성기업인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경영상 애로사항들을 전문 DESK 상담위원들이 수시 상담하여 해소해 드리고, 정책 아이디어 건의도 접수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규모

전국 16개 권역 운영

지원 대상

여성기업 및 예비여성창업자 중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자

지원 내용

여성경제인 DESK 전문위원(분야별 전문가)이 여성기업의 경영 애로를 무료 상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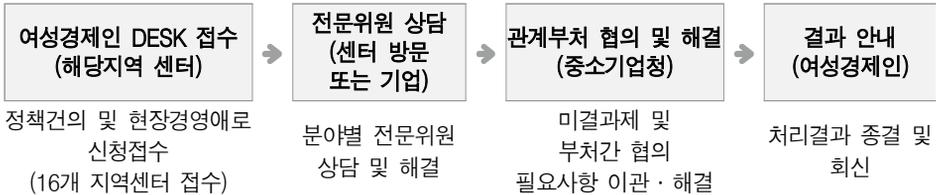
- ▷ 경영, 회계, 세무, 인사, 노무, 생산관리 등 경영 분야 애로사항
 - ▷ 기술, 특허 등 지적재산권 관련 애로사항
 - ▷ 수출/외환, 해외마케팅 등 해외 수출 분야 애로사항
 - ▷ 벤처, 투자 등 여성예비창업자 및 창업초기 여성기업 경영애로사항
- 신청 및 상담분야

구 분	내 용
일반상담	창업절차, 사업계획, 기업확인 등
공공구매	공공기관 납품 애로, 공공기관 납품 절차 등
행정처리	법률자문, 규제
금융/보증	정책자금 안내, 자금관리, 금융 및 보증기관 안내 등
고용/인력	인사관리, 고용 등
유통물류	물류비용, 하도급 등
조세/회계	세무/회계관리, 세법
기술/특허/인증	기술 자문, 기술동향, 지식재산권 관리, 해외출원, 기술보호 등
입지건축	공장설립 및 입지 등
수출/통관	수출입 및 관련정보, 관세법 FTA 활용 등
환경	오염물처리, 그린벨트 등

신청·접수

- 신청 : 해당 지역의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에 신청
 - ▷ 여성기업통합정보망(www.wbiz.or.kr) 홈페이지, 전화, 팩스 등
 - ▷ 별도의 신청 필요서류 없음

처리 절차



문의처

- 중소기업청 공공구매관로과 : 042-481-4376
- 여성기업 종합정보포털(www.wbiz.or.kr) : 02-369-0934
-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중앙센터: 02-369-0934
- 각 지역센터 연락처

전국센터	전화번호	소재지
중앙	(02) 369-0934	06224)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21 삼성빌딩 4층
서울	(02) 702-4244	04701)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386 삼협빌딩 6층
부산	(051) 465-1001	48730)부산시 동구 중앙대로 296번길 3-3 코동빌딩 4층
대구경북	(053) 742-5192	42040)대구시 수성구 화랑로2길 107 조이빌딩 5층
광주	(062) 527-1612	61250)광주시 북구 무등로 180번길 5 2층
대전	(042) 526-2862	34025)대전시 유성구 테크노2로 187, 미건 테크노월드 2차 2층
인천	(032) 260-3600	21633)인천시 남동구 남동대로 215번길 30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8층
울산	(052) 998-8585	44677)울산시 남구 돌길로 20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3층
강원	(033) 241-3475	24234)강원도 춘천시 후석로 366 2층
경기	(031) 211-0293	16490)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420 DSD빌딩 3층
충북	(043) 236-6561	28558)충북 청주시 흥덕구 예체로 167 4층
전북	(063) 272-9906	54940)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주천서로 477 2층
경남	(055) 212-1241	51408)경남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362 창원권벤션센터 502호
제주	(064) 726-4467	63277)제주시 관덕로 15길 23 선우빌딩 2층
충남	(041) 569-0572	31110)충남 천안시 서북구 동서대로 168 충남타워 10층
전남	(061) 284-4343	58567)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약4로 86 4층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22-10

TV 홈쇼핑 판매지원

| 여성기업의 TV홈쇼핑 진출지원

품질이 우수하고 홈쇼핑 방송에 적합한 여성기업 제품을 발굴하고, 홈쇼핑 입점 지원을 통해 여성기업의 판로 확대를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여성기업 200개

지원 대상

홈쇼핑에 적합한 상품을 보유하고 성장 가능성이 있는 여성기업

지원 내용

홈쇼핑 입점교육, 전문가 코칭, 홈쇼핑 인서트영상 제작비 등

신청·접수

'17. 1~12월

- 신청 :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 신청서 제출

▷ 신청서류는 여성기업통합정보망(www.wbiz.or.kr)에서 다운로드 가능

제출 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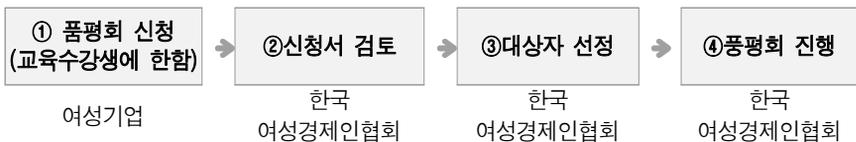
사업자등록증, 회사소개서, 제품소개서, TV홈쇼핑 입점지원 신청서

처리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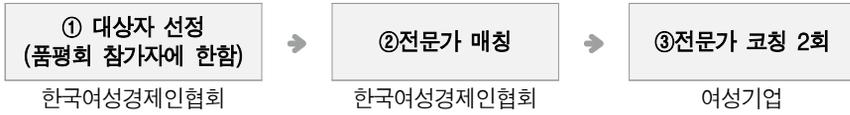
- 홈쇼핑 입점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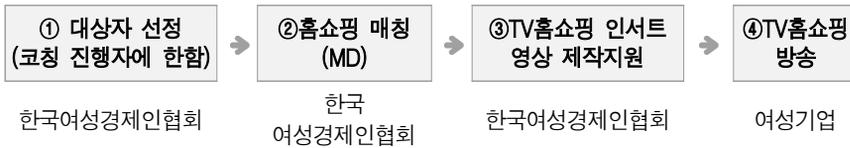
- 상품품평회



○ 전문가 코칭



○ 방송지원



문의처

- 중소기업청 공공구매관로과 : 042-481-4376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 02-369-0912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제 23 장

장애인기업 맞춤형 창업지원 및 경쟁력 강화

23-1 장애인 맞춤형 창업교육사업	453
23-2 장애인 특화창업보육실 운영	457
23-3 장애인기업 성장지원	460
23-4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	463
23-5 장애인기업제품 판로인증지원 및 운영	466

23-1

장애인 맞춤형 창업교육사업

|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장애인기업 경영활성화를 위한 교육 지원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타 업종으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장애인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여 창업리스크 경감과 안정적인 기업경영이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교육 지원 사업입니다. 창업기초교육, 업종특화교육, 역량강화교육, 창업멘토링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원 규모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장애인기업 대상 연간 64회 이상 무료 창업교육 제공

- 교육 횟수 : 64회, 교육인원 : 1,160명 이상
- 창업기초교육 : 오프라인 교육 16회, 320명 및 온라인 교육 상시운영(320명)
- 업종특화교육 : 오프라인 교육 32회, 320명
- 역량강화교육 : 오프라인 교육 16회, 80명 및 온라인 교육 상시운영(80명)
- 희망재기교육 : 온라인 교육 상시운영(40명)
- 창업 멘토링 : 창업희망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 대상 3일 동행 멘토링 제공, 160명
 - * 무료교육으로 제공되며, 전국 16개 시도광역시 단위 교육수행기관을 통해 제공
 - * 멘토링의 경우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를 대상으로 전문위원과의 동행(3일) 멘토링
 - * '16년 지원현황 : 교육 횟수 72회, 교육생 1,080명

지원 대상

-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업종전환을 희망하는 장애인기업
-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업종전환 희망자 → 창업기초교육, 업종특화교육, 희망재기교육
 - 기 창업자 → 역량강화교육
 - * 각 교육 중 1개 이상 수료 후 창업 멘토링 선별 지원

지원이 안되는 경우

- 장애인 맞춤형 창업교육 중 같은 유형의 교육은 1년 중 2번 이상 수료할 수 없음
- * `17년 창업기초교육 1회 수료 및 `17년 업종특화교육 1회 수료 → 가능
- * `17년 창업기초교육 1회 수료 후 `17년 창업기초교육 1회 재수료 → 불가
- * `16년 창업기초교육 1회 수료 후 `17년 창업기초교육 1회 재수료 → 가능

지원 내용

- 기초 창업소양 중심의 창업기초교육
- 특정 업종 창업능력 제고를 위한 업종특화교육
- 창업 후 영업지속률 제고 및 경영능력 배양을 위한 역량강화교육
- 창업 실패자를 위한 재창업 및 취업역량 제고를 위한 희망재기교육
- 교육 이수 후 창업을 희망하거나 창업한자를 위한 동행멘토링
- 교육 이수자 우대사항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창업지원사업(점포지원, 보육실) 신청 시 우대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창업자 또는 창업희망자 대상 동행 멘토링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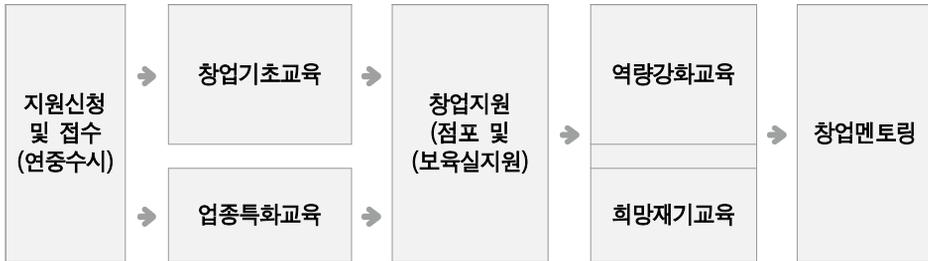
신청·접수

- 연중 수시(교육과정별 일정 및 장소 상이)
- 장애인 창업교육 지원시스템(<http://start.debc.or.kr/>)을 통해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시스템 이용이 어려운 경우 방문 및 전화·우편접수도 가능
- 전국 각 지역센터 전화문의 및 신청 가능(문의처 참조)

제출 서류

-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교육신청서, 서약서, 사업자등록증(역량강화교육),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 장애인 창업교육 지원시스템(<http://start.debc.or.kr/>) 이용 시 교육신청서, 동의서 제출불필요

처리 절차



문의처

-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 ☎1357
-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정책과 : 042-481-3950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사업2팀 : 02-2181-6521
- 창업교육지원시스템 홈페이지(<http://start.debc.or.kr>)
- 각 지역센터 연락처

센터명	전화번호	소재지
서울	02)2181-653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14길 25 (당산동) 6층
부산	051)329-8230	부산광역시 사상구 대동로 303 (감전동) 608~609호
대구	053)600-8070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서대로 559 (신당동) 809~810호
인천	032)817-1364	인천광역시 연수구 앵고개로 250 (동춘동) 701호
광주	062)511-8330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702 (동천동) 501~503호
대전	042)330-0044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3로 65 (관평동) 513~514호
울산	052)294-7230	울산광역시 중구 남외2길 10 (남외동, 삼한나우빌1단지) 401
경기	032)322-1940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52 (중동) 201, 206호
강원	033)747-6823	강원도 원주시 능라동길 75 (무실동, 휴먼시티) 501~503호
충북	061)285-7867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 473번지 경성하늘 201호
충남	041)331-0505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산성리 839
전북	063)237-5354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49 (효자동2가) 602호
전남	063)237-5354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2115번지 에드가2차 201호
경북	054)842-3773	경상북도 안동시 정하동 244-5 정우빌딩 5층
경남	055)763-3556	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 111 (상대동) 2층
제주	064)749-823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진군남4길 5 (노형동)

궁금해요! 중기맨



- Q** 예전에 센터에서 교육을 받았는데 수료증에 유효기간이 있나요?
- A** 2015년부터 시행되는 교육과정에 따라 수료일 기준 1~2년 유효기간이 설정됩니다.
※ 유효기간 1년 : 창업기초교육, 역량강화교육, 희망재기교육
※ 유효기간 2년 : 업종특화교육
- Q** 타 기관에서 창업기초교육을 받았는데 타 기관 수료증도 장애인기업 활동 지원자금 신청 시 인정이 되나요?
- A** 2015년 하반기 이후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 시 교육 이수여부가 기준에서 제외되어 교육수료 여부와 관계없이 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상세한 기준은 시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상세요건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3-2

장애인 특화창업보육실 운영

| 장애인 예비창업자 창업촉진 및 장애인기업 경영인정 지원

우수한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창업초기의 장애인기업 및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비즈니스공간 및 사무기기, 기업지원정책 등을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 규모

140개(창업보육실 2실 포함)

지역	보육실 수						
서울센터	20개	광주센터	10개	경남센터	8개	전북센터	8개
경기센터	8개	부산센터	10개	울산센터	8개	전남센터	8개
인천센터	8개	대구센터	6개	강원센터	8개	충북센터	8개
대전센터	6개	충남센터	8개	제주센터	8개	경북센터	8개

지원 대상

장애인 예비창업자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의 장애인기업

-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전문분야의 기술을 갖춘 사업화 가능한 업종(IT관련업, 제조업, 디자인업, 서비스업 등)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업종 : 개인서비스업(컨설팅, 변호사, 의사, 변리사, 회계사, 부동산업 등), 여행업, 학원, 안마업 등 (일반사무실 용도가 아닌 업종제외)_창업보육센터 입주 제외대상 업종 참조
- ✓ 금융기관의 신용불량자 또는 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
- ✓ 본 센터 창업보육실에 입주경력이 있는 기업(자)
- ✓ 타 기관의 창업보육실에 입주중인 기업(자)

지원 내용

- 사무편의를 위한 사무기기 및 집기류(책상, 복합기, 팩스 등), 인터넷전용선

-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판로지원, 지식재산권 출원, 입찰정보 제공 등
- 입주기업 인프라 및 네트워크 구축지원(기업CEO 및 지역 유관기관 간담회 운영)
- 장애인 편의시설 완비(전용주차장, 장애인화장실, 보행통로, 자동문 등)
- 입주기업 기업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업체 24시간 감시

신청·접수

17. 1. 1 ~ 12. 31_연중수시(공실 발생시)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debc.or.kr) 공지사항 입주공고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해당지역센터 우편제출 심사

구 분	주 소	연 락 처
서울 (본관)	(07230)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14길 25 (당산동) 6층	T) 02-2181-6500
서울 (별관)	(07275)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33 (양평동2가) 601~605호	T) 02-2068-6050
대구	(42709)대구광역시 달서구 달서대로 559 (신당동) 809~810호	T) 053-600-8070
광주	(62277)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계로 195 (월계동) 5,6층	T) 062-511-8330
부산	(25788)부산광역시 사상구 대동로 303 (감전동) 608호	T) 051-329-8230
대전	(34016)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3로 65 (관평동) 513~514호	T) 042-932-9077
경기	(14548)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52 (중동) 201, 206호	T) 032-322-1940
인천	(21972)인천광역시 연수구 앵고개로 250 (동춘동) 7층	T) 032-817-1364
경남	(52787)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 111 (상대동) 1동 2층	T) 055-763-3556
울산	(58260)울산광역시 중구 남외2길 10 (남외동, 삼환나우빌1단지) 401호	T) 052-294-7230
강원	(26392)강원도 원주시 능라동길 75 (무실동, 휴먼시티) 5층	T) 033-747-6823
제주	(63092)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진군남4길 5 (노형동)	T) 064-749-8234
전북	(54966)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흥산로 249 (효자동2가) 602호	T) 063-237-5354
전남	(58567)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남약리 2115 에드가2차 201호	T) 061-285-7867
충북	(28377)충북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 473 경성하늘 201호	T) 043-238-8243
충남	(32429)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산성리 839	T) 041-331-0505
경북	(36751)경상북도 안동시 강남2길 60-18 정우빌딩 5층	T) 054-842-3773

〈심사·평가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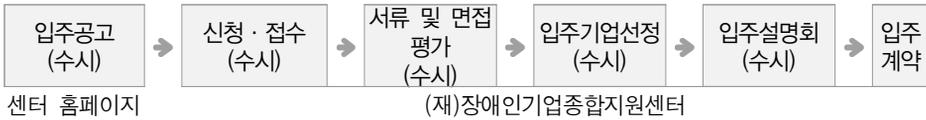
- 창업자 및 보유인력의 전문성, 업종 종사경력, 사업타당성 및 사업추진능력, 창업자의 자질, 창업아이템의 창의성 및 경쟁력, 핵심기술 인증보유, 사업전망 등

제출 서류

-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장애인기업확인서(복지카드), 이력서, 기업현황자료 등

* 신청양식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debc.or.kr) 공지사항 참조

처리 절차



문의처

-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정책과 : 042-481-3950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debc.or.kr)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2017년 지원시책」 참조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23-3

장애인기업 성장지원

| 장애인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장애인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상품화, 마케팅, 특허 등의 맞춤형 지원으로 일반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장애인기업이 활발한 경영활동을 통해 성공적인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 규모

시제품 제작지원(상품화) 22개사(예산 469백만원), 국내외전시회 참가지원 40개사(예산 148백만원), 지식재산권출원지원 85개사(예산 80백만원)

* '16년 지원현황

- 제품디자인 및 시제품모형 : 15개사, 222백만원(업체당 평균 14.8백만원)
- 시제품금형 : 17개사, 413백만원(업체당 평균 25.8백만원)
- 지식재산권출원지원 : 70개사, 63백만원(0.9백만원)
- 국내외전시회참가지원 : 50개사, 123백만원(2.5백만원)

지원 대상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 받은 장애인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신청일 기준 정부기관 또는 지자체로부터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
- ✓ 금융기관의 신용불량거래 및 국세·지방세 체납자

지원 내용 장애인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제품제작, 전시회참가지원, 지식재산권출원지원 등

구 분	내 용	정부지원한도
시제품 제작지원	기술개발을 완료하고 상품화를 준비중인 금형제작 이전단계 기업으로 창업초기 장애인기업 및 장애인 예비창업자에게 기술멘토링, 제품디자인 및 모형제작 지원	소요비용의 80% 내 10백만원 한도
	기술개발을 완료하고 제품 제작도면이나 Design Mock-up을 보유한 장애인기업에게 시제품 금형제작 소요비용 지원	소요비용의 80% 내 25백만원 한도
국내외 전시회 참가지원	국내/국외 전시회 참가비용 지원(부스임차비, 장치비, 홍보비)	참가비용의 80% 내 국내 2백만원, 국외 5백만원 한도
지식재산권 출원지원	국내 지식재산권출원 시 변리사 대행수수료 지원 해외 권리화(PCT 출원 등) 변리사 대행수수료 지원	(국내)변리사 대행수수료 80% 내 1백만원 한도 (해외) 변리사 대행수수료 80%내 3백만원 한도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기 존		변 경	
구분	지원한도	구분	지원한도
① 제품디자인 및 시제품모형	80% (15백만원)	① 제품디자인 및 시제품모형	80% (10백만원)
② 시제품금형분야	80% (30백만원)	② 시제품금형분야	80% (25백만원)

신청·접수

‘17년 2월 중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센터 홈페이지(www.debc.or.kr) 통해 공고
- 신청서 및 첨부서류 우편접수

제출 서류

- 사업신청서 및 첨부서류

* 신청양식은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debc.or.kr) 공지사항 참조

처리 절차



문의처

-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 ☎1357
-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정책과 : 042-481-3950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 02-2181-6500 (www.debc.or.kr)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궁금해요! 증기맨



- Q** 주로 어느 항목을 우선적으로 심사하게 되나요?
- A** 지원 받을 기업의 사업계획, 기대효과, 기업현황 등 다양한 항목을 검증하고 현장 실사를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 Q** 기업 당 최대 지원횟수의 제한이 있나요?
- A** 시제품제작지원, 전시회참가지원, 지식재산권출원지원 사업 별 1년 최대 1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3-4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

| 장애인 예비창업자에게 창업점포 기회 제공

창업역량을 갖춘 장애인 예비창업자에게 장애인기업으로의 성장과 경영안정을 위해 임차사업장을 최장 5년 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규모

30명 내외(전체 예산 28.60억원)

* '16년 지원현황 : 수혜자 수 35명

지원 대상

장애인 창업교육을 이수한 예비창업자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창업교육, CEO경영혁신교육을 1년 이내 이수한 장애인 예비창업자
- 지원업종 : 서비스업, 도·소매 및 유통업, 음식업 등 입지중심형 업종
- 우대선정 : 신청업종 관련자격증 및 창업인턴십 실습과정 이수자, 중증장애인 가점부여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비영리사업
- ✓ 폐업 후 1개월 이내인 자(대상자 모집공고일 기준)
- ✓ 사금융, 사치향락업종, 도박업, 부동산 및 임대업(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
- ✓ 비점포형사업
- ✓ 타 기관 등에서 유사사업 지원을 받고 있는 자

지원 내용

점포 전세보증금 및 시설비용 지원

- 점포 전세보증금 최장 5년 간 지원(업체 당 1억원 한도)
- 초기 시설비용 지원(업체 당 1천만원 한도, 자부담 20%)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점포보증금 축소(1억원 한도→8천만원 한도), 지원업종 확대(입지중심형 업종 →입지중심형 업종+ 제조공장)

신청·접수

상·하반기 연 2회(3월, 7월) 각 15명 내외

〈심사·평가 주요내용〉

- 창업자역량, 사업계획서, 자금계획 등 평가
 - 1차 서류심사 → 2차 본 심사(개인별 면접심사)

신청 서류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신용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 신청양식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debc.or.kr)에 게재된 사업운영 지침에 첨부

처리 절차



문의처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정책과 : 042-481-3950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사업1팀 : 02-2181-6514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2017년 지원시책」 참조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궁금해요! 중기엔



- Q** 창업점포의 계약가능한 점포의 조건이 있나요?
- A** 부동산 등기부등본상 전세권설정등기가 가능한 점포를 원칙으로 하며, 부동산 감정평가 결과 전세권설정 전, 해당 입주목적물의 잔존평가액이 부동산가액의 30%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감정가 기준 부동산의 가액이 10억원인 경우 3억원 이상 잔존해야 가능)
 ※ 잔존평가액 = 부동산가액(감정평가액을 기준) - 선순위[입주목적물의 피담보채권+입차목적물의 보증금반환채권(확정일자 있는 임차권 등)+ 센터지원금(전세보증금)]
- Q** 대상자 선정 시 평가항목은 무엇인가요?
- A** 1차 서류심사 : 창업자원경 평가(30점), 사업계획 평가(40점), 자금계획 평가(30점), 가점(10점)
 2차 면접심사 : 창업자 역량 및 기술(30점), 아이템 가능성(20점), 시장조사 및 운영방안(20점), 소요자금 조달계획(15점), 사업위험분석(15점)
- Q** 점포보증금 및 시설비용은 무상으로 지원해주나요?
- A** 점포보증금의 연 1%의 관리비를 받고 있으며, 시설비용은 무상으로 지원됩니다. (단, 시설비용 자부담은 20%이며, 대상자가 선 지출 후 센터에 증빙자료 제출 시 지급합니다.)

23-5

장애인가업제품 판로인증지원 및 운영

| 장애인가업의 공공구매 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

장애인가업의 경쟁력 제고 및 공공구매시장 진출 기반 마련을 위하여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 및 기업인증 획득을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 규모

기업인증획득 지원 58개사(116백만원), 다수공급자계약(MAS) 컨설팅 70개사(98백만원)

* '16년 지원현황 : 다수공급자계약(MAS) 컨설팅 : 8개사, 14백만원(업체당 평균 1.75백만원)

지원 대상

장애인가업 확인서를 발급 받은 장애인가업

지원 내용

장애인가업의 공공구매 시장 진출을 위한 컨설팅 및 기업인증 획득 지원

- 기업인증획득

인증명	지원범위	지원금액
· NET, NEP, GS, KS, 우수조달제품, 녹색기술인증	인증·시험비용 컨설팅비용	소요비용의 80%, 300만원 한도
· 성능인증, 환경마크, KC, GD, GR	인증·시험비용 컨설팅비용	소요비용의 80%, 200만원 한도
· 이노비즈(기술혁신형 중소기업) · 메인비즈(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인증비용 컨설팅비용	소요비용의 80%, 100만원 한도

- MAS 컨설팅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을 위한 컨설팅 지원(MAS 컨설팅 전문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컨설팅 지원)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기 존		변 경	
구분	지원한도	구분	지원한도
① MAS 컨설팅 지원	컨설팅	① 기업 인증획득 지원	80% (3백만원)
		② MAS 컨설팅 지원	컨설팅

신청·접수

‘17년 3월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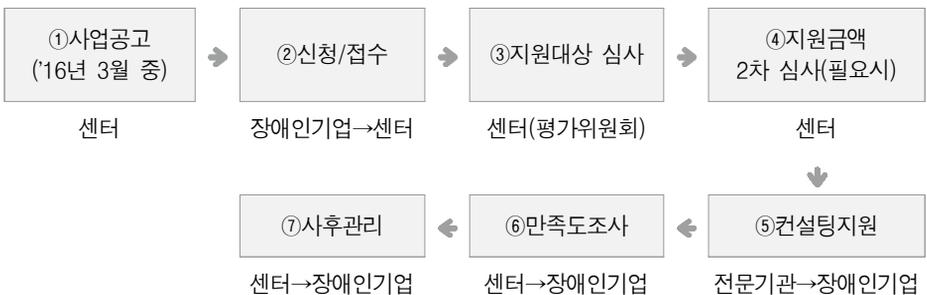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센터 홈페이지(www.debc.or.kr) 통해 공고
- 신청서 및 첨부서류 우편접수

신청 서류

- 사업신청서 및 첨부서류

* 신청양식은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debc.or.kr) 공지사항 참조

처리 절차



문의처

-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 ☎1357
-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정책과 : 042-481-3950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 02-2181-6500 (www.debc.or.kr)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궁금해요! 중소기업



Q MAS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MAS란 Multiple Award Schedule의 약자로서, 다수공급자계약을 의미합니다. 정부조달 관련, 각 공공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품질, 성능, 효율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물품을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계약제도로써, 나라장터중합소평물에 물품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MAS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Q 기업인증을 획득하면 공공구매 시장 진출에 어떤 점이 유리한가요?

A 성능인증, NET, NEP 등의 인증을 획득하게 되면 공공기관의 우선구매대상, 의무구매대상이 되므로 공공구매 시 가점이 되는 기업인증은 미리 획득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도움이 되는 제도

제 10 부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www.smba.go.kr





제 24 장

알아두면 좋은 제도

24-1 중소기업정책정보시스템(기업마당) 운영	472
24-2 이노비즈 확인제도	474
24-3 메인비즈 확인제도	477
24-4 우수그린비즈 선정 제도	480
24-5 중견기업 확인	482
24-6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 운영	484
24-7 중소기업움부즈만 제도	487
24-8 명문(名門)장수기업 확인제도	489

24-1

중소기업정책정보시스템(기업마당) 운영

|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한곳에 모아 알기 쉽게 제공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지원기관 등에 흩어져 있는 중소기업 정책정보를 수집하여 기업마당 웹사이트(www.bizinfo.go.kr)와 모바일앱(app)을 통해 한곳에 모아 알기 쉽게 가공하여 제공합니다.

시스템 개요

- 중소기업이 찾기 쉽도록 중앙부처·지자체 등의 중소기업 정책정보를 수집하여 적시에 알기 쉽게 제공하는 기업마당(http://www.bizinfo.go.kr) 운영

이용 대상

중소 · 중견기업,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기관 사업담당자 등

주요 기능

- (정책정보 제공) 지원사업, 제도 개선사항, 정책브리핑(동영상) 등을 웹사이트, 모바일 앱, 문자, E-mail 등 다양한 매체로 홍보

< 중소기업 맞춤형 정책정보 제공 방식 >



- (부가서비스) 중소기업 관련 교육·세미나·전시회 정보, 민간 제휴를 통한 5분 특강 및 기업업무서식(근로계약서, 사업계획서 등) 제공
- (기업애로상담) 경영애로사항에 대해 분야별 전문가(경영지도사, 회계사, 노무사 등)가 24시간 이내 답변하여 애로 해소



기대효과

- 수많은 중소기업 지원사업 중에서 개별 중소기업이 신청 가능한 사업을 제공 해줌으로써 정보탐색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절감

문의처

- 중소기업청 정책분석과 : ☎ 042-481-6861
- 홈페이지 및 모바일 주소
 - 웹사이트 : www.bizinfo.go.kr
 - 모바일웹 : m.bizinfo.go.kr
 - 모바일앱 : 구글 플레이 또는 앱스토어에서 '기업마당' 검색

24-2

이노비즈 확인제도

| 기술혁신활동 우수기업에 드리는 혜택

기술경쟁력과 미래 성장가능성을 갖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Inno-Biz)을 발굴·선정하여 자금, 기술, 판로 등 정부의 지원시책 연계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혁신기업으로 육성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 중 업력 3년 이상인 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제도 운영규정」 제3조 ②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제도 운영규정」 별표2 에 해당하는 업종

선정 기준

기술혁신시스템평가 점수가 700점(1,000점 만점) 이상이고 개별기술평가 결과가 B등급 이상인 기업

신청·접수

이노비즈넷(www.innobiz.net)에 접속하여 기업등록, 안내에 따라 온라인 자가진단을 실시한 후 평가 결과가 650점 이상이면 기술보증기금에서 현장평가 실시

제출 서류

- 이노비즈넷(www.innobiz.net)에 기업정보, 주생산품, 재무사항 등 입력
- 기술사업계획서(이노비즈넷에서 온라인 입력 후 인쇄) 제출

선정 절차

온라인신청
(연중)

- 이노비즈넷(www.innobiz.net) 접속 후 기업등록, 자가진단결과 650점 이상일 경우 현장평가 신청 가능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 031-628-9600)

현장·경영평가

- 기술혁신시스템평가 700점(1,000점 만점)이상 및 개별기술 평가결과 B등급 이상
- 기술보증기금(기술평가센터 ☎ 1544-1120)

확인서 발급

- 중소기업청(해당기업의 본사소재지 지방중기청에서 확인서 발급)

종합연계지원

- 중소기업청, 기술보증기금, 금융기관 등

지원 혜택

분야	지원내역	우대 사항
금융	금융지원 협약보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보증기금 보증료율 감면(0.2%) 및 100% 전액 보증 지원 가능 * 협약 금융기관 (15개) : 산업, 기업, 우리, 하나, 외환, 농협, 국민, 신한, 제일, 씨티, 대구, 부산, 경남, 전북, 광주은행 ◦ 기술보증기금 보증지원한도 확대(최대50억원), R&D평가 특례보증 ◦ 서울보증보험 보증한도 확대 및 이행보증료율 우대(10%)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한도 우대 ◦ 무역보증보험료 할인(20%) 및 이용한도 최대 1.5배 우대
	금리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협 이노비즈 채움금융(1.65%) ◦ 신한은행 이노비즈 플러스 금융(1%) ◦ 산업은행 시설 및 운영자금 우대(0.3%)
	코스닥 상장조건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본금 15억원 이상 (일반기업 업력3년 및 자본금 30억원 이상)
	합병 특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병절차, 영업양수, 소규모합병,간이합병, 간이영업양도 특례 적용
정책	R&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및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 우대가점 ◦ 기술혁신개발사업 지원자격 부여
	판로·수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품구매 적격심사,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등 우대 가점 ◦ 방송 광고비 감면
	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기능 요원제도, 전문연구 요원 등 우대 가점 ◦ 기술인재공급 및 활용지원사업 우대 가점 ◦ 일학습병행제 참여조건 완화
	특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허·실용신안 출원시 우선심사

문의처

- 이노비중소기업청 생산혁신정책과 : 042-481-4436
-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 031-628-9600
- 전용정보사이트 : 이노비즈넷 (www.innobiz.net)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24-3

메인비즈 확인제도

| 경영혁신활동 우수기업에 드리는 혜택

제조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문화산업 등 기술 분야뿐만 아니라 전 업종의 기업군에서 경영혁신활동으로 기업의 경쟁력 확보 및 미래 성장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을 발굴·선정하여 자금, 기술, 판로 등 정부의 지원시책 연계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혁신기업으로 육성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 중 업력 3년 이상인 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제도 운영규정」 제3조 ①항 및 ②항의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선정 기준

- 경영신시스템평가 점수가 700점(1,000점 만점) 이상 또는 한국생산성본부의 생산성경영시스템평가 결과 PMS 3등급 이상 기업

신청·접수

- 메인비즈넷(www.mainbiz.go.kr)에 접속하여 기업등록, 안내에 따라 온라인 자가진단을 실시한 후 평가 결과가 600점 이상이면 평가기관에서 현장평가 실시
- * 평가기관 : 한국생산성본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제출 서류

- 메인비즈넷에 접속해 기업 및 공장정보, 주생산물, 재무사항 등 입력

선정 절차

온라인신청
(연중)

- 메인비즈넷(www.mainbiz.go.kr) 접속 후 기업등록, 자가진단결과 600점 이상일 경우 현장평가 신청 가능 (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 1666-5001)

현장·경영평가

- 한국생산성본부(☎ 02-754-1057), 신용보증기금(☎ 1588-6565), 기술보증기금(기술평가센터 ☎ 1544-1120)

확인서 발급

- 중소기업청(해당기업의 본사소재지 지방중기청에서 확인서 발급)

지원 혜택

분야	지원내역	우대 사항
금융	금융지원 협약보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보증기금 보증료를 차감(0.1%) * 금융기관 금융지원 협약을 통한 우대 : 부분보증비율 85% ◦ 서울보증보험 보증한도 확대 및 이행보증료 우대 * 보증한도 신용등급별 우대 및 보증요율 할인
	금리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은행 시설 및 운영자금 대출시 금리 우대, 통화전환 수수료 면제 ◦ 농협 대출금리 최대 1.8%우대, 기업자금관리 서비스 무료제공 외 ◦ 중진공 우수기술 사업화 관련 자금, 신성장기반 자금 지원시 우대
정책	R&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및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 우대가점 ◦ 생산현장 디지털화 및 기술유출 방지 시스템 구축사업 지원
	판로·수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수출초보기업 지원사업 등 우대가점 ◦ 중소기업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 해외규격 인증사업 등 지원 ◦ 방송 광고비 감면
	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기능 요원제도, 전문연구 요원 등 우대 가점

문의처

- 중소기업청 생산혁신정책과 : 042-481-4436
- (사)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고객지원센터 : 1666-5001
- 전용정보사이트 : 메인비즈넷 (www.mainbiz.go.kr)
- 정책정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궁금해요! 중기맨



Q 개인사업자도 업력이 3년이면 신청할 수 있나요?

A 물론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 설립 후 3년이 지났다면 신청하실 수 있어요. 또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경우에도 신청 조건인 업력 3년에 개인사업 기간을 포함한답니다.

24-4

우수그린비즈 선정 제도

| 녹색경영활동 우수기업에 드리는 혜택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녹색경영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혁신적으로 녹색경영을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우수그린비즈로 선정하고 자금, 기술, 판로 등을 연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인 기업

신청접수

그린비즈넷(www.greenbiz.kr)을 통해 신청

- 평가기관 : 한국표준협회

신청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평가 가점 증빙서류(해당기업), 환경 법규 위반 확인서 등 첨부서류는 우편 또는 방문 제출
(자세한 사항은 그린넷 홈페이지(www.greenbiz.kr)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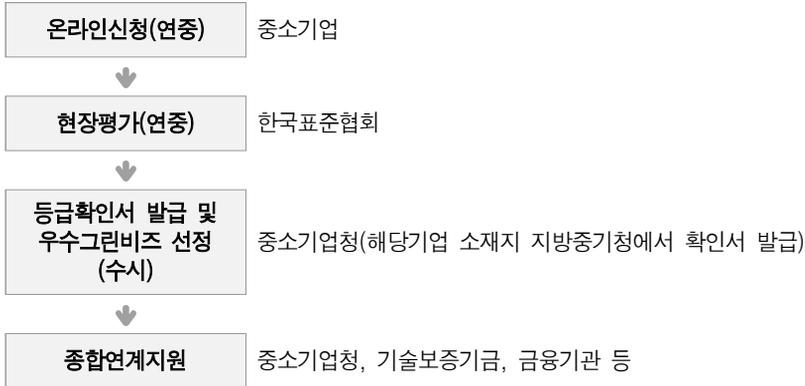
현장평가

제출서류 검토 후 신청기업 현장평가 실시, 평가결과 S(850점 ~1,000점) 또는 A(700이상~850미만) 등급의 기업을 우수그린비즈로 선정하여 인증서 발급

문의처

- 중소기업청 생산혁신정책과 : 042-481-4402
- 한국표준협회 에너지기후변화센터 : 02-6009-4759
- 전용정보사이트 : www.greenbiz.kr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처리 절차



지원혜택

분야	지원내역	우대 사항
금융	금융지원 협약보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술보증기금 보증금액 사정특례 * 경상소요자금의 100% 적용(일반기업은 신용등급별 차등) 서울보증보험 보증한도 확대 및 이행보증료 우대 * 보증한도 신용등급별 우대 및 보증요율 할인
	금리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IBK(기업은행) 녹색기업대출 우대 중진공 신성장기반 자금 지원시 우대
정책	R&D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지원과제 선정시 가점
	특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수 그린비즈 관련 특허출원시 우선심사 대상 포함
	판로·수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외규격인증획득사업, 수출역량강화사업, 수출유망중소기업 선정, 해외수출인큐베이터 사업 선정시 가점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및 계약이행능력심사 신인도 가점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 평가시 가점 TV, 라디오 등 방송광고료 감면

24-5

중견기업 확인

| 중견기업 확인서 발급

신청기업이 중견기업임을 공식적으로 확인해주는 제도로써, 해당기업이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정책에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운영

선정 규모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중견기업

신청 대상

중견기업의 정의

-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닐 것
-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아닐 것,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아닐 것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또는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이 아닐 것
- ✓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기업(외국법인 포함)이 해당 기업의 주식 등을 30%이상 직/간접 소유하면서 최대출자자인 기업이 아닐 것
- ✓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금융업(64), 보험 및 연금업(65),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66)을 영위하는 기업이 아닐 것
- ✓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법인이 아닐 것

유효 기간

- 직전 사업연도의 회계결산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
- 적용사례 : 전문연구요원제도(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특허수수료 감면제도(특허청), 에너지이용 합리화 자금지원(에너지관리공단) 등

신청·접수

중견기업 정보마당 (www.hpe.or.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중견기업 자가판정 → 기업정보 등록 → 확인 신청 (제출서류 첨부)

제출 서류

3개년 감사보고서, 주주명부

처리 절차



문의처

- 중소기업청 중견기업정책과 : 042-481-6816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기획총괄팀 : 02-3275-2226
- 전용 정보사이트 : www.hpe.or.kr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24-6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 운영

| 창의적 특화사업을 희망하는 지자체에 드리는 혜택

지역특구제도는 전국에 걸쳐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규제내용을 특구지정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게 규제를 완화하거나 권한을 이양해줌으로써 각 지역이 특색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혜택

-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특성과 여건을 활용, 비교우위의 특화사업 발굴을 통해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일정지역에 대하여 규제 특례를 적용

*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을 통해 각종 규제특례 적용

신청 대상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원칙이나, 광역 지방자치단체인 시·도 또는 타 기초지방자치단체와의 공동추진도 가능

선정 기준

- 지역의 특화발전에 기여 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어떤 특화 형태든지 지정신청이 가능 다만, 지자체의 중장기 지역발전계획을 고려하여 지역발전의 파급효과가 크거나 선도역할을 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
- 지자체가 신청한 특구계획안에 대해 특구계획의 실현가능성, 특화사업에 대한 국내외 수요전망, 해당지역의 특화발전예의 부합여부, 규제특례 적용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역특구위원회에서 심의·의결

신청·접수

연중상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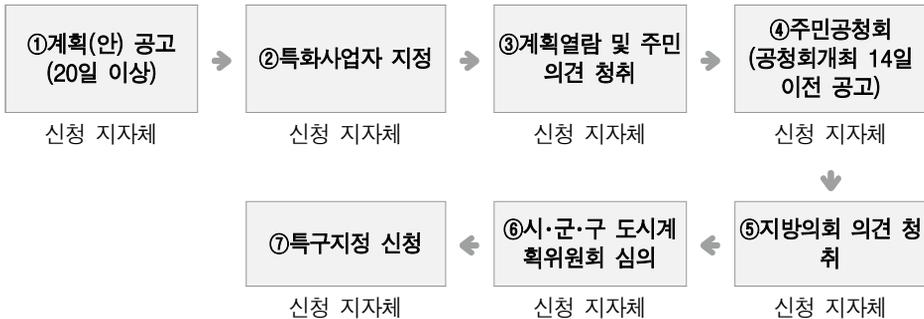
* 세부일정은 중소기업청(지역특구과)과 협의

제출 서류

-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변경, 해제) 신청서
- 특구계획(특구토지이용계획 포함) 및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 지역특구위원회 심의·의결시 고려하여야할 사항에 대한 신청 지자체장의 의견
-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에 필요한 서류
- 기타「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령」에서 정한 서류
 -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지원정책란을 통하여 관련 양식 다운로드·활용

처리 절차

-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신청



-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사후관리



문 의 처

- 중소기업청 지역특구과(대표) : ☎ 042-481-1601
- 지역별 특구담당자 연락처

부서명	담당업무(지역)	연락처
중소기업정책국 지역특구과	지역특구법 운영 및 규제특례 발굴	042-481-1602
	수도권·제주지역 특구운영	042-481-1608
	대구·경북지역 특구운영	042-481-1614
	충북·전북지역 특구운영	042-481-1607
	부산·경남·울산지역 특구운영	042-481-1610
	전남·광주지역 특구운영	042-481-1616
	대전·세종·충남·강원지역 특구운영	042-481-1612

24-7

중소기업옴부즈만 제도

| 규제애로 해소를 희망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제도

중소기업옴부즈만 제도는 국무총리가 위촉한 중소기업옴부즈만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 정비 및 애로사항 해결을 통해 기업환경을 개선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혜택

- 중소기업옴부즈만 활동을 지원하는 옴부즈만지원단 소속의 전문위원이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제기하는 규제 및 애로에 대하여 기업의 입장에서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규제·애로를 처리
 - ▷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라 필요시 소관기관에 규제애로 개선권고

신고·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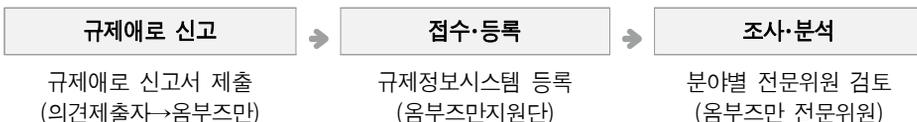
- 중소기업옴부즈만 홈페이지(www.osmb.go.kr ▶규제·애로 신고)를 통해 규제·애로 신고서 제출
- 이메일(bizhomin@korea.kr), 팩스(02-2100-4941), 우편 또는 직접방문을 통한 신고·접수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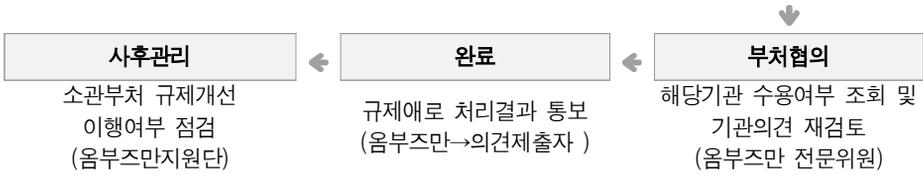
제출 서류

중소기업 규제·애로 신고서(중소기업옴부즈만 홈페이지 신고서 양식)

처리 절차

- 규제·애로 신고서 처리





- 규제 의견 수렴 : 옴부즈만 홈페이지(www.osmb.go.kr ▶규제 원탁협의)를 통해 현행 규제에 대한 수요자의 의견을 실시간 반영
- 규제개선 현황 제공 : 옴부즈만 홈페이지(www.osmb.go.kr ▶원클릭 바로알림)에서 변경되는 규제개선 사항을 수요자별(업종·업태·지역 등)로 정리하여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제공
- 지역별 규제정보 제공 : 옴부즈만 홈페이지(www.osmb.go.kr ▶규제지도나침반)에서 지역별 규제정도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제공

문의처

- 옴부즈만지원단 주소 : (03145)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68 동덕빌딩 4층
- 옴부즈만지원단(대표) : 전화 02-2100-4900
- 분야별 전문위원 연락처

부서명	전문분야	연락처
중소기업청 옴부즈만지원단	입지, 환경, 기술	02-730-2471
	판로, 기술, 상생	02-730-2408
	판로, 입지, 세제	02-730-2474
	보건, 창업, 환경	02-730-2461
	환경, 규제지스 관리	02-730-2492
	금융	02-730-2477
	기타, 지방규제	02-730-2410

24-8

명문(名門) 장수기업 확인제도

기업 성장의 바람직한 롤 모델(Role Model) 제사로 존경받는 기업문화 확산

장기간 건실한 기업 운영으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세대를 이어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중견기업을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선정 규모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평가기준에 부합하는 모든 중소·중견기업

선정 대상

중소·중견기업 중 업력이 45년 이상인 기업

- 45년 이상 사업을 유지하고, 경제적·사회적기여·혁신역량 등이 우수한 기업

제외업종

-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의3제1항에 따라 아래 명기된 업종은 신청대상에서 제외(한국표준사업분류상 건설업은 대분류, 그 외 업종은 중분류)
 - 건설업(F), 부동산업(L68), 금융업(K64), 보험 및 연금업(K65),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K66)

지원 내용

정부 포상, 성공사례 홍보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문화를 확산하고, 중기청 R&D·수출인력·자금 등 사업 참여시 우대지원을 통하여 “한국형 히든챔피언”으로의 성장을 촉진

- 명문장수기업 확인서 발급(국문, 영문) 및 현판제작 부착
- 명문장수기업 마크 활용(생산제품 부착 및 회사 홍보에 활용)
- 정부포상 등 우선추천 및 방송 및 신문매체에 기업 홍보
- 중기청의 R&D, 수출, 인력, 정책자금 등 사업 참여시 우대 및 가점 부여
- 그외 국가가 인정한 명예로서, 사회적 존경, 대외 인지도 상승, 우수인력 유입 촉진, 매출 증대 등 부수적 효과 기대

|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 중소기업만을 명문장수기업으로 인정하였으나, 중견기업까지 확대

지원 내용

신청서류 및 관련서류를 접수마감일까지 중소기업중앙회 또는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 제출 (우편 또는 방문접수만 가능)

- 중소기업 : 중소기업중앙회 가업승계지원센터
 - * 제출처 : (07242)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30(여의도동) 중소기업중앙회 가업승계지원센터(3층)
- 중견기업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명문장수기업센터
 - * 제출처 : (04174)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34(도화동, 도화빌딩) 중견기업연합회 명문장수기업센터(3층)

| 심사·평가내용 |

- 명문(40점) : 경제적 기여 + 사회적 기여 + 기업혁신역량
- 장수(60점) : 업력 45년 이상(55년인 경우 60점 만점)
- 가점(6점) : 수출(3점) 및 고용창출사업(3점) 참여 기업
 - ☞ 가점 포함 평가점수 80점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명문장수기업 확인심의위원회에서 평가점수, 지역평판, 공개검증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선정

지원 내용

명문장수기업 확인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첨부서류

법인기업의 경우	개인기업의 경우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최근 6개년도('11년~'16년) 재무제표 1부 4. 최근 6년간('11년~'16년) 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고용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증명서 등 근로자 고용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5. 최근 5년간('12~'16년) 국세납입증명서 1부	1. 사업자등록증 1부 2. 최근 6개년도('11년~'16년) 표준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1부 3. 최근 6년간('11년~'16년) 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고용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증명서 등 근로자 고용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첨부서류 중 4번의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로 대체 가능

처리 절차

- 규제·애로 신고서 처리



문의처

- 신청·접수(관리기관) : 중기중앙회 가업승계지원센터(02-2124-3145, 3146)
- 신청·접수(관리기관) : 중견기업연합회 명문장수기업센터(02-3275-2988, 070-4808-3774)
- 정책문의(중소기업청) : 중견기업정책과(042-481-6812, 6814)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 가업승계지원센터 홈페이지(www.successbiz.or.kr)
- 명문장수기업센터 홈페이지(www.dlec.or.kr)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부 록

1. 중소기업 판단 기준 및 확인방법	493
2. 중소기업 조세지원	496

1. 중소기업 판단 기준 및 확인방법

1 중소기업이 될 수 있는 대상

-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영리법인(상법상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상 일반협동조합 등)과 개인사업자
- 다만,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독립법인이 아닌 '법인 내 사업단' 형태 제외)
 - * 중소기업 여부는 법인의 경우 사업장이 아닌 법인 단위로 판단

2 중소기업 범위 기준

- 규모기준 및 독립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중소기업에 해당
 - ▷ 규모기준 : 업종별 매출액 기준과 상한기준(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을 만족할 것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 기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제조업 (6개업종)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1차 금속 제조업	C24	
	전기장비 제조업	C28	
	가구 제조업	C32	
농업, 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1,000억원 이하
광업		B	
제조업 (12개업종)	식료품 제조업	C10	
	담배 제조업	C12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 제외)	C13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 제외)	C16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 제외)	C20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 제외)	C25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D	
건설업		F	
도매 및 소매업		G	
제조업 (6개업종)	음료 제조업	C11	평균매출액등 800억원 이하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E	
운수업		H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J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N	평균매출액등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600억원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이하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숙박 및 음식점업		I	평균매출액등
금융 및 보험업		K	400억원
부동산업 및 임대업		L	이하
교육 서비스업		P	

○ 독립성 기준(계열관계에 따른 판단기준)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또는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 ▷ 자산총액 5천억 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 포함)이 주식등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대출자자인 기업
- ▷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출자 비율에 해당하는 평균매출액을 합산하여 업종별 규모기준을 미충족하는 기업
 - * 관계기업 : 기업 간의 주식등 출자로 지배·종속 관계에 있는 기업의 집단
 - * 단, 비영리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연합회)은 관계기업제도 적용하지 않음

3 2016년 주로 달라진 점

- 업종별 규모기준을 상시근로자수 또는 자본금/매출액에서 3년평균매출액 기준으로 단일화하고, 제조업종을 세분화
-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상한기준 폐지
- 창업 후 1년 이내 또는 관계기업으로 규모 초과 시에도 유예허용(3년). 유예 부여 횟수를 1회로 제한

4 중소기업 여부 확인 방법

-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sminfo.smba.go.kr)을 통해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신청 가능
- 증빙자료 제출이 온라인으로 완료된 경우 신청서 작성·제출과 동시에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고, 중소기업 확인서 출력 가능

〈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절차 〉



2. 중소기업 조세 지원

1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 지원 대상

-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 ▷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중소기업
- ▷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자
- ▷ 창업 후 4년내 에너지신기술기업에 해당되는 중소기업

대상 업종

-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음식점업, 출판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자영예술가는 제외), 엔지니어링사업, 물류산업,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영위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전시산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건물 및 산업설비정소업, 경비 및 경호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사회복지서비스업, 보안시스템서비스업

○ 지원 내용

- ▷ 법인세·소득세 : 최초 소득발생 연도를 포함하여 5년간 50% 지원
 - * 창업일(벤처기업은 창업후 3년 이내 벤처기업 확인 받은날)로 부터 5년간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 연도를 포함하여 5년간 50% 감면
 - * 청년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초 3년간 75% 감면
- ▷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 * 취득세 : 창업일로부터 4년간 75% 감면
 - * 재산세 : 창업일로부터 5년간 50% 감면
 - * 등록면허세 :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4년내 자본 증자 포함) 등기 및 창업 중 벤처기업 확인받은 중소기업의(확인일로부터 1년내) 법인 설립 등기시 면제

2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

- ✓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출판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프로 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과학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수탁생산업, 엔지니어링사업, 물류산업, 직업기술 분야 교습학원 운영하는 사업,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운영사업, 자동차정비공장 운영하는 사업, 선박관리업,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관광 사업, 노인복지시설 운영하는 사업, 전시산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재가장기요양기관 운영업,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사회복지서비스업, 무형재산임대업, 연구개발지원업, 개인 간병인 및 유사 서비스업, 사회교육시설, 직원훈련 기관,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도서관·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 주택임대 관리업,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 보안시스템서비스업

○ 지원 내용 : 지역, 업종, 기업 규모에 따라 법인세·소득세의 5~30% 감면

구 분	수도권 內사업장	수도권 外사업장
소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소매업, 의료업 10% •상기 업종 외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소매업, 의료업 10% •상기 업종 외 30%
중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식기반산업 10%(엔지니어링사업, 전기통신업, 연구개발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전문디자인업, 오디오 출판 및 원판 녹음업, 광고업 중 광고물 작성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방송업, 정보서비스업, 서적·잡지 및 기타인쇄물출판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소매업, 의료업 5% •상기 업종 외 15%

* 장수 성실중소기업(10년이상 경영기업, 종합소득 1억원 이하, 소득세법상 성실사업자)의 경우 10% 추가 감면

3 창업·벤처기업 지원세제

- 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창업자, 벤처기업, 코넥스 상장기업 등에 출자한 주식의 양도차익과 배당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면제
- 엔젤투자 세제지원
 - ▷ 거주자가 벤처기업 등에 투자한 금액 중 1천5백만원 이하분 100%, 1천5백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분 50%, 5천만원 초과분 30%를 소득공제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 ▷ 벤처기업 임직원이 벤처기업으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해 양도소득세 과세 가능
- 벤처기업, 창업보육센터에 대한 지방세 과세특례
 - ▷ 벤처기업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37.5%), 벤처기업집적시설, 창업보육센터 등에 입주하는 자에 대해서는 취득세, 재산세 등 종과세를 적용 배제

4 투자촉진을 위한 세액공제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 ▷ 중소기업이 사업용자산 등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3% 세액공제
 -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 창업 후 5년내 투자분에 대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의 이월공제 7년간 허용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 ▷ 사업용 자산 등 투자금액에 대하여 아래 공제율에 따라 세액공제
 - * 기본공제율 3% + 추가공제율 4~6%
-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 ▷ 공정 개선 및 자동화시설 등에 투자한 금액의 7% 세액공제
- 기타투자세액공제

세액공제제도	공제 대상	세액 공제율
R&D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연구시험용시설, 직업 훈련용시설, 신기술 기업화를 위한 사업용자산 투자	6%
안전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유통산업 합리화 촉진시설, 위탁기업체가 수탁 기업체에 설치하는 검사대, 기술유출 방지설비 등 투자	7% (기술유출방지설비 10%)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투자 세액공제	에너지절약형시설 등 투자	6%
환경보전설비에 대한 자세액공제	대기오염방지시설 등 투자	10%

5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지원 내용

- ▷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 R&D비용의 30%를 세액공제
- ▷ 일반연구인력개발비 : 직전 과세연도의 R&D비용을 초과하는 금액의 50% 또는 당해연도 R&D비용의 25% 중에서 선택한 금액을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 * 당해 과세연도 이전 4년간 R&D비용이 발생하지 않거나 직전 과세연도 R&D비용이 소급 4년간 발생한 평균 R&D비용 보다 적을 때는 당해연도 발생비용의 25% 공제

6 고용창출 및 유인을 위한 세액공제

세액공제제도	공제 대상	세액 공제율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전년대비 고용인원 증가하는 경우 사회보험료 공제(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청년 : 100% 청년 외 : 50%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60세 이상인 사람·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의 근로소득세	70% (150만원 한도)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시 세액공제	정규직으로 전환한 근로자 수	1인당 2백만원

7 중소기업·중견기업 가업상속 지원

- 대상 : 중소기업, 중견기업(매출액 3,000억원 미만)
- 가업상속공제
 - ▷ 10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사업자가 후계자에게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가업운영기간에 따라 가업상속재산의 100%(500억* 한도)를 과세가액에서 공제
 - * 15년 미만:200억원, 15년이상:300억원, 20년이상:500억원
-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 10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60세 이상 경영자가 18세 이상 자녀에게 주식 등을 증여(100억원 한도)하는 경우 증여세과세가액에서 5억원 공제 후 10%(30억 초과 20%) 저율로 과세

2017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발행일 : 2017년 1월

발행처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정책국 정책총괄과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전 화 : (042)481-3957

팩 스 : (042)472-7929



중소기업청

www.smba.go.kr